

研究報告 91-14

韓國法制史研究(I)

韓末法令體系分析

研究者 鄭肯植 (研究員)

한국법제연구원

發 刊 辭

法制史란 과거의 法制에 현재의 法制를 비추어 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의 자주적 法制를 수립한지 한 세대가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法制史란 거울에 과거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현재의 歷史的 淵源을 밝히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現行法制는 制度史的으로 단절되어 고유의 傳統에 근거하지 않고 韓末에 수용된 西歐法制가 現行法制의 모태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現行法制의 歷史的 淵源을 밝히기 위해서는 韓末法制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차대한 研究課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미진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法制의 연원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韓末法制에 대한 綜合的이고 體系的인 연구가 시급합니다.

1894년의 甲午更張期부터 1910년의 韓日合邦期까지 16년간에 公布된 法令은 3,600여 件입니다. 1970년에 法制處에서는 法制資料 第43輯 “舊韓國法令目錄 附統監府法令目錄”을 간행하였고, 1970년에서 1972년에 國會圖書館에서는 “韓末近代法令資料集(전9권)”을 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本研究院에서는 韓末法制에 대한 심도높은 研究를 위하여 韓末法令을 法分野別로 體系的으로 整理하여 本報告書를 간행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韓末法令에 대한 資料를 發掘·蒐集·整理하고 個別法制에 대한 綜合的이고 體系的으로 研究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本研究가 앞으로의 韓末法制에 대한 研究의 礎石이 되기를 기대하며, 끝으로 연구에 助言을 아끼지 않으신 諮問委員 朴秉濠·崔鍾庫 兩教授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관계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1991年 12月

韓國法制研究院
院長 李世薰

目 次

第 1 篇

韓末法令體系分析

I. 머리말	15
1. 問題의 提起	15
2. 研究方法	17
1) 研究史의 紹介	17
2) 史料	18
3) 研究方法	20
II. 韓末 法制의 概觀	22
1. 時代區分	22
2. 改革期의 法制	24
3. 復古期의 法制	28
4. 統監府期의 法制	30
III. 立法形式	35
1. 公文式	36
2. 法令 內容上의 形式	41
IV. 法律起草機關	42
1. 自主的 起草機關	42
1) 法律起草委員會	42
2) 軍法起草委員會	46
3) 法規校正所	47
2. 他律的 起草機關	49
1) 不動產法調查會	49
2) 法典調查局	50

V. 西歐法受容의 歷史的 意義	53
------------------------	----

第2篇 資料

韓末法令 分野別 目錄

I. 國家·王室

1. 國家

1) 一般	59
2) 國制	60
3) 年號	60
4) 慶祝日	61
5) 標準時	61
6) 國民關係	61
7) 官吏關係	62
8) 史庫	63

2. 王室

1) 王家	63
2) 節次	64
3) 宮中儀式	65
4) 附屬機關	66
5) 經費	67
6) 祭祀	68
7) 宮禁	69

3. 宮內部

1) 官制	70
2) 業務	75
3) 官員	75
4) 帝室制度	76
(1) 整理局	76

(2) 財産調査	77
(3) 財政	77
(4) 債務	77
II. 統治組織	
1. 立法	
1) 立法形式	79
2) 公文書	80
3) 節次	81
4) 起草機關	81
2. 中央機關	
1) 議政府・内閣	82
2) 中樞院	84
3) 官制一般	85
3. 地方制度	
1) 内部官制	86
2) 地方官 官制	86
3) 地方制度	87
(1) 一般	87
(2) 地方制度	88
(3) 個別地方制度	89
(4) 漢城府	92
(5) 開港地	92
4) 地方事務	93
(1) 任用	93
(2) 俸給	94
(3) 事務規程	94
5) 地方財政	95
4. 官員	
1) 官制	96
(1) 官等	96

(2) 任用	97
2) 服務	98
(1) 一般	98
(2) 懲戒	100
(3) 服製	100
(4) 俸給	100
3) 退職	103
(1) 退職	103
(2) 贈職	103
(3) 敘勳	104
4) 顧問	104
5. 軍隊	
1) 一般	105
(1) 官制	105
(2) 軍制改編	105
2) 軍編制	107
(1) 親衛隊	107
(2) 侍衛隊	108
(3) 近衛隊	108
(4) 訓練隊	109
(5) 地方隊	109
(6) 鎮衛隊	109
(7) 海軍	110
(8) 憲兵	110
(9) 기타	111
3) 武官學校	112
4) 軍處務	113
(1) 一般	113
(2) 兵器	113
(3) 將校	114

(4) 懲戒	114
(5) 軍法	115
5) 服裝	115
(1) 服裝	115
(2) 象徵	116
6) 經費	116
(1) 會計	116
(2) 俸給	117
6. 警察	
1) 官制	119
(1) 一般	119
(2) 地方警察	120
2) 職務	120
(1) 一般	120
(2) 管轄	121
(3) 費用	122
3) 服務	122
(1) 任用	122
(2) 俸給	123
4) 服裝	124
III. 民事法	
1. 民法	
1) 一般	125
2) 土地關係	126
(1) 量田	126
(2) 地契·家契	126
(3) 所有權	127
(4) 土地調查	127
3) 家族法	128
2. 商事法	

1) 一般	129
2) 會社法關係	129
3) 어음·手票法	130
3. 民事節次法	
1) 一般	130
2) 民刑事訴訟	131
IV. 刑事法	
1. 刑法	
1) 一般刑法	132
2) 特別刑法	133
2. 刑罰	133
3. 刑事節次	134
4. 行刑	135
V. 司法	
1. 法部	
1) 官制	138
2) 事務	138
3) 管轄	139
2. 裁判所	140
1) 一般	140
2) 個別裁判所	142
3. 法曹	144
1) 一般	144
2) 法官養成所	146
3) 辯護士	146
VI. 財政	148
1. 官制	148
2. 貨幣·度量衡	149
1) 典園局	149
2) 貨幣	149

3) 度量衡	150
3. 財政	
1) 一般	151
2) 財務署	152
3) 節次	153
4) 會計	154
5) 國庫	155
(1) 一般	155
(2) 節次	155
(3) 金庫	156
4. 國有財產	
1) 驛・屯土	156
2) 政府事業	157
3) 公債	158
4) 國有地利用	158
5. 銀行	
1) 一般	159
2) 貯蓄	160
VII. 租稅・專賣	
1. 內國稅	
1) 一般	161
2) 稅種	161
3) 徵收	163
4) 免稅	165
2. 關稅	
1) 官制	165
2) 管轄	166
3) 業務	167
3. 專賣	
1) 收入印紙	168

2) 郵票 등	169
3) 官報	170
4) 人蔘	170

VIII. 社會·教育

1. 社會

1) 一般	172
2) 風俗	173
3) 社會扶助	173
4) 寄附金	174
5) 新聞·出版	175

2. 衛生

1) 病院	175
(1) 一般	175
(2) 個別病院	175
(3) 漢城衛生會	176
2) 防疫	177
(1) 一般	177
(2) 傳染病	177
(3) 기타	178
3) 水道	178

3. 教育

1) 官制	179
2) 一般	180
3) 行政	180
4) 成均館	182
5) 學校의 種類	182
(1) 直轄學校	182
(2) 私立學校	183
6) 一般學校	183
(1) 小學校·普通學校	183

(2) 高等學校	185
7) 特殊學校	186
(1) 外國語學校	186
(2) 師範學校	187
8) 기타	187
IX. 産業	
1. 官制	
2. 實業教育	
1) 商工學校	189
2) 農林學校	189
3) 實業學校	190
4) 기타	191
3. 通信	
1) 官制	191
2) 郵遞	192
(1) 官制	192
(2) 郵遞規則	192
(3) 業務	193
(4) 個別郵遞司	194
(5) 統監府郵遞	198
3) 電報	199
(1) 官制	199
(2) 業務	200
(3) 個別電報	202
(4) 統監府電報	202
4) 電話	203
(1) 業務	203
(2) 個別電話	203
(3) 統監府電話	204
5) 統監府通信綜合	206

4. 農水産業	
1) 農業	210
2) 森林	212
3) 畜産	212
4) 輸出牛	213
5. 漁業・海運	
1) 漁業	214
2) 渡船	215
3) 船舶	215
4) 燈臺	216
5) 浮標	217
6. 鑛工業 등	
1) 鑛業	218
2) 建築	220
3) 交通	220
(1) 道路	220
(2) 鐵道 등	221
4) 기타	222
X. 外交	
1. 官制	
1) 外部	225
2) 外交官	225
2. 外交節次	226
3. 外交關係	
1) 條約	226
2) 旅券	227
3) 移民	227
參考文獻	228
附表：年度對照表	230

第 1 編

韓末法令體系分析

I. 머리말

1. 問題의 提起

英·正祖代의 중흥기를 거친 조선은 純祖의 즉위로 王室의 外戚에 의한 勢道政治로 사회의 피폐는 극도에 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은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여 조직적인 항쟁을 하였으며, 이는 純祖 11년(1811)의 홍경래난으로 대표된다. 그리고 哲宗 13년(1862)은 전국적으로 농민항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농민항쟁은 종교적으로 승화되어 哲宗代에 崔濟愚는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한 東學을 창시하였다. 조선의 내부적 모순은 1863년에 高宗이 즉위하고 대원군이 집권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수습되었다. 그렇지만 대원군의 개혁정치는 내적 붕괴의 가능성은 상존한 채 미봉책에 그치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었다.

19세기의 세계사적인 현상은 西勢東漸이었다. 서구의 제국주의는 아프리카와 인도를 지나 중국을 반식민지화하고 일본을 개항시키고 조선에 대해 개국을 요구하고 또 실제로 무력시위를 하였다. 그렇지만 내적 결속을 공고히 한 대원군은 두 차례에 걸쳐 서양제국의 침략—1866년의 丙寅洋擾와 1871년의 申未洋擾—을 격퇴하고 쇄국을 더욱 굳건히 하였다. 그러나 세계사의 대세는 거역할 수 없고, 또 안으로의 개혁의 움직임은 무시하기에는 조선사회 내부의 모순은 너무나 컸다. 이미 조선이 쇄국인 상황에서도 내부적으로는 개화파가 형성되어 미국과의 교섭을 주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1876년에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은 쇄국이 아닌 개국으로, 세계속의 조선으로 발을 내딛게 되었다.

서양과의 접촉은 조선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법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 나라의 법은 고유적 요소와 외래적 요소의 조화로 발전한다. 외래법이 소개되어 고유법이 이를 포섭·융화하여 고유법을 중심으로 발전하거나, 아니면 외래법이 고유법을 압도하여 전혀 새로운 법체제를 형성·발전한

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법체제의 교섭과정을 繼受(Rezeption)라 한다.¹⁾

우리 歷史上, 法은 內的 生成과 함께 크게 보아 5次에 걸친 外國법의 繼受를 경험했다. 三國時代에서의 魏晉 내지 唐律의 繼受, 高麗時代에서의 唐律令 및 宋·元法の 繼受, 朝鮮王朝에 의한 明律의 包括的 繼受, 開化期부터 日帝時代에 걸친 西歐法(大陸法)의 繼受, 그리고 解放後의 大陸法을 비롯한 英美法の 주체적 계수이며 근대이전은 모두 중국법을 계수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²⁾ 조선시대까지 압도적인 영향을 미친 중국법은 현재에는 전통적인 요소로만 남아 있고 현행법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를 대신하여 개화기에 수용된 서구법이 현행법의 모태가 되어 우리의 법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서구법에는 우리의 법을 근대화하고 나아가 사회를 근대화하였다.

한국법의 근대화과정에 일본법의 그것은 많은 시사를 준다. 일본은 서구와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등 不平等條約을 체결하였다. 이를 철폐하고 부국강병의 근대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法制의 정비가 최우선의 과제로 부각되었다. 일본은 법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서구법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법시행의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지 않은 채 법령의 제정에 착수했다. 이는 서구법을 거의 번역하다시피 한 것인데, 각 분야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용했다. 즉 司法 분야에서는 프랑스법을 수용하여 刑法·民法·治罪法을 제정하였고, 憲法·地方法 등 行政法分野와 商法은 독일법을, 國立銀行條例는 미국법, 鑛業條例는 벨기에법을 수용하여 제정하였다. 그리고 서구의 법을 수용하여 그들 특유의 天皇制와 地方分權을 극복한 中央集權主義를 독특하게 조화하여 일본사회를 근대화하였다.³⁾ 일본은 近代市民社會를 형성하기 전에 우선 서구법을 수용하여 法을 근대화시켜 사회와 국가가 이에 따라가게 하는 것이었다.

한국에서의 상황은 초기에는 서구법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후 法이 부국강병의 要諦로 인식되어 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法學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실제 立法의 면에서는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초기의 立法은 日本人이

1) 玄勝鍾, 「比較法入門」(博英社, 1972), 192~5면; 繼受라는 용어는 일반용어로는 낯설다. 보다 일반적인 受容이란 용어로 사용하기도 사용하기도 한다.

2) 朴秉濂, 「傳統的 法·法意識과 現代法の 課題」, 「歷史的 脈絡에서 본 現代韓國文化의 方向」(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175-6면.

3) 福島正夫 外, 「日本近代法制の形成」上(日本評論社, 1981) 1~4면; 利谷信義, 「日本の 法を考する」(東京大出版會, 1985) 2~13면.

주도하여 근대사회를 지향하는 법령을 제정하였으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개혁 입법은 후퇴하고 「舊本新參」에 입각하여 보수적이거나 중도적인 입법이 증가하였다. 법률기초기관이 설치되고 근대적인 법조인양성기관을 설립하였으나 이들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침략이 강화됨에 따라 입법을 일본인이 주도하게 되어 일본의 식민지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령이 증가하였다. 조선은 근대화를 위하여 서양인 고문을 임명하였으나, 초기에는 淸, 후기에는 日本의 간섭을 받아 그들의 역할은 미미하였다. 한국근대법사는 하나의 기축이 없이 정치상황에 좌우되었으며, 이를 규정한 것은 일본세력이었다. 한국근대법사는 일본에 의해 규정되고 주도된 타율적인 과정으로, 서구법의 수용은 법의 근대화, 나아가 한국사회의 근대화에 기여한 면도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일본식민지화를 제도화한 면도 있다.

2. 研究方法

1) 研究史의 紹介

한국 현행법제의 모태가 되는 韓末法制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부진하다. 기존의 연구를 단행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핵심적 주제인 西洋法の 受容過程에 관한 연구⁴⁾와 通史的 서술에서 韓末部分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法思想史, 法學史의 연구가 있으며,⁵⁾ 또 近代 法思想史에 대한 연구가 있다.⁶⁾ 민사법분야의 연구는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로서 鄭鍾休教授의 연구는 한국현행 民法典의 제정과정을 연구한 것으로 日本民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⁷⁾ 商法과 民事節次法에 관한 연구는 아직 없다. 刑事法分野에서는 일본침략과정을 刑事法的인 면에서 분석한 저서만 있을 뿐⁸⁾ 한말의 형사법제를 개관한 논문 2편⁹⁾ 이외에는 연구성과가 없다. 국가조직과 행정개혁에

4) 崔鍾庫, 「韓國의 西洋法受容史」(博英社, 1982).

5) 崔鍾庫, 「韓國法思想史」(서울대 출판부, 1989), 「韓國法學史」(博英社, 1990)

6) 田鳳德, 「韓國近代法思想史」(博英社, 1982).

7) 鄭鍾休, 「韓國民法典의 比較法的研究」(創文社, 1989); 李相旭, “韓國相續法の 成文化過程”,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86).

8) 鈴木敬夫, 「法을 통한 朝鮮植民地支配研究」(고려대출판부, 1989).

9) 朴秉濂, “舊韓國時代 刑事立法의 沿革”(1965) 「韓國法制史攷」(法文社, 1974) 수록; 장근세, “한말 형사법제에 관한 고찰”(충남대 석사학위논문, 1981).

대해서는 行政學的 연구성과가 있다.¹⁰⁾ 司法制度에 대해서는 法命을 중심으로 개관한 연구성과가 있고 일본의 사법권강화과정을 고찰한 논문과 재판제도의 정비과정을 논한 것이 있다.¹¹⁾ 教育史的 입장에서 개화기의 교육법제를 연구한 것이 있다.¹²⁾ 산업관계에 대해서는 경제사의 연구가 돋보이며, 연구서로서는 鑛產의 利權에 관한 것이 있다.¹³⁾ 國際法-萬國公法-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연구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나¹⁴⁾ 治外法權의 문제 등에 관한 연구는 소홀하다. 法曹史의 영역은 각 단체의 역사를 정리하는 측면에서 연구가 되었다.¹⁵⁾ 그리고 法學教育에 대해서는 개별연구가 축적되었고 특정학교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있다.¹⁶⁾

기존의 연구는 開化期法制 전체를 조감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채, 個別法命을 중심으로 되었으나 刑事法, 民事法 등 중요한 法分野는 전혀 연구가 되지 않은 채, 연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의 수준으로 開化期法制의 전체구도를 그리는 것은 무리이며,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2) 史料

법제사는 역사의 일부야이므로 史料를 무시할 수 없다. 開化期法制史研究에서 기존의 연구는 제한된 史料에 의거했다. 보다 완전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史料의 발굴이 필요하다. 현재 접할 수 있는 사료를 소개하여 향후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우선 官撰史料로 高宗·純宗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舊韓國官報, 統監府

10) 金雲泰, 「朝鮮王朝行政史-近代編-」(一潮閣, 1984; 全訂新版).

11) 金炳華, 「韓國司法史-中世編-」(一潮閣, 1979); 전봉덕, “일제의 사법권 강탈과정연구”; 「애산학보」 2, (애산학회, 1982).

12) 安基成, 「韓國近代教育法制研究」(고려대출판부, 1984).

13) 李培鎔, 「舊韓末 鑛產利權과 列強」, (韓國研究院, 1984).

14) 李光麟, “韓國에 있어서의 萬國公法の 受容과 그 영향”, 「東亞研究」 1, (서강대, 1982)
김봉진, “『漢城周報』의 발행과 조선의 萬國公法 수용”, 「한국전통사회의 구조와 변동」,
(문학과 지성사, 1986) 李漢基, “韓國 및 日本의 開國과 國際法”, 學術院論文集 19(1980).

15) 法院行政處, 「韓國法官史」(1976); 大韓辯護士會, 「韓國辯護士史」, (1979).

16) 金亨培 外, 「近代西歐學問의 受容과 普專」, (고려대출판부, 1986) 所收, 曹圭昌, 丘秉朔, 金亨培, 李允榮 논문참조.

公報가 있다.¹⁷⁾ 高宗·純宗實錄은 한일합방 중에 日本人이 편찬한 것으로 순수한 의미에서의 朝鮮王朝實錄은 아니지만 당시의 상황을 개관할 수 있다. 法制史에는 실제의 司法過程이 중요하므로 실제의 判決이 法制史研究의 핵심적 자료이다. 判決은 舊韓國官報에도 상당부분이 게재되어 있다. 그리고 최대의 자료는 司法稟報이다.¹⁸⁾ 이는 高宗 31年(1894)부터 光武 11年(1907)까지 地方官衙와 地方裁判所에서 法部에 보내온 公文書를 수록한 것이다. 그리고 高等法院判決文이 있다.

官撰資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史料로 私撰史料가 있다. 우선 開化期에 간행된 新聞이 중요한 자료이다. 신문은 방대하지만 가장 자세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다음은 開化期의 學術誌인데,¹⁹⁾ 이는 신문과는 달리 당시의 學術的인 분위기 등 보다 전문적인 자료이다. 法學史의 면에서는 法學教科書가 중요한 자료이다. 私撰史料는 방대하지만 官撰史料보다 더 생생하고 또 日帝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대법사에서 日本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일본을 위시한 外國과의 관련도 무시할 수 없다. 日本人의 회고록과 그들의 선전자료는 公刊되어 입수가 쉽다. 駐韓日本公使館文書는 현재 國史編纂委員會에서 간행중이며, 나머지 자료는 아직 공간되지 않았으며, 아직도 많은 자료가 소개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의 자료를 이용하여 손쉽게 구성한 제2차 史料로는 國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高宗時代史(전6권)가 있다. 이는 2차자료라는 점과 분량이 적다는 한계가 있다.

法制史研究는 法源의 탐구에서 시작되어야 하므로 法典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조선왕조가 統一法典의 時代이듯이 開化期에도 계속적으로 法典이 간행되었다. 開化期의 法典으로는 「法規類編」(1896), 「現行大韓法規類纂」(1907), 「法規類編」(1908), 「法規續編」(1909), 「現行韓國法典」(1910), 「司法法規類纂」(1910) 등이 있다.²⁰⁾ 또 편의를 위하여 개인이 法典을 출판하기도 하였다. 法典의 編制와 言語 등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7) 이상은 각각 國사편찬위원회와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출간되었다.

18)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중이다.

19) 일부는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되었다.

20) 鄭鍾休, 「前揭書」, 26面.

기존의 사료를 소개했지만, 아직 소개되지 않은 史料의 발굴이 더욱 중요하다. 서울대의 奎章閣所藏 文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藏書閣所藏 文書 등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여야 한국근대법사는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3) 研究方法

법은 사회의 산물로 법의 생성·발전은 사회의 발전·변화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法制史는 사회관계속에서 법의 발전을 고찰하는 것이다. 주체인 사람이 사회관계의 변화에 따라 대상을 규율해나가는 것이 法이고, 법제사는 사회관계와 법의 변화과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法制史는 단순한 법만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관계속에서 法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이므로, 法만의 연구로는 부족하고 사회의 변화를 아울러 고찰해야 한다. 법전 속의 법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살아있는 법을 연구하는 것이 法社會學²¹⁾이라면 法制史는 대상만 過去의 法이지 法社會學과 같다. 지나간 사실을 史料를 통하여 복원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과거의 사회속에서 살아 숨쉬는 法을 탐구하는 것이 法制史이다.²²⁾

개화기의 法制史研究는 西勢東漸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傳統法이 해체되면서 傳統的 要素가 외래적 요소와 조화되면서 새로운 法秩序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당시의 사회 속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法의 近代化過程을 밝혀, 근대사의 한 부분을 기술하는 것이 開化期法制史의 課題이다.

開化期の 法制는 傳統法이 西歐法으로 대치되는 과정이다. 일본법을 통하여 서구법이 소개되고 입법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함에 유용한 방법론은 比較法이다. 比較法學은 두 개 이상의 社會·國家의 法秩序에서의 制度·機能을 비교고찰하는 學問이다.²³⁾ 比較法學은 법의 단순한 조문비교가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法의 기능·사회적 의미를 비교분석하여 母法과 子法의 동질성과 차별성을 규명하는 것이다.²⁴⁾

21) 崔大權, “法社會學的 法學方法論—法發見에 있어서의 法社會學的 接近—”, 『法學』 24권 1호 (서울대, 1983).

22) 崔鍾庫, “法史學的 法學方法論—法史學的 課題와 方法—”, 『法學』 24권 1호 (서울대, 1983).

23) 玄勝鍾, 『比較法入門』 15면.

24) 李相冕, “比較法學方法論” 『法學』 24권 1호 (서울대, 1983).

開化期の法令과 日本法令, 나아가 西歐法을 비교분석하여 서구의 母法이 한국의 상황에 따른 변화양상과 日本의 침략의도에 따른 왜곡의 실상을 밝혀, 서구법의 수용이 한국의 역사적 상황에서 갖는 의미를 밝히는 것이 비교법사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開化期法制의 課題이다.

II. 韓末 法制的 概觀

1. 時代區分

일반사학계에서는 한국근대사의 기점을 1876년 丙子修好條約의 체결이나 그 전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法制史的으로는 近代史의 기점을 1894년의 甲午改革期로 잡는다. 갑오개혁을 계기로 하여 法制度는 일신되었다.¹⁾ 1894년 갑오개혁 이후 1910년 한일합방까지의 기간을 법제사적으로 시기구분을 할 때 일본과의 관계에서 改革期, 復古期, 統監府期로 3분할 수 있다.²⁾

第1期 改革時期(1894.5~1895) : 甲午·乙未期の 改革立法時代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내정을 개혁하기 위해 軍國機務處를 설치하여 軍國機務處의 議案과 王이 내리는 詔勅의 형태로 改革立法을 추진하였다.

第2期 復古時期(1896~1905) : 淸日戰爭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서 우세한 지위를 보장받았으나 곧 독일·프랑스·러시아의 간섭으로 국제적으로는 고립되고 국내외에서는 金弘集·魚允中 등이 살해되고 李完用·李範晉 등의 친러내각이 성립되고, 고종은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俄館播遷, 1896년 2월). 이때에 烈強은 조선의 산림·광산 등의 이권을 장악하는 등 자주국가로서의 면모가 없었다. 이에 獨立協會 등의 주장으로 고종은 환궁하여 독립국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하여 1897년 10월에 國號를 「大韓帝國」, 年號를 「光武」라 하고 稱帝를 하였다. 復古期 立法의 특징은 「舊本新參」³⁾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듯

1) 朴秉濠, “開化期の 法制”, 「韓國學」7(중앙대 영신아카데미, 1975) 13면.

2) 李熙鳳, “韓末法令小考”. 「學術院論文集」19(대한민국학술원, 1980), 宋炳基外編, 「韓末近代法令資料集」I(대한민국 국회도서관, 1970), 序文(이하 「한법집」으로 약칭함) 鄭鍾休, 「韓國民法典의 比較法的研究(創文社, 1989), 16面, 23~6面.

3) 建陽 元年 9月 24日에는 을미개혁의 제도를 폐지하고 과거로 환원하는 詔勅에서 당시 법제개혁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하고 있다. 新定典則 是乃率舊章而參新規 凡係民國

이復古主義이다. 이는 1899년에 반포된 「大韓國國制」에 잘 나타나 있다.⁴⁾ 그리고 열강의 힘의 균형상태를 계기로 하여 자주적인 입법이 많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大韓國國制와 최고·최대의 입법인 刑法大令(1905년 4월 29일 반포)이다.

復古期の終期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누어진다. 우선 국제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일본세력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직전인 1902년을 종기로 보는 견해⁵⁾와 1904년으로 보는 견해,⁶⁾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1905년으로 보는 견해⁷⁾가 있다. 이를 설정함에는 일본세력의 진출과 내부적 입법사업을 아울러 고찰해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刑法大令이 1905년 4월에 공포된 것을 고려한다면 1905년 4월 이후로 잡아야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1904년 8월에 제1차 韓日協約을 체결하여 한국에서의 顧問政治의 기틀을 닦아 놓았다. 그후 동년 11월에는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여 국제적으로 한국에 대한 우월권을 승인받은 일본은 강제로 제2차 韓日協約(乙巳保護條約)을 체결하고 1906년에 統監府를 두어 保護政治를 시작했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 여건을 고려한다면 제2기의 종기를 1905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第3期 統監府期(1906~1910. 8) 을사조약으로 통감부가 설치되고, 統監은 한국의 외교권만 위임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이미 각부의 고문을 통하여 한국의 실권을 장악한 상태이다. 統監府期の立法은 두 가지의 특색이 있다. 첫째 입법주체의 二元化이다. 통감부는 사법사무 등의 위탁으로 이에 대해 독자적인立法을 할 수 있었고 한국정부는 위임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입법권을 갖고 있었지만 정부의 고문이 입법사업을 지휘하였다. 그 결과 사실상 한국의 입법권은 일본에 위임된 상태였다. 또 하나는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기 위한 입법이 증대했다.⁸⁾

韓末法制史의 時期區分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近代法史起點의 소급문제이다. 이미 개화기에 중국을 통하여 서구법이 한국에 소개되었

便宜者 斟酌折衷,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순종실록」中 598面.

4) 邊大燮, 「韓國史通論」, (三英社, 1986), 427~8면.

5) 鄭鍾休, 「前揭書」, 16面.

6) 宋炳基外, 전계면.

7) 李熙鳳, “전계논문” 159面.

8) 鄭鍾休, 「前揭書」, 25~6面.

다. 초기에 한국인의 서구법에 대한 입장은 慎後聘처럼 지극히 부정적이었지만 北學派 등 후기의 실학자는 긍정적으로 보아 수용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생활을 한국에서의 서양법학의 初期受容(Frührezeption) 내지 反受容(Gegenrezeption)이라 할 수 있다.⁹⁾ 그후 1880년대에 들어 일본을 통하여 다시 서구법이 소개되었다. 일본을 통하여 서구법을 관찰한 紳士遊覽團의 일원은 이를 수용하기보다는 일본의 무비판적인 수용을 비난하였다.¹⁰⁾ 그렇지만 관계와는 달리 재야에서는 開化上疏로 서구문물을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다.¹¹⁾

이와 같이 일반사학에서의 근대화 논의에 맞추어 法史에서도 近代化始點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갑오개혁을 근대법사의 기점으로 삼는 현재의 논의수준은 일본에 의한 근대화주장-韓國史의 停滯性, 植民地史觀-을 뒷받침할 뿐이며, 한국사의 自主性, 內在的 發展을 부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韓國近代法史의 起點을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다.

2. 改革期の 法制

조선은 개항 후 새로운 국제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1881년 1월에 중국의 統理各國事務衙門(1861년 설치)을 본따 統理機務衙門을 설치하였다. 이는 外國事務와 軍國事務를 겸하는 기관으로 외국과의 교섭을 주도했다. 이는 領選使, 紳士遊覽團의 파견, 외국과의 조약체결, 국내제도의 개편 등을 수행하다가 1882년 7월에 임오군란이 발발하자 폐지되었다. 통리기무아문설치의 역사적 의의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정부가 서양문화의 수용의지, 즉 정부가 개화운동을 전개하려는 의도로 설치한 점이다.¹²⁾ 임오군란 후 1882년 12월에는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과 統理軍國事務衙門으로 나누어 부활시켰다. 1884년 10월에는 후자를 議政府에 통합시켜 전자만으로 갑오경장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기구를 통하여 초기개화정책실현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¹³⁾ 갑오개혁기 전까지는 개화과가

9) 崔鍾庫, 「韓國의 西洋法受容史」, (博英社, 1982), 21面.

10) 崔鍾庫, 「韓國法學史」, (博英社, 1990), 57~77面 참조.

11) 李元淳, 「韓末 雇聘歐美人 綜鑑-外國人雇聘問題研究 序說」, 「韓國文化」10(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89), 244面.

12) 李光麟, 「統理機務衙門의 組織과 機能」, 「開化派와 開化思想研究」, (一潮閣, 1989) 참조.

13) 金雲泰, 「朝鮮王朝 行政史: 近代篇(全訂新版)」, (一潮閣, 1984), 111~4面.

통리기무아문을 통하여 軍制, 財政을 개혁하여 개화정책을 추진하였지만 法制의 개혁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1884년의 갑신정변에서도 財政, 租稅, 王室 등에 대한 개혁안은 있었으나 法制全般에 대한 개혁안은 없었다.

갑신정변을 계기로 정치적으로 조선에서 후퇴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적극적인 식민지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학농민전쟁을 빌미로 하여 1884년 6월에 일본군을 조선에 파견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淸에 대해 조선의 내정개혁을 주장하였으나 淸은 거절하였다. 이에 일본은 단독으로 내정개혁을 단행하여 내정개혁안을 조선에 강요하고 청과의 전쟁을 개시했다. 일본은 大鳥公使를 통하여 5개의 內政改革方案綱領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중 본고와 관련되는 것은 법률의 정비와 재판의 공정이다. 이런 와중에서 조선은 중신회담을 거듭하여 논의하였다. 自主적으로 내정을 개혁하기 위해 6월 11일에 고종은 위급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개혁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여 이를 위해 廟堂에 校正廳 설치를 명하고, 12일에 의정부에서 이를 논의하고 13일에는 校正廳을 설치하여 堂上 15명과 郎廳 2명을 임명하였다.¹⁴⁾ 조선은 일본에 대하여 일본군의 철수없이 내정개혁을 고려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나갔다. 그러나 校正廳은 설치의도와는 달리 總裁官이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주체적인 개혁을 진행할 수 없었다.¹⁵⁾ 이러한 상태에서 일본은 강제적으로 내정개혁을 시도하여 7월 23일에 쿠데타를 일으켜 高宗에게 내정개혁을 강요하자 고종은 7월 24일에 경장의 綸音을 내리고 27일에 내정개혁을 위한 軍國機務處를 신설하고 閔氏一族을 제거하고 金弘集을 수반으로 하는 친일내각을 성립시켰다.¹⁶⁾

軍國機務處는 모든 국정을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하는 합의제최고정책결정기관이다. 이의 설치과정을 일본의 杉村書記官이 대원군과의 협의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金弘集을 領議政으로 하여 정부를 조직하고 또 예비조직으로 評議會를 두기로 한 것에서 나온 것이다. 일본인은 이를 大鳥와 杉村이 지도하고 金嘉鎭·安駟壽·兪吉瀆 등이 구제도를 보존하면서 近代法治國家의 內閣制度를 참작하여 만든 것이라고 하나 조선의 자의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¹⁷⁾ 軍國機務處의 전

14) 고종 31년, 6월 11일 이하,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순종실록」中 491面.

15) 김운태, 「전계서」, 249~253面.

16) 전봉덕, “일제의 한국 사법권 강탈과정의 연구”, 「에산학보」2(에산학회, 1982), 153~5面.

17) 金雲泰, 「전계서」, 256~7面.

반적인 구성과 권한은 일본의 元老院(1895년 6월 설치, 1890년 9월 폐지), 樞密院官制(1888년 3월 설치)를 모방한 것이다. 게다가 국왕·왕비의 전제적 권위와 대원군의 정권대행자적 지위도 무시·배제되고 초정부적인 입법부의 성격을 지닌 것이다. 실제 운영에서는 독자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議案을 심의결정하는 최고입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녔는데, 이는 杉村·岡本 등이 아니라 兪吉濬 등의 견해였다.¹⁸⁾

군국기무처의 운영방식은 會議員 중에 혁신의 진의를 파악한 자가 드물었기 때문에 총재의 지명으로 상임기초위원을 두어 군국기무처에 상정할 의안을 이들이 杉村과 岡本과 사전협의하여 原案을 작성하고 총재가 이를 회의에 상정하였다. 회의에서도 거의 토의없이 1회의 회의로 卽決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의사에 따라 졸속으로 운영되었다. 군국기무처는 11월 21일 폐지되기까지 4개월간에 208건의 법령을 가결공포하였다.¹⁹⁾

청일전쟁에서의 승리와 法令의 공포 등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개혁은 진척되지 않았다. 이에 일본은 大鳥公使의 소환을 논의하여 8월 18일 末松法制局長官이 서울을 시찰한 후 9월 24일 大鳥公使의 소환을 결정하였다. 그 대신에 자청한 내부대신 井上馨이 10월 25일에 公使로 부임하였다. 그는 군국기무처의 업적을 논박하고 개혁이 宣言에 그쳤음을 실토하였다. 그는 어전회의에서 내정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자신이 기초한 내정개혁항목 20조를 제시·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朴泳孝와 金弘集의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1894년 1월 3일에는 고종은 백관을 대동하고 내정개혁의 洪範14條를 선포하였다.²⁰⁾

洪範14條는 오늘날의 憲法에 해당하는 것으로 法制와 관련한 것은 제13조 “民法과 刑法을 嚴明히 제정하여 함부로 사람을 가두거나 벌하지 않아서 인민의 목숨과 재산을 보전하는 일”²¹⁾이다. 이에 따라 議政府를 내각이라고 개칭하는 등 개혁이 진행되고 각부에는 일본인 고문 7명이 취임했는데, 議政府顧問은 石塚英藏, 法部顧問은 星亨이다.²²⁾ 이들 고문이 입법사업에 참여하여 내정개혁

18) 「전게서」, 259面.

19) 「전게서」, 261~2面.

20) 전봉덕, “전게논문”, 159~161面.

21) 民法 刑法 嚴明制定 不可濫行監禁懲罰 以保全人民生命及財產, 「한법집」 I, 133~142面.

22) 전봉덕, “전게논문”, 163面.

에 필요한 법령을 정비하였는데, 이는 法律 제1호 裁判所構成法 등이 3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 공포되었으며, 5월 26일에는 지방제도를 개정하여 개혁을 완료하였다.²³⁾

이러한 개혁은 통치조직·관료제도·사법제도·회계조세제도·사회제도 등에 걸친 전반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大典會通 등의 구법령과 軍國機務處의 議案 등이 상존하여 法體系上의 혼란이 극심하여 제대로 시행될 수 없었다. 그리고 개혁법령은 일본 법령의 번역에 지나지 않고 또 한국 고례의 관습과도 달라서 범법자가 속출하는 등 최악의 산물이었다.²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각종의 법령·규정을 정리하여 실행이 가능하고 또 즉시 필요한 것 56개조를 취사선택하여 천명하였다.²⁵⁾ 乙未改革의 法令들은 근대화를 지향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것이나, 개혁주체가 자주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외국의 강압에 의해 타율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이 때문에 국민에게 신용을 잃어 空文에 그친 것이 많았다. 그러나 개국기원의 사용, 노비제의 폐지 등은 실효성이 있어 사회를 개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²⁶⁾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열강은 조선에서의 일본의 독점을 허락하지 않고 간섭하였다. 이에 일본은 대한정책을 달리하였다. 이러한 국제정세에 힘입어 국왕은 전의 입법을 비판하고 政事를 親裁施行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로써 甲午·乙未의 근대화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²⁷⁾ 왕실과 척신들이 중심이 되어 친일파가 견제되고 친러파가 부상한 김홍집내각이 성립하였다. 일본은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 민비를 살해하고, 다시 친일내각을 성립시켜(乙未事變) 내정개혁을 추진하였다. 김홍집내각은 7월 5일 내각설립 이후 11월 15일까지 140건의 法令을 공포했다. 이의 성격은 갑오개혁에 비하여 구체적이고 자주적 입장에서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복구적인 개혁도 있다. 이들 개혁 중 陽曆의 사용, 豫算制度의 채택, 의관제도의 개혁은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이었다.²⁸⁾ 특히 단발령은 사회적 반발을 일으켜 의병봉기를 촉발하여 사회적

23) 金雲泰, 「전계서」, 286~9面, 改革法令의 一覽은 <表 10-1> 참조.

24) 鄭鍾休, 「前揭書」, 241~5面.

25) 金雲泰, 「전계서」 306面, 내용은 「한법집」 I, 275~289面 참조.

26) 金雲泰, 「전계서」 325面.

27) 「전계서」, 329面.

28) 「전계서」, 331~6面.

혼란을 야기하였다. 러시아는 그들의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호기로 보아 러시아군을 주둔시켰으며, 고종을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시켰다(俄館播遷). 이런 와중에서 김홍집 등은 피살되어, 친일내각은 붕괴하고 친러내각이 성립하여 제도는 복구되었다.

3. 復古期의 法制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였으나 俄館播遷(1896.2)으로 세력을 잃어 친러 정권이 조선에서 성립하였다. 신정권은 갑오을미기의 개혁입법을 거의 무효로 하고, 議政府制의 복구 등 원제도로 회귀하였다.²⁹⁾ 특히 衛正斥邪派인 崔益鉉은 전기의 법을 “선왕의 법제를 폐하고 왜이의 지휘에 따라 중화를 이적으로 만들고 인류를 짐승으로 삼은 개혁 이래의 최대의 변고(自開化以後 盡先王之法制 一從倭夷之指揮 使中華爲狄 人類爲禽獸 此開闢以來 所未有之大變)”³⁰⁾로 보았다.

復古期 立法의 기본방침은 「舊本新參」, 즉 옛 제도를 근본으로 삼고 갑오 이래의 신제도를 참고로 하는 복구주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1897년 3월 23일에는 中樞院 내에 校典所를 설치하였다. 교전소의 설립취지는 “신구전식을 절충하여 법규들을 하나로 통일·집성함(折衷新舊典式 諸般法規 彙成一通)”³¹⁾으로 입법의 기본방침이 잘 반영되었다. 그리고 최초의 인적 구성에서도 總裁大員은 보수파의 비중을 높이고 실무담당위원은 개화파를 위주로 하여 전통적인 제도와 갑오개혁을 절충하려 하였다.³²⁾

이 시기는 밖으로는 열강이 세력균형을 이루었고, 안으로는 독립협회 등을 비롯하여 民權運動이 활발하였다. 조선은 자존을 위하여 1896년 8월에 稱帝하여 자주국으로서의 변모를 일신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흐름은 입법에도 반영되어 자주적인 입법이 많은 시기이다. 대표적인 立法으로는 1899년 8월 17일에 공포된 「大韓國國制」와 1905년 4월 29일에 공포된 「刑法大全」을 들 수 있다.

29) 전봉덕, “전계논문” 169面; 鄭鍾休, 「前揭書」, 25面; 金雲泰, 「전계서」 342面.

30) 建陽 元年 2月 25日, 「고종순종실록」中 581面.

31) 「전계서」中, 620面.

32) 金雲泰, 「전계서」, 343面.

전문 9조 국한문 혼용체인 「大韓國國制」는 헌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法規校正所에서 기초한 것으로 光武政權의 성격을 잘 드러낸다. 이는 당시에 통행되던 국제법(萬國公法)인 公法會通(블룬츨리 J.C. Bluntschli, Das Moderne Völkerrecht der civilisierten Staaten als Rechtsbuch dergestellt, Nördlingen)의 영향을 받았으며, 정권의 성격은 3권을 황제가 모두 장악하는 專制軍主國으로서 당시의 君權의 제약을 요구하는 사상과 운동에 대한 한계와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³³⁾ 「刑法大全」은 전문 680조로 이루어진 한말 최고 최대의 立法이다. 이는 明律·大典會通 刑典 그리고 갑오 이후의 개별형사법령을 근대적 법전체제로 국한문혼용체로 편찬한 것이다. 「刑法大全」에 대해서는 家族法과 관련한 몇 편의 논문만 있을 뿐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없다.³⁴⁾ 기존에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법률로서는 1900년 9월 4일에 반포된 「陸軍法律」이 있다. 이는 전 317조 4편으로 구성되었다. 官報에는 軍法으로 나타나는데, 이의 제정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³⁵⁾ 이로써 特別法制定이 일단락 짓고 一般刑法(刑法大全)制定을 위한 준비작업이 완료된데 의의가 있다.³⁶⁾

第2期에는 전기의 틀 아래에 자주적인 立法事業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가 활성화되었다. 改革期에 설치된 法律起草委員會가 제기능을 하였고, 校典所, 校正所-후에 法規校正所로 개칭-를 특설하여 전담하였으며 軍法起草委員會, 同校正所, 刑法校正所 등을 설치하여 입법의 내실을 기하였다. 改革期에는 日本人顧問이 활동을 하였으나 復古期에는 일본인은 거의 배제되고 독일인 穆麟德(Möllendorf), 프랑스인 金牙始(L. Crémazy), 미국인 具禮(Greathouse) 등 서양인 法律顧問의 활동이 활발하였다.³⁷⁾ 이러한 外國人의 활동에 대하여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와 일본에서의 외국인의 활동-프랑스인 보아소나드(Boissanade), 독일인 뢰슬러(Rösler)가 중요함-에 비하여 보면 너무 과대평가되었다는 견해가 있다.³⁸⁾ 현재의 연구성과에서는 金牙始를 제외하고는 구체

33) 田鳳德, “大韓國國制의 制定과 基本思想”, 「韓國近代法思想史」(博英社, 1981), 참조

34) 李炳洙, “우리나라의 近代化와 刑法大全의 頒示-家族法을 中心으로 하여-” 「法史學研究」2(韓國法史學會, 1975); 鄭東鎬 “開化期の 家族法規範에 관한 考察-刑法大全의 規定을 中心으로-” 「論文集」13(강원대, 1979).

35) 「舊韓國官報」982호 등 참조.

36) 朴秉濠, “舊韓國時代의 刑事立法의 沿革”, 「韓國法制史攷」(法文社, 1974) 429面.

37) 崔鍾庫, 「韓國의 西洋法 受容史」(박영사, 1982) 제1부; 李元淳, 韓末雇聘歐美人綜

적인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의 평가는 이르다고 여겨진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³⁹⁾

4. 統監府期の 法制

일본은 영일동맹의 체결(1902년 4월)과 미국의 성원하에 한국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1904년 2월에 러시아와 전쟁을 개시했다. 전운을 감지한 한국정부는 1월에 局外中立을 선언하였으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2월 23일에 韓日議定書의 체결을 강제하였다. 그 내용은 일본의 군사자유행동권, 외국과의 조약체결간섭권 등이다. 이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정치군사적 간섭을 합법화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군부고문 野津鎮武를 3월에 파견하여 고문정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8월에는 고문정치의 근거가 되는 제1차 韓日協約을 체결하여 재정고문에는 目賀田과 외교고문에는 일본의 직원인 미국인 須知分(D. Stevens)을 임명하고 전분야에 일본인고문을 용병하였다. 노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국에 대한 보호정치의 중앙기관을 한국에 설치하는 협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1905년 4월에 「한국보호권확립의 건」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12월에 乙巳保護條約(제2차 韓日協約, 韓日新協約)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06년 2월에 서울에는 統監府, 지방에는 理事廳을 설치하였다. 조약의 내용은 외교권의 박탈이었으나 실제로는 한국 내정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것이다.⁴⁰⁾

차관정치의 개시와 함께 한국재판소에 일본인 法務補佐官을 배치하였다. 법무보좌관은 이름과는 달리 감독권을 행사하여 사실상 한국사법권을 장악하였다. 법무보좌관제를 통하여 한국사법권을 장악한 일본은 1907년 헤이그밀사사건을 계기로 고종을 퇴위시켰다. 일본은 국가통치상 법률의 제정과 재판기관의 구성이 중요하다고 여겨 裁判權의 강탈을 목적으로 하는 丁未7條約을 체결했

鑑 - 外國人 雇聘問題 연구서설 -" 참조.

38) 鄭鍾休, 「前掲書」, 17-8面; 曹圭昌, 「西洋法 受容에 있어서 法學教育의 歷史的 意義」,

「西歐學問의 受容과 普傳」, (고려대출판부, 1986) 143面.

39)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李元淳, 「전계논문」; 同, 「한말 日本人雇聘問題研究」, 「한국문화」 11,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87).

40) 전봉덕, 「전계논문」, 175~9面.

다. 이에 따라 한국의 裁判所構成法을 새로이 制定하였다. 그리고 종전의 고문 정치를 탈피하여 직접적으로 한국을 지배하는 次官政治로 이행하여 法部次官에 일본의 검사장 倉富勇三郎과 일본인을 판검사로 임명하였는데, 이로써 한국법 부의 실권은 일본인 차관에게 넘어가고, 한국인은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실정이었다. 일본은 식민지화정책을 확실히 추진하고 한국 내의 일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의 사법사무를 완전히 탈취할 것을 기도했다. 이에 따라 1909년 7월에는 「한국병합의 건」을 의결하였다. 이보다 먼저 7월 23일에는 「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한일각서」를 강제적으로 조인하였다. 이에 따라 10월 16일에는 일본 勅令 第230號 統監府裁判所令을 공포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한국의 재판소와 법부는 10월 31일에 폐지되었다. 이처럼 한일합방에 앞서 재판권과 사법권이 일본에 넘어갔다.⁴¹⁾

統監府期 法制的 특징은 立法主體의 二元性이다. 通信事務·裁判權 등 일본이 합방 전에 장악한 분야에는 통감부가 입법권을 갖고 있어서, 日本勅令 또는 그 委任에 의해 統監府令으로 제정되고 한국내각이 이를 告示하여 시행되었다.⁴²⁾ 그 외에는 한국정부에 立法權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일본인 고문이 입법을 지도하고 기초하였고 또 1907년에 체결된 한일의정서 제2조 “한국정부의 法令制定은 미리 統監의 承認을 거칠 것”에 의거하여 統監府가 立法을 사실상 장악하였다. 또 하나의 특징은 法令의 증가이다. 이러한 法令은 한국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한국식민지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인의 정치적 결사와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刑事法分野와 일본의 경제적 침략의 법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土地關係立法이 급증했다.⁴³⁾ 이러한 사실은 大韓自強會의 건의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금하는 1906년 10월 16일 法律 제6호 「土地家屋의 賣買·交換·讓與·典當에 관한 件」을 시행하지 않고 일본인 법부고문 梅謙次郎이 기초하여 10일 후에 공포한 勅令 제65호 「土地家屋證明規則」이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허용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⁴⁴⁾ 일본은

41) 전봉덕, “전계논문”, 184~198面.

42) 예 : 內閣告示令 第34號 司法·監獄事務에 관한 日本國勅令(第236號 統監府 裁判所令)을 揭布하는 件의 형태로 한국에 공포·시행되었다.

43) 李熙鳳, “전계논문”, 164面; 鄭鍾休, 「前揭書」, 26面.

44) 金熙洙, “開化期 不動產에 관한 法律關係小考”, 「法史學研究」 9(한국법사학회, 1988), 9~13面.

한국에서의 立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국정부가 자주적으로 설립한 法律起草委員會를 대신하여 不動產法調査會와 法典調査局을 설치하여 한국의 관습을 조사하고 이에 근거하여 立法을 하였다.

1906년 이후 한국을 사실상 통치하게 된 統監府와 그 지방관청인 理事廳에 대해 고찰 하기로 한다. 統監은 논란은 있었지만, 日本天皇에 直隸하는데, 외교에 관해서는 외무대신과 내각총리대신을, 나머지는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하여 天皇에게 上奏하여 制可를 받는다. 통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① 한국에서 일본제국을 대표하고 외국과의 교섭을 전담한다. ② 일본관헌과 公署가 시행할 政務를 감독한다. ③ 필요에 따라서 정무를 한국정부에 이양하고 그 집행을 구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직접 지방관청에 이전하고 후에 통고한다. ④ 일본관리 및 한국에 僱聘된 자를 관리한다. ⑤ 한국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韓國守備軍司令官에게 병력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 그 후 이에 근거하여 韓國駐劄司令部條例(明治 39년(1906) 7월 31일 勅令 第205號)가 제정되었다. ⑥ 統監府令을 발하여 禁錮 1年 이하 또는 罰金 200원 이내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통감은 직권 또는 위임으로 이를 발할 수 있는데, 본래에는 한국거주 일본인에게만 효력을 가졌으나 보호정치로 통감이 한국행정권을 수행할 권한이 있게 되자 한국인과 주한외국인에게로 효력을 가졌다. ⑦ 관할관청의 명령처분이 위임할 경우에는 그것을 정지·취소할 수 있다. ⑧ 관리의 감독권 ⑨ 한국에 관한 사항으로 조약 등으로 통감에게 양도된 사항을 집행할 수 있다.⁴⁵⁾ 이와 같이 통감은 입법·사법·행정 등 韓國施政 전반을 감독하였다. 또 통감부가 설치되기 전인 러일전쟁 당시에 한국에 戒嚴을 선포하였고, 光武 9年(1905) 10월 19일에는 日本의 軍政施行을 방해하는 鏡成郡守 沈憲澤을 감금하고 한국외부에 통고하였다.⁴⁶⁾

일본은 한국지배를 위하여 서울에는 統監府를 설치하고 지방의 통지에는 理事廳을 설치하였다. 통감부 개설과 함께 개항장을 위주로 하여 10개소에 이사청을 개청하고 후에 13개소로 확대되었으며, 한국의 지방 弊政을 쇄신하는 명목으로 支廳을 설치하여 지방지배를 획책하였다. 그 후 1908년 한일신협약으로

45) 松岡修太郎, “統監府の統治法制”, 「京城帝大法學會論集」12冊 3・4號(昭和16, 12), 178~182面.

46) 國史編纂委員會, 「高宗時代史」6, 358面.

한국에 일본인을 관리로 임명할 수 있게 되자 지청은 그 존재필요가 없어져서 동년 12월 31일에 폐지되었다. 理事官은 통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래 韓國在勤領事에 속하는 사무와 조약 및 법령에 기하여 이사관이 집행하는 사무를 관장하는데, 이는 곧 이사청이 통감부의 결정사항을 전달받아 실천하는 기구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사청은 거류일인을 보호하기 위한 재판권까지 갖고 있어 副理事官이 이를 담당하였고 上訴는 統監府 法務院에서 관장하였다. 이로써 재한일인은 治外法權으로 한국에서 완벽한 法的 保護를 받았다. 통감부가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것처럼 이사청도 統監을 통하여 해당 지방 주재군대의 출동을 청할 수 있어 한국지배를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理事廳은 罰金 10圓 이내 또는 구류·과료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어서 강압적 지배의 법적인 근거까지 있었다. 이사청은 통감부의 하부기관으로 지방행정에 관하여 立法, 司法, 行政權을 장악하여 일본의 대한식민지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었다.⁴⁷⁾

일본은 형식상으로 조선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하여 1906년부터 통감과 대한제국 정부대신으로 구성된 「韓國施政에 관한 協議會」를 설치하였다. 이는 동년 3월 13일부터 1909년 12월 20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개최되었다. 이는 양자의 의견조정이 목적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통감부의 자문기관, 지시전달기관에 지나지 않았다.⁴⁸⁾

통감부기에는 식민지법제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법제를 정비하였다. 다음 그 개요를 보기로 한다.

① 헌병·경찰

통감부가 설치되기 전에 이미 일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이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여 군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관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軍政(1904. 7. 2~1905. 9. 3 개정), 軍事警察訓令(1904. 7. 24) 한국에 駐劄하는 憲兵의 行政警察 및 司法警察에 관한 건(1906. 2) 韓國駐劄憲兵에 관한 건(1907)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1909. 10. 28) 한국경찰사무위탁에 관한 각서(1910. 6. 24) 통감부검찰서관제(1910. 6. 29)

47) 姜昌錫, “統監府研究—理事廳의 組織과 性格을 中心으로—”, 「釜山史學」 13, (부산사학회, 1987) 36~45面.

48) 金雲泰, “統監府 時代의 大韓帝國統治體制의 構造와 機能”, 「行政論叢」, 9-1(서울대, 1971) 4面.

② 사회교육관계

- 1) 보안규칙(1906, 통감부령10호), 신문지법(1907, 법률1호), 보안법(1907, 법률2호), 신문지규칙(1908, 통감부령12호); 경찰범처벌령(1908, 통감부령44호), 학회령(1908, 칙령63호), 출판법(1909, 법률6호), 한국에 있어서 범죄즉결령(일본칙령, 240호)
- 2) 사립학교령(1908, 칙령62호), 교과용도서검정규정(1908, 학부령16호)

③ 경제관계

- 1) 토지가옥증명규칙(1906, 칙령65호), 토지가옥전당집행규칙(1906, 칙령80호),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1908, 칙령47호), 토지가옥증명사무에 관한 건(1909, 칙령95호)
- 2) 화폐조례실시에 관한 건(1905, 칙령2호), 동양척식주식회사법(1908, 법률22호), 광업법(1906, 법률3호), 어업법(1908, 법률29호), 삼림법(1908, 법률1호)

III. 立法形式

조선시대에는 經國大典을 비롯하여 수 많은 大典이 있어 조선시대를 統一法典時代라 부른다.¹⁾ 각 법전의 편찬은 엄밀한 의미에서 법의 제정이 아니라 기존의 법의 기록, 발전이었으며, 이는 良法美意, 祖宗成憲으로 인식되어 함부로 개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종성헌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내용이 고정될 수 없으므로 새로운 법령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신법령은 국왕의 명령을 기초로 하는데 이를 敎라고 하며 敎가 형식화된 것을 王旨, 敎旨라 하고 각 관청에 내려진 교지를 受敎라 한다. 敎旨나 受敎 가운데에서 영구히 시행할 典과 그렇지 않은 錄의 구별이 생겨나 典은 祖宗成憲으로 존중되었다. 이는 全時代를 지배하는 法原則으로 성립되었다.²⁾

조선시대에는 별도의 입법기관도 없고 법령의 내용도 法規的인 것과 행정적인 것의 구분도 없었다. 法令의 내용은 행정적인 것과 형사적인 것이 주를 이루었으며 민사에 관한 것은 慣習과 判例 -이들이 法典에 규정이 되면 法으로서의 效力을 갖는다-에 맡겨져 있었다. 전제왕권국가라는 관념과는 달리 法令의 성립에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 즉 王, 議政府(후기에는 備邊司), 六曹 등에서 發議를 하면 議政府나 備邊司 大臣, 諫官 등이 토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 王이 裁可를 하는데 王은 의견이 일치된 것에 거의 따른다. 禮曹가 司憲府·司諫院의 署經을 거쳐 依牒을 넘으로써 法令이 성립되고, 公布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다. 그러나 書付, 曉諭의 경우에는 일반국민에게 알린다.³⁾

즉 조선시대에는 특별한 입법기관이나 기초기관이 없이 관계관청이 발의를 하고 대신의 토의를 거쳐 왕의 재가를 받아서 法令이 제정되었고, 내용상으로

1) 朴秉濠, 「韓國法制史」, (한국방송통신대출판부, 1986), 13면.

2) 「전계서」, 37~38면.

3) 丁玉泰, “李朝立法節次에 관한 一考察” 「전남대논문집〈法學·行政學篇〉」 29집, 1984, 153~8면; 法制處, 「法制處 四十年史」, (法制處, 1988), 25~34면.

는 祖宗成憲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있었지만 형식상으로는 구별이 없었다.

1. 公文式

개화기에는 서구법의 영향으로 法令의 내용에 따른 형식상의 구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입법에 관한 별도의 기관은 甲午改革期の 軍國機務處가 있었다. 總裁 1員, 부총재 1員, 의원 10~20명으로 구성된 군국기무처는 개혁의 수행을 위해서 法令을 제정해야 하므로 그 法令을 議案이라 하였고 議案은 154개에 이른다.⁴⁾ 軍國機務處의 議案의 法令으로서의 效力을 강조하기 위하여 高宗 31년 7월 9일에는 議案을 邦憲으로 삼아 시행하고 만약 이를 어기는 자는 엄히 처벌한 것⁵⁾을 천명하였다. 議案의 내용은 복잡다기하여 아직 조선시대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근대적 법형식의 단서가 보이는 것은 軍國機務處가 高宗 31년(1894) 9월 12일에 議案으로 반포한 命令頒布式이다.⁶⁾ 命令頒布式은 전문 9條의 순한문으로 구성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1조 命令紙式

② 국내의 法律 勅令은 모두 上諭로 반포한다(제2조).

③ 法律·勅令은 總理大臣이 기초하거나 各衙門大臣이 안을 갖추어 의정부에 제출하면 총리대신이 上裁를 奏請한다(제3조).

④ 법률과 정치관계 칙령은 御押한 후 御璽를 찍고 총리대신이 일자를 기입하고 주무대신과 함께 그 아래 연서한다. 만약 1개 아문과 관련된 사무이면 그 주무대신이 일자를 기입하고 연서한다.

⑤ 총리대신·각아문대신은 법률·명령의 범위내에서 직권으로 특히 위임한 것을 시행할 수 있고 또 府令과 衙令을 발할 수 있다(제5조).

⑥ 법률·명령은 관보로서 반포하며 각 주현은 법령이 도착한지 7일 후에 시행한다(제6조).

4) 李熙鳳, “韓末法令小考” 『學術院論文集』 19집(1980), 160면.

5) 「한법집」 I, 24면.

6) 「한법집」 I, 32~3면.

⑦ 각 주현은 거리의 원근으로 인하여 관보도착의 기한이 있다. 만약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기한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도착한 다음 날로 기한을 정한다(제9조).

⑧ 國書·조약의 비준·外國派遣官員의 委任狀·在留各國領事官의 認可狀은 어압을 하고 어쇄를 찍어야 한다(제8조).

⑨ 勅任官의 任命은 官職教旨에 어압과 어쇄를 하며 奏任官은 단지 어쇄만 한다. 判任官은 薦主大臣이 承宣院에 薦事를 올리고 啓下가 있는 후 천주대신이 奉敎職牒을 成給하고 스스로 署押 蓋印한다(제9조).

命令頒布式의 내용은 法律 勅令·命令의 제정방식과 이들의 公布方法을 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외교문서의 작성방법, 제9조는 官吏의 임명장에 대한 규정이다. 기존의 연구는 命令頒布式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고 그 후에 반포된 公文式만 언급하고 있다.

大鳥公使의 후임으로 井上馨이 부임하여 군국기무처가 폐지되고 朴泳孝·金弘集내각이 성립하였다. 개국 503년(1894) 11월 21일에는 앞의 命令頒布式을 대신하여 勅令 제1호 公文式이 제정반포되었다.⁷⁾ 公文式은 全3章 제1 公文式, 제2 布告, 제3 印璽로 총19개조 순한문으로 되어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法律·勅令은 上諭로 公布하되 議政府가 起草하든가 각 衙門大臣의 具體案을 議政府에 提出하여 그 會議를 經유한 후 總理大臣이 上奏하여 國王의 裁決을 받아야 하며, 긴급을 요하지 않는 法律·勅令은 總理大臣이 中樞院에 諮詢한다(第1條·2條).

둘째, 法律 및 一般行政關係의 勅令은 國王이 親署한 후 御璽를 찍고 總理大臣이 年月日을 記入한 다음 主務大臣과 함께 副署를 할 것이며, 각 衙門 專任 事務에 屬하는 事項은 主務大臣만이 副署한다(第3條).

셋째, 法律·勅令 範圍內에서 總理大臣이나 각 衙門大臣은 議政府令 및 각 衙門令을 發布할 수 있고, 警務使와 地方官도 警務令 및 地方令을 그 管內 혹은 그 일부에 發布할 수 있다(第4條~第12條).

넷째, 總理大臣과 각 衙門大臣은 管下所屬官吏에게 訓令을 발할 수 있되 議

7) 「한법집」 I, 118~122면; 公文式에는 命令頒布式이 아니라 公文頒布規例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후자는 찾을 수가 없다. 아마도 양자가 혼용된 듯하다.

政府令 및 각 衙門令의 例에 準한다(第13條).

다섯째, 法律·勅令은 모두 國文으로써 하되, 漢文譯을 붙이든가 혹은 國漢文을 混用할 수 있다. 그 布告는 官報로써 한다(第14條).

여섯째, 法律·勅令은 官報에 公布한다. 그 시행기일은 각 法律·勅令에 정한 바에 따른다(第15條).⁸⁾

公文式은 法令의 上下段階를 규정하고 그 제정절차와 형식 등을 정하여 법령의 이론적 체계가 선다. 그러나 헌법이 제정되지도 않고 국회도 개설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문식에서 法律과 勅令 등을 구별한 것은 무의미하며 또 실제 입법에서도 法律과 勅令의 내용상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法執行者가 法令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문기관으로 中樞院을 두었으나 중추원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⁹⁾

公文式이 위와 같이 거의 형식에 그친 것이지만 法言語에서는 커다란 진전을 보이고 있다. 즉 제14조는 법률과 칙령은 국문(한글)을 위주로하고 한문은 附譯하거나 국한문을 혼용하다고 되어 있다.¹⁰⁾ 전래의 法令은 모두 한문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하여 커다란 진전이다. 公文式 자체도 한문으로 되어 있는 등이 규정은 당분간은 규범력을 가지지 못하였지만 동년 11월 25일에 法務衙門에서 제정한 監獄規則과 동년 12월 11일의 勅令 제13호 巡檢懲罰例 그리고 12일의 誓告文(洪範14條)에는 국한문혼용체와 순한글로 공포되었다.¹¹⁾ 그 후에도 순한문으로 된 法令이 공포되다가 1895년 1월 29일 이후에는 국한문 위주로 된다. 그러나 王室關係事項에 관계되는 法令과 詔勅·奏本 가운데는 순한문으로 된 것이 있다. 法令의 내용과 用語間의 상관관계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 후 공문식은 개국 504년(1895) 3월 29일에 勅令 第63號로 제3조를 개정하였다.¹²⁾ 동년 5월 8일에는 勅令 제81호로 전면개정하였다. 이는 국한문혼용체로서 전3장 총 18조이다. 따라서 내용은 앞의 公文式을 국한문혼용체로 번역한 것이 대부분이나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8) 金雲泰, 「朝鮮王朝行政史—近代篇—」, 284~5면.

9) 李熙鳳, “전계논문”, 162~3면.

10) 현재에도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1948. 10. 9 법률 제6호)이 있어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을 전용하기로 하고 있다.

11) 「한법집」 I, 126~128면, 131~133면, 133~142면 참조.

12) 「한법집」 I, 291~292면.

제 3조 法律·勅令은 裁可하기 전에 內閣이 中樞院에 諮詢하며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제10조 무릇 법률 명령은 관보로 반포하여 그 반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 준수함이 가한 것으로 함. 각부대신이 발하는 部令은 관보로 반포하여 동시에 舊慣을 따라 적당한 처소에 게시함.

제11조 법률 명령 중 시행기일을 特揭한 것과 규정사항의 성질상 반포당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기일은 전조 제1항의 예에 따르지 않음.

제17조 警務廳令의 반포에 관해서는 시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앞의 예에 따름.

제18조 지방관청이 발하는 명령의 반포식은 따로 정함¹³⁾

이에 따라 法律命令의 반포절차는 확정이 되었다. 그 후 경무청령과 지방관청의 명령에 대한 공포절차도 제정되었다. 개국 504년(1895) 10월 6일에는 勅令 제174호 地方官廳에서 말하는 命令의 公文式을 공포했는데, 그 내용은 ① 府令·郡令이라 特書하여 월일을 기입하고 관찰사·군수가 서명하여 반포하고(제1조), 시행기일을 특정치 않은 경우에는 發令日로 기산하여 10일내에 시행함이 가하나 島地에서 도달한 날로 기산함(제3조)이다.¹⁴⁾ 이는 隆熙 2년(1908) 9월 7일 勅令 제66호로 다시 제정되었는데 시행기일을 원칙적으로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고, 단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道令으로 특별의 시행기일을 정할 수 있게 했다(제3조).¹⁵⁾ 警視廳令, 道令도 官報에 게재하는 것으로 公布하였다.¹⁶⁾

公文式은 헌법도 없고 국회도 개설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히 法律·勅令·命令을 구분하고 반포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이는 제도의 개혁을 위해 급히 法令을 제정·공포할 필요하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일본의 1887년의 勅令 제1호 公文式을 모방한 것이다.¹⁷⁾ 日本의 公文式은 전3장 17조로 된 것이다. 일본의 그

13) 「한법집」 I, 376~378면

14) 「한법집」 I, 590면

15) 「한법집」 VII, 317~318면

16) 융희 2년 10월 1일 警視廳令 제7호, 「한법집」 VII, 394면, 동년 1월 30일 한성부령 제1호, 「한법집」 VII, 387면 등.

17) 鄭鍾休, 「韓國民法の比較法的研究」 24面.

것과 우리의 命令頒布式, 순한문 公文式, 국한혼용 公文式을 각각 비교해 보기로 한다.

내 용	頒	漢	混	日
공 포	2	1	1	1①
기 초	3	2本	2	2
절 차	·	2但	3	1②
副 署	4	3	4	3
위 임 명 령	5	4	5	4
행 정 명 령	·	7	6	5
閣 令	·	8,9	7	6,7
訓 令	·	13	8	9
규 칙 (세 칙)	·	12	·	8
문 자	·	14	9	·
효 력 발 생	6	15	10	10
"	·	·	11	13
	7	·	·	11, 12
印 璽	·	16	12	14①
절 차	·	19	13	15
외 교	8	18	14	16
관 리 임 명	9	19	15	17

*頒은 命令頒布式, 漢은 503년 11월 21일, 混은 504년 5월 8일의 公文式, 日은 日本의 公文式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公文式은 일본의 公文式을 변안한 것이다. 그렇지만 고유성을 존중하고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면도 보인다. 즉 개국 504년의 공문식 제10조는 各部大臣이 말하는 部令은 官報로서 頒布하나 아울러 舊慣에 따라 적당한 處所에 게시할 수 있게 하였다.

公文式은 헌법과 의회가 개설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일본안의 변안에 지나지 않지만 한국의 고유성을 반영하는

등 주체성을 가진 입법이다. 이로써 한말 입법의 형식적 체계는 갖추어져 이후 입법체제의 근거가 된 점에 역사적 의의가 있다.

2. 法令 內容上의 形式

개국 503년 11월의 公文式 第4條~第12條에는 閣令 部令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국 504년(1895) 3월 29일 勅令 제64호 “閣令·部令·訓令·告示及指令의區分規程”을 반포하였다. 閣令·部令은 公文式 第4條에 의하는 命令이고, 訓令은 法律命令의 範圍內에서 長官이 그 소속관리와 그 감독에 속하는 관리에게 訓示 또는 命令하는 것이며, 告示는 官廳이 일정한 사항을 告知하는 것이며 指令의 下官의 質稟에 대한 上官의 지시이다.¹⁸⁾ 그리고 동년 3월 29일 秦本 “部令·訓令·廳令·府令을 발하는 절차에 관한 건”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당관서가 등본을 內閣記錄局에 送付하여, 관보에 게재하고 동시에 內閣總書에 송부하여, 總書가 訓令 등이 違法한지 또는 상호모순되어 시행할 수 없는지 또는 주무관청의 權限外인지를 심사하며 만약 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總書가 總理大臣에 제출하고 총리대신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을 정지하고 그 사건을 閣議에 제출한다.¹⁹⁾ 이로써 法律 이외의 行政命令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다시 개국 504년 10월 6일 法律 제16호 “部令·警務廳令·府令에附하는罰則의制限에관한件”을 제정하여 行政罰의 한계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各部大臣은 法律과 勅令으로써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部令을 위반한 자에 대해 30원 이내의 벌금이나 30일 이하의 拘留에 처할 수 있으며, 警務使와 各府 觀察使의 命令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10圓 이내의 罰金 또는 10일 이하의 拘留에 처할 수 있다.²⁰⁾

近代的 立法절차의 體系도 갖추기 전에 개별법령을 통하여 입법의 체계를 갖추었으며, 이를 이후 입법의 지침으로 활용하였다.

18) 「한법집」 I, 272~273면.

19) 「한법집」 I, 283면.

20) 「한법집」 I, 589면.

IV. 法律起草機關

조선시대에는 독립의 입법기관을 두지 않고 필요에 따라 임시적으로 檢詳條例司, 六典修撰色(육전수찬빗), 六典詳定所, 纂輯廳 등을 설치하여 法典을 편찬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전문적인 입법기관 내지 法律起草機關은 존재하지 않았다. 갑오개혁기에 접어들어서야 전문기관이 등장했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추후연구의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1. 自主的 起草機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法令의 정비가 필요하다. 군국기무처에서의 입법은 급작스럽게 되어 법령 상호간에 모순이 많아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법령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고 또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상설적인 법률기초기관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法律起草委員會와 法規校正所, 임시적으로 軍法起草委員會가 설치되었다.

1) 法律起草委員會

法律起草委員會는 우리나라 최초의 상설기관이다. 이는 제도상으로는 1895년 6월에 설립되어 1905년 2월에 폐지된 후 1907년 7월에 民法典을 편찬하기 위해 高宗이 내리는 詔勅으로 복설되었다. 앞을 法定, 뒤를 權設法律起草委員會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1) 法定法律起草委員會

이의 설치근거는 1895년 3월의 개혁법제인 勅令 第45號 法部官制 제13조 “法

部大臣은 法律의 制定 或 改正에 관하는 사항을 起案하기 위하여 委員 약간인 을 법부에 置할 수 있음”에 근거하여 6월 15일 法部令 제7호로 공포된 法律起草委員會規程¹⁾이다.

이의 설치목적은 刑法, 民法, 商法, 治罪法, 訴訟法 등을 조사하여 제·개정 하는 법안을 기안함이다(제2조). 인적 구성은 위원장 1인, 위원 6인(法部高等官 또는 漢城裁判所判事: 4인, 法律通曉人: 2인), 서기 2인(제3조)으로 되어 있다. 法部顧問官補佐員 중에 위원회의 집무를 하는 자는 법률기초에서 위원과 동일한 權義를 가졌다(제5조). 1896년 6월 21일에는 위원은 8인(법률통효인: 4인)으로 늘어났고, 1890년 2월 27일에는 漢城裁判所判事를 제외시켰다.²⁾ 위원장은 법률기초를 마치면 法部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제8조). 會議細則을 위원장이 마련하게 했다(제4조).

최초의 法律起草委員會는 開國 504년(1895) 6월 15일 위원장에 法部協辦 李在正, 위원에 民事局長 徐胄淳, 刑事局長 張博, 檢事局長 申載永, 漢城裁判所判事 韓昌洙, 法官養成所長 皮相範, 5品 玄暎運³⁾으로 구성되었다. 建陽 2년(1897)까지의 인적구성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위원장은 4명으로 李在正(개국 504.6.15-9.7), 民事局長 鄭仁興(건양 1.2.24 해임), 法部협판 權在衡(건양 2.5.18 해임), 동 李寅祐(동년 10.15 해임)이다. 위원은 15회에 걸쳐 총 29명의 변화가 있었다. 위원 중 최단임기는 姜萬馨(건양 2.1.18-22), 李寅明(건양 2.1.26-29)으로 각각 3,4일이다. 가장 오랫동안 재직한 위원은 신재영, 피상범, 현영운이다. 建陽 2년(1897) 2월 이후 광무 3년(1899) 5월까지에는 法律起草委員會는 위원의 임명도 없이 사실상 해체되었고 이를 대신하여 校典所가 설치되었다.⁴⁾

1) 「한법집」 I, 210~1면, 492~3면.

2) 「한법집」 II, 93~4면; III, 26면.

3) 「舊韓國官報」 93號 참조; 이하에서는 인사에 관한 사항을 脚註를 달지 않는다.

4) 鄭鍾休, 「韓國民法典의 比較法的研究」(創文社 1969) 25면에는 폐지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의 근거는 찾을 수 없다.

광무 3년(1899) 6월에 校正所(후에 法規校正所)가 설치되면서 法律起草委員會가 복설되었다. 광무 3년 5월 22일에 委員長에 법무협관 李根濤, 위원에 皮相範 申載永 등 6인을 임명했다. 광무 4년 12월 7, 10일에 피상범을 제외한 전원이 해임되어 법률기초위원회는 일단 활동을 정지했다. 위원장은 이근호(광4. 1. 25 해임), 李載崑(3. 27 해임), 이근호(10. 24 해임), 金錫圭(12. 10 해임)이었다. 위원은 13회에 걸쳐 총 21명이 임명되었다. 지속적으로 관여한 사람은 없으며 임기는 긴 사람이 약 10개월 정도이다.

광무 5년(1901) 3월에 들어 다시 위원을 임명하였으나, 위원장도 공식인 채로 전원을 충원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위원의 교체가 아주 잦다. 8월 6일과 10월 21일 사이에 7회에 걸쳐 2인 1조로 총 18명의 위원의 연결적인 교체가 있었다. 동 11월 1일에는 법무협관 이재곤을 위원장에 임명했으나, 광무 6년(1902) 3월 31일에는 법무법무국장 金錫圭로 교체했다. 8월 23일과 9월 12일 사이에는 앞과 같은 형태의 위원의 교체가 있었다. 임명된 날 해임된 자도 무려 52명에 이르며 나머지도 임기가 1~2일에 지나지 않았다. 위원의 교체는 광무 7년에도 마찬가지이다(9월 12~10월 7일 사이이다). 광무 8년(1904) 1월 27일에 법무협관 李漢英을 위원장에 임명했으나, 곧 동 沈相翊(4월 8일), 金奎熙(10월 6일)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4월에는 金洛憲 등을 위원에 임명했다. 광무 9년 2월 22일에는 법무협관 李根湘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광무 8년 이후에는 위원의 교체가 잦지만 전과는 같지 않다. 위원들의 임기도 상당한 기간이었다. 法律起草委員會는 광무 9년(1905) 2월 26일 勅令 제20호 法部 官制改正⁵⁾으로 설치의 근거조문이 삭제되어 폐지되었다.

(2) 權設法律起草委員會

광무 9년(1905) 4월 刑法大全을 공포한 후 民法를 제정하기 위해 법부에 法律起草委員會設置를 청하는 5월 31일에 奏本을 올렸고, 이에 따라 民法常例를

5) 「한법집」 IV, 37면

편찬할 것을 명하는 6월 18일에 詔勅⁶⁾을 내렸다. 이에 근거하여 동 7월 18일 法部令 第2號⁷⁾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법부관계 등에는 근거가 없이 설치되었으므로 權設이라고 하였다. 1895년 規程과 내용상의 차이는 專任委員과 兼任委員을 두고 있으며 전임위원이 기초를 하면 겸임위원과 회동토의하여 가결된 후 위원장이 법부대신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제6조)이다.

광무 9년 7월 25일에 법부협관 李準榮을 위원장, 金洛憲, 趙經九, 丁明燮, 咸台永, 石鎭衡 등 8인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그 이후 洪在祺, 朴晚緒, 李冕宇, 李始榮, 柳東作 등이 위원으로 추가되었다. 위원장으로는 李相高이 임명되기도 했다(광무 11년(1907)). 10월 4일에는 법부차관 倉富勇三郎이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일인의 지휘 아래에 들어갔다. 이 당시의 법률기초위원들은 이미 밝혀진 법률가⁸⁾들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상당한 입법을 하였다. 광무 10년 12월에는 官立日語學校 副校監이 위원으로 임명된 점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융희 원년 12월까지 총 38명의 위원이 임명되었는데, 이들은 전처럼 자주 교체되지 않아 어느 정도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초기의 법률기초위원들은 法律專門家가 아닌 관료출신이었다. 이들은 단지 인사정책에 의해 임명되었고 임기의 극단기간으로 인하여 스스로 법학적 소양을 쌓을 기회도 없이 지냈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기초위원회를 통한 근대적 법조인, 입법전문가의 형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 때문에 외국인 고문관이 큰 역할을 했다. 고문관들은 閣令·部令 등을 사전에 查閱할 수 있으며 또 이뿐만 아니라 관청의 문서도 사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각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서 法令의 立案에 그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었다.⁹⁾ 따라서 법률의 기초는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고문관들이 주도했고 법률기초위원들

6) 「한법집」 IV, 237, 249~250面.

7) 「한법집」 IV, 311~2面.

8) 崔鍾庫, 「韓國法學史」(박영사, 1990) 및 「韓國法思想史」(서울대 출판부, 1989) 참조.

9) 「한법집」 I, 236~7면; 개국 504년 3월 25일 奏本(各 大臣法規約條件 53~5).

은 번역 정도의 부수적인 지위에 머물렀다. 그렇지만 皮相範, 申載永과 같이 전통법학에서 출발하여 근대법학으로 나아간 이들도 있으며, 이들은 일본의 세력이 후퇴한 復古期에 刑法大全 등 자주적으로 법률을 제정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05년 이후에는 김낙헌, 정명섭, 조경구 등 근대법학을 공부한 법률기초위원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러한 사실은 陸軍法律과 刑法大全의 制定을 비롯한 입법과정에 참여하여 얻은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일본유학과 法官養成所 등을 통해 얻은 근대법학지식을 축적하여 한국에 자생적으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음을 반영한다.

2) 軍法起草委員會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 속에서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대의 정비가 필연적인 과제였다. 이에 따라 軍制의 정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제도만이 아니라 軍人의 규율도 중요했기 때문에 軍法の 제정을 서둘렀다. 광무 2년(1898) 4월 26일에는 軍法起草委員會를 설치하고 參將 白性基를 위원장으로 法部參書官 申載永, 高等裁判所檢事試補 尹性普 등 6인을 위원으로 임명하였다. 광무 3년 6월경에 기초가 끝나 16일에 위원을 해임하였다. 광무 4년(1900) 7월 23일에는 군법의 校正을 위하여 軍法校正官으로 法部主事 金應駿, 軍部經理局 소속 申載永 등을 임명하고 9월 16일에 교정을 끝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정된 법률은 광무 4년 9월 4일 法律 第4號로 공포된 陸軍法律¹⁰⁾이다. 陸軍法律은 전 317조로 구성되었으며, 체제 내용에서 근대적인 모습을 띄고 있으며 이때까지의 立法事業을 종합한 것이다. 육군법률제정의 역사적 의의는 이로써 特別法制定은 일단락 짓고 一般刑法制定을 위한 준비작업이 완료된 것이다.¹¹⁾

10) 「한법집」 III, 150面

11) 朴秉濠, “舊韓國時代의 刑事立法의 改革”, 「韓國法制史攷」, 429面.

3) 法規校正所

高宗은 러시아공사관에서 환궁한 후 내정개혁의 추진여부를 논의하였다. 이때 논의과정에서 대부분 舊制로의 복귀가 주장되었지만, 자주적인 입법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특히 金炳始는 종합적인 法典編纂을 건의하였다.¹²⁾ 이에 고종은 건양 2년 3월 16일 정치를 혁신하기 위하여 특별기관을 설치하여 新舊典式을 절충하여 法規를 정리하려는 詔勅을 내리고 이에 따라 자문기관인 中樞院 내에 교전소를 설치하였다.¹³⁾ 總裁大員은 수구파가 차지했지만, 외국인 고문 李善得(W.C. Le Gendre), 具禮(C.G. Greathouse), 栢卓安(J.M. Brown)이 위원으로 관여했고, 徐載弼의 활동으로 실무를 담당할 知事員으로 개화파를 참가시켰다. 수구파와 서재필을 위시한 개화파의 입장은 달라서 수구파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교전소는 개점휴업상태에 빠졌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서재필은 독립협회 회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병기간이 만료되어 미국으로 돌아가 校典所는 활동을 정지하였다.¹⁴⁾ 乙未改革期에도 형식상의 입법기관으로는 中樞院이 있었으나 제기능을 못하였다. 校典所는 法令을 제·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주적 합의체, 근대적입법기관이란 점에 설치의 역사적 의의가 있다.¹⁵⁾

校典所가 신구내분으로 활동을 중지하자 새로운 입법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고종은 광무 3년(1899) 6월 23일에 詔勅을 내려 校正所를 權設하여 법률과 사리에 명달한 자를 선정하여 法規를 議定할 것을 명하고, 다시 7월 2일에 法規校正所로 개칭하였다.¹⁶⁾ 7월 10일에는 인선을 완료하여 활동에 들어갔다.

委員構成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광무 3년 7월 2일에는 總裁 議政府議政 尹容善, 議政官에 漢城府判尹 金永準 등 9명을 임명하였고, 7월 10일에는 委員에

12) 田鳳德, “大韓國國制의 制定과 基本思想”, 「韓國近代法思想史」, 10面.

13) 「한법집」 II, 215면, 224面.

14) 國史編纂委員會, 「高宗時代史」 4, 552面, 564面.

15) 田鳳德, “전계논문”, 101~2面.

16) 「한법집」 II, 508, 512面.

法部法務局長 申載永 등 4인과 主事 6명을 임명하였다. 光武 5년(1901) 11월까지 현재로서 확인할 수 있는 총인원은 다음과 같다.¹⁷⁾ 尹容善이 總裁職을 光武 5年(1901) 11월까지 재임했다. 이때까지 副總裁는 2인이 임명되고 1인이 해임되었으며, 議政官에는 34명이 임명되고 1인이 해임되었으며 委員에는 6명이, 主事에는 8인이 임명되었다. 외국인고문은 모두 議政官으로 임명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議政府贊務 李善得(C.W. Le Gendre 미), 鐵道監督 栢卓安(J.M. Brown 영), 從二品 具禮(C.G. Greathouse 미), 광무 3년 8월 1일, 宮內部贊議官 山°(Sands 미), 광무 4년 1월 15일 法部法律師 金雅始(L. Crémazy 불), 동년 9월 16일, 正三品 彌倫斯(H.J. Mühlentsteth 덴마크), 광무 5년 11월 17일.

이들 중 彌倫斯를 제외하고는 이미 그들의 활동은 소개되었다.¹⁸⁾ 彌倫斯는 덴마크출신으로 타고문들과 달리 본국의 지원없이 자원하여 電務局에 근무하여 고빙조건이 아주 나빴다.¹⁹⁾ 그의 立法에 대한 기여를 자세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法規校正所는 校典所와는 달리 실제활동을 하였다. 우선 광무 3년 7월 10일에 事務所를 개설하고 委員과 主事を 선발하고 主事 1人을 入進하였으며, 前校典所 官員으로 遞免하지 못한 자를 해임하였다.²⁰⁾ 절차면에서도 동년 5월 6일에 내린 奏本 典章法律을 校正하는 件²¹⁾을 폐지하였으며 法律·規則改正案을 法規校正所에서 直接上奏하게 했다. 그리고 校正事務의 절차에 관한 事目的 頒下를 예정했다.²²⁾ 동월 17일에는 成均館 官制의 議定, 18일에는 「奏判任官試驗 및 任命規則」의 改正, 동년 8월 17일에는 國制를 商立하게 했다.²³⁾ 이 가운데

17) 「구한국관보」 2050호(光武 5年 11月 21日) 이후에는 관련사항이 보이지 않는다.

18) 崔鍾庫, 「韓國의 西洋法受容史」, 第1部 참조.

19) 李元淳, 「韓末 雇聘歐美人綜鑑-外國人 雇聘問題 研究序說」, 「한국문화」10,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89), 263~4面, 287面.

20) 「한법집」 II, 525~7面.

21) 「한법집」 II, 474面: 이의 내용은 前學部大臣 申箕善이 청한 것으로 典章·法律은 신구를 참작하여 교정해야 하는 것이다.

22) 「한법집」 II, 528~9面.

國制는 그날 奏本 「大韓國國制」로 頒布했다. 「大韓國國制」이 제정은 法規校正所의 최대의 업적이다. 奏判任官試驗 및 任命規則의 改正은 光武 4年(1900) 3월 27일에 奏本으로 보고되어 勅令 第12號로 「武官及司法官任命規則」으로 우선 제정되었다.²⁴⁾ 그러나 成均館官制의 改正은 찾을 수 없다.

法規校正所는 光武 8年(1904) 1월 11일에 정부에 합속되어 폐지되었다.²⁵⁾ 法規校正所의 활동에 대해서는 「大韓國國制」의 制定과 관련하여서 조금 언급되었을 뿐 자세히 연구되어 있지 않다. 法規校正所가 활동한 시기는 復古期로 1900년에 제정· 공포된 陸軍法律, 1905년에 공포된 刑法大全, 光武量田事業을 바탕으로 하여 土地所有權을 확립하고자 한 家契·地契制度²⁶⁾의 실시 등 자주적 입법이 왕성한 시기였다. 앞으로 구체적인 法令의 제· 개정과정을 분석하여 法規校正所의 활동—특히 자생적 한국법조인의 활동—을 분석해야 한다.

2. 他律的 起草機關

일본은 한국을 그들의 식민지로 하기 위해 법률기초기관에도 관여하여 不動產法調査會와 法典調査局을 설치하였으며, 여기에서는 한국의 식민지화를 위한 法令을 제정하여 식민지화의 법적 토대를 닦아 놓았다.

1) 不動產法調査會

刑法大全을 제정한 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民法의 편찬, 특히 기본적인 재산인 토지에 대한 법제의 확립이었다 소유관계의 불명확으로 인한 거래질서의 문란은 많은 사회문제를 낳았다. 이를 위하여 法律起草委員會를 복설하였다. 그

23) 「한법집」 II, 532, 533, 541面.

24) 「한법집」 III, 56~7면.

25) 國史編纂委員會, 「高宗純宗實錄」下 310面 II.

26) 朴秉濠, 「韓國法制史」 187~8면.

리고 혼란한 土地秩序를 정비하기 위하여 광무 10년(1906) 7월 13일에 土地制度, 法律制度, 租稅制度를 정비하기 위하여 土地所關法起草委員을 임명하였다. 토지제도에는 正三品 李源兢 前 參判 金澤, 法律制度에는 法部法務局長 金洛憲 正三品 洪在祺, 租稅法制度에는 度支部 司稅局長 李健榮 正三品 鄭寅興을 임명하였다.²⁷⁾ 이는 곧 不動產法調查會로 대치되어 7월 14일에 위원 8명이 임명되었는데 홍재기가 빠지고 石鎭衡, 金亮煥, 元應常이 임명되었다. 그 후 몇 명의 위원의 교체가 있다가 광무 11년(1907) 6월 16일에 대폭적인 인선이 있었다. 일본민법기초자의 한 사람이며 東京帝大 教授인 梅謙次郎이 明治 39年(1906) 7월경에 한국 법부고문으로 부임하여 부동산법조사회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리고 補佐官 補佐官補, 通譯, 囑託을 임명하였다.²⁸⁾

부동산법조사회는 不動產慣例調查에 착수하여 梅와 위원들은 1906년 7월 26일부터 12일간 서울, 인천 등 여덟 곳에 출장을 떠났다.²⁹⁾ 이는 법전조사국에 까지 지속되었다. 부동산법조사회는 부동산에 관한 관례를 조사하여 「韓國不動產に關する調査記録」 등 6권의 조사보고서를 간행하였다. 그리고 실제 입법에도 관여하여 광무 10년(1906) 9월 24일 法律 제5호 「利植規例」, 동년 10월 26일 칙령 제65호 「土地家屋證明規則」 등 부동산에 관한 법률을 시급히 제정하였다.³⁰⁾ 부동산법조사회는 隆熙 3年(1909) 法典調查局에 흡수되었다.

2) 法典調查局

법전조사국은 부동산법조사회를 인계하여 民法, 刑法, 民事訴訟法, 刑事訴訟法 및 附屬法令을 기안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³¹⁾ 법전조사국 官制는 옹희

27)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6, 486면.

28) 鄭鍾休, 「前揭書」, 34면, 45면 註27) 참조 및 南基正譯, 「日帝의 韓國司法府侵略實話」(육법사, 1978), 131면.

29) 朝鮮總督府 中樞院,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概要」(昭和 13年), 6면.

30) 「前揭書」 4~13면.

31) 「前揭書」 13면.

원년 12월 23일 勅令 第60號로 공포되었다. 이는 위원장 1인, 위원 수인, 사무관, 사무관보, 번역관보로 구성되어 있다. 융희 4년(1910) 2월 1일 勅令 第9號로 개정되었다. 법전조사국의 分課規程은 융희 2년 5월 23일에 공포되었는데, 주업무를 調査課에서 담당하였다.³²⁾

최초로 구성된 것은 융희 원년 12월 31일 崔秉相, 高鼎相, 柳鎮燾과 그리고 日人平木勸太郎 山口慶一 등 8인을 임명하였다. 이어 1월 1일에는 법무차관 倉富勇三郎을 위원장에 후에 朝鮮總督府 法務局長을 역임한 松寺竹雄과 俞星濬 金洛憲을 위원에 梅를 고문에 임명하였다. 이후에 일인 2명과 한국인 2인을 다시 임명하였다. 6월 22일에는 李始榮, 國分三亥 등 6명을 위원에 임명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기록에는 6월에 韓昌洙를 위원장, 유성준 이하 5인을 위원에 임명하였다³³⁾고 하나 관보에는 없으며 한창수는 위원에도 보이지 않는다. 사법권이 일본에 위탁된 후인 융희 3년(1909) 11월 1일에는 통감부 사법청장 倉富勇三郎을 위원장, 김낙헌, 이시영 그리고 國分三亥 등 일인 7인을 위원에 임명하였다.

法典調査局은 주요법전의 기초를 예정하고 이를 위한 한국관습의 조사에 착수하여 法部顧問 梅謙次郎을 民事法起草者로, 法部次官 倉富勇三郎을 刑事法起草者로 선정했다. 민사법분야는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어 梅는 당시 일본 民商法典의 편별에 충실한 조사사항 206問을 만들어 한국관습을 조사하여 民商二法統一法典을 제정하려 했으나 이루지 못했으며 이러한 慣習調査는 1910년의 慣習調査報告書로 완결되었다. 梅는 일본 民事訴訟法을 간단히 한 全 577條의 民事訴訟法草案을 기초하였다.³⁴⁾ 刑事法分野에서는 이미 刑法大全이 제정된 탓에 미진하여 刑法大全 680개 조문 가운데 비형사법규정 290조를 삭제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民事實體法은 條理과 慣習에 따라 재판할 수 있으므로 제정을 서

32) 「한법집」 IV, 172面; IX 274面; VI 438面.

33) 朝鮮總督府 中樞院, 「前掲書」 15面.

34) 鄭鍾休, 「前掲書」 38~43面.

두르지 않았으며, 民刑事訴訟規定은 필수분가결이므로 급히 제정했는데, 그들 스스로도 부실한 입법임을 인정하고 있다.³⁵⁾

법전조사국의 활동은 일본의 한국식민지 지배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인이 주도가 되어 활동을 했으며 李始榮 金洛憲 등 한국인은 보조적인 지위에 머물렀다. 당시 한국인 법률가의 역할과 그들의 제도에 대한 자세한 규명과 평가, 그리고 당시에 발간된 慣習調査報告書 등 조사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필요하다.³⁶⁾

이러한 일제의 법전편찬사업은 합방으로 인하여 중단되었으나, 관습 및 제도 조사사업은 朝鮮總督府 取調局 中樞院과 參事官室로 이어졌다.³⁷⁾ 1912년에 조선민사령으로 일본민법이 依用된 후에도 가족법과 물권분야 등에는 고유의 관습법이 효력을 가졌다. 그러나 이러한 조선민사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재판과정과 조사과정에서 관습의 존재와 효력을 부인하여 한국고유의 관습법을 왜곡하였다.³⁸⁾ 이렇게 왜곡된 관습은 해방 후에도 법적 안정성의 명목으로 여전히 한국고유의 관습으로 法認되어 오늘날까지 우리의 법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35) 南基正譯, 「前掲書」, 87~8面.

36) 崔鍾庫, 「韓國法思想史」, 226面.

37) 이러한 조사의 경과와 결과는 전개,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概要」에 잘 정리되어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8) 이에 대해서는 鄭鍾休, 「前掲書」, 第2章 및 李相旭, 「韓國相續法の 成文化過程」,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86) 참조.

V. 西歐法 受容의 歷史的 意義

개화기를 기점으로 하여 우리의 법은 일변하여 전통법을 한갓 과거의 사실로 파묻어 버리고 전통과는 이질적인 서구법이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이를 일반적인 표현으로 法の 近代化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韓國法의 近代化가 갖는 역사적 의의에 대해 고찰을 하는 것은 오늘의 法問題를 해결하는 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전체적으로 조감하고 평가하는 것은 개별적인 연구가 수행된 이후의 과제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다만 기존의 연구성과에 힘입어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설정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한국법의 근대화과정에 외국인 고문이 기여를 하였다. 이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이 독립국으로서 주권을 찾는 방향으로 이바지하였다. 둘째 소극적으로 立法에 참여하였다. 셋째 법학교육에 기여하여 한국법률가를 양성하고 제반제도를 개선하였다. 넷째 한국의 존재와 한국법을 세계에 소개하였다.¹⁾ 외국인 고문은 주어진 한계상황 속에서 한국법의 근대화에 노력을 하였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규명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긍정적인 평가만 할 수는 없다. 한국법의 근대화에는 긍정적이지만 한국사 전체의 발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²⁾

한국의 서양법수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양과의 직접적인 수용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통한 간접적인 수용이다. 둘째, 萬國公法, 즉 國際法에 대한 기대가 서구법을 받아들이는데 큰 자극이 되었다. 셋째, 다른 서구문물을 수용하는 가운데 간접적으로 법학을 수용하였다. 넷째, 미국의 영향이 초기에는 컸다가 후에는 일본의 영향이 컸다. 다섯째, 서구법에 대해서는 몇몇 선각자를 제외하고는 소극적이었다.³⁾

1) 崔鍾庫, 「韓國의 西洋法受容史」, 279~281면.

2) 日本人顧問官을 제외하고 미국인 須知分(Stevens)등을 들 수 있다.

3) 崔鍾庫, 「전개서」, 427~8면.

위의 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국제법의 수용일 것이다. 개국의 논리는 국제법의 이론이었다. 당시의 국제법에 대한 기대는 아주 컸다. 이는 乙未事變을 계기로 하여 잘 드러났다. 崔益鉉은 弑害의 變에는 公法에 따라 각국이 군사를 보내어 함께 역적과 倭國을 처단해야 하나 각국이 그렇지 않음을 개탄하고 있다.⁴⁾ 이러한 인식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국제법의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이는 곧 국제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萬國公法이 大砲一門보다 못하다(萬國公法不如大砲一門)”로 표출되었다.⁵⁾

이러한 현실의 근거는 당시의 사회사조에서 찾을 수 있다. 社會進化思想이 풍미하였고 이는 곧 實力養成論으로 이어졌다.⁶⁾ 法思想에서의 社會進化論은 유길준에게서도 나타난다.⁷⁾ 이러한 사상에 입각하여 國法을 지키지 않는 義兵抗爭을 부인하고 나아가 法治主義와 法の支配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제국주의 지배하의 法治論은 어떠한 현실개혁론이 될 수 없었다.⁸⁾ 이와 같이 法の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현실옹호론—중국에는 일본의 한국지배를 정당화하는—으로서만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韓國法の 近代化過程을 민족의 주체성, 민족사의 발전적인 면에서 고찰해야 한다. 法の 서구화, 근대화만 일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일본의 침략을 미화할 우려가 있다.

한국법제가 부딪치는 가장 큰 문제는 「歷史的 連續性的 斷切」이다. 개화기에 서구법의 수용은 전통법의 단절을 가져왔다면 법제사의 가장 큰 과제는 단절의 도그마를 극복하는 데 있다. 그러나 그 단절은 制度的·形式的 단절이다. 이의 해결의 실마리는 비국가법적 측면에서의 慣習法과 法意識, 法思想이다. 法制度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일반인의 삶을 규율하는 관습은 연속적이며 법에 대한 사고로 단절되지 않는다. 法은 역사적 산물로 역사성을 지닌 것으로 제도의 단절로 法の 기반이 법의식·법사상마저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法の 역사성의 기초 위에서 그리고 法社會學的인 인식을 통하여 사회발전에서의 法の 임무,

4) 「高宗·純宗 實錄」中, 581면.

5) 이는 日本 開化思想家 福澤諭吉의 말로 상당히 넓게 인식되었다. 崔鍾庫, 「전계서」, 427면; 金度亨, “大韓帝國末期의 國權恢復運動과 그 思想”(연세대 박사 학위논문, 1988) 22, 96면.

6) 李光麟, “舊韓末進化論의 受容과 그 影響”, 「韓國開化思想研究」(一潮閣, 1979) 참조.

7) 田鳳德, “「西遊見聞」과 俞吉濬의 法思想”, 「韓國近代法思想史」참조.

8) 金度亨, “전계논문”, 78~9면.

나아가 近代化問題를 탐구해야 한다.⁹⁾ 法の 역사적 연속성의 탐구가 開化期法制史, 나아가 近代法史—日帝期를 포함하는—의 最大의 課題이다.

9) 朴秉濠, 「韓國法制史巧」序文 및 “傳統的 法意識과 現代法の 課題”, 참조.

第 2 編

韓末法令 分野別 目錄

凡 例

1. 대본은 大韓民國國會圖書館編, 「韓末近代法令資料集」 I-IX (1970~1972년 발행)으로 하였음.
2. 위 법령집이 編年體인 관계로 개별주제에 관한 법령의 검색은 불편하므로 주제에 따라 분류하였음.
3. 정리방법은 동일법령의 제정·개정·폐지 순으로 하였음.
4. 공포 연월일은 당시의 연호에 따랐음. (西紀는 부록의 年代參照表 참조)
5. 收錄卷面에서의 로마숫자는 법령집의 권수, 아라비아 숫자는 면수임.

I. 國家・王室

1. 國家

1) 一般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高宗 31. 7. 4	詔勅	大小民人에게 내리는 維新綸音	I-20
7. 13	議案	外殿으로 나아가 視事하는 件	I-35
7. 20	詔勅	各府衙門大臣에게 내리는 綸音	I-66
開國503. 11. 21	勅令第2號	正殿視事に 관한 件	I-122
12. 12	詔勅	誓告文(洪範 14條)	I-133
12. 13	勅令第14號	誓告綸音	I-137
開國504. 3. 10	內務衙門訓示	我國의 固有한 獨立基礎를 세우고 百度革新을 위하여 百弊를 芟除하는 件	I-183
3. 29	奏本	(名大臣間規約件四十一) 官員의 遵法에 관한 件	I-284
閏5. 20	詔勅	獨立의 基礎와 中興의 事業을 이룩하는 新命을 힘써 지킬 것에 관한 件	I-445
閏5. 20	奏本	圓丘를 建築하는 件	I-448
建陽 元. 1. 11	詔勅	改革과 斷髮에 관한 件	II-4
2. 15	詔勅	乙未「逆魁」를 法에 의하여 處斷하고 俄館播遷時의 詔勅·告示等を 改正하는 件	II-43
2. 16	詔勅	國家의 富強을 위하여 改革策을 더욱 講求하는 件	II-44
建陽 2. 8. 12	詔勅	建元·斷髮詔勅을 繳鎖하는 件	II-273
光武 元. 10. 20	詔勅	大小官員을 申飭하는 件	II-290
光武 2. 10. 8	詔勅	便民利國하는 政治를 행하는 件	II-404
10. 30	詔勅	國民의 急務를 中外에 佈告하는 件	II-410
光武 11. 6. 14	詔勅	內閣諸大臣에게 勅諭하는 件	V-522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7. 18	詔勅	軍國大事를 皇太子로 하여금 代理케 하는 件	V-584
7. 21	詔勅	民人의 安業을 勅諭하는 件	V-586
隆熙 元. 8. 15	詔勅	斷髮 戎裝에 관한 件	VI-11
11. 18	詔勅	太廟에 展謁 誓告한 文	VI-71
11. 18	詔勅	大小民人에 대한 維新勅諭	VI-74
隆熙 4. 8. 29	詔勅	合併에 관한 件	IX-591

2) 國制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 4. 8. 27	奏本	大朝鮮帝國이라 칭하고 皇帝尊號를 謹上하는 件	I-558
光武 元. 10. 13	詔勅	皇帝即位·國號(大韓) 制定에 관한 件	II-288
光武 3. 8. 17	詔勅	法規校正所로 하여금 國制를 商立케 하는 件	II-541
8. 17	奏本	大韓國國制	II-541
光武 6. 1. 27	詔勅	國歌를 制定하는 件	III-349
5. 6	詔勅	平壤에 西京을 設置하는 件	III-372
5. 10	奏本	平壤에 西京을 設置하는 件	III-374

3) 年號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高宗 31. 6. 28	議案	開國紀年을 使用하는 件	I-14
7. 1	議案	京各司·各道·各邑通行文牒에 開國紀年을 쓰는 件	I-17
開國504. 8. 27	奏本	年號를 建하는 件	I-558
11. 15	詔勅	建元에 관한 件	I-622
11. 15	奏本	年號를 議定하는 件	I-623
506. 8. 13	詔勅	建元에 관한 件	II-273
8. 14	奏本	年號를 光武로 정하는 件	II-274
8. 15	詔勅	光武年號를 使用하는 件	II-275
光武 11. 8. 2	奏本	年號를 隆熙로 改正하는 件	V-596

4) 慶祝日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開國504. 5. 10	詔勅	獨立慶日을 定하는 件	I -379
建陽 2. 1. 11	奏本	陰曆12月13日을 慶興節로 定하는 件	II-203
光武 元. 12. 2	奏本	皇帝即位日을 繼天紀元節로 定하는 件	II-299
隆熙 2. 7. 15		皇后誕辰日을 坤元節로 定하는 件	VII-45
7. 22	布達第178號	誕辰及紀念慶節月日을 陽曆으로 定하는 件	VII-74

5) 標準時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開國504. 9. 9	詔勅	太陽曆을 用하는 件	I -580
9. 29	布達第4號	人定·罷漏 및 報時 更鼓를 廢止하는 件	I -587
光武 元. 11. 29	詔勅	曆書名 議定에 관한 件	II-298
11. 30	奏本	曆書名을 「明時」로 定하는 件	II-299
12. 22	奏本	曆書 頒賜에 관한 件	II-302
光武 2. 12. 24	奏本	曆書 頒賜에 관한 件	II-430
光武 3. 12. 24	奏本	曆書 頒賜에 관한 件	II-587
隆熙 2. 2. 7	勅令第5號	大韓國標準時에 관한 件	VI-262

6) 國民關係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高宗 31. 6. 22	詔勅	四色黨論을 打破하고 門地를 不問하고 人材를 登用하는 件	I -1
開國504. 8. 23	詔勅	黨派를 勿論하는 件	I -554
高宗 31. 6. 28	議案	平民일지라도 利國·便民할 方策을 가진 者는 軍國機務處에 上書하여 會議에 부치게 하는 件	I -16
6. 28	議案	公私奴婢를 革罷하고 人口의 販買를 禁하는 法	I -16
7. 2	議案	驛人·倡優·皮工의 免賤을 許하는 件	I -20
開國504. 1. 29	詔勅	門地를 不問하고 人材를 登用하는 件	I -177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4. 5	內部告示	官民同一한 衣制를 用하는 件	I-331
建陽元. 4. 1	詔勅	內外를 區別치 아니하고 人民을 均一히 保護하는 件	II-51
2. 18	詔勅	義兵의 解散을 宣諭하는 件	II-45
2. 18	內部大臣訓示	義兵의 解散을 勸誘하는 件	II-46
2. 27	詔勅	義兵의 解散을 宣諭하는 件	II-48
隆熙元. 9. 18	詔勅	民人의 胥動弄兵을 禁하는 件	VI-45
12. 13	詔勅	地方騷擾를 禁斷케 하는 件	VI-110
隆熙 2. 1. 24	內部訓令第129號	「暴動」人民 歸順票를 免罪文憑으로 改稱하는 件	VI-240
2. 17	內部訓令第181號	歸順者監視人銘心書를 頒給하는 件	VI-283
3. 14	內部訓令第163號	「暴徒」에게 被燒된 民戶 救恤에 관한 詔勅을 各府郡에 謄飭하는 件	VI-306
8. 31	詔勅	「暴徒」歸順期日을 制限하는 件	VII-306
隆熙 4. 8. 24	內閣告示第98號	統監府警務總監部令第3號(政治에 관한 集合或은 屋外多衆集合의 禁止)를 掲布하는 件	IX-584

7) 官吏關係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高宗 31. 7. 22	議案	官員의 上疏에 관한 件	I-68
8. 4	議案	總理大臣이 便殿에 나아가 當日所定議案을 陳奏施行하는 件	I-82
8. 24	議案	奏任官의 陳疏를 禁하는 件	I-96
開國503. 12. 16	勅令第24號	國是를 撓動시키는 陳疏人 處置에 관한 件	I-151
光武 2. 10. 25	詔勅	建議疏聽·都約所를 革罷하는 件	II-408
3. 1. 4	奏本	陳疏를 制限하는 件	II-433
光武 8. 3. 2	奏本	章疏掾弊條件 改正	III-574
光武 9. 8. 19	詔勅	元進供外 私獻을 勿論하는 件	IV-374
開國504. 3. 29	奏本	(名大臣間規約條件三十) 機務는 直接 大君主에게 奏上하는 件	I-281
高宗 31. 7. 18	議案	官內府官員과 各府·衙門官員이 서로 兼官하지 못하게 하는 件	I-63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2. 6. 18	奏本	各公使의 陞見時 傳語人은 官職 雇任을 兼帶치 못하게 하는 件	II-373
5. 23	詔勅	議政府次對規則을 議定하는 件	II-357
6. 10	勅令第15號	議政府次對規則	II-361
光武 元. 10. 20	詔勅	勤務所를 革罷하는 件	II-290
光武 4. 7. 19	詔勅	派員輩를 革罷하는 件	III-122

8) 史庫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建陽 2. 6. 3	奏本	史禮局設置에 관한 件	II-239
6. 27	奏本	史禮所의 移設 및 仕進에 관한 件	II-262
7. 3	奏本	楊州·江華·江陵·奉化·茂朱史庫 守護에 관한 件	II-266
7. 15	奏本	江華·楊州·江陵·奉化·茂朱史庫를 議政府로 하여금 句管 守護케 하는 件	II-270
光武 2. 1. 12	勅令第2號	江華府·楊州·江陵·奉化·茂朱郡史庫 守護에 관한 件	II-322
10. 25	詔勅	史禮所 廢止에 관한 件	II-410
光武 4. 1. 21	勅令第7號	江華·楊州·江陵·奉化·史庫守護件 改正	III-22

2. 王室

1) 王家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10. 4. 15	詔勅	太學는 修葺하는 件	IV-548
11. 20	詔勅	親王府官員을 親王講讀官으로 任命하는 件	V-331
隆熙 2. 8. 31	詔勅	各節日 및 行禮後 問安을 廢止하고 署名節次를 磨鍊하는 件	VI-36
9. 2	筵說	臣僚는 東官에게 모두 小人이라 稱하는 件	VI-37
3. 23	勅令第16號	東官武官府官制	VI-332
隆熙 3. 7. 30	布達第5號	東官武官府官制	VIII-387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光武 8. 9. 24	詔勅	東官陪從武官府官制	III-649
隆熙 元. 8. 22	勅令第12號	皇太子宮陪從武官府官制	VI-22
隆熙 2. 3. 20	布達第173號	東官職員供奉服規制及 提燈規制	VI-313
開國503. 12. 16	奏本	王室尊稱에 관한 件	I -155
建陽 元. 9. 24	詔勅	宗臣에게 封君 爵號하여 宗正院에 序付하는 件	II-177
光武 3. 9. 17	詔勅	承襲君贈封에 관한 件	II-573
開國504. 4. 23	奏本	大院君 尊奉儀節	I -355
開國503. 8. 6	議案	內命婦·外命婦의 名稱·品階에 관한 件	I -86
隆熙 元. 10. 12	筵說	國舅의 位階	VI-61
光武 6. 4. 2	詔勅	耆老所儀節을 通編에 依하여 施行하는 件	III-363
4. 26	詔勅	耆老所 官制를 頒下하는 件	III-370
4. 26	勅令第7號	耆老所官制	III-371
隆熙 3. 3. 8	勅令第24號	耆老所를 宮內府所管으로 하는 件	VIII-125
高宗 31. 7. 22	議案	宗正府官制	I -72
7. 22	議案	宗伯府官制	I -73
光武 4. 12. 19	勅令第55號	宗人學校官制	III-259
光武 10. 10. 23	布達第140號	修學院官制	V-274
光武 11. 5. 31	布達第152號	修學院官制 改正	V-512
隆熙 元. 11. 27	布達第163號	修學院官制 改正	VI-87

2) 節次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高宗 31. 7. 2	議案	平轎子·輶軒의 廢止에 관한 件	I -18
7. 17	議案	各國使節이 陛見할 때 가마를 타고 待候所에 이르는 것을 准許하는 件	I -61
開國503. 12. 16	勅令第15號 勅令第23號	君臣相見禮式을 改定하는 件	I -142
		勅任官·各府衙書記官·秘書官·陸軍將校·警務官이 乘騎하여 閣外에 이르는 것을 許하는 件	I -150
開國504. 3. 29	詔勅	謝恩下直等外廷行禮 廢止에 관한 件	I -255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三十一) 大臣主와 國務大	I -281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奏本	臣을 隔絶하는 등의 儀式 典禮를 廢止하는 件 (各大臣間規約條件三十二) 各大臣의 王后謁見에 관한 件	I-282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三十三) 各大臣夫人 協辦 夫人의 王后謁見에 관한 件	I-282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三十四) 勅奏任官은 轎車 馬로 王宮閣門外에 入하는 件	I-282
一國 5. 17	奏本	扈輦隊·日傘事知·忠贊衛·忠壯衛·傳漏軍을 宮內部로 移管하는 件	I-444
建陽 2. 1. 18	布達第22號	宮內府의 外國報服하는 件	II-209
5. 15	奏本	奉審에 관한 件	II-236
光武 10. 7. 26	詔勅	宮內大臣·內大臣所管 宮廷事武·宮內府事項의 啓下文蹟을 宮內府에 收藏하고 宮內官員의 應行諸規程을 宮內大臣이 奏請 施行하는 件	V-51
8. 3	布達第134號	啓字奏請規則	V-57
隆熙 2. 12. 28	布達第183號	啓字奏請規則 廢止	VII-544
隆熙 元. 9. 24	詔勅	宮廷儀式에 관한 詔勅을 布達로 施行하는 件	VI-47
11. 30		宮內府文書措辦規程	VI-101
隆熙 2. 8. 20	詔勅	儀式에 있어서 差備와 特召를 除한 外에는 百官參列을 停止하는 件	VII-262
隆熙 3. 6. 1	勅令第63號	南西巡幸紀念章을 制定하는 件	VIII-271

3) 宮中儀式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503. 11. 20	勅令第7號	從前의 儀式으로서 조금이라도 浮文에 涉하는 것은 一切 節省하는 件	I-125
建陽 元. 5. 17	詔勅	彈章을 制限하는 件	II-81
光武 6. 5. 13	奏本	外賓陞見 및 迎送式	III-375
8. 18	詔勅	旗章造成所를 設置하는 件	III-437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隆熙 元. 8. 18	詔勅	太皇帝御服裝規制를 議定하는 件	VI-13
8. 24	詔勅	動駕時的 鹵簿儀式을 新式으로 定하는 件	VI-23
9. 6	詔勅	賀儀는 卽位禮式儀節에 遵하여 磨練하는 件	VI-43
9. 12	奏本	動駕時儀仗定式	VI-44
11. 14	奏本	太皇帝鹵簿班次	VI-71
11. 19	奏本	太皇帝의 第二鹵簿班次	VI-76
	奏本	太皇帝의 第一·第二鹵簿班次	VI-77
隆熙 2. 12. 28	布達第184號	宮中儀式上 席次에 관한 件	VII-545
隆熙 3. 1. 1	勅令第1號	陵園墓內 該字의 管理 守護에 관한 件	VIII-1
3. 31	詔勅	東籍田의 親耕에 관한 件	VIII-169
光武 10. 2. 27		宮內府本部及禮式院禮服規則	IV-515
光武 11. 7. 2	布達第155號	宮內府主殿院警衛局長以下服制及提燈規則	V-561
隆熙 2. 3. 20	布達第176號	掌禮院樂師長以下服制	VI-322

4) 附屬機關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高宗 31. 7. 8	議案	散班院을 設置하는 件	I-22
光武 3. 2. 7	宮內府制定(?)	宮內府所屬內臟司水輪課章程	II-443
光武 6. 11. 19		水輪院章程 附 規則	III-470
光武 8. 1. 11	奏本	博文院을 革去하여 禮式院에 所屬시키고 水輪院·平式院·管理署를 革去하여 政府로 하여금 稟處케 하는 件	III-569
2. 3	奏本	前水輪院·前平式院을 農商工部로, 前管理署를 內部로 移屬시키되 그 冗官을 減下하는 件	III-572
10. 21	奏本	平式院을 復舊하는 件	III-700
光武 3. 9. 23	表勳院令第1號	表勳院을 前忠勳府에 設置하여 整接하는 件	II-574
光武 11. 6. 6	宮內部令第2號	制度局分課規程	V-515
光武 10. 2. 27		制度局職務章程	IV-514
9. 6	宮內部令第5號	營繕司分課規程	V-136
光武 2. 8. 13	布達第180號	御苑事務局官制	VII-167
光武 3. 5. 18		御苑事務局事務分掌規程	VIII-253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隆熙 2. 8. 24		掌禮院分課規程	VII-266
隆熙 4. 3. 5		掌禮院分課規程 改正	IX-316
隆熙 元. 11. 27	宮內府令第7號	內藏院分課規程	VI-99
隆熙 2. 9. 24		奎章閣分課規程	VII-351
隆熙 3. 8. 28		典膳司分課規程	VIII-430
隆熙 元. 9. 1	布達第160號	帝室音樂隊組織件	VI-37
光武 8. 9. 24	詔勅	親王附武官官制	III-650
隆熙 元. 8. 26	勅令第17號	親王附武官官制	VI-34
隆熙 4. 8. 26	布達第3號	親衛府官制 改正	IX-590
隆熙 元. 8. 22	勅令第11號	侍從武官府官制	VI-21

5) 經費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高宗 31. 8. 4	議案	各宮·各司의 私擬節目을 政府에서 捧甘 收取하지 못하게 하는 件	I-82
開國504. 3. 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七) 王宮屬 籍田·庄田·蘆田·火田을 調査하는 件	I-277
5. 26	奏本	東種牧局의 畜類·廐舍·畜牧場을 宮內府에 交付하는 件	I-408
建陽 2. 2. 24	奏本	蘆廉을 內藏司로 하여금 進排케 하는 件	II-212
3. 11	奏本	各陵園位土를 附近驛土中에서 劃付하는 件	II-214
光武 2. 6. 23	奏本	43郡 各鑛을 宮內府에 移屬하는 件	II-375
隆熙 元. 12. 26	布達第169號	慶善宮으로 移屬된 英親王宮所屬田土及 文簿를 東宮으로 還付하는 件	VI-174

6) 祭祀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高宗 31. 8. 12	議案	國舅房祭需에 관한 件	I-90
8. 28	議案	各府官員을 京外祭官으로 差遣치 않도록 하는 件	I-97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9. 9	議案	漕川司의 應行各節을 漢城府에서 專管하는 件	I-101
開國503. 12. 16	勅令第22號	大小祀享을 參酌 議定하는 件	I-149
12. 23	奏本	各陵式釐正節牧	I-156
開國504. 1. 14	奏本	大小祀典을 새로 酌定하는 件	I-173
1. 29	奏本	享官을 例差하는 件	I-178
建陽 元. 7. 24	詔勅	各種祭祀를 다시 舊曆·舊式에 따라 施行하는 件	II-104
7. 24	詔勅	圓丘·社稷·諸山川·諸廟의 享祀를 釐正하는 件	II-105
建陽 2. 1. 14	奏本	山陵香炭位를 富平郡柴場으로 新定하는 件	II-207
1. 29	奏本	犧牲 監封을 奉常司로 하여금 專管 舉行케 하는 件	II-210
1. 29	奏本	各項祭享需를 掌禮院으로 하여금 專管 舉行케 하는 件	II-210
光武 2. 1. 18	奏本	景孝殿山陵의 歲暮祭 設行에 관한 件	II-326
8. 13	奏本	享需費를 宮內府會計院에서 勾管하는 件	II-400
10. 5	奏本	陵寢享需 進排에 관한 件	II-404
光武 3. 7. 11	詔勅	肇慶廟·肇慶壇·慶基殿提調를 該道道臣이 例兼하는 件	II-529
光武 4. 6. 5	奏本	北道各陵奉事를 令으로 改稱하는 件	III-91
光武 7. 3. 19	奏本	五嶽·五鎮·四海·四瀆을 封하는 件	III-521
3. 23	奏本	五嶽·五鎮·四海·四瀆을 封하는 件	III-522
隆熙 2. 7. 23	詔勅	祭祀舉行條目에 관한 件	VII-76
	勅令第50號	享祀釐正에 관한 件	VII-95
12. 25	勅令第85號	享祀釐正에 관한 件 改正	VII-542
光武 10. 11. 8	奏本	懿老殿官制 및 員役令에 관한 件	V-317
光武 10. 11. 9	布達第142號	懿孝殿官制	V-317
隆熙 元. 8. 11	布達第158號	承寧府官制	VI-8
隆熙 2. 3. 14	布達第172號	廟社·殿宮·各陵園壇墓官制 改正	VI-304
5. 8	布達第175號	大院王·大院妃園號를 興園이라 稱하고 廟社·殿宮·各陵園壇墓官制 改正	VI-406
12. 28	布達第185號	宮內府所管 壇廟社殿宮陵園墓官制	VII-546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光武 元. 10. 29	奏本	因山時의 燈籠을 侍從院 扈衛軍으로 하여금 舉行케 하는 件	II-293
	奏本	因山時의 頓遞使를 內部大臣으로 差下하는 件	II-293

7) 宮禁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高宗 31. 7. 26	議案	闕門에 冒入하는 것과 省記없이 禁中에 留宿하는 것을 嚴禁하는 件	I-79
開國503. 12. 28	奏本	五部字內 禁松에 관한 件	I-158
開國504. 3. 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六) 京內外 建造物을 王宮屬·政府屬으로 區分하는 件	I-277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三十六) 奏任官 以下の 王宮出入을 위한 門標를 발행하는 件	I-282
光武 2. 8. 13	奏本	宮禁 肅清에 관한 件	II-400
10. 13	詔勅	宮禁 肅清에 관한 件	II-406
光武 8. 1. 11	奏本	宮禁肅清하는 條規를 別定하는 件	III-570
12. 26	詔勅	宮禁防範을 撰定하는 件	III-707
光武 10. 7. 3	詔勅	宮禁을 肅清하는 件	V-1
7. 6	奏本	宮禁令	V-3
7. 12	宮內部告示	門票並物件票交付規則	V-15
7. 17		宮殿門出入及 入對細則	V-16
10. 9	軍部令第4號	皇宮守衛隊規則	V-240
光武 11. 2. 8	宮內府告示	宮殿門票의 新製 交換 件	V-428
2. 9	宮內府告示	宮門門票의 新製 交換 件	V-429
隆熙 2. 3. 3	宮內府廣告	景福宮 拜觀者의 須知	VI-284
4. 1	宮內府令第2號	昌德宮正門開閉通行制限	VI-343
隆熙 3. 1. 22	宮內府令第1號	昌德宮正門의 開閉 通行制限 改正	VIII-7

3. 宮內部

1) 官制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高宗 31. 6. 28	議案	宮內府官制	I-3
7. 22	議案	宮內府官制	I-68
	議案	宮內府總制	I-74
開國504. 4. 2	布達第1號	宮內部官制	I-304
11. 10	布達第5號	宮內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I-613
建陽 元. 4. 6	布達第6號	宮內府官制 改正	II-71
4. 11	布達第7號	宮內府官制 改正	II-72
5. 12	布達第8號	宮內府官制 改正	II-80
6. 13	布達第9號	宮內府官制 改正	II-88
6. 24	布達第10號	宮內府官制 改正	II-91
7. 7	布達第11號	宮內府官制 改正	II-94
7. 15	布達第12號	宮內府官制 改正	II-97
7. 27	布達第13號	宮內府官制 改正	II-112
8. 10	布達第14號	宮內府官制 改正	II-150
9. 1	布達第15號	宮內府官制 改正	II-164
9. 2	布達第16號	宮內府官制 改正	II-165
10. 3	布達第17號	宮內府官制 改正	II-186
10. 29	布達第18號	宮內府官制 改正	II-192
12. 9	布達第19號	宮內府官制 改正	II-198
12. 12	布達第20號	宮內府官制 改正	II-199
建陽 2. 1. 4	布達第21號	宮內府官制 改正	II-203
2. 19	布達第23號	宮內府官制 改正	II-211
3. 31	布達第24號	宮內府官制 改正	II-225
4. 5	布達第25號	宮內府官制 改正	II-226
4. 7	布達第26號	宮內府官制 改正	II-227
4. 8	布達第27號	宮內府官制 改正	II-227
4. 10	布達第28號	宮內府官制 改正	II-227
4. 13	布達第29號	宮內府官制 改正	II-228
7. 8	布達第30號	宮內府官制 改正	II-267
光武 元. 10. 7	布達第31號	宮內府官制 改正	II-287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10. 10	布達第32號	宮內府官制 改正	II-287
10. 17	布達第33號	宮內府官制 改正	II-289
12. 18	布達第34號	宮內府官制 改正	II-301
12. 23	布達第36號	宮內府官制 改正	II-319
光武 2. 1. 6	布達第37號	宮內府官制 改正	II-321
1. 8	布達第38號	宮內府官制 改正	II-322
2. 17	布達第39號	宮內府官制 改正	II-335
4. 15	布達第40號	宮內府官制 改正	II-353
6. 18	布達第42號	宮內府官制 改正	II-373
6. 24	布達第41號	宮內府官制 改正	II-377
10. 5	布達第43號	宮內府官制 改正	II-403
光武 3. 1. 22	布達第44號	宮內府官制 改正	II-441
1. 23	布達第45號	宮內府官制 改正	II-441
3. 10	布達第46號	宮內府官制 改正	II-447
5. 2	布達第47號	宮內府官制 改正	II-470
6. 24	布達第47號	宮內府官制 改正	II-510
8. 14	布達第49號	宮內府官制 改正	II-538
8. 22	布達第50號	宮內府官制 改正	II-545
8. 28	布達第51號	宮內府官制 改正	II-555
9. 18	布達第52號	宮內府官制 改正	II-573
12. 1	布達第53號	宮內府官制 改正	II-587
光武 4. 1. 6	布達第54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6
3. 12	布達第55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47
4. 6	布達第56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58
5. 10	布達第57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87
6. 5	布達第58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90
6. 19	布達第59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101
6. 25		宮內府官制 改正	III-104
8. 8	布達第60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136
	布達第61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136
8. 31	布達第62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139
9. 3	布達第63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140
9. 8	布達第64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191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9. 14	布達第65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193
11. 5	布達第66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239
11. 15	布達第67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241
11. 23	布達第68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244
11. 25	布達第69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246
12. 10	布達第70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248
12. 16	布達第71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250
12. 16	布達第72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251
12. 26	布達第73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266
光武 5. 1. 26	布達第73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270
5. 1	布達第74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314
6. 26	布達第75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320
7. 9	布達第76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321
11. 17	布達第77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335
12. 21		宮內府官制 改正	III-348
光武 6. 2. 16	布達第78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358
3. 2	布達第78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358
4. 4	布達第79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364
4. 11	布達第80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364
4. 15	布達第81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366
4. 18	布達第82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366
4. 18		宮內府官制 改正	III-367
5. 14		宮內府官制 改正	III-408
5. 22	布達第83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408
5. 23		宮內府官制 改正	III-409
6. 13	布達第84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410
6. 16	布達第85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411
7. 19	布達第85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425
7. 27	布達第86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428
8. 6	布達第86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435
8. 12		宮內府官制 改正	III-436
8. 31	布達第87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441
9. 3	布達第87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441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9. 11	布達第88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442
10. 1		宮內府官制 改正	III-444
10. 19	布達第89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460
11. 12		宮內府官制 改正	III-465
11. 16	布達第90號	宮內府官制 改正 附 綏民院規則	III-466
11. 18	布達第91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469
11. 21	布達第92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474
12. 24	布達第92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480
光武 7. 1. 23	布達第94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484
2. 23	布達第95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518
6. 17	布達第96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531
9. 2	布達第97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549
9. 23	布達第98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553
10. 22	布達第100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556
10. 29	布達第101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557
11. 18	布達第102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558
11. 26	布達第103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561
12. 3	布達第103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562
12. 6	布達第105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562
12. 11	布達第106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563
12. 15	布達第107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564
12. 30	布達第108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565
光武 8. 1. 8	布達第109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567
1. 11	布達第110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567
2. 2	布達第111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571
2. 5	布達第112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572
3. 24	布達第113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585
5. 3	布達第114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600
5. 19	奏本	宮內府官制 改正에 관한 件	III-603
5. 19	布達第115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604
6. 4	布達第116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608
6. 21	布達第116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611
7. 1	布達第117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612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7. 12	布達第118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629
7. 14	布達第119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629
7. 29	布達第120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632
7. 30	布達第121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632
8. 9	布達第122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636
10. 2	布達第123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682
12. 23	布達第124號	宮內府官制 改正	III-706
光武 9. 2. 28	布達第125號	宮內府官制 改正	IV-44
3. 4	布達第126號	宮內府官制 改正	IV-45
7. 26	布達第127號	宮內府官制 改正	IV-355
光武 10. 1. 30	布達第130號	宮內府官制 改正	IV-500
3. 26	布達第131號	宮內府官制 改正	IV-534
5. 23	布達第132號	宮內府官制 改正	IV-582
7. 31	布達第133號	宮內府官制 改正	V-55
8. 23	布達第135號	宮內府官制 改正	V-79
8. 25	布達第137號	宮內府官制 改正	V-80
9. 19	布達第139號	宮內府官制 改正	V-150
12. 29	布達第143號	宮內府官制 改正	V-387
12. 30	布達第144號	宮內府官制 改正	V-389
光武 11. 1. 12	布達第146號	宮內府官制 改正	V-395
1. 19	布達第147號	宮內府官制 改正	V-400
1. 22	布達第148號	宮內府官制 改正	V-406
3. 4	布達第150號	宮內府官制 改正	V-443
3. 9	布達第151號	宮內府官制 改正	V-452
5. 31	布達第153號	宮內府官制 改正	V-512
隆熙 元. 8. 8	布達第156號	宮內府官制 改正	VI-6
8. 11	布達第157號	宮內府官制 改正	VI-7
11. 27	布達第161號	宮內府官制 改正	VI-77
11. 27	布達第165號	宮內府官制 改正	VI-94
	布達第166號	宮內府官制 改正	VI-94
隆熙 4. 6. 6	布達第1號	宮內府官制 改正	IX-485
光武 9. 3. 29		宮內府分課規程	IV-79
光武 10. 9. 20	宮內府令第6號	宮內大臣官房分課規定	V-151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隆熙 元. 11. 27	宮內府令第6號	大臣官房分課規程	VI-97
隆熙 2. 12. 28	宮內部令第3號	大臣宮房分課規程 改正	VII-551

2) 業務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高宗 31. 9. 21	議案	軍國機務處와 政府의 地位를 對等케 하고 承宣院을 政府로 移屬하는 件을 鎖案하는 件	I -105
開國503. 11. 23	勅令第1號	承宣院舉行的 無涉한 政令을 宮內府에서 辦理하는 件	I -125
開國504. 8. 20	詔勅	內閣과 宮內府가 權域을 恪守하는 件	I -552
光武 9. 6. 20		宮內府處務通則	IV-250
隆熙 元. 11. 27	布達第167號	宮內官吏服務規規律	VI-95
光武 11. 2. 24	布達第149號	宮內府所管 各宮事務管理에 관한 件	V-430
隆熙 元. 8. 5	宮內府令第5號	各庄事務整理所所管 宮庄監官規則	VI-1

3) 官員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504. 5. 1	布達第2號	宮內府에 特進官을 置하는 件	I -376
光武 9. 4. 6		宮內府官等表	IV-81
光武 10. 8. 17		宮內府判任官採用試驗告示	V-75
隆熙 3. 5. 31	勅令第62號	宮內官의 職에 在하거나 在하였던 者를 文官으로 任用하는 境遇에 관한 件	VIII-269
隆熙 3. 3. 31	布達第1號	宮內官任用令	VIII-182
隆熙 3. 12. 28	布達第12號	宮內官任用令 改正	IX-241
4. 2	宮內府令第2號	宮內官銓衡委員規程	VIII-191
光武 元. 12. 19	布達第35號	宮內府官等俸給表 改正	II-302
光武 2. 10. 5	布達第43號	宮內府官等俸給表 改正	II-403
光武 3. 6. 24	布達第48號	宮內府官等俸給表 改正	II-511
光武 4. 9. 25		宮內府官等俸給表 改正	III-208
光武 7. 1. 1		宮內府官等俸給表 改正	III-481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11. 3		宮內府勅任官官等俸給表 改正	III-557
光武 9. 4. 6		宮內府俸給令	IV-85
7. 26	布達第128號	宮內府官等俸給令	IV-356
12. 28	布達第129號	宮內府官等俸給令 改正	IV-446
光武 10. 8. 23	布達第136號	宮內府官等俸給令 改正	V-80
10. 23	布達第141號	宮內府官等俸給令 改正	V-275
12. 30	布達第145號	宮內府官等俸給令 改正	V-389
隆熙 元. 8. 11	布達第159號	宮內府官等俸給令 改正	VI-9
11. 27	布達第164號	宮內官官等俸給令 改正	VI-88
12. 27	布達第170號	宮內官官等俸給令 改正	VI-197
隆熙 2. 7. 22	布達第177號	宮內官官等俸給令 改正	VII-74
8. 21	布達第179號	宮內官官等俸給令 改正	VII-262
8. 28	布達第182號	宮內官官等俸給令 改正	VII-282
隆熙 3. 5. 21	布達第2號	宮內官官等俸給令 改正	VIII-257
隆熙 4. 6. 6	布達第2號	宮內官官等俸給令 改正	IX-486
建陽 元. 4. 7	詔勅	宮內府各司官員으로 缺仕하는 者는 當日俸 給을 計除하는 件	II-71
隆熙 2. 1. 24	布達第171號	宮內官退官恩賜金支給規程	VI-238
1. 24	宮內府令第1號	宮內官腦官恩賜金支給規程施行規則	VI-239
隆熙 3. 12. 28	布達第13號	宮內文官退官賜金에 관한 件	IX-242
隆熙 2. 12. 28	布達第186號	宮內府所管 壇廟社殿宮陵園墓官 官等俸給令	VII-550
隆熙 3. 8. 30	布達第11號	親衛府長官 手當支給의 件	VIII-432

4) 帝室制度

(1) 整理局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光武 8. 10. 5	詔勅	帝室制度整理局을 設置하는 件	III-682
10. 5		帝室制度整理局職務章程	III-683
光武 11. 6. 6	宮內部令第3號	制度局에 臨時整理部를 設置하는 件	V-516

(2) 財産調査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11. 7. 4	勅令第44號	臨時帝室有及 國有財産調査局官制	V-576
隆熙 2. 1. 18	勅令第2號	臨時帝室有及國有財産調査局官制 改正	VI-229
6. 20	勅令第38號	臨時帝室有及國有財産調査局官制 廢止	VI-481
隆熙 元. 11. 27	布達第162號	帝室財産整理局官制	VI-86
隆熙 2. 8. 28	布達第181號	帝室財産整理局官制 廢止	VII-281
隆熙 元. 11. 27	宮內府令第8號	帝室財産整理局分課規程	VI-100
隆熙 2. 7. 23	勅令第55號	臨時財産整理局官制	VII-105
11. 26	勅令第80號	臨時財産整理局官制 改正	VII-516
8. 1	度支部告示第6號	臨時財産整理局出張所 設置	VII-130
9. 2		臨時財産整理局分課規程	VII-312
9. 2	臨時財産整理局 告示第1號	前臨時財源調査局量地課・出張所 勤務者는 辭令없이 臨時財産整理局測量課・出張所에 勤務하는 件	VII-313

(3) 財政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9. 12. 30		帝室財政會議	IV-456
12. 30		帝室會計審査局審査規則	IV-461
12. 28	宮內府令第2號	帝室會計審査局分課規程	IV-448
12. 30		帝室會計審査局職務章程	IV-458
12. 30		帝室會計規則	IV-464
12. 30		帝室會計細則	IV-467

(4) 債務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隆熙 2. 6. 25	勅令第39號	宮內府所管及 慶善宮所屬財産의 移屬과 帝 室債務의 整理에 관한 件	VI-491
9. 14	勅令第68號	帝室債務審査會規則	VII-325
隆熙 3. 11. 25	勅令第100號	帝室債務審査會規則 廢止	IX-179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隆熙 2. 9. 30	度支部令第39號	帝室債務審査會細則	VII-386
隆熙 3. 11. 25	度支部令第31號	帝室債務審査會細則 廢止	IX-180
隆熙 2. 4. 30	法律第9號	帝室債務에 관한 件	VI-403
隆熙 3. 3. 15	法律第11號	帝室債務出訴에 관한 件	VIII-149
11. 25	法律第36號	帝室債務出訴에 관한 件 廢止	IX-179

II. 統治組織

1. 立法

1) 立法形式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高宗 31. 7. 9	議案	議案을 邦憲으로 施行하는 件	I-24
8.10	議案	稟決된 議案을 定限 實施하는 件	I-89
7.12	議案	命令頒布式	I-32
開國503. 11. 21	勅令第1號	公文式	I-118
開國504. 3. 29	勅令第63號	公文式中改正에 관한 件	I-271
5. 8	勅令第86號	公文式 改正件	I-376
高宗 31. 7. 26	議案	法務衙門에서 制定하는 律例를 核定하는 節次에 관한 件	I-79
開國504. 3. 25	內閣制定	裁可奏請及 指令規則	I-236
3. 29	勅令第64號	閣令·部令·訓令·告示 及 指令의 區分規程	I-272
3. 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三十九)部令·訓令·告示·廳令·府令을 發하는 節次에 관한 件	I-283
3. 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五十三)閣令·部令·廳令·訓令·指令을 顧問官의 查閱에 供하는 件	I-286
光武 8. 10. 8	詔勅	釐整所를 別設하여 府部規制·中樞院規則을 制定하는 件	III-688
開國504. 3. 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五十二)明律을 逐條 考訂하는 件	I-286
光武 4. 11. 21	詔勅	法律中 時宜에 따라 變通해야 할 것은 裁奪 施行하는 件	III-243
建陽 2. 3. 16	詔勅	諸般法規 整理에 관한 件	II-215
光武 11. 6. 19	勅令第42號	諸法令中改正件	V-533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504. 10. 6	勅令第174號	地方官廳에서 發하는 命令의 公布式	I-590
隆熙 2. 9. 7	勅令第66號	地方官廳에서 發하는 命令의 公布式	VII-317
2. 6	內部訓令134號	漢城府令을 發할 경우에 관한 件	VI-262
9. 30	漢城府令第1號	漢城府令公布式	VII-387
2. 6	內部訓令第133號	道令을 發할 경우에 관한 件	VI-262
10. 1	警視廳令第7號	警視廳令公布式	VII-394
隆熙 3. 1. 16	咸鏡北道令第1號	咸鏡北道公文式	VIII-4
1. 23	忠清南道令第1號	道令의 發布는 官報에 登載하기로 公布方法을 定하는 件	VIII-10
2. 10	江原道令第1號	江原道令公布式	VIII-45
4. 10	慶尙北道令第1號	慶尙北道令公布式	VIII-203
7. 2	全羅北道令第1號	全羅北道令公布式	VIII-291
隆熙 4. 2. 21	平安北道令第3號	道令公布式 改正	IX-301
3. 15	慶尙南道令第2號	道令公布式 改正	IX-343
4. 15	京畿道令第3號	京畿道令公布式	IX-407

2) 公文書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高宗 31. 7. 8	議案	國內外公私文字의 外國國名·地名·人名을 國文으로 繙譯 施行하는 件	I-23
7. 9	議案	京外來往文牒의 式樣에 관한 件	I-25
開國504. 6. 1	內閣 및 內部制定	公文類別 및 式樣	I-474
7. 1	警務廳訓令第6號	文書整理規則	I-498
3. 25	內閣制定(?)	請議書調査并閣議案調製規則	I-233
隆熙 2. 1. 25		各官廳公文書類에 國漢文을 交用하는 件	VI-243
隆熙 3. 9. 8	度支部訓令第92號	公文書記載에 관한 件	VIII-438
隆熙 2. 1. 29	閣令第2號	印章規程	VI-259
開國504. 3. 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五十六)官報의 體樣을 變更하는 件	I-287
5. 16	閣令第6號	官報購讀에 관한 件	I-387
5. 25	廣告	官報의 發刊에 관한 事項	I-452
隆熙 元. 12. 11	閣令第1號	官報編製에 관한 件	VI-105
隆熙 2. 3. 30	閣令第3號	官報編製에 관한 件 改正	VI-339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8.21	閣令第7號	官報編製에 관한 件 改正	VII-263
12.14	閣令第11號	官報編製에 관한 件 改正	VII-534

3) 節次

일 자	형 식	(법령면)	수 록 권 면
開國504. 3.25	內閣制定(?)	閣議提出章程	I-232
3.25	內閣制定(?)	閣議決定章程	I-235
3.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二十九)內閣各府以下 各官署間의 往復文書 書式에 관한 件	I-281
3.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四十)大臣·協辦은 祕書官·擔任官吏를 通하여 그 意旨를 通報하는 件	I-283
3.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五十一)大君主의 裁可의 請을 慎重히 하는 件	I-286
3.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五十四)內閣·各部·各請에서 接受·發送하는 書類를 顧問官이 查閱케 하는 件	I-286
3.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五十五)顧問官이 內閣會議에 參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게 하는 件	I-287
5.20	閣令第7號	勅任官의 上疏劄子等 奏本紙를 印札紙로 代用하는 件	I-394
隆熙 2. 3.17	度支部告示第2號	諸請願書記載에 관한 注意	VI-309
隆熙 3. 4.27	度支部訓令第50號	度支部事務에 관한 請願提出節次에 관한 件	VIII-239

4) 起草機關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504. 6.15	法部令第7號	法律起草委員會規程	I-492
建陽 元. 6.29	法部令第3號	法律起草委員會規程 改正	II-93
光武 4. 2.27	法部令第1號	法律起草委員會規程 改正	III-26
光武 9. 7.18	法部令第2號	法律起草委員會規程	IV-311
建陽 2. 3.23	奏本	校典所 設置에 관한 件	II-224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光武 3. 5. 6	奏本	典章 法律을 校正케 하는 件	II-474
光武 3. 6. 23	詔勅	校正所를 設置하는 件	II-508
7. 2	詔勅	校正所를 法規校正所로 改稱하는 件	II-515
7.10	奏本	議政府에서 奏請 裁可된 바 典章 法律은 新舊를 參酌 校正하는 件을 停廢하는 件	II-527
7.10	奏本	法規校正所의 法律 規則 改正案을 該所에서 直接 上奏하는 件	II-528
7.10	奏本	法規校正所 事務所를 布德門內 洋屋에 臨時로 定하여 開議하는 件	II-525
7.10	奏本	法規校正所委員·主事를 各府部奏任官·主事 中에서 選拔兼任하는 件	II-526
7.10	奏本	法規校正所 兼任主事 1員을 省記를 답아 入直케 하는 件	II-526
7.10	奏本	前校典所官員으로 遞免하지 못한 者를 解任하는 件	II-527
7.10	奏本	法規校正所 校正事務의 各項節次는 事目的 頒下를 기다려 舉行하는 件	II-528
7.10	奏本	法規校正所 經費를 度支部豫備金中에서 支用하는 件	II-528
光武 4. 3. 27	詔勅	法規校正所總裁·副總裁가 有故할 때 首席 議定官이 事務를 代辦하는 件	III-56
隆熙 元. 12. 23	勅令第60號	法典調查局官制	VI-172
隆熙 4. 2. 1	勅令第9號	法典調查局官制 改正	IX-274
隆熙 2. 5. 23		法典調查局分課規程	VI-438

2. 中央機關

1) 議政府·內閣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高宗 31. 6. 25	詔勅	軍國機務處를 設置하는 件	I-2
7.11	議案	軍國機務處議員의 會議出席督勵에 관한 件	I-26
7.18	議案	各衙門大臣·將臣·警務使가 軍國機務處會議 員을 兼하는 件	I-63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9.11	議案	軍國機務處의 地位를 政府와 對等하게 하는 件	I-101
9.21	議案	會議日에 各衙門大臣·各營將臣·警務使가 所管職內 事務案件을 作成하여 機務處會議에 提出하는 件	I-105
開國503.11.21	勅令第6號	機務處議員을 減下하는 件	I-124
高宗 31. 6.28	議案	議政府官制	I-4
建陽 元. 9.24	詔勅	內閣을 廢止하고 議政府를 復設하는 件	II-177
9.24	勅令第1號	議政府官制	II-179
光武 2. 6.18	詔勅	議政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II-364
6.18	勅令第18號	議政府官制	II-365
光武 8. 3. 4	勅令第1號	議政府官制 改正	III-575
光武 9. 2.26	勅令第8號	議政府官制	IV-14
10.24	勅令第44號	議政府官制 改正	IV-407
光武 10. 1.10	勅令第1號	議政府官制 改正	IV-495
高宗 31. 7.28	議案	議政府官制增補	I-80
建陽 元.10. 9	勅令第2號	議政府所屬職員官制	II-187
光武 3. 2. 6	勅令第4號	議政府所屬職員 官制 改正	II-442
光武 9. 2.26	勅令第9號	議政府所屬職員官制	IV-17
光武 10.12.26	勅令第79號	議政府所屬職員官制 改正	V-376
建陽 元.10.15	議政府制定(?)	議政府所屬職員分課規程	II-190
光武 3. 2.18	議政府制定(?)	議政府所屬職員分課規程 改正	II-444
光武 9. 4.11		議政府所屬職員分課規程	IV-94
光武 11. 1.11		議政府所屬職員分課規程	V-393
光武 10. 2.13		議政府外事局分課規程	IV-510
光武 8. 3. 4	勅令第2號	議政府會議規程	III-577
光武 9. 5.31	勅令第33號	議政府會議規程	IV-235
10.24	勅令第45號	議政府會議規程 改正	IV-408
高宗 31. 9.11	議案	承宣院을 議政府로 移屬시키는 件	I-102
建陽 元.11.15	勅令第3號	議政府官吏俸給	II-193
開國503.12.16	勅令第16號	議政府를 宮內로 移設하고 內閣으로 改稱하는 件	I-143
開國504. 3.25	勅令第38號	內閣官制	I-198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3. 25	內閣制定(?)	內閣事務辦理規程	I-231
光武 11. 6. 14	詔勅	議政府를 內閣으로 改稱하는 件	V-522
6. 14	勅令第35號	內閣官制	V-524
隆熙 3. 7. 30	勅令第70號	內閣官制 改正	VIII-383
光武 11. 6. 15	勅令第37號	內閣會議規程	V-527
開國504. 3. 25	內閣制定(?)	內閣所屬職員分課規程	I-222
光武 11. 6. 19		內閣所屬職員分課規程	V-534
開國504. 3. 25	勅令第39號	內閣所屬職員官制	I-200
隆熙 2. 2. 27	勅令第10號	內閣所屬職員官制 改正	VI-281
光武 11. 6. 15	勅令第36號	內閣所屬職員官制	V-525
隆熙 2. 7. 16	勅令第46號	內閣所屬職員官制 改正	VII-51

2) 中樞院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光武 2. 3. 19	奏本	中樞院官制 實施에 관한 件	II-337
光武 2. 11. 2	勅令第36號	中樞院官制 改正	II-415
11. 12	勅令第37號	中樞院官制 改正	II-420
光武 3. 5. 22	勅令第20號	中樞院官制 改正	II-480
6. 28	勅令第29號	中樞院官制 改正	II-515
8. 25	勅令第34號	中樞院官制 改正	II-550
光武 6. 11. 16	勅令第20號	中樞院官制 改正	III-465
光武 9. 2. 26	勅令第12號	中樞院官制	IV-20
10. 24	勅令第46號	中樞院官制 改正	IV-409
11. 8	勅令第49號	中樞院官制 改正	IV-416
光武 10. 1. 10	勅令第2號	中樞院官制 改正	IV-496
光武 11. 5. 30	勅令第32號	中樞院官制 改正	V-509
隆熙 4. 8. 3	勅令第41號	中樞院官制 改正	IX-537
高宗 31. 7. 19	奏本	中樞院官秩에 관한 件	I-66
光武 2. 11. 29	奏本	中樞院新定官制 施行을 위하여 前任議官을 解任하는 件	II-425
開國504. 3. 25	勅令第40號	中樞院官制 및 事務章程	I-202
3. 29	勅令第59號	中樞院議長 副議長 及 議官俸給에 관한 件	I-263
4. 2	閣令第2號	中樞院會議 及 處務規程	I-316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3. 6. 3	議政府令第1號	中樞院議事規則	II-497
光武 4. 8. 1	議政府令第1號	中樞院議事規則	III-132
光武 10. 9. 29	議政府令第1號	中樞院議事規則 改正	V-198

3) 官制一般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高宗 31. 6. 28	議案	各衙門官制	I-6
7. 1	議案	各衙門官制·職掌의 實施限期에 관한 件	I-17
7. 11	議案	議政府·宮內府·學務衙門官制 改正	I-28
7. 14	議案	各府各衙門通行規則	I-47
7. 18	議案	各府衙門所屬各司開錄	I-64
7. 20	詔勅	新定各府·衙門官制를 施行하는 件	I-67
開國504. 3. 25	勅令第41號	各部官制通則	I-203
3. 29	內閣制定(?)	改定官制實施에 관한 內規	I-290
光武 9. 2. 26	勅令第13號	各部官制通則	IV-22
光武 11. 6. 19	勅令第41號	各部官制通則	V-531
隆熙 元. 12. 13	勅令第36號	各部官制通則 改正	VI-111
隆熙 2. 6. 18	勅令第34號	各部官制通則 改正	VI-476
隆熙 3. 7. 30	勅令第71號	各部官制通則 改正	VIII-384
開國504. 4. 1	閣令第1號	各部處務規程通則	I-299
光武 2. 11. 25	詔勅	各府部大臣은 課仕視務에 힘쓰게 하는 件	II-424
光武 8. 1. 11	奏本	平理院裁判長을 法部大臣 혹은 協辦으로 任命하고 表勳院을 政府에, 惠民院을 內部에, 地契衙門을 度支部에 所屬시키고 法規校正 所總裁以下를 減下하는 件	III-567
隆熙元. 12. 27	勅令第62號	中樞院官制·表勳院官制·內閣所屬職員官制·臨時帝室有及國有財産調査局官制·侍從武官府官制·皇太子宮陪從武官府官制·軍部官制·陸軍武官學校官制 改正	VI-179

3. 地方制度

1) 内部官制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開國504. 3. 26	勅令第53號	内部官制	I -239
閏 5. 3	勅令第109號	内部官制中 改正에 관한 件	I -422
8. 6	勅令第151號	内部官制改正에 관한 件	I -533
光武 9. 2. 26	勅令第15號	内部官制	IV-26
光武 10. 1. 10	勅令第3號	内部官制 改正	IV-496
6. 19	勅令第27號	内部官制 改正	IV-584
光武 11. 1. 14	勅令第2號	内部官制 改正	V -396
7. 11	勅令第45號	内部官制 改正	V -581
隆熙 元. 12. 13	勅令第37號	内部官制 改正	VI-113
隆熙 3. 2. 17	勅令第12號	内部官制 改正	VIII-60
隆熙 4. 6. 30	勅令第33號	内部官制 改正	IX-506
開國504. 3. 26	内閣制定 (?)	内部分課規程	I -250
光武 3. 5. 25	議政府制定 (?)	内部分課規程 改正	II -486
光武 9. 4. 12		内部分課規程	IV-97
光武 10. 2. 28		内部分課規程 改正	IV-519
隆熙 2. 1. 25		内部分課規程	VI-241
4. 23		内部分課規程 改正	VI-399
8. 4		内部分課規程 改正	VII-131
10. 3		内部分課規程 改正	VII-395
隆熙 3. 2. 4		内部分課規程 改正	VIII-32
3. 2		内部分課規程 改正	VIII-117
4. 15		内部分課規程 改正	VIII-208
11. 1		内部分課規程 改正	IX-1
光武 3. 7. 27	内部令第18號	内部見習生選用規則	II -534

2) 地方官 官制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建陽 元. 8. 4	勅令第37號	地方官吏職制	II -124
光武 8. 10. 12	勅令第27號	地方官吏職制 改正	III-694
光武 9. 12. 28	勅令第56號	地方官吏職制 改正	IV-445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光武 10. 6. 19	勅令第29號	地方官吏職制 改正	IV-585
建陽元. 8. 7	勅令第46號	地方官吏職務權限	II-137
8. 7	勅令第45號	地方官吏應行體制	II-136
8. 8	內部令第6號	地方官吏銘心細則	II-145
8. 10	奏本	地方官吏印章 新造의 件	II-150
光武 2. 7. 25	內部令第14號	地方官治績頒考規程	II-387
開國504. 5. 26	勅令第101號	地方官制	I-403
光武 3. 5. 6	勅令第16號	地方官制 改正	II-473
光武 6. 2. 7	勅令第1號	地方官制 改正	III-350
光武 10. 1. 1	內部訓令	地方官制改定에 관한 件	IV-474
光武 10. 9. 24	勅令第50號	地方官官制 改正	V-184
光武 11. 2. 27	勅令第2號	地方官官制 改正	V-593
隆熙 元. 12. 13	勅令第40號	地方官官制 改正	VI-119
隆熙 2. 6. 18	勅令第37號	地方官官制 改正	VI-478
7. 20	勅令第49號	地方官官制 改正	VII-57
隆熙 3. 3. 15	勅令第33號	地方官官制 改正	VIII-153
10. 21	勅令第81號	地方官官制 改正	VIII-521
10. 29	勅令第98號	地方官官制 改正	VIII-557
隆熙 4. 2. 21	勅令第14號	地方官官制 改正	IX-300
5. 9	勅令第32號	地方官官制 改正	IX-439
6. 30	閣勅第35號	地方官官制 改正	IX-507

3) 地方制度

(1) 一般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高宗 31. 7. 11	議案	門牌에 관한 件	I-27
7. 12	議案	鄉會設立에 관한 件	I-30
開國503. 12. 16	勅令第21號	內務衙門으로 하여금 吏治 民隱을 探訪하여 矯揉 整理하는 件	I-148
開國504. 7. 12	奏本	各地方에 府를 置한 郡에는 郡守를 不置하 는 件	I-503
光武 2. 4. 3	奏本	作統規則을 實施하는 件	II-351
開國504. 5. 26	詔勅	地方制度改革에 관한 件	I-397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5. 26	勅令第98號	地方制度改正에 관한 件	I-398
9. 16	詔勅	地方制度 更張에 관한 件	I-583
光武 2. 5. 26	勅令第12號	地方制度 改正	II-359
光武 6. 11. 20	勅令第21號	地方制度 改正	III-473
光武 9. 7. 11	勅令第38號	地方制度 改正	IV-303
12. 28	勅令第55號	地方制度 改正	IV-444
光武 10. 6. 19	勅令第28號	地方制度 改正	IV-585
隆熙 2. 5. 25	勅令第30號	觀察道位置 改正	VI-439
光武 10. 9. 21	內部訓令	地方官制實施에 즈음하여 地方官吏의 遵法을 促求하는 件	V-153
10. 1	內部訓令	地方官制實施에 즈음하여 地方官吏의 遵法을 促求하는 件	V-227

(2) 地方制度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光武 10. 9. 24	勅令第48號	府를 郡으로, 郡을 府로 改稱하는 件과 府廳·郡廳에 관한 件	V-169
隆熙 3. 3. 13	勅令第28號	郡名의 改稱에 관한 件	VIII-144
光武 10. 9. 24	勅令第49號	地方區域整理件	V-170
隆熙 3. 6. 24	法律第20號	地方區域及 名稱의 變更에 관한 件	VIII-289
隆熙 4. 2. 21	平安北道令第4號	洞里村의 廢置 分合 並其名稱及 境界의 變更에 관한 件	IX-302
3. 1	京畿道令第2號	洞里의 廢置 分合 並其名稱及 境界의 變更에 관한 件	IX-309
3. 1	慶尙南道令第1號	面內洞里村의 廢置分合 並名稱及 境界의 變更에 관한 件	IX-309
3. 22	江原道令第3號	面內 洞里村의 廢置 分合 並名稱及 境界 變更에 관한 件	IX-353
3. 30	慶尙北道令第10號	面內 洞里村의 廢置 分合에 관한 件	IX-353
3. 30	全羅北道令第2號	面內 洞里村의 廢置 分合及 名稱 境界의 變更에 관한 件	IX-380
8. 10	勅令第42號	郡境界變更에 관한 件	IX-539
隆熙 3. 10. 18	忠清南道令第6號	洞里村의 廢置 分合과 名稱 境界의 變更에	VIII-502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관한 件	
隆熙 2. 9. 14	勅令第69號	府郡廢合에 관한 件	VII-326
10. 15	勅令第72號	郡廢合에 관한 件	VII-408
12. 3	勅令第83號	郡廢合에 관한 件	VII-526
隆熙 3. 2. 4	勅令第2號	郡의 廢合에 관한 件	VIII-26
隆熙 4. 1. 29	勅令第7號	郡의 廢合에 관한 件	IX-271
隆熙 3. 10. 25	內部令第7號	黃海道 面整理에 관한 件	VIII-530
10. 25	內部令第8號	慶尙北道 面整理에 관한 件	VIII-531
10. 25	內部令第9號	慶尙南道 面整理에 관한 件	VIII-531
11. 1	內部令第12號	平安北道 面整理에 관한 件	IX-1
隆熙 4. 1. 14	內部令第1號	平安南道 面整理에 관한 件	IX-253
1. 18	內部令第2號	咸鏡南道 面整理에 관한 件	IX-256
4. 25	內部令第8號	江原道 面整理에 관한 件	IX-417
1. 27	平安北道令第2號	定州郡 洞整理의 件	IX-266

(3) 個別地方制度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504. 7. 12	奏本	甲山府觀察使를 附近地方觀察使로 兼任케 하는 件	I-503
建陽 2. 3. 7	勅令第15號	平安北道觀察府 位置를 定州에서 寧邊으로 옮기는 件	II-213
5. 16	勅令第21號	麗水郡을 新設하는 件	II-237
光武 2. 7. 6	勅令第27號	咸鏡北道城津郡을 新設하는 件	II-385
光武 5. 6. 1	勅令第11號	忠清南道保寧郡區域內에 鰲川郡을 新設하는 件	III-317
開國504. 2. 23	奏本	咸鏡道惠山·同仁·芑波知·仁遮 四鎮을 三水·甲山에 移付하는 件	I-182
5. 17	奏本	鍾閣習讀官을 鍾監으로, 軍士를 鍾軍으로 改稱하여 漢城府의 監督에 移하는 件	I-444
光武 7. 8. 4	勅令第14號	歙谷郡을 本郡鶴浦面에 移設하는 件	III-540
隆熙 3. 10. 22	內部告示第75號	慶尙北道奉化郡 廳舍를 移轉하는 件	VIII-523
開國504. 3. 12	奏本	博川郡을 嘉山郡에 合하는 件	I-189
8. 14	奏本	鬱陵道 島監 設置에 관한 件	I-551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建陽 元. 2. 3	勅令第13號	全州·羅州·南原府沿海 諸島에 郡을 設置하는 件	II-25
光武 4. 1. 23	勅令第9號	城津府·吉州郡을 合하여 吉城府를 設置하는 件	III-26
5. 16	勅令第19號	慶尙南道鎭南郡을 設置하는 件	III-89
隆熙 4. 8. 10	平安北道告示 第2號	寧邊郡延山面棠花里를 分割하여 龍田里를 設置하는 件	IX-540
高宗 31. 8. 7	奏本	三港口幫辦을 減下하는 件	I-87
8. 7	奏本	麻浦查驗所를 革罷하는 件	I-88
光武 5. 12. 23	奏本	咸鏡北道邊界에 交界官을 差下하는 件	III-348
光武 9. 2. 1	奏本	平安南道·平安北道の 按撫使와 黃海道·咸鏡南道·咸鏡北道の 宣諭使를 減下하는 件	IV-5
2. 1	奏本	京畿道·忠清道·慶尙北道·慶尙南道·全羅北道·全羅南道·江原道·黃海道の 巡察使를 減下하는 件	IV-6
2. 13	奏本	湖西戢捕官을 減下하는 件	IV-6
建陽 2. 7. 3	勅令第26號	京畿·忠北·忠南·黃海·江原道管下 府郡에 別巡校 및 廳使를 增置하는 件	II-264
光武 7. 8. 4	勅令第13號	京畿·忠清北道·忠清南道·全羅北道·全羅南道·慶尙北道·慶尙南道管下 17郡에 別巡校及 廳使를 增設하는 件	III-538
高宗 31. 6. 27	奏本	總制營에 屬하였던 南陽府를 京畿監營에 還屬케하는 件	I-2
開國504. 1. 11	奏本	京畿積城을 麻田에, 陰竹을 利川에, 豐德을 開城에, 慶尙道 咸陽을 安義에, 玄風을 昌寧에 所屬시키는 件	I-172
1. 14	奏本	京畿交河를 坡州에 所屬시키는 件	I-177
4. 27	奏本	喬桐府를 江華府에 屬하는 件	I-361
7. 19	勅令第144號	加平郡을 拘川郡에 合併하는 件	I-513
建陽 2. 1. 14	勅令第8號	安眼島를 洪州郡에 全屬시키는 件	II-206
3. 7	勅令第14號	莞島郡 所屬 飛禽·都草島를 智島郡으로 移屬하는 件	II-212
光武 4. 1. 21	奏本	吉州·城津郡을 合郡하는 件	III-23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5. 10. 20	勅令第19號	城津府를 廢止하여 吉州郡에 合附하는 件	III-330
隆熙 4. 4. 2	京畿道告示第2號	始興郡內 里洞을 合併하는 件	IX-390
	5. 21 慶尙南道告示 第3號	南海·昆陽·密陽·彥陽·巨濟郡에 屬한 洞 里村을 合併하는 件	IX-449
隆熙 4. 7. 16	平安南道告示 第8號	陽德·德川郡에 屬한 洞里村을 合併하는 件	IX-515
光武 4. 9. 4	勅令第30號	平壤郡과 同郡守를 改正하는 件	III-188
	10. 25 勅令第41號	鬱陵島를 鬱島로 改稱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하는 件	III-227
光武 6. 5. 10	勅令第9號	狼川을 華川으로 改正하는 件	III-374
隆熙 3. 3. 8	內部令第2號	全羅南道昌平郡郡內面을 玉山面으로 改稱하 는 件	VIII-127
隆熙 4. 8. 23	京畿道告示第6號	高陽郡에 屬한 里洞을 合併 改稱하는 件	IX-582
	7. 30 平安南道告示第9 號	順川·价川·孟山郡에 屬한 洞里를 合併하 는 件	IX-529
開國504. 1. 29	奏本	越松萬戶의 鬱陵島長兼任을 減下하고 島長 을 別置하는 件	I-179
	5. 26 勅令第100號	德源郡廳의 位置를 變更하는 件	I-403
光武 6. 5. 10	勅令第8號	歙谷·安邊郡 區域 改正	III-373
光武 2. 7. 27	勅令第28號	城津郡德位置와 區域을 劃定하는 件	II-388
光武 5. 10. 20	勅令第20號	吉州郡廳位置·管轄區域·經費에 관한 件	III-331
光武 4. 5. 16	勅令第18號	咸鏡北道城津府를 復設하는 件	III-88
光武 7. 8. 8	勅令第15號	城津郡復設에 관한 件	III-541
光武 7. 2. 28	奏本	吉州郡과 城津港을 分設하는 件	III-519
隆熙 2. 9. 15	內部告示第35號	楊平郡廳 位置	VII-329
隆熙 4. 8. 12	平安南道告示 第10號	江東郡·龍岡郡·三和府에 屬한 洞里를 合 併하는 件	IX-541
	8. 25 平安北道告示 第3號	義州府月華面院洞을 廢止하여 鷲峯洞에 合 하는 件	IX-589
開國504. 1. 29	奏本	平澤은 稷山에, 昆陽은 泗川에, 碧潼은 楚 山에 廢合하는 件	I-179
開國504. 2. 5	奏本	漆谷을 大邱에, 長津을 三水에 廢合하는 件	I-181
隆熙 4. 6. 23	慶尙南道告示	三嘉郡·鬱島郡·山淸郡에 屬한 洞里村을 廢	IX-491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7. 29	第4號 慶尙南道告示	합하는 件 昌原府·居昌郡·丹城郡에 屬한 洞里村을 廢	IX-523
8. 15	第5號 慶尙南道告示	합하는 件 安義郡·草溪郡에 屬한 洞里村을 廢合하는	IX-564
光武 7. 8. 11	第6號 奏本	件 北壑島視察을 管理로 特差하는 件	III-541
隆熙 3. 4. 12	勅令第49號	間島派遣職員에 관한 件	VIII-204
10. 29	勅令第97號	間島派遣職員에 관한 件 廢止	VIII-557

(4) 漢城府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高宗 31. 7. 18	議案	漢城府職制變通에 관한 件	I -64
8. 4	議案	漢城府職制改正에 관한 件	I -83
11. 18	奏本	開城府職制變通	I -115
8. 12	議案	漢城府·三港口 奏任官·判任官任用에 관한 件	I -89
光武 8. 8. 24	奏本	漢城府官制를 改正하는 件	III-643
光武 9. 12. 28	勅令第57號	漢城府官制	IV-445
光武 10. 4. 2	勅令第17號	漢城府官制 改正	IV-541
隆熙 元. 12. 13	勅令第38號	漢城府官制 改正	VI-116
隆熙 2. 6. 18	勅令第36號	漢城府官制 改正	VI-477
隆熙 3. 3. 11	勅令第26號	漢城府官制 改正	VIII-131
10. 21	勅令第80號	漢城府官制 改正	VIII-520
12. 28	勅令第105號	漢城府官制 改正	IX-240
開國504. 1. 29	勅令第32號	開城府經歷을 判官으로 改稱하는 件	I -178

(5) 開港地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高宗 31. 7. 9	議案	各港에 監理를 差遣하는 件	I -25
建陽 元. 8. 7	勅令第50號	各開港場監理署復設官制及 規則	II-141
光武 元. 9. 12	勅令第33號	各開港場監理官制 改正	II-281
12. 23	勅令第41號	各開港場監理署官制 改正	II-303
光武 3. 5. 4	勅令第15號	各港市場監理署官制及規則	II-470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光武 6. 2. 11	勅令第2號	各港市場監理署官制及規則 改正	III-350
光武 7. 3. 24	勅令第7號	各港市場監理署官制及規則 改正	III-523
光武 8. 5. 9	勅令第14號	各港市場監理署官制·規則 改正	III-601
12. 12	勅令第31號	各港市場監理署官制·規則 改正	III-704
建陽 元. 8. 7	奏本	各開港場監理가 該地方府尹을 兼任하는 件	II-145
光武 7. 1. 26	奏本	監理가 府尹을 兼任치 못하게 하는 件	III-485
開國504. 5. 26	勅令第99號	仁川·釜山·元山 三港의 監理署 廢止하는 件	I-402
閏 5. 1	內部令第1號	監營 按撫營並 留守府와 仁川·釜山·元山 三港 監理署 及 濟州牧에 傳授하는 節次에 관한 件	I-420
6. 12	勅令第131號	前監理署事務의 管掌에 관한 件	I-490
10. 6	勅令第176號	勅令第131號中 改正에 관한 件(各港에 知事를 置하는 件)	I-592
高宗 31. 9. 14	奏本	慶興監理署의 幫辦·掌簿 및 書記官 一員을 減下하는 件	I-103
開國504. 7. 12	勅令第138號	慶興郡에 在한 監理署를 廢止하는 件	I-502
11. 12	奏本	慶興府에 在한 通商口知事를 置하는 件	I-621
光武 10. 9. 24	勅令第47號	監理·牧使의 廢止와 事務引繼에 관한 件	V-168
建陽 元. 8. 10	勅令第52號	各開港場警務署 設置에 관한 件	II-147
光武 8. 3. 22	奏本	龍川郡 龍岩浦에 開港場을 設立하는 件	III-584
建陽 元. 1. 18	勅令第7號	知事署官制	II-16
8. 7	勅令第49號	知事署廢止에 관한 件	II-141
5. 4	內閣制定	元山港知事署主事敍等에 관한 件	II-80

4) 地方事務

(1) 任用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高宗 31. 7. 18	議案	外職의 任用 및 署經에 관한 件	I-62
開國504. 3. 18	奏本	冗員 裁減에 관한 件	I-190
5. 3	奏本	地方局長을 勅任하는 件	I-424
開國503. 12. 16	勅令第20號	一邑守가 數邑을 兼管하는 件	I-147
開國504. 7. 15	勅令第143號	各地方의 監牧官을 廢止하는 件	I-507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光武 5. 8. 2	奏本	濟州牧察理使를 減下하는 件	III-323
隆熙 2. 9. 7	勅令第67號	道府郡主事 任用에 관한 件	VII-318
隆熙 3. 10. 21	勅令第83號	道府郡主事 任用에 관한 件 改正	VIII-522
光武 10. 9. 24	勅令第52號	地方官銓考規程	V-189
10. 19	內部令第13號	地方官銓考細則	V-257
光武 11. 6. 20	勅令第43號	地方官銓考規程 廢止	V-536
建陽 元. 8. 7	勅令第48號	地方官吏任期	II-140
光武 3. 5. 22	勅令第23號	地方官吏任期中 添入하는 件	II-483
建陽 元. 4. 3	閣令第1號	各府觀察使·參書官·各郡郡守 保薦內規	II-66
4. 19	閣令第2號	各府觀察使·參書官·各郡郡守保薦內規 改正	II-77
光武 2. 8. 3	詔勅	各府部·各該道觀察使로 하여금 考績을 詳 明케 하는 件	II-396
隆熙 2. 6. 18	勅令第35號	郡守任用令	VI-477

(2) 俸給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開國504. 9. 5	勅令第164號	郡守官等俸給에 관한 件	I-570
建陽 元. 8. 4	勅令第35號	地方制度·地方官制·各府職員俸給·各府雇員 俸給·各府廳經費排定·各郡經費排定·郡守官 等俸給의 施行을 廢止하는 件	II-115
8. 4	勅令第36號	地方制度·官制·俸給·經費 改正	II-115
	勅令第39號	地方官廳俸給及 經費支給規程	II-127
光武 元. 9. 12	勅令第29號	地方制度中 官制·俸給·經費 改正	II-279
9. 12	勅令第30號	地方制度中 官制·俸給·經費 改正	II-280
光武 7. 7. 3	勅令第10號	地方制度·官制·俸給·經費 改正	III-534
光武 10. 9. 24	勅令第51號	地方官官等俸給令 改正	V-187
隆熙 元. 12. 27	勅令第64號	地方官官等俸給令 改正	VI-180
隆熙 3. 10. 21	勅令第82號	地方官官等俸給令 改正	VIII-522

(3) 事務規程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高宗 31. 8. 16	議案	地方官의 受由 및 新舊交替間의 廩俸에 관 한 件	I-94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建陽 元. 12. 6	勅令第5號	地方官吏擇用規則	II-195
8. 7	勅令第44號	各府牧判任官以下任免規例	II-135
光武 2. 8. 2	勅令第30號	地方官敍任規程	II-395
光武 3. 6. 28	法律第4號	各府尹牧使郡守解由規則	II-513
開國504. 3. 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十六)官吏의 地方出張에 관한 件	I-279
建陽 元. 8. 7	勅令第47號	地方官吏赴任在任給由規則	II-138
光武 10. 10. 12	內部訓令	地方官赴任·在任·給由에 관한 件	V-243
建陽 元. 2. 4	內部令第2號	地方官吏旅費支給處分	II-32
2. 5	內部令第3號	地方府郡管內 및 警務署管內 旅費	II-37
光武 5. 12. 12	勅令第22號	各觀察使·牧使·府尹·郡守의 赴任旅費를 當分間停止하는 件	III-345
光武 8. 5. 2	勅令第13號	各觀察使·牧使·府尹·郡守赴任旅費姑爲停止 件 改正	III-600
開國503. 12. 16	勅令第18號	監司·留守·兵使·水使의 封奏 禁止에 관한 件	I-145
建陽 元. 8. 4	勅令第38號	地方官吏事務章程	II-126
隆熙 2. 2. 7	內部訓令第116號	府尹·郡守가 內部나 各部에 報告 質稟할때 觀察使를 經由하는 件	VI-264
隆熙 2. 5. 8	內部訓令第214號	地方官吏職制·地方官吏職務權限 規定 消滅에 관한 件	VI-407
5. 8	內部訓令第215號	有故郡守의 職務署理에 관한 件	VI-407
隆熙 4. 5. 20	內部訓令第63號	觀察道內務部事務分掌規程	IX-446

5) 地方財政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504. 9. 5	勅令第163號	各郡經費排定에 관한 件	I-567
隆熙 3. 4. 1	法律第13號	公益을 爲하여 設定한 地方財産에 관한 件	VIII-188
4. 1	法律第12號	地方費法	VIII-186
9. 29	內部令第5號	地方費會計規則	VIII-467
隆熙 4. 3. 10	內部令第7號	地方費會計規則 改正	IX-322
光武 11. 4. 2	度支部令第11號	面交付金處理順序	V-483
7. 18	度支部令第28號	面交付金處理順序	V-585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隆熙 2.10. 8	度支部令第41號	面交付金處理順序 改正	VII-401
隆熙 3. 8.10	度支部令第23號	面交付金控除의 件	VIII-397
隆熙 3.10.11	度支部令第28號	地方費賦課金徵收規程	VIII-496
隆熙 4. 3.12	度支部令第10號	地方費賦課金徵收規程 改正	IX-338
6.25	慶尙南道令第3號	地方費賦課金賦課規則 改正	IX-495
隆熙 3.11.15	內部令第14號	地方費賦課金徵收到 要하는 費用에 관한 件	IX-106
隆熙 3. 9.27	京畿道令第2號	地方費賦課金賦課規則	VIII-462
9.27	慶尙北道令第6號	地方費賦課金賦課規則	VIII-464
隆熙 4. 6.16	慶尙北道令第12號	地方費賦課金賦課規則 改正	IX-489
隆熙 3. 9.28	忠淸北道令第3號	地方費賦課金賦課規則	VIII-465
9.29	忠淸南道令第5號	地方費賦課金賦課規則	VIII-468
9.30	全羅北道令第2號	地方費賦課金賦課規則	VIII-469
10. 1	慶尙南道令第3號	地方費賦課金賦課規則	VIII-471
10. 5	咸鏡北道令第5號	地方費賦課金賦課規則	VIII-474
10. 9	江原道令第5號	地方費賦課金賦課規則	VIII-490
10.13	漢城部令第2號	地方費賦課金賦課規則	VIII-500
隆熙 4. 1.17	咸鏡北道令第1號	地方費賦課金賦課規則	IX-255
1.22	內部令第3號	地方費 支辦에 屬한 漢城府官吏의 定員에 관한 件	IX-263
1.22	內部令第4號	地方費 支辦에 屬한 道官吏의 定員에 관한 件	IX-264
光武 11. 5.30	度支部令第15號	地方委員會旅費支給規程	V-511
隆熙 3.12. 3	度支部告示第19號	地方委員會設置場所及 區域 變更	IX-185
隆熙 4. 3.11	度支部告示第1號	地方委員會設置處所及 區域 變更	IX-324

4. 官員

1) 官制

(1) 官等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高宗 31. 6.28	議案	文武의 差別을 廢止하는 件	I-14
7. 2	議案	等馬의 規를 豁除하는 件	I-18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7. 2	議案	朝官 三品以下는 正·從의 區別을 하지 않는 件	I-19
7.16	議案	官 秩	I-59
7.17	議案	醫譯雜職·賞加人으로 各府衙의 奏任官이 된 者는 新授階級에 의하여 施行하는 件	I-62
開國504. 1. 8	奏本	登科十年人等を 陞六階 하는 件	I-171
3.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二十六)總理大臣과 各大臣間의 尊卑의 區別을 設하지 않는 件	I-280
3.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四十四)官員間의 交際에 尊卑의 區別을 하지 않도록 하는 件	I-284
3.29	勅令第58號	敍品令	I-262
建陽 2. 6.22	詔勅	敍品을 大典通編에 의하여 施行하는 件	II-262
光武 9. 6.29	勅令第37號	官等比較表	IV-296
光武 10.12.12	勅令第74號	文武官官誥에 관한 件	V-337
隆熙 元. 9. 6	宮內府照會	官員階級件	VI-43

(2) 任用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高宗 31. 6.28	議案	門閥·班常等級을 劈破하고 貴賤에 관계없이 人材를 選用하는 件	I-14
7.17	議案	散班文·蔭·武官을 中樞院에 附屬시키고 新額에 들어가지 못한 雜職·吏隸는 各該 移屬衙門에 隸屬시키는 件	I-62
8.16	議案	各道都試와 取才의 規를 革罷하는 件	I-93
7.12	議案	銓考局條例	I-31
7.12	議案	選舉條例	I-33
8.14	議案	薦主罰俸에 관한 件	I-91
光武 8.10.15	勅令第28號	內外官職薦任規則	III-695
光武 9. 1.15	勅令第1號	內外官職薦任規則廢止에 관한 件	IV-1
2.26	勅令第10號	文官銓考所規制	IV-18
4.24	議政府令第1號	文官銓考所規則 附文官銓考所細則	IV-126
光武 10.10.25	議政府令第2號	文官銓考所試驗規則	V-287
隆熙 2.10. 5	閣令第10號	銓衡委員規程	VII-396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隆熙 3. 1. 29	漢城府廣告	經義時務의 士 試選에 관한 件	VIII-19
光武 10. 9. 24	勅令第53號	文官任用令	V-191
隆熙 2. 7. 23	勅令第51號	文官任用令	VII-98
10. 5	勅令第71號	文官任用令 改正	VII-395
11. 27	勅令第82號	文官任用令 改正	VII-517
隆熙 3. 5. 31	勅令第61號	文官任用令 改正	VIII-268
11. 12	勅令第99號	文官任用令 改正	IX-102
高宗 31. 7. 14	議案	文官授任式	I -37
9. 19	議案	文官授任式 改正	I -104
開國504. 3. 25	內閣制定	任官奏請 및 請議 等에 관한 書式	I -237
3. 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四十八)高等官吏의 任官을 慎重히 하는 件	I -285
3. 29	奏本	奏判任官初任例規	I -275
光武 3. 7. 18	詔勅	奏判任官試驗 및 任命規則을 校正所로 하여 금 改正케 하는 件	II-533
光武 5. 1. 7	勅令第60號	勅奏判任官陞級及陞等令	III-269
光武 2. 12. 8	勅令第39號	奏判任官試驗及任命規則	II-426

2) 服務

(1) 一般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高宗 31. 7. 16	議案	官員服務紀律	I -56
開國504. 3. 29	勅令第65號	官員服務紀律中 改正에 관한 件	I -273
4. 2	閣令第3號	官員銘心內則	I -318
高宗 31. 7. 2	議案	親避의 規를 制限하는 件	I -19
9. 17	議案	官員의 引罪를 制限하는 件	I -104
開國504. 3. 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二十七)一般官人의 扶掖을 廢止하는 件	I -281
3. 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四十五)官員의 公務上 中間作弊를 禁하는 件	I -284
3. 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四十九)賄賂를 嚴禁하는 件	I -285
3. 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五十)官員이 謹直 忠實하	I -285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閏 5.10	閣令第7號	계 職務에 服從케 하는 件	
隆熙 2. 7. 1	閣令第6號	各官廳執務時限에 관한 件	I-438
隆熙 4. 7. 13	閣令第1號	官廳執務時限 改正	VII-1
高宗 31. 7. 11	議案	官廳執務時限 改正	IX-513
光武 2. 8. 13	奏本	繁務가 없는 各局을 잠시 兼管케 하는 件	I-28
開國504. 閏5. 27	內部令第2號	內外官職을 久任시켜 責成케 하는 件	II-399
高宗 31. 6. 28	議案	各府廳主事定員에 관한 件	I-468
開國504. 3. 29	奏本	各 衙署의 皂隸를 加減하는 件	I-16
		(各大臣間規約條件二十二) 各大臣以下の 驅從·使令을 自備하는 件	I-280
3. 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二十三) 各大臣以下の 別陪數를 制限하는 件	I-280
3. 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二十八) 各大臣以下の 奴婢使役에 관한 件	I-281
高宗 31. 7. 2	議案	官員 跟隨의 額을 定하는 件	I-18
7. 13	議案	各司吏胥를 收用하는 件	I-35
開國504. 2. 19	奏本	宣傳官廳의 入直은 每番 二員씩으로 減縮하는 件	I-182
開國504. 4. 2	閣令第4號	起復行公에 관한 件	I-319
光武 3. 5. 8	勅令第17號	起復令	II-474
高宗 31. 7. 2	議案	休官後에 任便 營商케 하는 件	I-20
光武 8. 10. 19	奏本	解由規則을 申明하는 件	III-698
高宗 31. 8. 16	議案	官員의 除拜後의 出仕日期에 관한 件	I-93
光武 2. 12. 21	詔勅	官人의 課日 仕進을 申飭하는 件	II-429
開國503. 12. 16	勅令第19號	大小官員의 相見·相稱禮를 改定하는 件	I-146
開國504. 3. 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三十五) 官吏는 轎車馬로 內閣에 赴함을 得하는 件	I-282
3. 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四十六) 地方으로 公行하는 官吏의 復命하는 件	I-285
光武 10. 12. 21	議政府訓令	官人의 陳疏는 本屬長官의 認許를 받아 施行하는 件	V-376
12. 14	議政府訓令	官員의 兼職을 禁하는 件	V-372
隆熙 元. 8. 20		各官履歷書式	VI-17

(2) 懲戒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高宗 31. 7. 16	議案	官員懲戒例	I-58
7. 24	議案	官員懲戒例를 改正하는 件	I-77
8. 10	議案	官員懲戒例를 改正하는 件	I-88
開國 504. 3. 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四十二) 官員의 懲戒·處罰을 區分하는 件	I-284
3. 29	勅令第66號	官員懲戒令改正에 관한 件	I-273
建陽 元. 4. 25	勅令第22號	官員懲戒令附則	II-78
開國 504. 4. 2	閣令第5號	官員懲戒處分內規	I-320

(3) 服製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高宗 31. 6. 28	議案	朝官·士庶人·兵弁衣制에 관한 件	I-16
7. 12	議案	官員의 赴公服色에 관한 件	I-30
8. 12	議案	京外官衣制 및 外道營邑雜色軍卒의 服色에 관한 件	I-91
開國 503. 12. 16	勅令第17號	朝臣服制에 관한 件	I-144
開國 504. 3. 29	勅令第67號	公私禮服規程	I-274
5. 19	勅令第92號	開國503年 勅令第17號·504年 勅令第67號를 改正하는 件	I-387
8. 10	勅令第1號(號外)	朝臣以下 服章式	I-544
光武 3. 1. 1	詔勅	朝臣服章을 磨鍊하는 件	II-433
8. 3	詔勅	朝臣服裝變通에 관한 件	II-538
光武 4. 4. 17	勅令第14號	文官服裝規則	III-74
4. 17	勅令第15號	文官大禮服製式	III-77
光武 10. 12. 12	勅令第75號	文官大禮服製式 改正	V-339

(4) 俸給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 504. 3. 29	勅令第57號	官等俸給令	I-255
9. 7	勅令第166號	官等俸給令中 改正에 관한 件	I-578
光武 2. 12. 9	勅令第42號	官等俸給令 改正	II-428
光武 9. 6. 23	勅令第34號	官等俸給令	IV-253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光武 9. 12. 29	勅令第61號	官等俸給令 改正	IV-453
光武 10. 1. 17	勅令第4號	官等俸給令 改正	IV-497
光武 10. 2. 9	勅令第7號	官等俸給令 改正	IV-503
光武 10. 3. 8	勅令第9號	官等俸給令 改正	IV-521
11. 13	勅令第68號	官等俸給令 改正	V-321
光武 11. 1. 14	勅令第1號	官等俸給令 改正	V-396
6. 22		官等俸給令 改正	V-542
6. 22		官等俸給令 改正	V-542
7. 3		官等俸給令 改正	V-572
隆熙 元. 8. 28	勅令第18號	官等俸給令 改正	VI-34
12. 23	勅令第59號	官等俸給令 改正	VI-170
12. 27	勅令第61號	官等俸給令 改正	VI-175
隆熙 2. 6. 30	勅令第42號	官等俸給令	VI-496
8. 3	勅令第57號	官等俸給令 改正	VII-130
10. 29	勅令第77號	官等俸給令 改正	VII-473
隆熙 3. 2. 18	勅令第14號	官等俸給令 改正	VIII-69
2. 22	勅令第19號	官等俸給令 改正	VIII-89
3. 15	勅令第29號	官等俸給令 改正	VIII-150
3. 31	勅令第39號	官等俸給令 改正	VIII-171
3. 31	勅令第42號	官等俸給令 改正	VIII-173
7. 10	勅令第66號	官等俸給令 改正	VIII-358
8. 21	勅令第76號	官等俸給令 改正	VIII-418
10. 29	勅令第96號	官等俸給令 改正	VIII-556
12. 27	勅令第104號	官等俸給令 改正	IX-238
隆熙 4. 1. 21	勅令第5號	官等俸給令 改正	IX-263
3. 9	勅令第21號	官等俸給令 改正	IX-322
3. 14	勅令第24號	官等俸給令 改正	IX-343
7. 21	勅令第40號	官等俸給令 改正	IX-520
開國504. 4. 24	度支部令第1號	文武官俸給支給細則	I - 357
光武 9. 7. 10	度支部令第6號	文武官俸給支給細則	IV-301
隆熙 2. 2. 18	度支部令第4號	文武官俸給支給細則 改正	VI-272
4. 24	度支部令第13號	文武官俸給支給細則 改正	VI-401
光武 10. 2. 19	度支部令第1號	文武官俸給支給細則	IV-511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隆熙 2. 8. 25	度支部令第29號	文武官俸給及手當支給細則	VII-268
高宗 31. 7. 4	議案	未下各官吏祿料를 國債局에서 限年 排給하는 件	I-22
高宗 31. 7. 16	議案	品俸月表	I-60
8. 12	議案	實職이 없는 議員은 各衙門品階에 依하여 月俸을 定하는 件	I-90
開國504. 3. 15	奏本	西北別付料·濟州子第及流寓明人子孫 所給料 祿의 停止에 관한 件	I-189
3. 29	勅令第60號	雇員俸給에 관한 件	I-263
3. 30	勅令第70號	官等俸給令을 各營 各邑等に 適用치 아니하는 件	I-299
5. 26	勅令第102號	各府職員의 俸給에 관한 件	I-405
5. 26	勅令第104號	各府雇員의 俸給에 관한 件	I-406
5. 27	勅令第103號	郡守俸給에 관한 件	I-406
5. 26	勅令第105號	官等俸給令을 各府에 施行하는 件	I-407
6. 12	勅令第132號	各府判任官을 任用하는데 있어 官等俸給令 第7條·第8條 第12項을 適用하지 않는 件	I-490
6. 27	奏本	新舊觀察使의 俸給에 관한 件	I-498
9. 7	勅令第167號	內閣及各部局長의 俸給에 관한 件	I-579
10. 4	勅令第173號	百官祿 及 各司料恒式未下頒給處分規程에 관한 件	I-588
10. 6	勅令第177號	知事俸給에 관한 件	I-592
10. 23	度支部令第6號	百官祿及 各司料與恒式未下の 排給에 관한 件	I-599
11. 9	程度支部令第7號	文武官俸給을 本年四月 度支部令 第1號 第1條의 出給定日을 不拘하고 日割로써 出給하는 件	I-610
建陽 2. 1. 21	勅令第12號	贊政年俸을 減半 施行하는 件	II-209
光武 2. 6. 23	勅令第21號	議政府官吏俸給令 改正	II-374
12. 8	勅令第38號	中樞院官吏俸給에 관한 件	II-425
光武 4. 5. 26		宮內府奏任官官等俸給表 改正	III-90
光武 8. 7. 16		勅任官官等俸給表 改正	III-630
開國504. 3. 30	勅令第69號	文武官俸給減給에 관한 件	I-298

III. 民事法

1. 民法

1) 一般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高宗 31. 7. 15	議案	強佔·勒買된 田地·山林·家屋을 推還하는 件	I-55
8. 14	議案	公錢의 民貸를 嚴斷하는 件	I-92
開國504. 3. 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十三)財産의 安全을 保護하는 件	I-278
光武 4. 11. 24	奏本	兩西軍土中 賣下한 것을 還退하는 件	III-245
光武 10. 9. 24	法律第5號	利息規例	V-168
隆熙 2. 2. 12	奏本	各宮·經理院所管土地文簿中에 混入·奪入된 私土를 調査하여 下給하는 件	VI-266
12. 21	勅令第84號	雇員及 傭人救恤規則	VII-538
光武 9. 5. 31	奏本	法部에 法律起草委員會를 設置하여 民法을 制定하는 件	IV-237
6. 18	詔勅	民法常例를 纂輯하는 件	IV-249
光武 10. 7. 27	宮內府令第4號	土地開墾에 관한 件	V-54
高宗 31. 8. 26	議案	土地·山林·礦山을 本國入籍人이 아니면 占有 賣買를 不許하는 件	I-97
隆熙 2. 3. 21	勅令第15號	清津土地規則	VI-330
3. 25	勅令第17號	清津官有地賣下規則	VI-335
4. 1	勅令第19號	咸鏡北道富寧郡清津港 港界制定에 관한 件	VI-342
9. 19	度支部告示第14號	公債證書 其他 有價證券의 擔保價格	VII-340
12. 17	度支部告示第20號	公債證書 其他 有價證券의 擔保價格을 指定하는 件	VII-537
光武 11. 6. 5	宮內府令第1號	內需司 및 各宮所屬庄土 導掌을 廢止하는	V-513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隆熙 3. 11. 25	奏本	件 土地建物賣却及 貸下法을 省略하는 件	IX-181
隆熙 4. 4. 13	內部訓令第45號	保管物品取扱規程	IX-403

2) 土地關係

(1) 量田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2. 6. 23	奏本	全國의 土地를 測量하는 件	II-376
光武 3. 4. 24	勅令第13號	各道量務監理를 該道內郡守中에서 擇任하는 件	II-463
光武 4. 6. 12	勅令第21號	各道量務監理擇任件 改正	III-98
光武 2. 7. 2	詔勅	量地衙門處務規程을 議定하는 件	II-379
7. 6	勅令第25號	量地衙門職員及處務規程	II-382
光武 4. 10. 8	量地衙門令第1號	量務委員任命規則	III-210
光武 3. 4. 21	量地衙門令第1號	量地衙門見習生規則	II-462
光武 9. 9. 1	度支部令第13號	量田에 從事하는 者에게 日額旅費를 支給하는 件	IV-394
光武 8. 4. 19	勅令第11號	度支部量地局官制	III-593
光武 6. 3. 17	奏本	量地衙門과 地契衙門을 統合하는 件	III-362

(2) 地契·家契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5. 10. 20	勅令第21號	地契衙門職員及處務規程	III-331
11. 20	地契衙門令第1號	地契衙門分課規程	III-337
光武 7. 1. 20	奏本	各道地契監督을 差下하는 件	III-483
2. 9	奏本	濟州牧地契監督을 差下하는 件	III-486
9. 30	奏本	各道地契監督을 特差하는 件	III-555
光武 10. 5. 22	內部令第2號	家契發給規則	IV-579
5. 22	度支部令第10號	家契手數料規則	IV-581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建陽 元. 1. 11	勅令第1號	文武官의 俸給減給令을 繼續 施行하는 件	II-5
建陽 2. 1. 14	勅令第9號	勅·奏任官俸給減給令을 繼續 施行하는 件	II-206
光武 2. 1. 12	勅令第1號	勅奏任官捐俸例를 繼續 施行하는 件	II-322
光武 3. 1. 30	勅令第3號	勅奏任官捐俸例를 繼續 施行하는 件	II-442
光武 4. 1. 21	勅令第8號	勅奏任官捐俸例를 繼續 施行하는 件	III-23
光武 5. 2. 12	勅令第1號	勅奏任官捐俸例를 繼續 施行하는 件	III-280
光武 6. 4. 3	勅令第4號	勅奏任官捐俸例를 繼續 施行하는 件	III-364
光武 7. 1. 26	勅令第1號	勅奏任官捐俸例를 繼續 施行하는 件	III-484
光武 8. 4. 30	勅令第12號	勅奏任官捐俸例를 繼續 施行하는 件	III-599
光武 9. 1. 18	勅令第5號	勅奏任官捐俸例를 繼續 施行하는 件	IV-4

3) 退職

(1) 退職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504. 3. 29	勅令第62號	官員非職令	I-270
建陽 元. 4. 19	勅令第20號	巡檢·看守 退職賜金規則	II-76
光武 4. 11. 11	詔勅	世祿表를 만들어 殉節·負傷將率을 褒恤하는 件	III-240
隆熙 元. 12. 27	勅令第63號	官吏의 勤續에 관한 件	VI-180
12. 30	勅令第82號	退官恩賜金支給規程	VI-219
隆熙 2. 1. 1	閣令第1號	退官恩賜金支給規程施行規則	VI-223
4. 20	勅令第26號	官吏退官賜金에 관한 件	VI-376
隆熙 3. 6. 24	勅令第64號	官吏退官賜金에 관한 件	VIII-289
隆熙 2. 11. 23	勅令第79號	官吏退官賜重의 在職年數에 관한 件	VII-515

(2) 贈職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504. 1. 5	奏本	老職加資를 大典會通에 의하여 施行하는 件	I-159
光武 4. 6. 21	奏本	追贈規例	III-102
光武 9. 4. 29	奏本	贈職規例	IV-233
隆熙 2. 4. 2	布達第175號	贈職規例	VI-348

(3) 敍勳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3. 7. 4	勅令第30號	表勳院官制	II-516
光武 8. 3. 12	勅令第3號	表勳院官制	III-579
光武 9. 2. 26	勅令第11號	表勳院官制	IV-19
4. 11		表勳院所屬職員分課規程	IV-95
隆熙 2. 8. 6		表勳院分課規程	VII-132
光武 8. 3. 30	詔勅	勳制中 瑞鳳章을 增設하는 件	III-585
光武 9. 9. 19	詔勅	瑞鳳章을 增設하는 件	IV-400
光武 3. 6. 17	詔勅	勳章條規를 議立하는 件	II-503
光武 4. 4. 17	詔勅	勳章條例를 頒布하는 件	III-59
4. 17	勅令第13號	勳章條例	III-60
光武 5. 4. 16	勅令第10號	勳章條例 改正	III-307
光武 11. 3. 30	勅令第20號	勳章條例 改正	V-479
光武 4. 8. 17	表勳院令第1號	各府部院廳官吏履歷書細則·外國勳章領受請願細則	III-137
光武 6. 8. 12	詔勅	瑞星大勳章을 加定하는 件	III-436

4) 顧問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高宗 31. 7. 15	議案	各府·衙門에 外國人顧問을 두는 件	I-56
光武 2. 8. 13	奏本	外國律士를 聘用하는 件	II-399
光武 9. 1. 18	奏本	度支部財政顧問所屬職員을 設置하고 그 員數 및 月俸相當額을 認定하는 件	IV-4
隆熙 2. 5. 20	勅令第29號	日語通譯兼掌者 特別手當支給에 관한 件	VI-410
隆熙 3. 8. 3	布達第10號	通譯事務兼掌者特別手當支給에 관한 件	VIII-391
光武 10. 8. 25	度支部令第14號	外國人旅費規程	V-82
建陽 元. 2. 3	內部令第1號	內部官吏旅費支給處分	II-27
光武 10. 7. 19	勅令第31號	內國旅費支給規程	V-34

5. 軍隊

1) 一般

(1) 官制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 504. 3. 26	勅令第55號	軍部官制	I-243
閏 5. 24	勅令第118號	軍部官制中 改正에 관한 件	I-448
8. 10	勅令第153號	軍部官制 改正에 관한 件	I-543
光武 2. 8. 13	勅令第32號	軍部官制 · 職員表 改正	II-398
8. 31	勅令第33號	軍部官制 改正	II-401
光武 3. 2. 23	勅令第5號	軍部官制 改正	II-445
8. 18	詔勅	軍部官制 改正	II-543
光武 4. 9. 17	詔勅	軍部官制 改正	III-194
光武 8. 7. 6	勅令第17號	軍部官制 改正	III-613
9. 24	詔勅	軍部官制	III-650
光武 9. 2. 21	詔勅	軍部官制를 即時 奏裁하여 施行하는 件	IV-7
2. 22	勅令第6號	軍部官制	IV-8
光武 10. 12. 17	勅令第77號	軍部官制 改正	V-373
光武 11. 7. 11	勅令第46號	軍部官制 改正	V-582
隆熙 元. 8. 26	勅令第14號	軍部官制	VI-24
11. 2	勅令第32號	軍部官制 改正	VI-67
8. 26	勅令第13號	軍部所管 官廳官制及 條規 廢止	VI-24
9. 4	勅令第20號	軍部所管官廳官制及規程 廢止	VI-40
光武 3. 6. 22	詔勅	元帥府官制	II-504
7. 8	詔勅	元帥府官制 改正	II-524
7. 29	詔勅	元帥府官制 改正	II-535
光武 8. 9. 24	詔勅	元帥府官制	III-648
光武 4. 3. 20	詔勅	元帥府官制 改正	III-47
光武 8. 9. 24	詔勅	參謀府官制	III-656
9. 24	詔勅	侍從武官府官制	III-649
隆熙 3. 7. 30	布達第4號	侍從武官府官制	VIII-386

(2) 軍制改編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高宗 31. 6. 22	詔勅	總制營을 革罷하는 件	I-1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7. 14	議案	親衛軍外의 各營을 統合하는 件	I-35
8. 6	奏本	龍虎營을 統衛營으로 合附하는 件	I-87
9. 11	議案	花島鎮 革罷에 관한 件	I-103
開國503. 12. 4	奏本	監司·留守·兵使·水使 新差後 發兵符를 依例 傳授케 하는 件	I-129
開國504. 1. 8	奏本	關西管餉使·運餉使 및 各道監司·留守가 兼한 바 親軍外使를 減下하는 件	I-172
3. 1	奏本	名道 密兵符의 廢止 還收에 관한 件	I-182
3. 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三)水營·統營 廢止法에 관한 件	I-276
3. 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二)京外舊新兵의 調査에 관한 件	I-276
3. 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十九)兵丁·巡檢訓練에 관한 件	I-279
5. 8	勅令第87號	武藝廳處分에 관한 件	I-378
5. 26	勅令第97號	監營·按撫營 및 留守府를 廢止하는 件	I-398
閏 5. 7	勅令第111號	各道外營兵丁의 解放에 관한 件	I-433
閏 5. 19	勅令第117號	本年勅令第111號를 改正하는 件	I-445
閏 5. 9	奏本	各處烽臺의 烽燧軍 廢止하는 件	I-433
7. 15	勅令第139號	三道統制營을 廢止하는 件	I-504
7. 15	勅令第140號	各道の 兵營과 水營을 廢止하는 件	I-505
7. 15	勅令第141號	各鎮營을 廢止하는 件	I-506
7. 15	勅令第142號	各鎮堡를 廢止하는 件	I-506
7. 30	軍部令第1號	解放된 舊各營의 兵丁과 胥隸의 訴願에 관한 件	I-529
建陽 元. 1. 7	奏本	各地方 舊額鍊兵을 鎮衛隊設置할 때까지 派員領率케 하는 件	II-2
1. 20	奏本	各地方舊額兵丁을 武官으로 派員 領率하는 件	II-18
5. 30	勅令第23號	各地方舊額兵措處에 관한 件	II-83
建陽 元. 6. 8	勅令第26號	各地方舊額兵措處에 관한 件 改正	II-87
光武 8. 8. 23	詔勅	軍制를 釐改하는 件	III-643
9. 24	詔勅	軍制를 釐正하는 件	III-647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9. 4. 12	詔勅	軍制議定所로 하여금 軍制를 更定케 하는 件	IV-96
光武 7. 3. 15	詔勅	徵兵實施에 관한 件	III-519
光武 11. 6. 27	法律第3號	募兵令	V-546
7. 31	詔勅	軍隊解散에 관한 件	V-595
7. 31	詔勅	軍隊解散으로 인한 「暴動者」의 鎮壓에 관한 件	V-595

2) 軍編制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504. 5. 21	勅令第107號	新設隊編制에 관한 件	I -395
閏 5. 25	勅令第121號	本年勅令第107號를 改正하는 件	I -450
9. 13	勅令第170號	陸軍編制綱領	I -581

(1) 親衛隊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504. 9. 13	勅令第171號	親衛隊大隊設立에 관한 件	I -582
10. 6	勅令第175號	親衛隊·鎮衛隊 各大隊의 定員에 관한 件	I -590
建陽 元. 4. 22	勅令第21號	親衛第1聯隊編成에 관한 件	II-77
6. 8	勅令第24號	馬兵隊를 廢止하고 親衛騎兵隊를 設置하는 件	II-86
建陽 2. 6. 30	奏本	扈衛軍 設置에 관한 件	II-263
7. 4	奏本	扈衛軍 接濟에 관한 件	II-267
光武 元. 11. 14	奏本	扈衛隊編制	II-296
建陽 元. 1. 27	勅令第12號	親衛隊1大隊增設에 관한 件	II-24
3. 4	勅令第15號	親衛隊2大隊增設에 관한 件	II-49
建陽 2. 4. 4	勅令第19號	親衛隊編制에 관한 件	II-225
光武 元. 11. 14	詔勅	扈衛軍을 扈衛隊로 改稱하고 同 總管으로 하여금 編制케 하는 件	II-295
光武 2. 7. 2	勅令第22號	親衛各隊編制 改正	II-379
8. 13	勅令第31號	侍衛·親衛聯隊職員表 改正	II-398
光武 6. 9. 12	詔勅	侍衛隊 親衛隊의 編制를 更定하는 件	III-442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10. 30	勅令第16號	侍衛聯隊・親衛聯隊를 다시 編制하는 件	III-460
隆熙 3. 7. 30	勅令第68號	軍部廢止・親衛府新設及 이에 附帶한 件	VIII-382
7. 30	布達第3號	親衛府官制	VIII-385

(2) 侍衛隊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 504. 5. 25	勅令第120號	侍衛隊 新設에 관한 件	I -450
8. 22	勅令第157號	侍衛隊를 訓練隊에 移屬 編入하는 件	I -553
8. 22	軍部告示	侍衛隊를 訓練隊로 編入하는 件	I -554
光武 元. 9. 30	詔勅	侍衛隊編制	II-286
光武 2. 5. 27	勅令第13號	侍衛第1聯隊編制	II-359
光武 3. 8. 29	詔勅	侍衛騎兵大隊編制에 관한 件	II-556
11. 3	奏本	侍衛騎兵大隊職員表	II-582
光武 9. 4. 14	勅令第27號	侍衛步兵第1聯隊編制	IV-104
光武 11. 4. 22	勅令第22號	侍衛渾成旅團司令部官制	V-492
6. 19	勅令第39號	侍衛混成旅團司令部官制 改正	V-530
4. 22	勅令第23號	侍衛步兵聯隊編制件	V-493
4. 22	勅令第24號	侍衛騎兵隊編制件	V-495
4. 22	勅令第25號	侍衛野戰砲兵隊編制件	V-496
4. 22	勅令第26號	侍衛工兵隊編制件	V-497

(3) 近衛隊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隆熙 元. 12. 20	勅令第58號	近衛騎兵隊編制件	VI-157
隆熙 3. 7. 30	布達第6號	近衛騎兵隊編制件	VIII-388
隆熙 元. 8. 26	勅令第16號	近衛步兵隊編制件	VI-32
隆熙 3. 7. 30	布達第7號	近衛步兵隊編制件	VIII-388
7. 30	勅令第69號	侍從武官府官制・東宮武官府官制・親王府武官府官制・近衛步兵隊編制件・近衛騎兵隊編制件 廢止	VIII-382

(4) 訓練隊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504. 4. 27	奏本	訓練第三大隊를 平壤地方에 置하는 件	I-362
閏 5. 16	奏本	訓令第4隊를 淸州郡에 設置하는 件	I-444
7. 23	勅令第150號	訓練聯隊編制를 侍衛隊에도 適用하는 件	I-519
8. 14	奏本	訓練第4大隊를 全州郡으로 移置하는 件	I-551
8. 25	勅令第158號	訓練第1聯隊編制에 관한 件	I-556
7. 23	勅令第149號	訓練聯隊編制에 관한 件	I-518
9. 13	勅令第169號	訓練隊廢止에 관한 件	I-581
9. 13	奏本	訓練大隊를 增置하는 件	I-583

(5) 地方隊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建陽 元. 8. 5	勅令第41號	各地方舊額兵編制 改正	II-128
光武 3. 1. 15	勅令第2號	鎮衛隊·地方隊編制 改正	II-437
開國504. 9. 13	勅令第172號	平壤府·全州府에 鎮衛隊를 設立하는 件	I-583
建陽 元. 8. 26	勅令第59號	忠州·洪州·尙州·原州郡에 地方隊를 設置하는 件	II-157
9. 10	奏本	有事地方에 兵站設置하는 件	II-170
9. 24	勅令第63號	公州·春川·江界·忠州·洪州·尙州·原州地方隊를 廢止하는 件	II-178
建陽 2. 6. 14	勅令第22號	各道地方兵增置件	II-239
光武 5. 2. 4	詔勅	第4聯隊·第6聯隊를 編制하는 件	III-271
光武 3. 8. 29	詔勅	高城郡地方隊設置에 관한 件	II-555
9. 4	奏本	高城地方隊編制	II-561
光武4. 12. 19	勅令第49號	濟州牧에 鎮衛1大隊를 設置하는 件	III-252

(6) 鎮衛隊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9. 7. 3	軍部令第2號	鎮衛別則	IV-298
光武 3. 10. 12	詔勅	平壤鎮衛大隊를 京各隊例에 의하여 編制하는 件	II-576
11. 3	奏本	平壤鎮衛隊 編制	II-579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4. 6. 16	詔勅	平安北道·咸鏡南道에 鎭衛隊를 設置하는 件	III-99
6. 30	勅令第22號	平安北道·咸鏡南道에 鎭衛隊를 設置하는 件	III-110
7. 20	詔勅	地方軍隊의 號稱을 鎭衛隊로 統一 編制하는 件	III-123
7. 25	勅令第26號	鎭衛隊編制	III-124
9. 6	詔勅	平壤府에 鎭衛1大隊를 增設하는 件	III-191
9. 18	勅令第32號	平安南道平壤府에 鎭衛1大隊를 增設하는 件	III-198
光武 8. 12. 3	奏本	北關兩鎭衛隊를 廢止하는 件	III-702
光武 9. 4. 14	勅令第32號	鎭衛步兵大隊編制	IV-113
光武 11. 4. 22	勅令第27號	鎭衛步兵大隊編制 改正	V-498

(7) 海軍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高宗 31. 7. 9	奏本	大阜島鎭을 復設하는 件	I-24
光武 2. 7. 2	詔勅	陸軍增設과 海軍定制에 관한 件	II-378
光武 5. 3. 8	勅令第7號	沿海地方에 砲臺設置 件	III-291
光武 10. 8. 21	奏本	慶尙南道鎭海灣·咸鏡南道永興灣을 軍港으로 定하는 件	V-76
8. 21	議政府告示	慶尙南道鎭海灣·咸鏡南道永興灣을 軍港으로 預定하고 境界圖面 및 遵守事項을 告示하는 件	V-76
隆熙 元. 12. 12	內部告示	慶尙南道鎭海灣軍港境界圖面 改正	VI-107
12. 12	內部告示	慶尙南道鎭海灣 軍港地境內에 海軍大砲射擊 場을 設定하는 件	VI-107

(8) 憲兵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4. 5. 31	詔勅	憲兵隊를 編制하는 件	III-90
光武 5. 5. 15	詔勅	憲兵2中隊를 增額하여 編制하는 件	III-315
6. 1	勅令第12號	陸軍憲兵增額編制件	III-318
光武 4. 6. 30	勅令第23號	陸軍憲兵條例	III-113
光武 8. 9. 24	詔勅	陸軍憲兵條例	III-669
光武 9. 4. 14	勅令第29號	憲兵條例	IV-107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11. 5. 30	勅令第30號	憲兵警察賞與規則	V-506
隆熙 2. 6. 11	勅令第31號	憲兵補助員募集에 관한 件	VI-443
6. 16	軍部令第3號	憲兵補助員採用에 관한 件	VI-458
6. 17	軍部告示第1號	憲兵補助員募集에 관한 件	VI-476
隆熙 3. 9. 30	勅令第72號	憲兵補助員 募集에 관한 件	VIII-385
3. 2. 20	軍部令第2號	憲兵補助員服制	VIII-85
光武 10. 9. 24	勅令第57號	衛戍條例	V-196
9. 24	勅令第58號	京城衛戍司令部條例	V-197
10. 9	軍部令第3號	衛戍服務規則	V-229

(9) 기타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高宗 31. 12. 10	奏本	兵房·文軍司馬 減下에 관한 件	I-131
開國504. 1. 29	奏本	濟州年例貢馬를 軍務衙門 主管에 屬하게 하 고 貢馬는 船運하게 하는 件	I-180
建陽 元. 1. 18	勅令第9號	各驛察訪 및 驛屬廢止에 관한 件	II-17
6. 8	勅令第25號	輜重馬兵을 設置하는 件	II-86
光武 4. 12. 19	勅令第58號	輜重兵隊를 設置하는 件	III-263
光武 9. 4. 14	勅令第30號	騎兵隊編制	IV-111
光武 11. 3. 20	軍部令第1號	馬匹貸與規則	V-468
開國504. 6. 8	奏本	軍樂隊設置에 관한 件	I-489
光武 4. 12. 19	勅令第59號	軍樂隊를 設置하는 件	III-264
光武 8. 3. 12	勅令第6號	軍樂1個中隊 設置하는 件	III-582
光武 11. 6. 19	勅令第40號	軍樂隊編制 改正	V-530
建陽 元. 6. 11	勅令第28號	有事한 地方各郡에 砲手를 設置하는 件	II-88
6. 15	軍部令第2號	有事한 地方各郡에 砲手를 設置하는 細則	II-89
光武 2. 7. 2	勅令第23號	砲兵舉行件	II-380
光武 4. 12. 19	勅令第56號	砲兵大隊를 設置하는 件	III-260
光武 9. 4. 14	勅令第31號	砲兵隊編制	IV-112
建陽 元. 2. 1	軍部令第1號	工兵隊處分細則	II-25
4. 19	勅令第18號	工兵輜重兵 廢止에 관한 件	II-74
光武 4. 12. 19	勅令第57號	工兵1中隊를 設置하는 件	III-262
光武 9. 4. 14	勅令第28號	工兵編制	IV-106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2. 2. 9	奏本	軍隊病院을 設置하는 件	II-335
光武 7. 2. 10	勅令第2號	陸軍衛生院官制	III-487
光武 9. 10. 27	勅令第48號	陸軍衛生院官制	IV-412
光武 11. 1. 14	勅令第4號	陸軍衛生院官制 改正	V-397
7. 11	勅令第47號	陸軍衛生院官制 改正	V-582
光武 2. 1. 26	詔勅	京外各隊를 旅團으로 編制하는 件	II-331
光武 6. 8. 18	詔勅	臨時渾成旅團을 編制하는 件	III-437
8. 25	勅令第15號	臨時渾成旅團編制	III-438
9. 20	詔勅	臨時混成旅團을 解放하는 件	III-444
光武 7. 2. 20	詔勅	臨時渾成旅團을 다시 編制하는 件	III-495
2. 28	勅令第5號	臨時渾成旅團編制	III-518
5. 18	詔勅	臨時渾成旅團을 解放하는 件	III-530

3) 武官學校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建陽 元. 1. 11	勅令第2號	武官學校官制	II-5
光武 2. 5. 14	勅令第11號	武官學校官制 改正	II-355
7. 2	勅令第24號	武官學校官制 改正	II-381
8. 31	勅令第34號	武官學校官制 改正	II-401
光武 3. 11. 21	詔勅	武官學校官制 改正	II-584
光武 4. 9. 4	詔勅	武官學校官制 改正	III-147
光武 8. 9. 24	詔勅	陸軍武官學校官制	III-660
隆熙 元. 8. 26	勅令第15號	陸軍武官學校官制	VI-29
光武 8. 9. 24	詔勅	陸軍研成學校官制	III-663
光武 10. 12. 3	勅令第73號	陸軍研成學校官制 改正	V-334
光武 8. 9. 24	詔勅	陸軍幼年學校官制	III-666
開國504. 5. 16	勅令第91號	訓練隊士官養成所官制	I-385
7. 23	勅令第148號	訓練隊士官養成所官制中 改正에 관한 件	I-517
建陽 元. 1. 15	軍部廣告第2號	武官學徒募集令	II-11
光武 2. 4. 3	奏本	武官學校를 實施하는 件	II-351
光武 9. 2. 21	詔勅	參謀部教育部事務를 軍部에서 勾管하는 件	IV-7
光武 11. 3. 22	勅令第18號	陸軍各兵科參尉 見習에 관한 件	V-473
隆熙 3. 7. 30	詔勅	軍부와 武官學校를 廢止하고 現在兵은 宮中	VIII-381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9.15	勅令第77號	에 親衛府를 設置하여 管掌케 하고 士官養成은 日本政府에 委托하는 件 陸軍武官學校廢止時期에 관한 件	VIII-441

4) 軍處務

(1) 一般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504. 4. 1	軍部制定	軍部處務規程	I -301
光武 3. 2.27	軍部令第1號	軍部處務規程 改正	II-446
光武 8.10. 6	軍部令第1號	軍部處務規則	III-684
光武 9. 4. 7	軍部令第1號	軍部處務規程	IV-89
光武 10.10. 3	軍部令第2號	軍部處務規程 改正	V-228
開國504. 1.11	奏本	各城門鎖鑰를 軍務衙門에서 主管하는 件	I -173
9. 5	軍部令第3號	宮城守衛兵服務規則	I -574
高宗 31. 8. 6	議案	相臣·將臣의 出城 經宿에 관한 件	I -84
光武 9.12.15	詔勅	軍人을 政治에 干預치 못하게 하는 件	IV-434
光武 11. 4.22	勅令第29號	陸軍將領尉官及 准士官以下 提燈規則	V-500
開國504.1.29	奏本	各道水陸諸操 및 巡歷巡點의 春秋設行을 亭罷하는 件	I -179
建陽 元. 8.18	勅令第58號	各鎮衛隊 및 地方隊大隊長이 地方官과 交涉하는 體制에 관한 件	II-156
光武 4. 7.17	詔勅	軍人內務書를 中外各隊에 播告하는 件	III-121
光武 10. 8. 3	詔勅	步兵操典을 改正하는 件	V-56
隆熙 2. 8. 1	軍部令第4號	陸軍兵籍規則	VII-126
開國504. 6.25	勅令第135號	陸軍隊附下士兵丁埋葬規則	I -497
8. 2	廣告	軍功調査規例	I -531
10.20	勅令第178號	武官表表式	I -596
光武 11. 6.26	內部告示	水雷發見届出者授賞件	V-544

(2) 兵器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504. 3.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十八)機器局處分法을 마	I -279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閏 5. 3	勅令第110號	련하는 件	I-423
7. 19	奏本	軍器等の 管査에 관한 件 前兵水營・鎭堡・各郡所有軍器를 軍部로 輸 納하는 件	I-517
7. 30	軍部令第2號	舊各營에 屬하였던 馬步將卒의 解放된 者의 軍裝・軍器 等を 收納하는 件	I-529
光武 8. 7. 6	勅令第18號	軍器廠官制	III-615
9. 24	詔勅	軍器廠官制	III-670
光武 9. 3. 1	勅令第26號	軍器廠官制	IV-44
隆熙 2. 5. 22	軍部令第2號	兵器取扱規則	VI-414

(3) 將校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503. 12. 4	勅令第10號	陸軍將官職制	I-128
開國504. 4. 27	勅令第83號	陸軍將校分限令	I-358
光武 8. 9. 24	詔勅	陸海軍將校分限令	III-673
開國504. 4. 27	勅令第84號	軍人現役定限年齡條規	I-360
光武 8. 9. 24	詔勅	陸軍軍人現役定限年齡條規	III-677
高宗 31. 8. 4	議案	將臣은 各府衙協辦을 兼하지 않도록 하는 件	I-83
光武 8. 9. 24	詔勅	陸軍參謀條例	III-658
光武 9. 2. 22	勅令第7號	將官會議所規程	IV-13
隆熙 元. 8. 30	詔勅	無補職武官의 官職名을 解免하는 件	VI-35
隆熙 元. 11. 19	勅令第34號	陸軍將校乘馬令	VI-75
隆熙 2. 2. 14	勅令第8號	陸軍將校乘馬令 改正	VI-268
隆熙 元. 12. 17	軍部令第1號	陸軍將校乘馬令施行規則	VI-147
隆熙 3. 1. 27	軍部令第1號	陸軍將校乘馬令施行規則 改正	VIII-16
4. 19	軍部令第3號	陸軍將校乘馬令施行規則 改正	VIII-226

(4) 懲戒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建陽 元. 1. 24	勅令第11號	陸軍懲罰令	II-20
光武 10. 10. 16	勅令第61號	陸軍懲罰令	V-249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光武 8. 9. 24	詔勅	陸軍軍隊檢閱條例	III-679
隆熙 3. 7. 30	布達第8號	武官 并相當官及 下士卒의 官等俸給·給料· 乘馬本分·服裝及 懲戒에 관한 件	VIII-389

(5) 軍法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光武 4. 7. 21	詔勅	軍法을 校正하는 件	III-123
9. 4	法律第5號	陸軍法律	III-150
光武 5. 2. 12	法律第1號	陸軍治罪規程	III-272
3. 9	元帥府檢査局令第 1號	陸軍治罪細則	III-294
光武 4. 9. 14	詔勅	陸軍法院을 設置하는 件	III-193
9. 18	勅令第33號	陸軍法院官制	III-200
光武 8. 9. 24	詔勅	陸軍法院官制	III-669
光武 5. 2. 12	勅令第2號	陸軍法院處務規則	III-280
3. 9	元帥府檢査局令第 2號	陸軍法院訴訟規程	III-297
隆熙 元. 9. 19	奏本	前陸軍法院 已未決囚 處理에 관한 件	VI-47
光武 4. 9. 18	勅令第34號	陸軍監獄官官制	III-201
光武 5. 2. 12	勅令第3號	陸軍監獄規則	III-281
4. 18	元帥府檢査局令第 3號	陸軍監獄細則	III-309
隆熙 3. 6. 23	奏本	軍人軍屬의 執刑은 普通監獄에서 行하는 件	VIII-288

5) 服裝

(1) 服裝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開國504. 4. 9	勅令第78號	陸軍服裝規則	I-337
光武 2. 12. 30	詔勅	陸軍服裝規則 改正	II-431
光武 4. 7. 2	詔勅	陸軍服裝規則 改正	III-118
光武 7. 11. 19		陸軍服裝規則 改正	III-560
光武 10. 5. 22	勅令第24號	陸軍服裝規則	IV-568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12. 12	勅令第76號	陸軍服裝製式 改正	V-343
隆熙 元. 10. 1	勅令第25號	陸軍服裝規則 改正	VI-51
11. 2	勅令第31號	陸軍服裝製式 改正	VI-67
建陽 2. 5. 15	詔勅	陸軍服裝規則 附陸軍將卒服裝式	II-229
光武 8. 10. 13	詔勅	陸軍將卒服裝製式 改正	III-695
光武 10. 2. 15		陸軍將卒服裝製式 改正	IV-511
開國504. 閏5. 25	勅令第123號	陸軍服裝을 侍衛隊에도 適用하는 件	I-452
8. 6	勅令第152號	陸軍服裝規則을 軍部內 武官及相當官에도 適用하는 件	I-533
8. 16	勅令第156號	陸軍服裝規則을 外國留學軍人에게도 適用하는 件	I-552
9. 6	勅令第165號	陸軍服裝規則適用에 관한 件	I-577
光武 3. 10. 6	奏本	扈衛隊尉官·餉官服裝을 軍部各隊尉官例에 外하는 件	II-575
光武 7. 1. 18	奏本	陸軍將·領·尉官 平常服을 古舊羅地로 製用하는 件	III-481
隆熙 元. 10. 1	勅令第26號	陸軍服裝製式	VI-51
隆熙 2. 2. 14	勅令第9號	近衛騎兵隊下士以下禮服製式	VI-268
光武 9. 10. 14	奏本	軍警兩部の 服裝禮制를 定하는 件	IV-405

(2) 象徴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建陽 元. 8. 15	奏本	親衛·鎮衛及 地方隊大隊長印信 新造의 件	II-155
建陽 2. 1. 18	詔勅	軍部大臣 및 各隊參領 信符를 造成하는 件	II-208
光武 2. 3. 24	詔勅	軍容을 더욱 壯하게 할 것을 軍部に 勸諭하는 件	II-339
6. 29	詔勅	陸海軍 親總에 관한 件	II-377
光武 6. 8. 9	詔勅	各聯隊에 軍旗를 頒給하는 件	III-435

6) 經費

(1) 會計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開國504. 閏5. 24	勅令第119號	陸軍會計官의 區分에 관한 件	I-449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8. 10. 10		陸軍會計官의 區分에 관한 件 改正	III-690
光武 10. 1. 3	軍部令第1號	軍隊經理規程	IV-475
高宗 31. 7. 28	詔勅	內兵曹에서 所管하던 事務와 結束色의 各項 舉行을 宮內府에서 辦理케 하는 件	I-80
11. 1	奏本	前日 內兵曹에서 所管하던 事務는 宮內府로 하여금 辦理케 하는 件	I-111
開國503. 11. 21	勅令第5號	扈衛副將·統衛使·壯衛使·總御使·經理使減 下에 관한 件	I-123
開國504. 9. 24	奏本	前統制營軍民及 屯土 措置에 관한 件	I-584
建陽 元. 8. 15	奏本	前統制營所管 屯土 漁基를 固城地方隊에 仍 屬하는 件	II-155
建陽 2. 3. 10	奏本	各驛田畝을 軍部로 移付하는 件	II-213
3. 16	詔勅	侍衛隊編制·豫算을 軍部·度支部로 하여금 磨鍊케 하는 件	II-215
光武 4. 1. 3	奏本	軍部所管 公廩 및 軍糧錢·土를 斥賣하는 件	III-6
光武 2. 12. 18	詔勅	扈衛隊編制·經費를 軍部各隊例에 따라 操 演하는 件	II-429
光武 7. 5. 9	詔勅	徵上各隊의 俸給·經費를 京隊例에 의하여 施行하는 件	III-529
6. 25	奏本	淸州·大邱·安東·水原·公州隊 兵額에 관 한 件	III-532
光武 9. 4. 16	詔勅	徵上 鎮衛隊將率의 俸給·經費를 京隊例로 施行하는 件	IV-124
光武 7. 9. 12	奏本	軍艦經費에 관한 件	III-552
隆熙 元. 8. 31	勅令第19號	臨時軍用及鐵道用地調査局官制	VI-36
隆熙 2. 2. 7	勅令第7號	臨時軍用及鐵道用地調査局官制	VI-264
隆熙 3. 2. 4	勅令第9號	臨時軍用及 鐵道用地調査局官制 廢止	VIII-30

(2) 俸給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504. 3. 30	勅令第68號	武官並相當官官等俸給令	I-297
光武 4. 12. 22		武官並相當官官等俸給令 改正	III-265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8. 7. 7		武官並相當官官等俸給令 改正	III-617
光武 9. 7. 31	勅令第41號	武官並相當官官等俸給令 改正	IV-365
光武 10. 5. 5	勅令第22號	陸軍武官并相當官官等俸給令 改正	IV-561
隆熙 元. 11. 13	勅令第33號	陸軍武官并相當官官等俸給令	VI-68
開國504. 5. 19	勅令第95號	武藝廳의 給與에 관한 件	I -393
	5. 21 勅令第108號	新設隊將卒의 給料에 관한 件	I -396
閏 5. 25	勅令第122號	侍衛隊給料에 관한 件	I -451
	8. 6 奏本	廢止한 各鎮堡官員의 俸給 措處에 관한 件	I -534
	8. 10 勅令第154號	入學武官本俸支給에 관한 件	I -543
	8. 14 勅令第155號	外國에 留學하는 軍人의 給與에 관한 件	I -550
光武 元. 12. 15	詔勅	親衛·侍衛隊俸給을 우선 各部 官等俸給으로 施行하는 件	II-301
光武 3. 8. 29	詔勅	軍部職員俸給을 元帥府俸給例에 의하여 支給하는 件	II-556
光武 4. 6. 17	奏本	扈衛隊職員表·俸給表 改正	III-100
光武 7. 1. 20	詔勅	侍衛·親衛隊 및 徽上各隊士卒의 月俸을 加給하는 件	III-482
	12. 13 詔勅	元帥府·憲兵隊·侍衛隊·親衛隊·扈衛隊·徽上各隊·巡檢의 月俸을 加給하는 件	III-563
光武 9. 12. 29	勅令第59號	陸軍見習參尉俸給에 관한 件	IV-451
開國504. 5. 20	勅令第96號	訓練隊下士·兵卒의 給料에 관한 件	I -394
光武 10. 5. 5	勅令第23號	下士卒給料 改正	IV-563
光武 11. 4. 22	勅令第28號	下士卒給料 改正	V-499
隆熙 3. 7. 30	布達第9號	武官 恩給에 관한 件	VIII-390
開國504. 5. 16	勅令第90號	陸軍武官進級令	I -383
光武 8. 9. 24	詔勅	陸軍武官進級令	III-675
隆熙 2. 11. 13	內閣告示第25號	統監府告示第188號(軍人軍屬振出通常爲替處理)를 揭布하는 件	VII-487
隆熙 4. 3. 7	內閣告示第18號	統監府告示第21號(軍人軍屬이 振出할 通常爲替處理에 관한 件)를 揭布하는 件	IX-317

6. 警察

1) 官制

(1) 一般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高宗 31. 7. 1	議案	警務官制·職掌을 議定한 뒤 內務衙門에 所屬시키는 件	I-17
7. 14	議案	警務廳官制 職掌	I-38
8. 6	議案	各港警察官을 警務官으로 改稱하여 警務廳으로 移屬하는 件	I-85
8. 6	議案	警察官秩增補	I-85
開國504. 4. 29	勅令第85號	警務廳官制	I-364
7. 12	勅令第137號	警務廳官制中 改正에 관한 件	I-502
光武 6. 2. 16	勅令第3號	警務廳官制	III-352
光武 9. 2. 26	勅令第16號	警務廳官制	IV-28
光武 10. 2. 12	勅令第8號	警務廳官制 改正	IV-504
光武 11. 7. 27	勅令第1號	警務廳官制 改正	V-592
光武 4. 9. 22	勅令第35號	警務官制 改正	III-202
6. 9	詔勅	警部를 設置하는 件	III-92
6. 12	勅令第20號	警部官制	III-92
12. 19	勅令第51號	警部官制 改正	III-255
隆熙 元. 12. 13	勅令第39號	警視廳官制 改正	VI-117
光武 5. 3. 15	詔勅	警部官制를 前警務廳에 의하여 施行하는 件	III-304
12. 27	勅令第65號	警視廳官制 改正	VI-182
隆熙 2. 7. 20	勅令第48號	警視廳官制 改正	VII-56
隆熙 3. 2. 17	勅令第13號	警察廳官制 改正	VIII-61
隆熙 4. 2. 4	勅令第13號	警視廳官制 改正	IX-291
隆熙 4. 6. 30	勅令第34號	警視廳官制 廢止	IX-506
光武 4. 10. 13		警部分課規程	III-219
光武 5. 11. 22	奏本	警衛院分課細則	III-338
光武 9. 4. 15		警務廳分課規程	IV-121
光武 11. 3. 11		警務廳分課規程	V-454

(2) 地方警察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504. 閏5. 10	勅令第113號	仁川·釜山·元山 三港 警務官의 監督에 關한 件	I-437
6. 3	內部令第3號	漢城府外 各府警察官에 關한 規程	I-482
建陽 元. 9. 3	內部令第7號	漢城府外 各府警務官에 關한 規程을 廢止하 는 件	II-165
光武 元. 9. 12	勅令第31號	地方制度中 各開港場警務署 設置에 關한 勅 令 改正	II-280
光武 3. 5. 12	勅令第18號	地方制度中 各開港場警務署設置令 改正	II-478
光武 4. 10. 10	勅令第39號	地方制度中 各開港市場警務署官制 改正	III-218
光武 9. 2. 26	勅令第17號	各開港市場警務署官制	IV-31
光武 10. 7. 6	內部令第5號	地方警務署及 警務分署의 管轄區域	V-5
建陽 元. 1. 8	內閣制定	地方警察規則	II-2
光武 2. 7. 28	內部令第15號	地方警務章程	II-390
光武 10. 9. 14	內部令第9號	地方警務官職務規程	V-148

2) 職務

(1) 一般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高宗 31. 7. 14	議案	行政警察章程	I-41
開國504. 閏5. 5	警務廳訓令第1號	警務廳處務細則	I-425
閏 5. 28	警務廳訓令第4號	警務署處務規程	I-471
建陽 元. 2. 5	內部令第4號	巡檢職務細則	II-38
光武 9. 6. 6	警務廳令第1號	警務廳處務細則 및 警務署處務細則	IV-238
光武 11. 2. 8	警務廳令第6號	警務本廳處務細則·警務署 警務分署處務細則	V-421
光武 10. 10. 1	內部令第10號	各道警務署下에 警務分署·分派所를 開設하 는 件	V-198
光武 11. 2. 20	勅令第8號	警務署廢止에 關한 件	V-429
隆熙 2. 12. 25	內部令第8號	巡檢職務細則·巡檢服務心書 廢止	VII-542
高宗 31. 8. 6	議案	官員이 私私로히 警務廳所屬人員을 招去하 는 것을 禁하는 件	I-85
開國504. 3. 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二十五)各協辦·警務使·總	I-280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6.12	奏本	書의 警衛巡檢을 廢止하는 件 警務廳에 頒給한 鎗丸을 軍部에 還交하는 件	I-491
4.27	奏本	巡檢으로 洋鎗擊射를 肄習하는 件	I-361
建陽 元. 1.11	內閣制定	警務官吏陞差內規	II-10
光武 元. 9. 4	詔勅	警務使信符를 造成하는 件	II-275
光武 2. 7.22	內部令第13號	賞詞規程	II-386
光武 10. 7. 4	內部令第3號	巡檢敎習規則	V-1
8.25	內部令第8號	各道觀察使·牧使·府尹·郡守·警務官·主事· 總巡赴任에 관한 規程	V-81
光武 10.12.29	勅令第82號	警察官吏及監獄官吏提燈規制	V-384
隆熙 3. 5.21	法部訓令第5號	外國人에 관한 司法警察事務處理心得	VIII-258
5.22	法部訓令第6號	司法警察官執務規程에 관한 書式을 別冊으로 定하는 件	VIII-261
開國503.12.10	勅令第13號	巡檢懲罰例	I-131
隆熙 2. 1.22	內部令第1號	巡查懲罰令	VI-237

(2) 管轄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高宗 31.12.10	奏本	警務副使를 減下 警務官·總巡의 增置 및 三品警務官 設置에 관한 件	I-130
開國504. 3.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二十四)各大臣警衛巡檢 數를 제한 하는 件	I-280
光武 元. 9.12	勅令第32號	各府郡에 別巡校 廳使를 增置하는 件	II-281
光武 2. 4.14	勅令第10號	警務廳官制中 總巡을 增額하는 件	II-352
光武 10. 6.19	勅令第30號	地方十三道各觀察府警務署及分署設置에 관한 件	IV-586
7. 6	內部令第4號	地方警務署下에 警務分署를 設置하는 件	V-4
10. 1	內部令第11號	各道警務署·分署·分派所 管轄區域	V-208
光武 11. 6.30	內部令第3號	各道警務署·同分署·同分派所의 管轄區域 및 警察官吏 配置定員에 관한 件	V-550
隆熙 元.12.27	內部令第4號	警察區劃 改正	VI-198
隆熙 2. 6.15	內部令第3號	警察署·警察分署·巡查駐在所 名稱·位置·	VI-446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7.20	內部令第4號	管轄區域表 改正 警察署·警察分署·巡查駐在所 名稱·位置·	VII-58
隆熙 3. 1.22	內部令第1號	管轄區域 改正 警察署 警察分署 巡查駐在所의 名稱 位置及	VIII-7
10.27	內部令第10號	管轄區域表 改正 警察署·警察分署·巡查駐在所의 名稱·位置·	VIII-532
隆熙 4. 5. 2	內部令第9號	管轄區域表 改正 警察署·警察分署·巡查駐在所의 名稱·位置·	IX-422
建陽 元. 5.30	奏本	甲山府警務官以下制置停止에 관한 件	II-85
光武 5. 2.16	勅令第5號	咸鏡北道邊界에 警務署를 設置하는 件	III-288
光武 8. 9.26	奏本	龍川港·義州開市場警務署를 設置하는 件	III-681

(3) 費用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隆熙 2.12.17	內部令第7號	巡查配置請願規則	VII-535
12.17	內部告示第44號	請願巡查費用	VII-537
隆熙 3. 2.20	內部告示第8號	請願巡查配置 費用에 관한 件	VIII-88
隆熙 4. 6.30	勅令第36號	警察費用에 관한 件	IX-508

3) 服務

(1) 任用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高宗 31. 7.26	議案	各管發巡을 停罷하는 件	I-79
建陽 元. 1.13	奏本	廢止한 扈衛軍官 虎賁衛及 武藝廳을 巡檢으 로 移屬하는 件	II-11
開國504. 6. 3	勅令第128號	各府巡檢定員에 관한 件	I-480
8. 8	內部令第7號	巡檢採用規則	I-535
光武 4. 9.10	警部令第1號	巡檢選用規則	III-192
隆熙 元.12.27	內部令第6號	巡查採用規則	VI-211
隆熙 3. 5. 3	內部訓令第76號	巡查考試規程	VIII-243
隆熙 元.10. 2	勅令第27號	警察官吏를 定員外에 臨時任用에 관한 件	VI-59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10. 30	勅令第29號	警察官吏任用에 관한 件	VI-66
12. 27	勅令第66號	總巡·權任·巡檢을 警部·巡查로 任用하는 件	VI-182
隆熙 3. 5. 1	勅令第57號	警察官特別任用令	VIII-242
光武 6. 9. 16	奏本	警衛院警務官分限及 任免規程	III-443
光武 9. 6. 25	奏本	警務顧問補佐職員을 設置하는 件	IV-294
6. 25	奏本	警務顧問所屬補佐人員을 各道에 配置하는 件	IV-294
光武 10. 7. 6	內部令第6號	地方警務署의 配置及 定員	V-6
10. 1	內部令第12號	各道警務署·分署·分派所警察官吏配置定員	V-217
11. 10	內部令第14號	地方警務分署名稱·定員表 改正	V-320
光武 11. 1. 31	內部令第16號	地方警務署及 同分署의 管轄區域及 配置定員을 添入 改正하는 件	V-410

(2) 俸給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504. 6. 3	勅令第129號	各府巡檢의 俸給에 관한 件	I-481
建陽 元. 8. 10	勅令第51號	各府巡檢定員·各府巡檢俸給의 施行을 廢止하는 件	II-146
光武 10. 1. 1	警務廳令第3號	巡檢俸給規程	IV-473
2. 26	內部令第1號	各道及各市港警務署巡檢의 俸給規程	IV-513
隆熙 元. 12. 27	內部令第5號	巡查給與令	VI-210
隆熙 2. 9. 9	內部令第5號	巡查給與令 改正	VII-318
隆熙 3. 5. 22	內部令第4號	巡查給與令 改正	VIII-261
隆熙 4. 4. 22	內部訓令第53號	巡查精勤證書授與規則	IX-413
6. 30	勅令第37號	日本警察官署職員給與에 관한 件	IX-509
開國504. 閏5. 10	勅令第112號	警務償與令	I-434
10. 20	勅令第179號	警官表喪式	I-598
建陽 元. 4. 19	勅令第19號	巡檢·看守死傷恤金規則	II-75
光武 5. 3. 8	勅令第9號	咸鏡北道邊界警務署俸給及經費에 관한 件	III-293
隆熙 元. 12. 27	內部令第7號	巡查給與品及貸與品規則	VI-213
光武 10. 7. 25	內部令第7號	警務廳及各地方警務署의 權任·巡檢·雇員·使隸의 旅費支給規程	V-51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11. 2. 5	內部令第2號	警務廳及 各地方警務署의 權任·巡檢·雇員·使隸의 旅費支給規程	V-419
光武 10. 11. 23	內部令第15號	權任·巡檢의 給與品及貨與品支給規程	V-332
12. 10	內部令第16號	警務出張員日額旅費支給規程	V-336

4) 服裝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504. 4. 19	勅令第81號	警務使以下の 服制에 관한 件	I-350
開國504. 6. 3	勅令第130號	各府警務官以下の 服制에 관한 件	I-481
建陽 2. 1. 14	勅令第7號	警務使以下 服制을 改正 添入하는 件	II-204
光武 3. 3. 18	勅令第6號	警務使·警務官의 禮帽·禮裝에 관한 件	II-447
光武 3. 3. 26	勅令第9號	警務使·警務官·總巡服裝 改正	II-454
光武 9. 7. 22	勅令第39號	警務使以下總巡禮帽及 禮裝製式 改正	IV-321
7. 22	勅令第40號	警務使以下常帽·常裝 및 夏服製式 改正	IV-332
光武 11. 3. 19	勅令第10號	警務使以下禮帽及禮裝式 改正	V-458
3. 19	勅令第11號	警務使以下看守長常帽 常裝及 夏服製式 改正	V-465
光武 4. 10. 10	勅令第37號	警部大臣以下 本部 및 各港口警務官總巡과 各觀察府總巡의 禮帽의 禮裝을 變通하는 件	III-210
10. 10	勅令第38號	警部大臣以下 本部 및 各港口警務官總巡과 各觀察府總巡의 常帽 및 常裝을 變通하는 件	III-214
光武 7. 8. 3	勅令第11號	警務使以下 各觀察府總巡의 禮帽及 禮裝을 警部服製에 依하여 參互 變通하는 件	III-428
光武 6. 8. 3	勅令第12號	警務使以下 各觀察府總巡의 常帽及 常裝을 警部服製에 依하여 參互 變通하는 件	III-431
隆熙 元. 10. 15	勅令第28號	警視總監及 警視副監禮帽禮裝에 관한 件	VI-61

(3) 所有權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10.10.16	法律第6號	土地·建物の 賣買·交換·讓與·典當에 관한 件	V-246
光武 11. 4. 9	法部訓令	土地家屋 賣買 典當의 證明處理順序圖式	V-485
隆熙 3. 8.16	漢城府告諭第1號	不動產所有權의 賣買·贈與·交換·典當등 證明手數料에 관하여 注意를 要하는 件	VIII-403
光武 10.12.26	勅令第80號	土地家屋典當執行規則	V-378
光武 11.29	法部令第2號	土地家屋典當執行規則 施行에 관한 細則	V-406
隆熙 2. 7.16	勅令第47號	土地家屋所有權證明規則	VII-52
	7.25 法部令第14號	土地家屋所有權證明規則施行細則	VII-115
	4.22 法部告示第3號	土地家屋證明簿 滅失 各郡에 대하여 家屋證明을 再發行하는 件	VI-398
隆熙 3.10.28	勅令第95號	土地家屋證明事務에 관한 件	VIII-555
光武 10.10.26	勅令第65號	土地家屋證明規則	V-291
隆熙 元.12.27	勅令第77號	土地家屋證明規則 改正	VI-195
光武 10.11. 2	法部令第4號	土地家屋證明規則施行細則	V-300
	11. 9 法部訓令	土地家屋證明規則·施行細則 實施에 관한 件	V-318
光武 11. 2. 7	法部訓令	土地家屋證明事務處理順序	V-431
光武 11. 3. 6	法部令第3號	土地家屋證明에 관한 認證手數料는 統首·洞長의 所得에 屬하는 件	V-450
	3. 7 法部訓令	土地家屋證明規則施行細則의 認證帳簿 記載에 관한 件	V-451
光武 11. 4.30	法部訓令	土地家屋證明規則注意書	V-501

(4) 土地調查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隆熙 4. 8.23	法律第7號	土地調查法	IX-572
	8.23 度支部令第26號	土地調查法施行規則	IX-576
	8.24 土地調查局告示第2號	土地申告心得	IX-585
	8.24 土地調查局告示第3號	地主總代心得	IX-588
	3.14 勅令第23號	土地調查局官制	IX-341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3. 15	度支部訓令第32號	土地調查局分課規程	IX-344
8. 23	勅令第43號	高等土地調查委員會規則	IX-573
8. 23	勅令第44號	地方土地調查委員會規則	IX-574
8. 22	土地調查局告示第1號	土地調查局 大邱·全州·平壤·咸興 出張所를 設置하는 件	IX-571
8. 24	土地調查局告示第4號	京畿道富平郡·陽川郡·金浦郡·通津郡·慶尙北道大邱郡 土地所有者的 申告에 관한 件	IX-589
隆熙 元. 12. 13	勅令第50號	土地測量事務從事 臨時職員 增置에 관한 件.	VI-136
隆熙 4. 6. 1	度支部訓令第62號	土地測量·調查吏員에 對하여 便宜를 供與하는 件	IX-485
3. 22	學部告示第7號	官立漢城外國語學校에 臨時土地調查技術員養成所를, 官立漢城高等學校에 臨時土地調查事務員養成所를 附設하는 件	IX-354
隆熙 3. 5. 31	度支部訓令第65號	土地測量으로 因하여 欺瞞當하는 일이없도록 하는 件	VIII-270
隆熙 4. 2. 1	京畿道令第1號	土地測量業者團束規則	IX-283
2. 1	全羅北道令第1號	土地測量業者取締規則	IX-284
2. 15	江原道令第2號	土地測量業者取締規則	IX-297

3) 家族法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高宗 31. 6. 28	議案	奉養하는 舊典을 申明하는 件	I -15
6. 28	議案	早婚을 禁하는 件	I -15
隆熙 元. 8. 14	詔勅	早婚 禁止에 관한 件	VI-10
高宗 31. 6. 28	議案	寡女의 再嫁를 그 自由에 맡기는 件	I -15
開國504. 4. 19	奏本	謀逆罪人 去姓하는 例를 廢止하는 件	I -355
建陽 元. 9. 1	勅令第61號	戶口調查規則	II-163
光武 3. 7. 7	勅令第31號	戶口調查規則 改正	II-524
建陽 元. 9. 3	內部令第8號	戶口調查細則	II-166
隆熙 3. 3. 4	法律第8號	民籍法	VIII-120
3. 20	內部訓令第39號	民籍法執行心得	VIII-157

2. 商事法

1) 一般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高宗 31. 7. 10	議案	米穀의 流通을 禁阻하지 않도록 各道에 行會하는 件	I-26
9. 3	議案	官用物價의 支定하는 例를 革罷하는 件	I-100
10. 1	議案	各港口에서의 權利의 幣를 禁斷하는 件	I-109
開國504. 3. 4	奏本	農商衙門에 暫屬하였던 商理局을 革罷하여 負祿商의 作業을 隨便行止케 하는 件	I-183
3. 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十二)六矣廳을 解除하고 各貢契價·進排物價等の 幣를 없애는 件	I-278
光武 2. 7. 7	農商工部告示	商民의 作幣를 禁하는 件	II-386
11. 2	法律第1號	典當舖規則	II-412
光武 3. 2. 6	法律第1號	典當舖規則 改正	II-442
光武 2. 11. 10	農商工部令第31號	典當舖細則	II-419

2) 會社法關係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高宗 31. 7. 24	議案	米商會社設立에 관한 件	I-77
9. 3	議案	宮內部에서 進共會社를 設置하는 件	I-100
開國504. 4. 14	農商工部告示第1號	各會社로부터 官許章程과 商業憑票를 還收하는 件	I-345
11. 10	法律第17號	商務會議所規例	I-611
光武 2. 11. 22	奏本	民人에게 許可한 商務規則을 革罷 還收하는 件	II-423
光武 3. 5. 12	勅令第19號	商務會議所規則 改正	II-478
光武 8. 2. 28	奏本	商務社를 革罷하는 件	III-574
3. 12	勅令第8號	商務會議所規例改正件 廢止	III-584
光武 9. 9. 4	度支部令第14號	共同倉庫會社章程	IV-395
光武 10. 10. 16	勅令第62號	各種 認許의 効力·期限에 관한 件	V-255
隆熙 4. 4. 14	勅令第28號	度支部所屬官吏로 하여금 在官한채로 朝鮮 海水産組合에 廳聘케 하는 件	IX-405
隆熙 2. 8. 26	法律第22號	東洋拓殖株式會社法	VII-270
隆熙 4. 4. 15	法律第4號	東洋拓殖株式會社法 改正	IX-406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隆熙 2. 9. 8	農商工部認可	東洋拓殖株式會社定款	IX-458
隆熙 4. 5. 21	農商工部認可	東洋拓殖株式會社定款 變更	IX-457
隆熙 2. 9. 3	勅令第65號	東洋拓殖株式會社設立委員 旅費에 관한 件	VII-314
10. 15	農商工部告示 第13號	東洋拓殖株式會社에 準用할 日本國法規(商 法·非訟事件手續法·商業登記取扱手續·登錄 稅法·登錄稅法施行規則·商事非訟事件印紙 法·不動產及商業登記簿謄本抄本請求等事 手 數料額)를 告示하는 件	VII-410

3) 어음·手票法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10. 11. 13	勅令第71號	手形條例	V-326
隆熙 2. 10. 15	勅令第73號	手形條例追加에 관한 件	VII-409
光武 9. 9. 30	度支部令第15號	約束手形條例	IV-401
光武 10. 2. 23	度支部令第2號	約束手形條例 改正	IV-512
光武 9. 9. 30	度支部令第16號	手形組合條例	IV-404
光武 11. 3. 7	度支部令第9號	手形用紙製造와 賣下에 관한 件	V-450
隆熙 2. 7. 25	度支部令第26號	手形用紙製造並賣下에 관한 件 改正	VII-114
隆熙 4. 7. 12	內閣告示第80號	統監府告示第143號(當座勘定口振替를 請求 할 수 있는 銀行 指定)를 掲布하는 件	IX-513

3. 民事節次法

1) 一般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高宗 31. 8. 28	議案	掖隸 및 各府衙·各宮所屬兵丁中 民事·刑 事犯處理에 관한 件	I-98
開國503. 12. 12	奏本	社債中 文憑이 없는 者는 廳理를 許諾치 아 니하는 件	I-154
開國504. 閏5. 28	法部令第6號	漢城·開港場·地方裁判所의 民刑事事件 審 理中 指令을 請하여 行하는 件	I-470
光武 4. 4. 27	奏本	山訟事件을 民事로 廳審하는 件	III-84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光武 11. 4. 11	法部令第4號	申訴事件處理規則	V-486
開國503. 12. 10	奏本	地方官制를 改定하기 前까지는 內部的 訴訟을 當分間 漢城府尹으로 하여금 聽理케 하는 件	I-130
開國504. 4. 29	法律第7號	監營·留守營 及 其他地方裁判의 上訴를 高等裁判所에서 受理 審判하는 件	I-363
隆熙 2. 7. 23	法律第20號	民事訴訟期限規則	VII-94
光武 10. 11. 13	勅令第70號	民事訴訟手數料規則	V-324
隆熙 2. 10. 29	勅令第75號	民事訴訟手數料規則 改正	VII-469
隆熙 元. 8. 19	勅令第8號	民事訴訟費用規則	VI-14
10. 30	勅令第30號	民事訴訟費用規則 改正	VI-66
隆熙 2. 10. 29	法律第28號	民事訴訟費用規則 改正	VII-467
隆熙 3. 4. 13	法律第15號	民事證據調查費用에 관한 件	VIII-205
開國504. 7. 17	法部令第8號	執行處分規則	I-507
隆熙 2. 10. 15	法律第26號	非訟事件手續規則	VII-405
12. 26	法部令第20號	債務者의 留置費用에 관한 件	VII-544
隆熙 3. 4. 16	法部訓令第4號	未決囚 已決囚及 民事留置人食糧規程	VIII-210

2) 民刑事訴訟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開國504. 3. 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四十三)民事와 刑事를 區分하는 件	I-284
4. 29	法部令第3號	民刑訴訟規程	I-367
建陽 元. 4. 25	法部令第2號	民刑訴訟規程 改正	II-79
開國504. 閏5. 3	法部令第4號	民刑訴訟의 節次에 관한 件	I-424
光武 11. 6. 27	法律第1號	民事·刑事의 訴訟에 관한 件	V-545
隆熙 3. 10. 28	法律第31號	民事·刑事의 訴訟에 관한 件 廢止	VIII-547
隆熙 2. 7. 13	法律第13號	民刑訴訟規則	VII-25
隆熙 3. 10. 28	法律第34號	民刑訴訟規則 改正	VIII-548
建陽 元. 10. 17	法部訓令	民刑事訴訟却下節次에 관한 件	II-191

IV. 刑事法

1. 刑法

1) 一般刑法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高宗 31. 7. 2	議案	賊律의 舊典을 申明하는 件	I-19
8.22	議案	犯人子孫 등을 官員으로 通用하는 件	I-95
建陽 元. 4. 1	法律第2號	賊盜處斷例	II-52
4.10	法律第4號	賊盜處斷例 改正	II-71
光武 4. 1. 11	法律第1號	賊盜處斷例 改正	III-7
光武 5. 12. 12	法律第2號	賊盜處斷例 改正	III-344
建陽 2. 7. 17	內部令第10號	各地方賊盜細則	II-271
光武 3. 1. 15	詔勅	幾甸의 窃盜를 禁戢하는 件	II-436
光武 7. 7. 2	奏本	窃盜 禁戢에 관한 件	III-533
開國504. 1. 5	內務衙門令第1號	自主獨立을 妨害하는 者를 不道國賊으로 處罰하는 件	I-159
光武 2. 12. 21	詔勅	國外亡命者를 永久히 赦하지 않는 件	II-430
11. 22	法律第2號	依賴外國致損國體者處斷例	II-422
光武 4. 4. 28	法律第4號	依賴外國致損國體者處斷例 改正	III-84
9. 29	法律第7號	依賴外國致損國體者處斷例 改正	III-209
光武 8. 4. 6		依賴外國致損國體者處斷例 改正	III-593
光武 9. 4. 29	詔勅	刑法大全을 頒示하는 件	IV-130
4. 29	法律第2號	刑法	IV-130
光武 10. 2. 2	法律第1號	刑法大全 改正	IV-501
隆熙 2. 7. 23	法律第19號	刑法大全 改正	VII-78

2) 特別刑法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高宗 31.10. 1	議案	官員의 贓錢 責納에 관한 件	I -109
開國504. 閏5. 28	法部訓令第1號	官員의 職權上의 私罪에 관한 件	I -471
10. 7	法部訓令第3號	法部訓令第1號를 廢止하는 件	I -595
光武 8. 6. 14	詔勅	公錢愆滯官員의 處辦에 관한 件	III-610
6. 29	奏本	公錢愆滯官員의 處辦에 관한 件	III-611
光武 9. 4. 29	法律第3號	公貨欠逋人處斷例	IV-231
10. 27	法律第4號	公貨欠逋人處斷例 改正	IV-409
隆熙 2. 7. 23	法律第16號	公貨欠逋人處斷例 廢止	VII-77
建陽 元. 9. 23	法律第9號	郵遞事項犯罪人處斷例	II-174
建陽 2. 7. 13	法律第1號	郵遞事項犯罪人處斷例	II-267
光武 4. 11. 3	法律第8號	郵遞事項犯罪人處斷例 改正	III-233
建陽 元. 8. 7	法律第6號	電報事項犯罪人處斷例	II-133
光武 4. 1. 23	法律第3號	鐵道事項犯罪人處斷例	III-24
光武 11. 7. 27	法律第2號	保安法	V-591
建陽 元. 9. 3	法律第5號	銃砲及火藥類團束法	VI-39
建陽 2. 4. 13	警視廳告諭第2號	銃獵者 發砲 단속에 관한 件	VI-373

2. 刑罰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高宗 31.12.10	奏本	笞·杖·徒·流를 懲役으로 代置하는 件	I -131
開國504. 11. 6	法部令第10號	刑名簿表式	I -606
建陽 元. 4. 4	法律第3號	刑律名例	II-67
6. 17	法律第5號	刑律名例 改正	II-90
光武 3. 5. 22	法律第2號	刑律名例 改正	II-480
光武 4. 9. 29	法律第6號	刑律名例 改正	III-208
光武 4. 1. 11	法律第2號	刑律名例 改正	III-9
開國504. 4. 29	法律第6號	懲役處斷例	I -362
高宗 31. 11. 12	法務衙門制定	懲役表	I -112
光武 11. 4. 18	法部訓令	已決·未決囚徒表 施行에 관한 件	V-490
開國504. 4. 16	法律第4號	流刑分等과 加減例에 관한 件	I -347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閏 5.20	奏本	各裁判所 刑罰酌減하는 件	I-447
4.16	法律第5號	特別法院에서 刑罰을 酌減하는 件	I-348
高宗 31. 7. 9	議案	罪人을 訊問함에 있어 拷刑을 禁하는 件	I-25
光武 11. 6. 27	法律第2號	訊問刑에 관한 件	V-546
高宗 31. 6. 28	議案	緣坐律을 勿施하는 件	I-15
8.16	議案	犯人子孫 등을 官員으로 通用하는 件	I-92
開國503.12.16	勅令第25號	冤罪人을 放送하고 身死者를 復官하는 件	I-152
12.13	奏本	刑具를 制限하는 件	I-154
12.27	勅令第30號	處斬·凌律을 廢止하되 用紋 用砲하는 件	I-157
開國504. 3.18	奏本	近地定配는 勿施하며 私罪는 罰金·免職·監禁·島配·懲役·死刑에 付하고 笞杖을 收贖하는 件	I-190
3.29	奏本	公罪外는 功議에 付하는 例를 廢하는 件	I-289
10. 6	法律第16號	部令·警務廳令·府令에 附하는 罰則의 制限에 관한 件	I-589
建陽 元. 5. 2	法部訓令	拘留人을 速決하여 久滯치 못하게 하는 件	II-79

3. 刑事節次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高宗 31. 7. 8	議案	司法官의 裁判없이 罪罰을 加하지 못하는 件	I-23
9.11	議案	重罪의 決案은 法司의 公判을 거치도록 하는 件	I-102
開國504. 3.29	奏本	罪犯을 勸處할 때 議處에 照律을 兼하게 하는 件	I-289
高宗 31. 7. 2	議案	各府·各衙門·各軍門의 逮捕·施刑을 不許하는 件	I-19
9. 3	議案	各府衙門·軍門에서 함부로 逮捕·施刑하지 못하게 하는 件을 各宮에 適用하는 件	I-100
開國503.12.16	奏本	高等罪의 審理는 大臣 或은 協辦이 主管하고 輕罪의 裁判은 參議가 聽理케 하는 件	I-153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高宗 31. 8. 28	議案	公罪人の 議處에 관한 件	I -97
開國504. 5. 20	法律第8號	勅·奏任官의 犯罪를 受理 審判하는 件	I -393
5. 26	勅令第106號	犯罪한 文武官員에 있어서 議親과 公罪外에 는 奏請하는 例를 廢止하는 件	I -407
高宗 31. 7. 28	議案	大小官員犯罪者의 押來·押送에 관한 件	I -80
建陽 元. 2. 4	法部訓令	警務官의 檢事職務 代行을 禁止하는 件	II-37
8. 27	法部指令	罪囚의 訊問·被告의 拿致는 巡檢이, 參證 人의 招引은 廷吏가 施行하는 件	II-160
隆熙 2. 7. 23	勅令第53號	未決囚及已決囚押送規則	VII-101
隆熙 3. 10. 28	勅令第90號	未決囚及 已決囚押送規則 廢止	VIII-553
隆熙 2. 10. 8	法律第24號	刑事裁判費用規則	VII-400
隆熙 3. 10. 28	法律第35號	刑事裁判費用規則 改正	VIII-549
隆熙 2. 7. 23	勅令第52號	警察留置場의 留置·拘留·刑罰執行에 관한 件	VII-100
7. 31	法部訓令第6號	警察留置場의 留置·拘留·刑罰執行에 관한 件의 施行에 관한 件	VII-125
隆熙 3. 10. 28	勅令第92號	警察署留置場에서 行하는 留置·拘留及 刑 罰執行에 관한 件 廢止	VIII-554
4. 17	法部令第2號	司法警察官執務規程	VIII-211

4. 行刑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開國503. 11. 25	法務衙門制定(?)	監獄規則	I -126
光武 2. 1. 12	勅令第3號	監獄規則	II-324
隆熙 3. 10. 28	勅令第91號	監獄規則 廢止	VIII-553
光武 2. 1. 19	內部令第11號	監獄細則	II-327
高宗 31. 7. 22	議案	典獄을 警務廳에 付屬시키는 件	I -67
隆熙 元. 12. 13	勅令第52號	監獄官制	VI-137
隆熙 3. 2. 18	勅令第15號	監獄官制 改正	VIII-69.
10. 28	勅令第89號	監獄官制 廢止	VIII-553
隆熙 元. 12. 27	法部令第1號	京城監獄署를 設置하는 件	VI-215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504. 4. 24	勅令第82號	各地方에 監獄署를 設置하는 件	I-356
隆熙 2. 4. 11	法部令第2號	監獄位置·名稱	VI-372
4. 25	法部令第3號	看守部長 設置件	VI-402
7. 13	法部令第10號	監獄事務開始期에 관한 件	VII-45
11. 20	法部令第19號	監獄分監 設置	VII-488
隆熙 3. 2. 22	法部告示第12號	平壤監獄義州分監의 事務를 開始하는 件	VIII-91
2. 26	法部告示第15號	咸興監獄元山分監·鏡城分監의 事務를 開始하는 件	VIII-109
3. 5	法部告示第17號	公州監獄清州分監의 事務開始	VIII-123
隆熙 2. 10. 21	法部告示第8號	京城監獄 移轉	VII-462
隆熙 3. 2. 13	法部告示第8號	京城監獄仁川分監의 事務를 開始하는 件	VIII-46
2. 22	法部告示第14號	京城監獄春川分監의 事務를 開始하는 件	VIII-92
2. 17	法部告示第10號	晋州監獄釜山分監 光州監獄 全州分監의 事務를 開始하는 件	VIII-62
隆熙 2. 5. 25	法部令第5號	判任待遇監獄職員給與令	VI-440
7. 23	法部訓令第5號	看守以下給與品支給規程	VII-107
6. 19	法部令第7號	判任待遇監獄職員의 定員	VI-480
10. 20	法部令第15號	判任待遇監獄職員定員 改正	VII-460
隆熙 3. 1. 21	法部令第1號	判任待遇 監獄職員定員 改正	VIII-7
3. 26	法部訓令第2號	教誨師以下旅費規程	VIII-166
隆熙 2. 9. 9	法部訓令第7號	賄料支給件	VII-319
5. 12	法部令第4號	看守及女監取締職務規程	VI-409
6. 18	法部令第6號	看守採用規則	VI-478
隆熙 2. 6. 17	勅令第33號	監獄官服制及提燈·徽章制定件	VI-461
6. 23	法部令第8號	監獄官服裝規則	VI-487
隆熙 3. 10. 28	勅令第93號	監獄官服制及 提燈徽章制定의 件 廢止	VIII-554
光武 11. 7. 20	內部令第4號	監獄引繼廢止及 拘留에 관한 件	V-586
建陽 元. 12. 6	勅令第6號	地方各道の 罪囚食費·被服費·押牢給料·罪囚埋葬費 豫算에 관한 件	II-195
隆熙 2. 6. 15	法部訓令第1號	在監人領置金品處理規程	VI-451
6. 20	法部訓令第2號	監獄傭人給與品及貸與品規程	VI-481
6. 23	法部令第9號	看守·女監取締給與品及貸與品規則	VI-488
建陽 3. 2. 16	法部訓令第1號	在監人身分帳·在監人名簿·入監簿·出監簿·	VIII-47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隆熙 3. 4. 8	法部訓令第3號	滿期曆簿·終身刑者登記簿·死亡帳·書信簿· 接見簿·諸願簿·健康診斷簿調治簿·共犯名簿· 懲罰簿·民事留置人名簿을 定하는 件 在監人名簿表	VIII-196

V. 司法

1. 法部

1) 官制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高宗 31. 7. 28	議案	法務衙門官制增補	I -81
開國504. 3. 25	勅令第45號	法部官制	I -210
建陽 元. 8. 15	勅令第56號	法部官制 改正	II-154
光武 3. 5. 30	勅令第26號	法部官制 改正	II-494
光武 4. 1. 11	勅令第1號	法部官制 改正	III-10
光武 9. 2. 26	勅令第20號	法部官制	IV-37
隆熙 元. 12. 13	勅令第51號	法部官制 改正	VI-136
隆熙 3. 10. 28	勅令第85號	法部官制 廢止	VIII-551
光武 8. 1. 13	法律第1號	平理院官制 改正	III-571
開國504. 3. 25	內閣制定	法部分課規程	I -225
光武 3. 6. 15	議政府制定	法部分課規程	II-501
光武 9. 4. 14		法部分課規程	IV-115
隆熙 2. 3. 7		法部分課規程	VI-298
4. 7		法部分科規程 改正	VI-365

2) 事務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開國504. 3. 25	勅令第50號	裁判所處務規程通則	I -218
光武 11. 1. 5	法部令第1號	地方裁判所處務細則	V-392
光武 3. 11. 10	法部訓令	開港場裁判所判事を 例兼하는 各港府尹의 所管地方令案은 該港警務官으로 하여금 初檢事務를 擔當케 하고 覆檢以上은 該管下郡守로 하여금 擔當케 하는 件	II-583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11.10	法部訓令	開港場裁判所判事を 例兼하는 各港府尹의 所管地方命案은 該港警務官으로 하여금 初檢事務를 擔當케 하고 覆檢以上은 該管下郡守로 하여금 擔當케 하는 件	II-583
隆熙 2. 7.22	法部令第12號	裁判所及檢査局處務規程	VII-75
開國504. 4. 15	法部令第2號	檢事職制	I-346
閏 5.10	法律第10號	高等裁判所に 豫備判事を 置하는 件	I-434
隆熙 2.11.10	法部訓令第8號	裁判所及監獄會計處務規程	VII-488
10.30	度支部告示第17號	法部所管 會計事務를 度支部에서 取扱하는 件	VIII-558
開國504. 4.10	法部告示第1號	裁判用紙에 관한 件	I-344
建陽 元.10.12	法部訓令	法부와 各裁判所間의 往來文牒은 接受簿를 만들어 報告케 하는 件	II-188
光武 3. 5.22	勅令第22號	開港場 및 地方裁判所判事事務處署理에 관한 件	II-483
光武 11. 3.22	勅令第19號	各地方及港市裁判所判事 事務署理에 관한 件	V-474
隆熙 元. 8.19	勅令第7號	各地方及港市裁判所判事·檢事事務 署理에 관한 件 改正	VI-13
隆熙 4. .3.19	內閣印刷局公告	統監府裁判所登記公告料의 件	IX-352
隆熙 2. 7.20	法部令第11號	各裁判所 開廳期日	VII-71
7. 3	法部告示第5號	忠淸北道裁判所·平安北道裁判所를 移轉하는 件	VII-3

3) 管轄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高宗 31. 7.24	議案	漢城府所管訴訟을 警務廳으로 移付하는 件	I-78
開國504. 6. 1	法部訓令第2號	各府觀察使·參書官·郡守가 判檢事事務를 執行하는 件	I-474
建陽 元. 1.12	法部令第1號	開國504年 法部訓令第2號를 廢止하는 件	II-11
1.11	勅令第5號	各郡郡守로 該管內訴訟을 聽理케 하는 件	II-9
6.25	勅令第29號	各郡郡守의 該管內 訴訟 聽理하는 件 改正	II-92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建陽 元. 8. 15	勅令第57號	各郡郡守의 該管內 訴訟을 聽理하는 件 改正	II-155
1. 28	法部訓令	郡內訴訟에 不服하는 刑事上 上訴는 該府警務官補로 하여금 檢事의 職務를 代行케 하는 件	II-24
8. 15	法律第8號	監營 留守營及 其他地方裁判所의 上訴를 高等裁判所에서 受理 審判하는 件 改正	II-152
9. 14	法部訓令	京畿道管下各郡 民刑事事件의 質報는 漢城裁判所로 直報하는 件	II-172
10. 13	法部訓令	判決한 案件은 다시 受理審判하지 못하게 하는 件	II-188
10. 13	法部訓令	高等裁判所에서 判決한 案件을 다시 下部裁判所에서 受理 審判하지 못하게 하는 件	II-189
12. 26	法部訓令	郡과 道の 裁判을 거치지 아니하고 高等裁判所に 直訴함을 禁止하는 件	II-199
12. 26	法部訓令	郡과 道の 裁判을 거치지 아니하고 高等裁判所に 直訴함을 禁止하는 件	II-199
光武 2. 7. 27	奏本	各地方捕捉賊徒를 該地方裁判所에서 裁處하는 件	II-390

2. 裁判所

1) 一般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503. 12. 26	奏本	法務衙門權設裁判所 設置에 관한 件	I -153
開國504. 3. 25	法律第1號	裁判所構成法	I -190
建陽 元. 8. 15	法律第7號	裁判所構成法 改正	II-151
光武 3. 5. 30	法律第3號	裁判所構成法 改正	II-487
10. 10. 26	法律第7號	裁判所構成法 改正	V-289
隆熙 元. 12. 23	法律第8號	裁判所構成法	VI-160
隆熙 2. 9. 23	法律第17號	裁判所構成法 改正	VII-78
隆熙 3. 10. 28	法律第28號	裁判所構成法 廢止	VIII-546
隆熙 元. 12. 23	法律第9號	裁判所構成法施行法	VI-165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3. 10. 28	法律第29號	裁判所構成法施行法 廢止	VIII-546
隆熙 元. 12. 26	法部訓令	裁判所細則	II-200
光武 4. 12. 25	詔勅	巡廻裁判所細則을 制定하는 件	III-266
12. 27	奏本	巡廻裁判所細則	III-267
開國504. 閏5. 10	勅令第114號	開港場裁判所 · 地方裁判所 開設에 관한 件	I-438
12	法部令第5號	開港場裁判所 및 地方裁判所の 管轄區域에 관한 件	I-441
建陽 元. 1. 20	法部告示第2號	開港場 · 地方裁判所를 開設하는 件	II-18
8. 15	勅令第54號	開港場裁判所 地方裁判所 開設에 관한 件 · 咸興裁判所設置에 관한 件 廢止	II-153
8. 15	勅令第55號	開港場裁判所 및 地方裁判所の 改正開設에 관한 件	II-153
8. 27	法部令第4號	開港場裁判所 및 地方裁判所の 位置를 改正하는 件	II-159
8. 27	法部令第5號	各開港場裁判所 및 各地方裁判所の 管轄區域을 改正하는 件	II-161
光武 8. 4. 29	法部令第1號	各開港市場裁判所 · 各地方裁判所 位置	III-595
4. 29	法部令第2號	各開港市場裁判所 · 各地方裁判所 管轄區域	III-596
光武 10. 10. 27	法部令第3號	各港市場裁判所 · 各地方裁判所 位置 · 管轄區域改正	V-294
光武 6. 8. 20	勅令第13號	各開港市場裁判所設置件 改正	III-438
光武 7. 7. 3	勅令第11號	各開港市場裁判所設置件 改正	III-535
光武 8. 10. 21	勅令第29號	開港市場裁判所設置 件	III-699
隆熙 2. 7. 23	法律第18號	未開廳區裁判所事務處理에 관한 件	VII-78
7. 24	法部令第13號	未開廳區裁判所事務處理에 관한 件	VII-109
10. 31	法部令第16號	未開廳區域裁判所事務處理에 관한 件 改正	VII-475
隆熙 2. 10. 31	法部令第17號	未開廳區裁判所事務處理에 관한 件 改正	VII-475
3. 4. 24	法部令第6號	未開廳區裁判所 事務處理에 관한 件 改正	VIII-230
10. 22	法律第32號	未開廳區域裁判所 事務處理에 관한 件 廢止	VIII-547
9. 3	法部令第8號	區裁判所開廳에 대한 裁判事務處理件	VIII-438
光武 元. 9. 12	勅令第38號	各裁判所設置件 改正	II-285
隆熙 2. 10. 31	法部令第18號	地方裁判所支部 設置	VII-478
3. 4. 24	法部令第5號	地方裁判所支部設置 改正하는 件	VIII-230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隆熙 元. 12. 23	法律第10號	裁判所設置法	VI-165
2. 10. 29	法律第27號	裁判所設置法 改正	VII-466
12. 10	法律第30號	裁判所設置法 改正	VII-531
3. 2. 4	法律第1號	裁判所設置法 改正	VIII-25
3. 11	法律第9號	裁判所設置法 改正	VIII-127
4. 19	法律第16號	裁判所設置法 改正	VIII-221
4. 19	法律第17號	裁判所設置法 改正	VIII-221
10. 28	法律第30號	裁判所設置法 廢止	VIII-546
11. 1	內閣告示令第34號	司法・監獄事務에 관한 日本國勅令(第236號 統監府裁判所令・第237號 統監府裁判所司法事務取扱令・第238號 韓國人에 係한 司法에 관한 件・第240號 韓國에 在한 犯罪即決令)・統監府令(第28號 統監府裁判所 設置・第29號 地方裁判所支部 設置・第30號 未開廳區裁判所 事務處理・統監府令第31號 統監府監獄設置・第34號 辯護士規則・統監府令第37號 訴訟及 訴訟事件에 貼附할 收入印紙에 관한 件)・統監府告示(第106號 統監府裁判所 開廳)을 揭布하는 件	IX-1
開國504. 閏5. 20	法律第11號	本年 法律第54號를 漢城裁判所・開港場裁判所・地方裁判所・巡廻裁判所・高等裁判所에서 도 準用하는 件	I -447
4. 14	法令告示第2號	特別法院을 臨時로 開廷하는 件	I -344
10. 29	法部告示第3號	特別法院을 臨時開廷하는 件	I -605
建陽 元. 1. 16	法部告示第1號	特別法院을 徹罷하는 件	II-14
光武 2. 3. 13	法部告示	特別法院을 設置하는 件	II-336
5. 3. 16	法部告示第1號	特別法院을 平理院에 別設하는 件	III-305
10. 7. 31	法部告示第1號	特別法院을 臨時 開廷하는 件	V-56

2) 個別裁判所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高宗 31. 7. 12	議案	義禁司官制 職掌	I -31
開國504. 4. 15	法部令第1號	漢城裁判所 設置에 관한 件	I -345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光武 元. 9. 12	法律第2號	漢城裁判所官制·規程	II-277
2. 2. 9	勅令第5號	漢城裁判所官制 規程	II-332
4. 11. 30	勅令第48號	漢城裁判所官制 改正	III-246
5. 7. 22	勅令第16號	漢城府裁判所官制 改正	III-321
6. 8. 20	勅令第14號	漢城府裁判所官制 改正	III-438
8. 4. 2	勅令第9號	漢城裁判所官制 改正	III-590
10. 9. 3	勅令第46號	漢城裁判所官制 改正	V-136
10. 26	勅令第64號	漢城裁判所官制 改正	V-290
光武 元. 9. 12	勅令第37號	京畿裁判所 設置에 관한 件	II-284
11. 1	法部令第6號	漢城·京畿裁判所 位置를 定하는 件	II-293
11. 1	法部令第7號	漢城·京畿裁判所의 管轄區域을 定하는 件	II-294
2. 1. 27	奏本	漢城·京畿裁判所를 廢止하여 漢城府·京畿 觀察府로 句管케 하는 件	II-331
2. 2. 9	勅令第4號	漢城·京畿裁判所 廢止에 관한 件	II-332
2. 2. 9	勅令第6號	京畿裁判所를 京畿觀察府에 設置하는 件	II-334
2. 9. 3	法部令第1號	漢城裁判所 位置 移定の 件	II-402
建陽 元. 1. 11	勅令第4號	咸興裁判所設置에 관한 件	II-8
光武 元. 10. 5	勅令第36號	務安·三和港裁判所 設置에 관한 件	II-286
3. 5. 22	勅令第21號	昌原·城津·沃溝·平壤裁判所를 設置하는 件	II-482
5. 25	法部令第2號	全羅北道·慶尙南道裁判所管轄區域 改正	II-485
5. 25	法部令第4號	昌原港·城津港·沃溝港·平壤市裁判所管轄區 域에 관한 件	II-485
5. 25	法部令第3號	昌原港·城津港·沃溝港·平壤市裁判所 位置 에 관한 件	II-485
光武 4. 12. 19	勅令第53號	昌原·城津·沃溝·平壤裁判所를 設置하는 件 改正	III-258
8. 11. 4	法部令第3號	龍川港·義州市裁判所 位置	III-700
11. 4	法部令第4號	龍川港·義州市裁判所 管轄區域	III-700
隆熙 3. 1. 16	法部告示第1號	平壤地方裁判所義州支部·鎭南浦區裁判所·寧 邊區裁判所·義州區裁判所·龍川區裁判所를 開廳하는 件	VIII-4
1. 18	法部告示第2號	京城地方裁判所仁川支部를 開廳하는 件	VIII-5
1. 20	法部告示第3號	光州地方裁判所全州支部·尙州區裁判所·安東	VIII-6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1. 22	法部告示第4號	區裁判所는 開廳하는 件 京城地方裁判所春川支部·春川區裁判所·慶州 區裁判所를 開廳하는 件	VIII-10
1. 26	法部告示第5號	晋州地方裁判所釜山支部·蔚山區裁判所·水原 裁判所를 開廳하는 件	VIII-15
1. 29	法部告示第6號	開城區裁判所를 開廳하는 件	VIII-18
1. 29	法部告示第7號	木浦區裁判所·羅州區裁判所·群山區裁判所를 開廳하는 件	VIII-19
2. 17	法部告示第9號	咸興地方裁判所元山支部·咸興地方裁判所鏡 城支部·咸興區裁判所를 開廳하는 件	VIII-62
2. 20	法部告示第11號	北青區裁判所를 開廳하는 件	VIII-88
2. 22	法部告示第13號	鎭南區裁判所를 開廳하는 件	VIII-91
3. 3	法部告示第16號	馬山區裁判所를 開廳하는 件	VIII-119
3. 5	法部告示第18號	淸州區裁判所·公州地方裁判所淸州支部를 開 廳하는 件	VIII-123
3. 16	法部告示第19號	居昌區域裁判所·瑞興區裁判所를 開廳하는 件	VIII-153
3. 16	法部告示第20號	大田區裁判所를 開廳하는 件	VIII-154
3. 20	法部告示第21號	城津區裁判所를 開廳하는 件	VIII-164
4. 13	法部告示第22號	洪州區裁判所를 開廳하는 件	VIII-206
9. 21	法部告示第24號	永同·順天·南原·安州區裁判所를 開廳하는 件	VIII-455
10. 2	法部告示第25號	楚山·成川·金山·黃州區裁判所를 開廳하는 件	VIII-472
10. 13	法部告示第26號	驪州·江陵·江華·密陽·金海·河東 區域裁 判所를 開廳하는 件	VIII-501

3. 法曹

1) 一般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4. 3. 27	奏本	武官及司法官任命規則을 制定하는 件	III-56
3. 27	勅令第12號	武官及司法官任命規則	III-57
9. 15	法部令第2號	司法官試驗 來赴資格에 관한 件	III-194
10. 11. 6	勅令第5號	法官銓考細則	V-314
10. 10. 26		勅令第63號 法官銓考規定	V-289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11. 7. 13	法部令第5號	法官銓考規程 改正	V-583
隆熙 3. 4. 9	勅令第48號	法官任用令	VIII-201
隆熙 3. 10. 28	勅令第94號	法官任用令 廢止	VIII-555
4. 24	法部令第3號	法官銓衡規則	VIII-227
4. 24	法部令第4號	司法試驗規則	VIII-228
開國504. 6. 25	法律第12號	裁判所에 判事試補·檢事試補를 置하는 件	I-495
8. 10	奏本	判事試補·檢事試補를 置하는 件	I-544
3. 25	勅令第51號	判事·檢事官等俸給令	I-221
6. 25	勅令第134號	判事·檢事·判事試補·檢事試補 官等俸給令	I-496
建陽 元. 1. 18	勅令第8號	判事·檢事·判事試補·檢事試補官等俸給令 改正	II-17
隆熙 2. 10. 15	勅令第74號	判事·檢事官等定員及俸給令 改正	VII-409
光武 3. 5. 30	勅令第27號	平理院及 其他各裁判所職員官等俸給令	II-496
8. 7. 19	勅令第22號	各地方裁判所及開港市場裁判所判任官官等俸給令	III-631
隆熙 元. 12. 27	勅令第70號	判事·檢事官等定員及俸給令	VI-187
2. 8. 13	勅令第60號	判事·檢事官等定員及俸給令 改正	VII-166
3. 10. 28	勅令第86號	判事·檢事官等定員及俸給令 廢止	VIII-551
隆熙 元. 12. 27	勅令第71號	裁判所書記長及裁判所書記官等定員令	VI-190
隆熙 3. 10. 28	勅令第87號	裁判所書記長及裁判所書記官等定員令 廢止	VIII-552
光武 11. 3. 22	勅令第12號	各地方及 各港市裁判所通譯官及 通譯官補 設置에 관한 件	V-469
3. 22	勅令第13號	各地方及 各港市裁判所通譯官及 通譯官補를 各道府 通譯官及 通譯官補로 兼任케 하는 件	V-470
隆熙 元. 12. 27	勅令第72號	裁判所繙譯官及裁判所繙譯官補官制	VI-190
隆熙 3. 10. 28	勅令第88號	裁判所繙譯官·繙譯官補官制 廢止	VIII-552
開國504. 3. 25	勅令第52號	廷吏俸給에 관한 件	I-221
7. 17	法部令第9號	廷吏規則	I-511
9. 7	勅令第168號	裁判所廷吏服裝에 관한 件	I-579
光武 10. 3. 21	勅令第14號	平理院以下 各裁判所司法官及主事裁判正服 規則	IV-531
3. 21	勅令第16號	裁判所廷吏服裝規則 改正	IV-532
元. 9. 14	法部訓令	代書所細則	II-276

2) 法官養成所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504. 3. 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二十一)法官養成所를 設 置하는 件	I -279
3. 25	勅令第49號	法官養成所規程	I -215
建陽 元. 1. 11	勅令第3號	法官養成所規程 改正	II -8
光武 7. 1. 22		法官養成所規程 改正	III-483
9. 4		法官養成所規程 改正	III-550
8. 7. 6		法官養成所規程 改正	III-616
7. 30	法部令第2號	法官養成所規則	III-633
10. 10		法官養成所規程 改正	III-690
9. 3. 23	法部令第1號	法官養成所規則	IV-73
12. 4	法部令第5號	法官養成所董督規則	IV-425
10. 3. 30	法部令第1號	法官養成所規則	IV-535
10. 23	法部令第2號	法官養成所規則 改正	V -275
隆熙 2. 3. 6	法部告示第1號	法官養成所學則	VI-296
3. 17	法部告示第2號	法官養成所學則 改正	VI-312
3. 3. 2		法官養成所學則 改正	VIII-118
光武 8. 3. 12	勅令第7號	法官養成所官等俸給令	III-583
隆熙 2. 1. 17	法部令第1號	法官養成所令	VI-228
12. 8	學部告示第10號	官立法官養成所를 認定하는 件	VII-529
光武 9. 2. 26	勅令第21號	法官養成所官制	IV-38
10. 3. 19	勅令第10號	法官養成所官制 改正	IV-522
6. 6	勅令第26號	法官養成所官制 改正	IV-583
隆熙 元. 12. 13	勅令第53號	法官養成所官制 改正	VI-139
開國503. 12. 16	奏本	法律學校를 設置하는 件	I -154
隆熙 3. 10. 28	勅令第84號	法學校官制	VIII-549
4. 2. 17		學部告示第1號 法學校를 文官任用令에 의하 여 認定하는 件	IX-300

3) 辯護士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9. 11. 8	法律第5號	辯護士法	IV-413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隆熙 3. 4. 26	法律第18號	辯護士法	VIII-232
10. 26	法律第33號	辯護士法 廢止	VIII-548
光武 9. 11. 14	法部令第3號	辯護士試驗規則	IV-418
11. 14	法部令第4號	辯護士名簿記錄規則	IV-422
隆熙 3. 4. 27	法部令第7號	辯護士名簿記錄規則	VIII-237
元. 9. 28		辯護士會則 認可	VI-49
光武 10. 3. 21	勅令第15號	辯護士正服規則	IV-532

VI. 財政

1. 官制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開國504. 3. 26	勅令第54號	度支部官制	I -241
光武 9. 2. 26	勅令第19號	度支部官制	IV-34
10. 20	勅令第43號	度支部官制 改正	IV-407
10. 3. 21	勅令第11號	度支部官制 改正	IV-523
10. 4. 25	勅令第20號	度支部官制 改正	IV-560
隆熙 元. 12. 13	勅令第41號	度支部官制 改正	VI-122
2. 7. 23	勅令第56號	度支部官制 改正	VII-107
7. 16	勅令第45號	度支部官制 改正	VII-50
3. 2. 22	勅令第21號	度支部官制 改正	VIII-91
3. 15	勅令第30號	度支部官制 改正	VIII-151
3. 31	勅令第36號	度支部官制 改正	VIII-169
4. 9	勅令第46號	度支部官制 改正	VIII-200
11. 25	勅令第101號	度支部官制 改正	IX-180
4. 1. 21	勅令第4號	度支部官制 改正	IX-262
開國504. 3. 26	內閣制定(?)	度支部分課規程	I -252
光武 9. 4. 13		度支部分課規程	IV-101
10. 4. 13		度支部分課規程	IV-543
隆熙 2. 1. 27		度支部分課規程	VI-245
7. 25		度支部分課規程 改正	VII-118
9. 2		度支部分科規程 改正	VII-311
3. 3. 13	度支部訓令第29號	度支部分課規程 改正	VIII-146
12. 18	度支部訓令第119號	度支部分課規程 改正	IX-221
4. 2. 21		度支部分課規程改正	IX-301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504. 9. 5	勅令第160號	度支部에 主事を 臨時 增置하는 件	I -562
隆熙 3. 4. 5	勅令第45號	度支部官吏로서 在官으로 釜山 日本居留民 團에 聘用케 하는 件	VIII-196

2. 貨幣 · 度量衡

1) 典圖書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高宗 31. 8. 6	議案	典圖書總辦을 두는 件	I -84
建陽 元. 2. 3	勅令第14號	典圖書官制	II -27
光武 4. 1. 17	勅令第4號	典圖書官制 改正	III-12
5. 2. 16	勅令第6號	典圖書官制 改正	III-289
4. 1. 20	度支部令第1號	典圖書規制	III-22
8. 11. 28	奏本	典圖書을 廢止하는 件	III-701

2) 貨幣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高宗 31. 7. 11	議案	新式貨幣發行에 관한 件	I -27
7. 11	議案	新式貨幣發行章程	I -29
光武 5. 2. 12	勅令第4號	貨幣條例	III-284
9. 7. 31	詔勅	貨幣揀弊에 관한 件	IV-365
10. 20	勅令第42號	貨幣條例 改正	IV-406
隆熙 元. 8. 14	勅令第4號	貨幣條例 改正	VI-10
光武 10. 10. 17	度支部訓令	貨幣通用에 관한 件	V-256
10. 18	度支部訓令	貨幣通用에 관한 件	V-256
高宗 31. 7. 8	奏本	當五錢을 葉錢으로 計數 核算하여 使用케 하는 件	I -23
光武 2. 7. 27	奏本	正位貨幣를 鑄造하는 件	II -390
6. 3. 16	奏本	貨幣揀弊에 관한 件	III-361
7. 11. 21	奏本	貨幣 揀弊에 관한 件	III-560
9. 1. 18	勅令第2號	貨幣條例實施에 관한 件	IV-2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1. 18	勅令第3號	形體量日이 同一한 貨幣는 無碍通用 件	IV-2
1. 18	勅令第4號	舊貨幣 訂期交換에 관한 件	IV-3
4. 3	度支部訓令	新舊貨幣 交換에 관한 件	IV-80
5. 16	度支部訓令	新舊貨幣交換에 관한 件	IV-235
6. 8	度支部訓令	新舊貨交換에 관한 件	IV-248
6. 24	度支部令第1號	舊白銅貨交換에 관한 件	IV-260
6. 24	度支部令第2號	舊白銅貨交換處理順序	IV-261
6. 24	度支部令第3號	京城交換所에 있어서 舊白銅貨交換請願에 관한 件	IV-264
7. 14	度支部令第7號	平壤交換所에 있어서 舊白銅貨交換請願에 관한 件	IV-310
7. 20	度支部令第8號	仁川交換所에 있어서 舊白銅貨 交換請願에 관한 件	IV-314
8. 14	度支部令第11號	群山·甌南浦交換所에 있어서 舊白銅貨交換請願에 관한 件	IV-372
11. 23	度支部廣告	仁川交換所의 白銅貨交換事務를 中止하는 件	IV-422
隆熙 2. 2. 21	度支部令第4號	舊白銅貨交換期限에 관한 件	VI-273
8. 13	度支部告示第10號	舊白銅貨 交換에 관한 件	VII-256
光武 9. 6. 24	度支部訓令	舊貨로서 政府의 收納에 充할 경우의 처리에 관한 件	IV-293
隆熙 2. 6. 26	勅令第41號	葉錢通用價格에 관한 件	VI-492
11. 4	度支部告示第16號	舊白銅貨의 交換을 催促하는 件	VII-482
3. 17	度支部訓令第88號	日本舊一圓銀貨의 通用을 禁하는 件	VI-308
3. 20	勅令第58號	舊白銅貨幣 公納使用의 件	VIII-257

3) 度量衡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開國504. 4. 26	奏本	平市署의 職掌·文簿·鎰升·鎰尺을 農商工部에 送交하는 件	I-358
高宗 31. 7. 11	議案	度量衡改正에 관한 件	I-27
光武 6. 10. 10	奏本	度量衡規則	III-445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7. 9. 1	詔勅	新制度量衡을 實施하는 件	III-548
12. 29	農商工部令第41號	度量衡法實施에 관한 件	IV-455
3. 21	法律第1號	度量衡法	IV-59
隆熙 3. 9. 20	法律第26號	度量衡法 改正	VIII-447
9. 20	農商工部令第3號	度量衡法施行規則	VIII-451
光武 9. 11. 11	農商工部令第39號	新制度量衡器를 使用치 아니하는 者에게 罰 金을 徵收하는 件	IV-417
12. 11	農商工部令第40號	度量衡器販賣規則	IV-430
隆熙 3. 10. 9	農商工部告示第33 號	度量衡器小賣價格	VIII-491
10. 9	農商工部令第4號	度量衡法 施行地域	VIII-489
12. 15	農商工部令第5號	度量衡法施行地域	IX-206
4. 5. 28	農商工部令第4號	度量衡法 施行地域	IX-472
光武 11. 2. 1	勅令第5號	農商工部所管 度量衡事務局官制	V-414
9. 12. 9	勅令第53號	農商工部度量衡臨檢員服式에 관한 件	IV-428
12. 9	勅令第51號	度量衡法實施局職制	IV-426
12. 9	勅令第52號	農商工部度量衡製造所職制	IV-427
12. 19	度支部令第19號	農商工部度量衡製造檢定所 作業會計規則	IV-440
隆熙 2. 3. 27	度支部令第10號	農商工部度量衡製造檢定作業會計規則 廢止	VI-338

3. 財政

1) 一般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光武 2. 3. 24	詔勅	財政을 裕足케 하는 방도를 힘써 求할 것을 度支部에 飭諭하는 件	II-338
11. 13	詔勅	宮內府所管의 度支部移來 屯土 및 漁·鹽· 船·藿稅와 農商工部移來 鑛産을 各該部로 還屬시키는 件	II-422
4. 5. 6	詔勅	度支文簿를 調査 淸勘하는 件	III-86
5. 10	奏本	度支文簿調査委員會를 任命하는 件	III-87
6. 18	奏本	度支文簿調査委員會를 加差下하는 件	III-100
12. 15	奏本	度支文簿調査委員長·委員을 差下하는 件	III-249

2) 財務署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隆熙 元. 12. 13	勅令第47號	財務署官制	VI-133
3. 3. 15	勅令第32號	財務署官制 改正	VIII-152
2. 1. 27		財務署事務分掌規程	VI-249
3. 3. 6	度支部訓令第22號	財務署事務分掌規程 改正	VIII-124
元. 12. 18	度支部令第33號	財務署名稱・位置及 管轄區域表	VI-150
3. 3. 12	度支部令第13號	財務署名稱及 管轄區域表 改正	VIII-137
2. 10. 7	度支部令第40號	財務署名稱・位置・管轄區域表 改正	VII-398
3. 5. 18	度支部令第16號	財務署名稱及 管轄區域表 改正	VIII-255
8. 26	度支部令第27號	財務署名稱及 管轄區域表 改正	VIII-420
隆熙 2. 11. 4	度支部令第45號	財務署名稱・位置・管轄區域表 改正	VII-481
3. 10. 29	度支部令第29號	財務署名稱及 管轄區域表 改正	VIII-558
4. 1. 17	度支部令第1號	財務署名稱及 管轄區域表 改正	IX-254
3. 8	度支部令第9號	財務署名稱及 管轄區域表 改正	IX-317
8. 15	度支部令第25號	財務署名稱及 管轄區域表 改正	IX-564
4. 1. 25	度支部令第4號	臨時財源調查局 廣梁灣・朱安・龍湖 出張所 를 設置하는 件	IX-265
3. 2. 23	度支部訓令第14號	財務官吏檢事規程	VIII-97
元. 12. 13	勅令第46號	財務監督局官制	VI-131
2. 8. 29	勅令第64號	財務監督局官制 改正	VII-302
3. 3. 15	勅令第31號	財務監督局官制 改正	VIII-151
4. 1. 17	勅令第2號	財務監督局官制 改正	IX-253
2. 9. 11	度支部令第31號	公州財務監督支局 設置	VII-323
3. 3. 11	度支部令第12號	公州財務監督支局 廢止	VIII-135
2. 1. 27		財務監督局分課規程	VI-248
3. 3. 6	度支部訓令第21號	財務監督局分課規程 改正	VIII-124
5. 13	度支部訓令第55號	財務監督局分課規程 改正	VIII-249
8. 17	度支部訓令第86號	財務監督局分課規程改正	VIII-404
2. 1. 27	勅令第4號	財務監督局主事及財務署主事を 定員外 增置 하는 件	VI-244
3. 2. 4	勅令第5號	財務官・財務監督局主事及 財務署主事 特別 任用令	VIII-28
4. 19	勅令第50號	財務監督局主事を 定員外 增置하는 件	VIII-222

3) 節次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開國504. 5. 11	度支部令第2號	歲出豫算簿·歲出簿 及 出給命令簿 設備準則	I-382
6. 3	勅令第127號	本年度府廳經費排定과 辨理節次에 관한 件	I-479
光武 9. 6. 24	度支部第5號	歲入歲出處理順序	IV-269
10. 9. 6	度支部令第15號	歲入歲出處理順序 改正	V-138
12. 7	度支部令第28號	歲入歲出處理順序 改正	V-336
11. 6. 7	度支部第19號	歲入歲出處理順序 改正	V-519
6. 28	度支部令第25號	歲入歲出處理順序 改正	V-550
隆熙 2. 2. 17	度支部令第3號	歲入歲出處理順序 改正	VI-270
7. 20	度支部令第20號	歲入歲出處理順序 改正	VII-72
11. 4	度支部令第44號	歲入歲出處理順序 改正	VII-481
12. 24	度支部令第47號	歲入歲出處理順序 改正	VII-541
3. 8. 9	度支部令第22號	歲入歲出處理順序 改正	VIII-397
4. 4. 26	度支部令第16號	歲入歲出處理順序 改正	IX-418
5. 31	度支部令第20號	歲入歲出處理順序 改正	IX-474
2. 5. 21	度支部令第14號	歲入歲出處理順序附屬書式 改正	VI-411
8. 21	度支部訓令第192號	歲入出年度科目及所管廳誤記訂正節次	VII-264
4. 2. 14	度支部訓令第23號	出給命令用紙及 通知書用紙 保管節次	IX-296
6. 28	度支部令第23號	出給命及 集合出給命令通知書盜難闕失處理順序	IX-502
2. 9. 28	度支部訓令第217號	歲入金月計表處理方法	VII-356
4. 3. 4	度支部訓令第28號	隆熙4年度 歲入經常部所管 歲入課目表 制定	IX-310
3. 2. 23	度支部令第5號	隆熙3年度歲出豫算中 豫備金으로 補充할 수 있는 費途를 定하는 件	VIII-95
4. 2. 2	度支部令第5號	隆熙4年度 歲出豫算中 豫備金으로 補充할 수 있는 費途를 定하는 件	IX-289
開國504. 3. 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八) 各部·各官署의 費用은 豫算을 超過하지 않도록 하는 件	I-277
建陽 元. 7. 12	詔勅	度支部財政은 顧問官의 決裁를 거친 후에 支發하는 件	II-95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4. 4. 18	奏本	各府部應行事件의 費額은 度支部의 認准을 거쳐 請議 支出하는 件	III-83
開國504. 4. 5	勅令第72號	支出條規	I-326
光武 9. 7. 21	度支部令第9號	現金先授順序	IV-319
10. 12. 14	度支部令第30號	收入支出證明規則	V-349

4) 會計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504. 3. 30	法律第2號	會計法	I-291
隆熙 2. 2. 24	法律第2號	會計法 改正	VI-273
開國504. 3. 30	法律第3號	會計法을 各道營邑 等に 施行치 아니하는 件	I-296
5. 26	法律第9號	會計法을 各府에 施行하는 件	I-397
光武 10. 7. 19	勅令第34號	會計檢査規程	V-38
12. 17	勅令第78號	會計下檢査規程	V-373
12. 21	度支部令第32號	會計下檢査細則	V-374
高宗 31. 7. 14	議案	會計檢査局職掌	I-36
隆熙 元. 12. 27	勅令第68號	會計檢査局官制	VI-184
3. 2. 8	勅令第11號	會計檢査局官制 改正	VIII-40
4. 1. 14	勅令第1號	會計檢査局官制 改正	IX-252
2. 3. 9		會計檢査局分課規程	VI-302
元. 12. 27	勅令第78號	資金會計法	VI-196
光武 10. 10. 22	度支部令第21號	印刷局作業會計規程	V-273
5. 17	度支部令第6號	臨時治道費會計規程	IV-565
開國504. 4. 7	勅令第76號	出納官吏規則	I-333
光武 4. 11. 16	度支部令第1號	度支部見習生選用規則	III-242
9. 7. 23	度支部訓令	歲入徵收官과 收入官吏로서 職務上에 注意할 事項	IV-352
7. 23	度支部訓令	歲入事務管理廳이 되어 職務上에 注意할 事項	IV-347
7. 31	度支部訓令	各廳會計官吏集合時 注意事項	IV-366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10. 7. 19	勅令第33號	出納官吏身上保證規程	V-37
隆熙 2. 7. 9	勅令第44號	出納官吏身上保證規程 改正	VII-6
2. 3. 18	度支部訓令第81號	度支部所管命令官及出納官吏任命規程	VI-309
4. 3. 15	度支部訓令第30號	度支部所管命令官及 出納官吏任命規則 改正	IX-344

5) 國庫

(1) 一般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光武 9. 6. 23	勅令第35號	國庫證券條例	IV-257
隆熙 4. 5. 14	法律第5號	國庫債券條例	IX-442
光武 9. 7. 29	度支部令第10號	國庫金運搬費支給規程	IV-363
11. 1. 31	度支部令第3號	國庫金運搬費支給規程 廢止	V-413
隆熙 2. 2. 7	勅令第6號	度支部官吏를 中央金庫 또는 金融機關에 聘用하는 件	VI-263
3. 11. 11	奏本	國庫金取扱에 관한 命令書·貨幣整理事務取扱에 관한 命令書	IX-99
4. 7. 19	度支部令第24號	郵便振替貯金에 의하여 國庫金を 納入하는 件	IX-517
2. 2. 15	度支部告示第1號	中央金庫新義州派出所 設置	VI-270
光武 10. 10. 13	度支部令第18號	金庫及郵便官署國庫金出納區域表 改正	V-245
11. 4. 15	度支部令第12號	金庫及郵便官署國庫金出納區域 改正	V-486
6. 20	度支部令第22號	金庫及郵便官署 國庫金出納區域表 改正	V-536
隆熙 元. 9. 25	度支部令第29號	金庫及郵便官署國庫金出納區別表 改正	VI-47

(2) 節次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光武 10. 9. 22	度支部令第17號	國庫金委託出納事務處理順序	V-154
12. 29	度支部令第33號	國庫金委託事務處理順序 改正	V-388
隆熙 元. 12. 29	度支部令第34號	國庫金委託出納事務處理順序別表 改正	VI-157
2. 2. 26	度支部令第5號	國庫金委託出納事務處理順序 改正	VI-275
3. 12	度支部令第6號	國庫金委託出納事務處理順序 改正	VI-303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4. 24	度支部令第12號	國庫金委託出納事務處理順序 改正	VI-400
6. 27	度支部令第16號	國庫金委託出納事務處理順序別表 改正	VI-493
7. 20	度支部令第21號	國庫金委託出納事務處理順序 改正	VII-73
9. 11	度支部令第30號	國庫金委託出納事務處理順序 改正	VII-319
3. 1. 25	度支部令第1號	國庫金委託出納事務處理順序 改正	VIII-11
8. 16	度支部令第25號	國庫金委託出納事務處理順序別表 改正	VIII-402
4. 2. 28	度支部令第6號	國庫金委託出納事務處理順序 改正	IX-307
6. 24	度支部令第22號	國庫金委託出納事務處理順序別表 改正	IX-495
8. 28	度支部令第27號	國庫委託出納事務處理順序 改正	IX-590

(3) 金庫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504. 4. 7	勅令第75號	金庫規則	I-332
光武 8. 12. 30	度支部令第2號	金庫出納役設置件	III-707
9. 6. 23	勅令第36號	金庫職員設置件	IV-260
6. 24	度支部令第4號	金庫事務處理順序	IV-266
8. 14	度支部令第12號	金庫所管區域에 관한 件	IV-373

4. 國有財產

1) 驛·屯土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504. 3. 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五) 驛田·驛傳·驛傳費用에 관한 件	I-276
9. 24	農商工部令第8號	驛田畚 調査에 관한 件	I-585
光武 2. 11. 13	詔勅	軍부에 付屬된 驛屯土를 度支部에 歸屬케 하는 件	II-421
3. 1. 5	奏本	固城地方隊所屬屯土漁基를 度支部로 還屬하는 件	II-435
隆熙 元. 11. 5	奏本	經理院收租官을 廢止하고 驛屯土·各宮田畚 閑林을 派遣 調査하고 今年度 收租를 度支	VI-68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2. 5. 22	臨時帝室有及 國有 財産調査局公告	部에 委託하는 件 前各宮司院私有財産에 대한 請願書 處理에 관한 件	VI-423
6. 25	勅令第40號	驛屯土管理에 관한 件	VI-492
7. 29	度支部令第27號	驛屯土管理規程	VII-123
3. 7. 15	度支部令第20號	驛屯土管理規程 改正	VIII-361
2. 7. 29	度支部令第28號	國有에 移屬된 庄土를 驛屯土管理規程에 의 하여 處理하는 件	VII-124
10. 23	度支部令第43號	驛屯土以外 國有田畝의 管理에 관한 規程	VII-465
3. 9. 17	度支部訓令第96號	軍部所管 財産으로 現今不用에 屬한 物件 處理의 件	VIII-446

2) 政府事業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504. 3. 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十) 政府事業을 可及의 制限하는 件	I-277
3. 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十五) 各部事業의 新興· 整理· 改革은 度支部와 相議하는 件	I-278
光武 2. 10. 13	詔勅	宮牆築外의 土木工役을 일체 停止하는 件	II-405
8. 5. 19	勅令第15號	財政에 관한 契約合同의 請議를 度支部에서 聯署하는 件	III-603
9. 8. 31	軍部令第3號	工事都給及 物品購買規程	IV-393
7. 14	議政府令第3號	政府의 工事 또는 物件의 賣買 및 貸借規程	IV-303
隆熙 2. 9. 4	閣令第8號	政府工事· 物件의 賣買貸借規程 改正	VII-315
3. 1. 20	閣令第1號	政府의 工事 또는 物件의 賣買及 貸借規程 改正	VIII-6
3. 13	度支部令第9號	政府의 工事 又は 物件의 賣買及 貸借規程	VIII-144
光武 10. 7. 24	度支部令第11號	에 依한 請負人의 規定外 資格에 관한 件	V-49
7. 24	度支部令第12號	測量及土木工事に 관한 日額旅費規定	V-50
		測量及土木工事に 從事하는 工夫日給額	V-50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9. 21	度支部令第16號	測量及土木工事に 관한 日額旅費規程 改正	V-153
開國504. 5. 19	勅令第93號	貢價未下償還處分規程	I-388
6. 12	勅令第133號	貢價未下償還處分規程中 改正에 관한 件	I-491
高宗 31. 7. 4	議案	未下各貢價를 國債局에서 限年 排給하는 件	I-22
建陽 元. 2. 16	度支部令第2號	開國503年6月以前 京外公納帳簿上의 吏逋·民未納·各貢人處遺在를 蕩減하는 件	II-44
開國504. 4. 7	勅令第77號	內國旅費支給規程	I-336
隆熙 2. 2. 28	農商工部令第61號	雇員의 內國旅費支給規程	VI-283
9. 21	度支部令第33號	外國人旅費規程	VII-341
10. 7	農商工部令第71號	外國人囑託員·雇員·傭員旅費規程	VII-399
3. 5. 18	度支部令第15號	財務室以下日額旅費支給規程	VIII-254
2. 9. 24	內部令第6號	內國旅費支給規程·外國人旅費規程에 의한 囑託員·巡查·雇員及 庸人旅費額	VII-349
3. 7. 21	度支部訓令第79號	結數連名簿調製에 從事할 臨時雇員의 旅費支給에 관한 件	VIII-373
光武 9. 7. 14	議政府令第4號	物品會計規程	IV-307
9. 12. 28	宮內府令第3號	物品保管規制	IV-449
10. 12. 14	度支部令第31號	物品出納證明規則	V-367
10. 19	度支部令第19號	物品出納處理順序	V-260

3) 公債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隆熙 2. 11. 26	勅令第81號	起業公債條例	VII-516
12. 7	度支部告示第18號	起業公債假證券發行	VII-528
3. 2. 25	法律第7號	公債金特別會計法	VIII-108
4. 3. 30	勅令第30號	導掌賜金公債證券條例	IX-421

4) 國有地利用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11. 7. 4	法律第4號	國有未墾地利用法	V-574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7. 6	農商工部令第50號	國有未墾地利用法施行細則	V-577
7. 15	農商工部告示	國有未墾地利用法中 坪·町解釋	V-583
隆熙 元. 8. 21	勅令第9號	農商工部所管 國有未墾地事務局官制	VI-19
4. 5. 26	度支部令第19號	國有地小作人褒賞規程	IX-471
2. 4. 4	勅令第24號	國有森林山野及產物處分規則	VI-351
4. 4	勅令第25號	國有森林山野處分審查會規則	VI-354
隆熙 2. 4. 14	農商工部告示第7號	國有森林山野及產物處分規則·國有森林山野處分審查會規則 施行日에 관한 件	VI-374
8. 11	勅令第58號	國有土石採取規則	VII-135
3. 3. 11	勅令第27號	國有土石採取規則 改正	VIII-132
光武 10. 3. 19	勅令第32號	國有財產管理規程	V-36
11. 5	度支部令第24號	國有財產目錄及增減變動에 관한 件	V-310
隆熙 2. 8. 7	度支部告示第7號	不動產利用請願書를 당분간 受理하지 않는 件	VII-134

5. 銀行

1) 一般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10. 3. 21	勅令第12號	銀行條例	IV-526
11. 13	勅令第67號	銀行條例 改正	V-320
隆熙 元. 9. 11	勅令第22號	銀行條例 改正	VI-44
光武 10. 4. 20	度支部令第5號	銀行條例施行細則	IV-552
11. 2	度支部令第25號	銀行條例施行細則 改正	V-300
12. 13	度支部令第29號	銀行條例施行細則 改正	V-343
隆熙 元. 11. 13	度支部令第31號	銀行條例施行細則 改正	VI-69
光武 10. 4. 20	度支部令第4號	農工銀行設立에 관한 件	IV-550
3. 21	勅令第13號	農工銀行條例	IV-527
11. 1. 14	勅令第3號	農商工銀行條例 改正	V-397
隆熙 2. 5. 23	度支部令第15號	農工銀行條例施行規則	VI-423
光武 7. 3. 24	勅令第9號	兌換金券條例	III-526
3. 24	勅令第8號	中央銀行條例	III-524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隆熙 3. 7. 26	法律第22號	韓國銀行條例	VIII-374
8. 27		韓國銀行定款	VIII-421
11. 12	度支部令第30號	韓國銀行券의 製造發行 損券相換及 鎖却等의 節次	IX-102
2. 6. 27	度支部告示第3號	第一銀行壹圓券을 改版 發行하는 件	VI-494
3. 6. 21	度支部告示第5號	改版한 第一銀行發行 五圓銀行券을 通用하는 件	VIII-284
12. 9	度支部告示第19號	第一銀行發行 十圓券의 式樣과 質에 관한 件	VII-529
3. 11. 10	度支部告示第18號	第一銀行未發行券을 韓國銀行이 引繼하여 發行하는 件	IX-99
光武 11. 6. 5	度支令第16號	地方金融組合設立에 관한 件	V-514
5. 30	勅令第33號	地方金融組合規則	V-510

2) 貯蓄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9. 7. 4	議政府令第2號	貯蓄金規程	IV-299
9. 4	宮內府令第1號	貯蓄金規程	IV-395
2. 3. 16	閣令第3號	貯蓄金規程 改正	VI-307
6. 15	閣令第5號	貯蓄金規程 改正	VI-445

VII. 租稅・專賣

1. 內國稅

1) 一般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高宗 31. 7. 10	議案	一切의 上納을 代錢으로 磨鍊하는 件	I-26
8. 18	議案	外方進供의 規를 革罷하는 件	I-94
8. 22	議案	供上·頒放을 代錢으로 施行하는 件	I-95
9. 3	議案	各司에서 外道營邑에 誅求하던 雜稅名目を 革罷하는 件	I-99
9. 3	議案	三道節筵·兩營歲儀를 革罷하는 件	I-100
開國504. 8. 25	法律第13號	雜稅革罷에 관한 件	I-555
建陽 元. 8. 11	詔勅	各項雜稅 革罷에 관한 件	II-150
2. 1. 21	奏本	各項雜稅를 印紙로 施行하는 件	II-210
8. 11	詔勅	各郡結戶簿의 調査 및 無名雜稅의 禁斷에 관한 件	II-272
光武 2. 10. 25	詔勅	無名雜稅 革罷에 관한 件	II-408
4. 3. 24	詔勅	船商에 대한 無名雜稅를 革罷하는 件	III-55
11. 3	詔勅	無名雜稅를 禁斷하는 件	III-233
8. 1. 11	奏本	無名雜稅의 革罷·派員輩의 督還에 관한 件	III-569
9. 18	詔勅	雜稅名目を 調査 釐正하는 件	III-647
10. 3. 11	詔勅	雜稅革派에 관한 件	IV-522
隆熙 元. 9. 4	奏本	經理院所管雜稅調査案	VI-41
12. 4	勅令第35號	經理院所管雜稅處理에 관한 件	VI-103

2) 稅種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高宗 31. 8. 26	議案	宮土·驛土·屯土의 出稅에 관한 件	I-96
開國504. 3. 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九) 各宮·營·司의 分稅·	I-277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水稅·江稅를 一般歲入에 編入하는 件	
隆熙 9. 5	法律第15號	地稅及 戶布錢에 관한 件	I-560
隆熙 2. 6. 25	法律第10號	地稅에 관한 件	VI-489
3. 2. 22	勅令第20號	地稅及 戶稅의 納期에 관한 件	VIII-90
2. 7. 16	度支部令第19號	地稅徵收臺帳調製規程	VII-52
7. 16	度支部訓令第167號	地稅徵收臺帳調製規程 施行上の 注意	VII-54
光武 3. 7. 12	勅令第33號	國內船稅規則	II-530
4. 7. 25	勅令第29號	國內船稅規則 改正	III-131
10. 18	通信院令第5號	國內船稅細則	III-221
隆熙 4. 3. 30	度支部令第14號	船稅徵收에 관한 件	IX-380
光武 10. 11. 13	勅令第69號	鹽稅規程	V-322
隆熙 3. 3. 11	法律第10號	漁業稅法	VIII-128
3. 11	度支部令第11號	漁業稅法施行細則	VIII-133
12. 18	度支部令第34號	漁業稅法施行細則 改正	IX-211
光武 10. 12. 29	勅令第83號	水產稅規則	V-386
隆熙 元. 8. 16	勅令第5號	水產稅規則 改正	VI-12
光武 11. 2. 4	度支部令第5號	水產稅規則施行細則	V-417
6. 5	度支部令第17號	水產稅規則施行細則	V-515
隆熙 2. 7. 16	法律第15號	人蔘稅法	VII-49
7. 11	度支部令第17號	人蔘稅法施行細則	VII-7
3. 2. 8	法律第2號	家屋稅法	VIII-33
2. 8	度支部令第2號	家屋稅法施行細則	VIII-41
3. 31	勅令第43號	家屋稅를 施行하는 市街地에 관한 件	VIII-174
4. 4. 13	勅令第27號	家屋稅法施行地 改正	IX-401
3. 2. 8	法律第3號	酒稅法	VIII-36
2. 8	度支部令第3號	酒稅法施行細則	VIII-41
4. 6. 27	臨時財源調查局告 示第2號	臨時財源調查局 釀造試驗所 釀造酒類 賣下 價格 改正	IX-502
3. 2. 8	法律第4號	煙草稅法	VIII-38
2. 8	度支部令第4號	煙草稅法施行細則	VIII-42
12. 22	度支部令第35號	煙草稅法施行細則 改正	IX-226
高宗 31. 8. 18	議案	京營邸吏邸債에 관한 件	I-94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開國504. 1. 8	奏本	管餉에 會錄된 平安道 稅納을 京司로 收納하는 件	I-172
3.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一) 國稅·地方稅의 改良에 관한 件	I-275
3.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四) 平安道 歲入을 一般歲入에 編入하는 件	I-276
光武 10.12.29	勅令第81號	地方稅規則	V-380
11. 2. 7	度支部令第6號	地方稅規則施行細則	V-420
3.22	度支部令第10號	地方稅納付規程	V-475
5.13	勅令第31號	地方委員會規則	V-507
隆熙 元. 8.17	勅令第6號	地方委員會規則 改正	VI-12
9.11	勅令第21號	地方委員會規則 改正	VI-44
光武 11. 6. 6	度支部令第18號	地方委員會規則 施行에 관한 件	V-517
隆熙 2. 9.22	度支部令第36號	地方委員旅費及手當支給規程	VII-348

3) 徵收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開國504. 4. 5	勅令第71號	收入條規	I-321
建陽 元. 8. 4	詔勅	租稅督納에 관한 件	II-114
光武 10.10.16	勅令第60號	租稅徵收規程	V-248
10.24	度支部令第22號	租稅徵收規程施行細則	V-276
11. 6.27	度支部令第24號	租稅徵收規程施行細則 改正	V-549
隆熙 元.12. 9	度支部令第32號	租稅徵收規程施行細則 改正	VI-104
3. 2.18	法律第5號	國稅徵收法	VIII-63
2.18	度支部令第6號	國稅徵收法施行細則	VIII-71
8.10	度支部令第24號	國稅徵收法施行細則 改正	VIII-398
高宗 31. 8.10	議案	各營邑捐補錢·鹽硝代錢을 革罷하는 件	I-89
開國504. 4. 5	勅令第74號	各邑賦稅所章程	I-330
9. 5	勅令第162號	各郡稅務章程	I-564
建陽 元. 9.10	勅令第62號	各郡稅務章程 改正	II-170
開國504. 9. 5	勅令第159號	管稅司及 徵稅署官制 並 各邑賦稅所章程 施	I-561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光武 7. 11. 10		行의 停止에 관한 件 管稅司及徵稅署官制 並 各邑賦稅所章程 施行의 停止에 관한 件 改正	III-558
高宗 31. 8. 14	議案	咸鏡道礦稅에 관한 件	I-92
建陽 元. 4. 19	勅令第17號	地稅·戶布錢의 收納을 觀察使·郡守로 하여금 句管케 하는 件	II-74
光武 3. 3. 26	勅令第10號	地稅·戶布錢收納을 觀察使·郡守로 句管케 하는 件中 添入하는 件	II-459
光武 5. 2. 8	奏本	濟州牧 收稅調査委員을 差下하는 件	III-271
6. 2. 16	詔勅	視察官·捧稅官·海稅委員·金鑛派員을 招還하고 驛屯土稅·海稅를 地方官으로 하여금 捧納케 하는 件	III-351
隆熙 元. 12. 26	奏本	前經理院所管 全羅北道 9郡均田稅를 革罷하고 該監理名稱을 廢止하는 件	VI-175
高宗 31. 11. 1	奏本	湖南·嶺南의 轉運總務官을 減下하는 件	I-111
光武 5. 2. 16	奏本	湖南에 檢稅官을 差下하는 件	III-290
3. 1	奏本	嶺南에 檢稅官을 差下하는 件	III-290
3. 14	奏本	湖南·嶺南檢稅官을 加差下하는 件	III-304
5. 4. 9	奏本	慶尙南道·忠清南道·黃海道에 檢稅官을 差下하는 件	III-306
隆熙 2. 4. 23	度支部訓令第134號	京畿·忠清南道度庖稅 및 各道 銅鑛稅·鐵鑛稅·鎔店稅·水鐵稅管理移屬과 徵稅事務處理에 관한 件	VI-400
3. 9. 15	度支部訓令第95號	鑛業權讓渡時 未納稅金徵收에 관한 件	VIII-442
光武 11. 1. 25	度支部令第4號	稅額算出時의 厘位以下 端數를 切捨하는 件	V-406
隆熙 元. 9. 4	法律第6號	租稅規則違犯에 관한 裁判管轄件	VI-40
3. 3. 1	度支部訓令第17號	徵稅에 관한 諸帳簿 減額通知及 報告規程	VIII-111
4. 5	法律第14號	國稅未勘金 整理에 관한 件	VIII-193
4. 5	勅令第44號	臨時國稅未勘金整理委員會規程	VIII-195
2. 1. 21	勅令第3號	稅外諸收入收納取扱規程	VI-234
3. 8. 12	勅令第73號	稅外諸收入收納取扱規程 改正	VIII-400
2. 4. 9	度支部訓令第112號	稅外諸收入收納事務取扱節次	VI-369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4. 28	度支部訓令第438號	稅外諸收入收納事務取扱節次 改正	VI-403
4. 9	度支部令第11號	稅外諸收入收納取扱規程에 據하여 諸書類帳簿等の 書式을 定하는 件	VI-366
3. 8. 18	度支部令第26號	稅外諸收入收納取扱規程에 據하여 諸書類帳簿 等の 書式을 定하는 件 改正	VIII-410
2. 5. 1	度支部訓令第137號	外國人居留地에 在한 地稅及雜入徵收事務取扱規程	VI-404

4) 免稅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建陽 元. 2. 25	奏本	乙未6月以前 各驛復戶結을 劃下하는 件	II-48
8. 7	詔勅	各陵園의 位土復戶 및 香炭結을 舊典에 따라 施行하는 件	II-132
2. 13	詔勅	開國503年6月以前 京外公納帳簿上의 吏逋·民未納·各貢入處遺在를 蕩減하는 件	II-42
2. 16	度支部令第2號	開國503年6月以前 京外公納帳簿上의 吏逋·民未納·各貢入處遺在를 蕩減하는 件	II-45
光武 2. 5. 26	詔勅	各港進口穀을 免稅하는 件	II-358
隆熙 2. 8. 13	法律第21號	鑛業用器具機械輸入稅와 銅及 金銀銅鑛石 輸出稅의 免除에 관한 件	VII-166
3. 5. 24	法律第19號	咸鏡北道清進港을 經하여 間島及 琿春地方에 輸出入하는 貨物의 關稅를 免除하는 件	VIII-261
12. 7	度支部令第32號	間島及 琿春地方免稅貨物取扱規程	IX-186

2. 關稅

1) 官制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隆熙 元. 12. 13	勅令第45號	稅關官制	VI-128
2. 4. 28	勅令第27號	稅關官制 改正	VI-342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4. 28	勅令第27號	稅關官制 改正	VI-402
3. 3. 31	勅令第38號	稅關官制 改正	VIII-170
9. 20	勅令第78號	稅關官制 改正	VIII-450
4. 3. 9	勅令第19號	稅關官制 改正	IX-320
3. 15	度支部訓令第36號	稅關分課規程	IX-347
元. 12. 13	勅令第48號	臨時稅關工事部官制	VI-134
2. 4. 2	勅令第21號	臨時稅關工事部官制 改正	VI-345
開國504. 3. 26	勅令第56號	管稅司及徵稅署官制	I -248
光武 7. 11. 10		管稅司及徵稅署官制 改正	III-557
10. 9. 24	勅令第54號	管稅官官制	V-193
11. 6. 19	勅令第38號	管稅官官制 改正	V-529
隆熙 2. 1. 27		關稅局分課規程	VI-250
4. 3. 10	度支部訓令第29號	關稅局分課規程 改正	IX-323
元. 12. 13	勅令第44號	稅關局官制	VI-126
3. 3. 31	勅令第37號	關稅局官制 改正	VIII-170
4. 3. 9	勅令第18號	關稅局官制	IX-318

2) 管轄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10. 10. 27	度支部令第23號	管稅官位置·管轄區域	V-292
12. 31	度支部令第34號	管稅官位置 및 管轄區域 改正	V-389
11. 3. 4	度支部令第8號	管稅官位置·管轄區域 改正	V-443
6. 13	度支部令第21號	管稅官位置·管轄區域改正件 廢止	V-521
7. 2	度支部令第26號	管稅官位置·管轄區域表 改正	V-566
2. 1. 1	度支部令第1號	稅關管轄區域	VI-225
3. 7. 9	度支部令第18號	稅關管轄區域 改正	VIII-354
2. 3. 27	度支部令第9號	稅關支署名稱·位置·管轄區域	VI-337
3. 7. 9	度支部令第19號	管稅支署名稱·位置·管轄區域 改正	VIII-354
6. 10. 6	奏本	慶興監理로 하여금 海蔘崴通商事務官의 職務를 兼管케 하는 件	III-445
隆熙 2. 3. 19	度支部令第8號	咸鏡北道富寧郡淸津에 稅關支署를 設置하는	VI-312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件	
2. 3. 19	度支部令第7號	咸鏡北道富寧郡 淸津稅關監視署 廢止	VI-312
3. 7. 29	度支部令第21號	甑南浦稅關平壤出張所를 設置하는 件	VIII-381
4. 3. 7	度支部令第8號	關稅局南大門出張所를 仁川稅關南大門出張 所로 改稱하는 件	IX-316
1. 25	度支部令第3號	稅關碧瀾渡·三千浦·浦項·濟州 監視署를 設 置하는 件	IX-264
3. 12. 7	度支部令第33號	會寧·慶興 稅關監視署를 設置하는 件	IX-187

3) 業務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504. 9. 5	勅令第161號	稅務視察官章程	I-562
光武 10. 10. 22	度支部令第20號	管稅官監督檢査規程	V-271
隆熙 2. 4. 6	關稅局告示第1號	稅關監視署 開始	VI-355
4. 4. 26	度支部令第17號	稅關監視署名稱 位置 改正	IX-418
建陽 元. 4. 19	勅令第16號	度支部主事臨時增置件·稅務視察官章程施行 을 廢止하는 件	II-73
隆熙 3. 3. 31	勅令第40號	關稅局監吏 稅關監吏及 燈臺局看守特別俸給 令	VIII-172
隆熙 3. 4. 1	度支部訓令第41號	關稅局監吏·稅關監吏及 燈臺局看守敍任에 관한 件	VIII-190
12. 20	勅令第102號	稅關監吏特別任用令	IX-222
4. 1. 20	度支部令第2號	稅關監吏試驗規則	IX-259
光武 10. 11. 22	度支部令第26號	管稅官日額旅費支給規程	V-332
隆熙 2. 7. 6	勅令第43號	稅關執務時間外勤務手當給與에 관한 件	VII-4
8. 24	勅令第61號	關稅에 관한 手數料及 旅費徵收件	VII-266
7. 23	勅令第54號	納入告知書를 發치 아니하고 關稅 其他 諸 收入徵收에 관한 件	VII-105
9. 22	度支部令第35號	關稅局出張所·稅關·稅關支署·稅關出張所에 서 徵收할 手數料	VII-348
4. 3. 4	度支部令第7號	關稅局出張所·稅關·稅關支署·稅關出張所에	IX-310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3. 12. 28	度支部令第36號	서 徵收할 手數料 改正	IX-242
開國504. 4. 5	勅令第73號	稅關休日 改正	I-330
光武 10. 10. 28	勅令第66號	收入條規 及 支出條規를 各道 各稅關에 施行하지 않는 件	V-296
11. 19	勅令第72號	管稅官服裝規則 改正	V-331

3. 專賣

1) 收入印紙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9. 11. 24	度支部令第17號	收入印紙規程	IV-422
10. 5. 22	度支部令第8號	收入印紙規程 改正	IV-581
11. 1. 31	度支部令第1號	收入印紙規則 改正	V-412
7. 17	度支部令第27號	收入印紙規程 改正	V-583
隆熙 3. 3. 10	度支部令第8號	收入印紙規程 改正	VIII-127
5. 21	度支部令第17號	收入印紙規程中 改正	VIII-258
2. 10. 14	度支部令第42號	收入印紙規程 改正	VII-405
光武 9. 11. 8	勅令第50號	收入印紙製造에 관한 件	IV-417
隆熙 2. 9. 28	勅令第70號	印紙類賣下代金 出納에 관한 件	VII-356
光武 11. 6. 22	度支部令第23號	印紙類出納規程	V-537
隆熙 2. 12. 23	度支部令第46號	印紙類出納規程 改正	VII-540
3. 3. 31	度支部令第14號	印紙類出納規程	VIII-184
2. 9. 17	度支部令第32號	印紙類出納規程 改正	VII-330
光武 9. 11. 24	度支部令第18號	收入印紙賣下規程	IV-423
10. 5. 22	度支部令第9號	收入印紙賣下規程施行件	IV-581
11. 1. 31	度支部令第2號	收入印紙賣下規則 改正	V-413
4. 20	度支部令第13號	收入印紙賣下規程 改正	V-491
隆熙 元. 10. 10	度支部令第30號	收入印紙賣下規程 改正	VI-60
2. 7. 25	度支部令第24號	收入印紙賣下規程 改正	VII-113
3. 3. 11	度支部令第10號	郡에서 收入印紙를 賣下하는 件	VIII-132
4. 2	度支部告示第2號	收入印紙를 賣下를 行할 郡名	VIII-192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5. 29	度支部告示第4號	收入印紙賣下를 行할 郡名 改正	VIII-268
6. 22	度支部告示第6號	收入印紙賣下를 行할 郡名 改正	VIII-287
7. 9	度支部告示第8號	收入印紙賣下를 行할 郡名 改正	VIII-355
7. 27	度支部告示第11號	收入印紙賣下를 行할 郡名 改正	VIII-380
8. 17	度支部告示第13號	收入印紙賣下를 行할 郡名 改正	VIII-409
10. 11	度支部告示第16號	收入印紙賣下를 行할 郡名 改正	VIII-499
4. 5. 21	度支部告示第4號	收入印紙賣下를 行한 郡名 改正	IX-449
8. 23	度支部告示第11號	收入印紙賣下를 行할 郡名 改正	IX-581
3. 3. 11	度支部訓令第31號	郡收入印紙賣下에 관한 取扱節次	VIII-135
7. 1	度支部令第71號	郡收入印紙賣下에 관한 取扱節次 改正	VIII-291
5. 15	內閣告示第17號	統監府令第10號(郵票類及收入印紙賣下規則)를 掲布하는 件	VIII-249

2) 郵票 등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光武 11. 6. 7	度支部令第20號	收入印紙及手形用紙 原賣下順序	V-519
隆熙 2. 7. 25	度支部令第25號	收入印紙及手形用紙賣下順序 改正	VII-113
9. 19	度支部令第38號	收入印紙及手形用紙原賣下順序 改正	VII-340
7. 25	度支部令第23號	收入印紙及手形用紙賣下에 관한 件	VII-112
3. 2. 24	度支部令第7號	手形用紙製造와 賣下에 관한 件 改正	VIII-98
4. 6. 22	度支部令第21號	手形用紙製造賣下에 관한 件 改正	IX-490
7. 25	度支部訓令第173號	輸入印紙及手形用紙賣下에 관한 注意	VII-119
隆熙 2. 7. 25	度支部告示第5號	收入印紙及手形用紙 賣下를 行할 財務署名	VII-119
10. 25	度支部告示第15號	收入印紙及手形用紙賣下財務署 追加指定	VII-465
3. 4. 2	度支部告示第1號	收入印紙及手形用紙 賣下를 行할 財務署名 改正	VIII-191
6. 22	度支部告示第7號	收入印紙賣下及手形用紙 賣下를 行할 財務署名 改正	VIII-288
7. 9	度支部告示第9號	收入印紙를 行할 賣下及手形用紙財務署名 改正	VIII-355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7. 27	度支部告示第10號	收入印紙及 手形用紙賣下를 行할 財務署名 改正	VIII-380
8. 17	度支部告示第12號	收入印紙及 手形用紙의 賣下를 行할 財務署 名 改正	VIII-409
10. 11	度支部告示第15號	收入印紙及 手形用紙賣下를 行할 財務署名 改正	VIII-499
4. 5. 21	度支部告示第3號	收入印紙及 手形用紙 賣下를 行할 財務署名 改正	IX-448
8. 23	度支部告示第10號	收入印紙及 手形用紙賣下를 行할 財務署名 改正	IX-581
光武 7. 9. 4	通信院第11號	郵票賣下人規則	III-550
9. 25	通信院令第12號	5錢·2錢5分·1錢·5分郵票를 廢止하는 件	III-554

3) 官報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隆熙 元. 12. 25		官報發賣規程	VI-173
12. 25		官報無代價頒布 廢止	VI-174
미상		官報發賣規程	VI-261
3. 12. 24	內閣告示第59號	印刷局에서 官報를 配付 販賣하는 件	IX-233
2. 1. 21		官報廣告規程	VI-236
3. 12. 24	內閣告示第60號	官報廣告規程	IX-233
12. 27		官報販賣規程	IX-239

4) 人蔘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高宗 31. 7. 24	議案	紅蔘을 度支衙門에 永付하는 件	I -78
開國504. 3. 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三十七) 蔘業을 政府獨占 事業으로 하는 件	I -283
建陽 2. 7. 15	奏本	農商工部官制中 蔘業을 刪去, 宮內府로 하 여금 專管케 하는 件	II-270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미상	度支衙門制定	包蔘規則	I -105
開國504. 9. 5	法律第14號	包蔘規則中 改正에 관한 件	I -560
9. 4	農商工部令第7號	紅蔘을 蒸造하는 規例	I -559
建陽 2. 7. 15	農商工部令第15號	紅蔘蒸造規例를 廢止하는 件	II -270
隆熙 2. 7. 25	度支部令第22號	人蔘特別耕作區域	VII-112
9. 21	度支部令第34號	人蔘特別耕作區域 改正	VII-344
9. 26	度支部令第37號	人蔘耕作者褒賞規程	VII-354
10. 8	法律第25號	水蔘賠償金先交에 관한 件	VII-401
3. 8. 30	度支部告示第14號	隆熙3年度以後에 收納하는 水蔘의 賠償價格에 관한 件	VIII-432
7. 16	法律第14號	紅蔘專賣法	VII-45
7. 11	度支部令第18號	紅蔘專賣法施行細則	VII-8
7. 20	度支部告示第4號	度支部司稅局蔘政課를 開城郡에 分置하는 件	VII-73
4. 1. 21	勅令第3號	蔘政局官制	IX-261
2. 14	度支部訓令第20號	蔘政局分課規程	IX-294

VIII. 社會 · 教育

1. 社會

1) 一般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高宗 31. 8.28	議案	豪右의 武斷을 科治하는 件	I-99
開國504. 8.26	內閣訓令第1號	官民의 騷擾를 禁하는 件	I-557
10.26		鄉會條規	I-600
10.26	奏本	鄉約辦務規程	I-602
建陽 元. 7.15	奏本	各地方校宮享祀에 관한 件	II-97
8.15	勅令第53號	地方各府 · 牧 · 郡의 殿牌를 闕牌로 改號하는 件	II-152
9. 1	奏本	各地方 府 · 牧 · 郡의 殿牌를 客舍內에 奉安하는 件	II-165
建陽 2. 1.14	奏本	各地方校宮亭舍 以下 諸費를 內部에 還屬하는 件	II-208
隆熙 4. 4.23	學部令第2號	鄉校財産管理規程	IX-415
4.26	學部訓令第3號	鄉校財産管理規程 頒布의 趣意	IX-419
4.26	學部訓令第2號	鄉校直負를 鄉校와 地方文廟의 事務에 관하여 地方官의 指揮 監督을 받는 件	IX-419
光武 2.10.20	詔勅	協會類를 일체 禁止하는 件	II-406
11. 4	詔勅	協會類를 革罷하는 件	II-417
11. 6	詔勅	黨聚者를 團束하는 件	II-418
11.22	奏本	獨立協會를 復設케 하는 件	II-423
光武 3. 1.15	詔勅	支會를 禁戢하는 件	II-436

2) 風俗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高宗 31. 7. 1	議案	廣袖衣의 着用을 禁하는 件	I -18
開國504. 3. 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十四) 官民間의 虛禮를 廢止하는 件	I -278
4. 11	詔勅	斷髮에 관한 件	I -622
11. 15	內部告示	斷髮에 관한 件	I -624
11. 15	內務告示	衣冠制度에 관한 件	I -624
建陽 元. 1. 2	內部訓示	斷髮에 관한 件	II-1
1. 4	奏本	冠·衣·履를 變通하는 件	II-1
高宗 31. 8. 6	議案	鴉片의 舊禁을 申明하는 件	I -84
10. 1	法務衙門告示	鴉片烟禁戒條例	I -109
光武 2. 8. 13	奏本	鴉片烟의 嚴禁을 法律로 確定하는 件	II-399
開國504. 3. 29	奏本	僧徒人城舊禁의 解弛에 관한 件	I -289
光武 4. 9. 18	詔勅	奢侈禁條例를 制定하는 件	III-197
11. 16	勅令第47號	禁奢侈條例	III-241
光武 9. 4. 17	奏本	巫卜雜術을 痛禁하는 件	IV-125
隆熙 3. 8. 5	忠清南道告諭 第1號	彩票禁止에 관한 件	VIII-393
隆熙 2. 9. 25	警視廳第5號	妓生團束令	VII-352
9. 25	警視廳令第6號	娼妓團束令	VII-353
隆熙 4. 8. 13	內閣告示第94號	統監府警務總監部令(第1號 妓生團束令 改正·第2號 娼妓團束令中 改正)을 揭布하는 件	IX-563

3) 社會扶助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高宗 31. 8. 10	議案	社倉設立에 관한 件	I -89
8. 12	議案	還穀中 移賃 加作 등의 名目을 革罷하는 件	I -90
開國504. 3. 12	奏本	還穀名目을 社還으로 改稱하는 件	I -189
閏 5. 28	度支部令第3號	社還條例	I -466
6. 17	警務廳告示第1號	喪輿의 賃文과 擔丁의 雇價에 관한 件	I -493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2. 10. 25	詔勅	賑民所 革派에 관한 件	II-409
3. 2. 23	詔勅	災變·民瘼의 稟奏를 定式으로 하는 件	II-445
光武 5. 10. 9	詔勅	惠民院을 設置하는 件	III-326
10. 16	勅令第18號	惠民院官制	III-328
11. 7	奏本	惠民院規則	III-333
12. 4	詔勅	總惠民社·分惠民社를 設置하는 件	III-340
12. 12	勅令第23號	總惠民社規程	III-345
12. 12	勅令第24號	分惠民社規程	III-346
隆熙 2. 2. 28	詔勅	「暴徒」에게 被燒된 民戶 救恤에 관한 件	VI-282
3. 23	內部訓令第174號	火災·水災 당한 者에 대한 救恤金 下送件	VI-333
4. 9	內部通牒	「暴徒」被害民에게 家屋建築木材를 給與하는 件	VI-370
3. 27	內部訓令第173號	「暴徒」被害民에게 家屋建築木材를 給與하는 件	VI-338

4) 寄附金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隆熙 3. 2. 27	閣令第2號	寄附金品募集取締規則	VIII-109
3. 4	忠淸南道令第2號	寄附金品募集取締規則에 의하여 觀察使에게 提出할 請願及 申告는 所轄警察署를 經由하는 件	VIII-123
4. 15	慶尙北道令第3號	寄附金募集取締規則에 의한 請願及申告는 所轄警察署를 經由하는 件	VIII-208
4. 15	江原道令第3號	寄附金募集取締規則에 의한 觀察使에게 提出請願及 申告는 所轄警察署를 經由하는 件	VIII-209
5. 24	忠淸北道令第2號	寄附金品募集取締規則에 의한 請願及 申告는 觀察使에 所轄警察署를 經由하는 件	VIII-263
12. 2	慶尙南道令第5號	寄附金品募集取締規則에 의한 請願及 申告에 관한 件	IX-185

5) 新聞·出版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11. 7. 24	法律第1號	新聞紙法	V-587
隆熙 2. 4. 20	法律第8號	新聞紙法 改正	VI-375
元. 10. 1	內部告示	新聞紙에 관한 諸請願及 申告書式	VI-56
隆熙 3. 2. 23	法律第6號	出版法	VIII-92
4. 15	慶尙北道令第2號	出版法에 의한 請願書는 所轄警察署를 經由 하는 件	VIII-208
5. 17	忠淸南道令第4號	出版法에 의한 請願書는 所轄警察署를 經由 하는 件	VIII-253
12. 2	慶尙南道令第4號	出版法에 의한 請願書에 관한 件	IX-184

2. 衛生

1) 病院

(1) 一般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504. 6. 13	詔勅	宮內府에 衛生局을 設置하는 件	I-492
光武 3. 4. 24	詔勅第14號	病院官制	II-464
4. 6. 30	勅令第24號	病院官制 改正	III-116
3. 5. 8	內部令第16號	病院細則	II-476
8. 25	勅令第35號	官立病院官等俸給令	II-552
隆熙 元. 12. 27	勅令第74號	大韓醫院長의 俸給及手當에 관한 件	VI-193

(2) 個別病院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7. 3. 24	勅令第6號	廣濟院官制 改正	III-523
9. 2. 26	勅令第18號	廣濟院官制	IV-33
7. 21	內部令第1號	廣濟院處務細則	IV-315
7. 21	內部令第2號	廣濟院施術細則	IV-316
7. 21	內部令第3號	廣濟院種痘支部細則	IV-317
7. 8	詔勅	大韓國赤十字病院을 設置하는 件	IV-300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10.27	勅令第47號	大韓赤十字社規則	IV-410
12.12	勅令第54號	大韓國赤十字社官制及 規則	IV-432
隆熙 3. 7.23	勅令第67號	大韓國赤十字社官制及 規則 廢止	VIII-373
光武 11. 3.10	勅令第9號	大韓醫院官制	V-452
隆熙 元.12.27	勅令第73號	大韓醫院官制 改正	VI-191
3. 2. 4	勅令第10號	大韓醫院官制	VIII-31
11.30		大韓醫院分課規程	IX-181
4. 2. 1	內部令第5號	大韓醫院附屬學校規則	IX-277
3. 2.26	內部告示第12號	內部衛生局試驗課를 大韓醫院構內에 設置하 는 件	VIII-109
8.21	勅令第75號	慈惠醫院官制	VIII-416
4. 7.21	勅令第38號	慈惠醫院官制 改正	IX-519
3. 8.30	法律第25號	慈惠醫院特別會計法	VIII-431
4. 7.21	法律第6號	慈惠醫院特別會計法 改正	IX-518
光武 3. 3.24	勅令第7號	醫學校官制	II-453
7. 5	學部令第9號	醫學校規則	II-518

(3) 漢城衛生會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8. 5.19	奏本	漢城內清潔法施行規定	III-604
隆熙 元.12.21	內閣告示第1號	漢城衛生會規約	VI-159
2. 3.30	法律第6號	漢城衛生會 費用에 관한 件	VI-339
9.28	法律第23號	漢城衛生會費用에 관한 件 改正	VII-355
11.21	漢城府令第3號	漢城衛生會費用取立의 標準及 課率	VII-514
11.21	漢城府告示第1號	漢城衛生會取扱銀行名	VII-515
3. 1.13	漢城府令第1號	漢城衛生會費用取立의 標準及 課率 改正	VIII-2
9.21	漢城府告諭第2號	衛生에 관한 件	VIII-456

2) 防疫

(1) 一般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光武 3. 8. 16	內部令第19號	傳染病豫防規則	II-539
9. 7	內部令第25號	傳染病消毒規則	II-564
7. 26	詔勅	臨時衛生院을 特設하여 流行病을 豫防하는 件	III-427
隆熙 3. 9. 24	內閣告示第29號	臨時防疫本部規程	VIII-457
10. 15	內閣告示第31號	臨時防疫本部規程 廢止	VIII-502
10. 1	警視廳令第7號	傳染病의 豫防에 관한 命令違背罰則	VIII-470
開國504. 閏5. 12	勅令第116號	官吏 及其他의 傳染病 豫防事務에 從事하다 該病에 感染하거나 이로 인하여 死亡한 者에게 支給하는 恤金에 관한 件	I-440
隆熙 元. 10. 5	警視廳第1號	飲食取締에 관한 件	VI-60
3. 9. 25	警視廳令第6號	飲食物販賣를 制限하는 件	VIII-458
10. 31	警視廳令第10號	飲食物販賣를 制限하는 件 改正	VIII-559
2. 4. 2	警視廳令第2號	除穢規則	VI-350
9. 3	警視廳告示第2號	除穢規則施行區域	VII-315
3. 6. 28	警視廳令第2號	畜犬團束規則	VIII-290

(2) 傳染病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開國504. 5. 14	內部令第2號	虎列刺病豫防規則	I-442
6. 4	內部令第4號	虎列刺病消毒規則	I-483
6. 4	內部令第5號	虎列刺病豫防과 消毒執行規程	I-485
6. 10	內部令第6號	內部令第5號를 漢城府外라도 虎列刺病이 流行하는 地方에 適用하는 件	I-489
光武 3. 8. 23	內部令第20號	虎列刺豫防規則	II-546
隆熙 3. 9. 15	警視廳告諭第1號	「코레라」의 豫防에 관한 件	VIII-444
9. 16	警視廳告諭第2號	「코레라」豫防策으로 清潔法을 施行하는 件	VIII-445
光武 3. 8. 29	內部令第23號	發疹室扶私豫防規則	II-559
開國504. 10. 7	內部令第8號	種痘規則	I-593
11. 7	勅令第180號	種痘醫養所規程	I-608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2. 4. 19	內部令第12號	種痘所細則	II-353
3. 6. 27	內部令第17號	各地方種痘細則	II-511
5. 10. 4	內部令第29號	各地方種痘細則 改正	III-325
3. 9. 6	內部令第24號	痘瘡豫防規則	II-563
4. 6. 30	勅令第25號	漢城種痘司官制	III-117
9. 4	內部令第28號	漢城種痘司細則	III-190
5. 10. 4	內部令第30號	漢城種痘司細則 改正	III-326
3. 8. 25	內部令第21號	腸窒扶私豫防規則	II-553
8. 29	內部令第22號	赤痢豫防規則	II-557

(3) 기타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504. 閏5. 12	勅令第115號	檢疫規則	I-439
閏 5. 13	奏本	仁川·平壤·義州에 檢疫所避病院을 設置하는 件	I-441
光武 3. 9. 16	內部令第26號	檢疫停船規則	II-568
4. 1. 2	內部令第27號	醫師規則·藥種商規則·藥品巡視規則	III-1
隆熙 3. 9. 14	警視廳令第3號	醫師·藥劑師·藥種商·藥舖의 吐瀉病及 下痢患者 診療時에 警察官署에 申告하는 件	VIII-441
10. 31	警視廳令第8號	醫師·藥劑師·藥種商·藥舖의 吐瀉病及 下痢者 診療時에 警察官署에 申告하는 件 廢止	VIII-559
9. 15	警視廳令第4號	病死者를 警察官署에 申告하는 件	VIII-442
10. 31	警視廳令第9號	病死者를 警察官署에 申告하는 件 廢止	VIII-559

3) 水道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10. 4. 25	勅令第21號	水道局官制	IV-560
5. 18	度支部令第7號	臨時水道費會計規程	IV-567
6. 21		水道局分掌規程	IV-587
隆熙 3. 11. 9	內部令第13號	水道給水規則	IX-72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9. 25	警視廳告示第2號	大韓水道會社共用水栓으로써 公衆에게 無料 給水하는 件	VIII-459
11. 20	警視廳告示第4號	大韓水道會社 共用水栓을 無料 給水하는 件 廢止	IX-177
4. 4. 11	內部訓令第39號	水道公設共用栓給水에 관한 處理節次	IX-399
• 1. 29	勅令第8號	官營의 水道給水에 관하여 納付케 할 金額 徵收에 대하여는 國稅徵收法의 規定을 準用 함을 得하는 件	IX-271
2. 15	內部令第6號	官營의 水道給水에 관하여 納付케 할 金額 徵收에 對하여 國稅徵收法의 規定을 準用할 境遇에 그 施行細則 準用에 관한 件	IX-297
9. 25	警視廳令第5號	京城이나 龍山의 流水에서 食物을 씻거나 洗面함을 禁하는 件	VIII-458
9. 25	警視廳告諭第3號	井水의 使用을 制限하는 件	VIII-461
10. 9	內部令第6號	蘄島·龍山水源 保護에 관한 件	VIII-489
10. 28	內部令第11號	蘄島·龍山水源 保護에 관한 件 廢止	VIII-556
4. 4. 11	內部告示第29號	平壤·仁川에 水道事務所를 設置하는 件	IX-400
2. 6. 11	勅令第32號	釜山水道敷設에 從事할 官吏에 관한 件	VI-444

3. 教育

1) 官制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高宗 31. 7. 28	議案	學務衙門官制改正 및 增補	I -81
開國504. 3. 25	勅令第46號	學部官制	I -211
光武 4. 4. 28	勅令第16號	學部官制 改正	III-85
8. 7. 26	勅令第23號	學部官制 改正	III-631
9. 14	勅令第26號	學部官制 改正	III-646
9. 24	詔勅	教育部官制	III-658
9. 2. 26	勅令第22號	學部官制	IV-39
10. 4. 11	勅令第18號	學部官制 改正	IV-542
隆熙 元. 12. 13	勅令第54號	學部官制 改正	VI-140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3. 2. 4	勅令第6號	學部官制 改正	VIII-28
4. 2. 22	勅令第15號	學部官制 改正	IX-302
開國504. 3. 25	內閣制定(?)	學部分課規程	I-227
光武 9. 4. 14		學部分課規程	IV-117
隆熙 2. 1. 28		學部分課規程	VI-253
3. 1. 4		學部分課規程 改正	VIII-1
11. 3		學部分課規程 改正	IX-67

2) 一般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開國504. 2. 2	詔勅	教育에 관한 件	I-180
光武 8. 5. 23	詔勅	教育에 관한 件	III-606
9. 7. 19	奏本	新訂國文을 實施하는 件	IV-312
10. 3. 26	詔勅	學校의 設置와 教育에 관한 件	IV-533
11. 1. 15	奏本	義務教育 및 奏·判任官任命에 관한 件	V-398
1. 16	奏本	義務教育 및 奏·判任官任命에 관한 件	V-399
3. 29	詔勅	列郡 館舍를 修理하여 學舍로 使用하는 件	V-478
7. 8	奏本	國文研究所를 設置하고 委員을 另差하는 件	V-581
隆熙 2. 8. 28	學部令第15號	公立·私立學校認定에 관한 規程	VII-285

3) 行政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隆熙 2. 6. 22	學部訓令第66號	學務委員規程準則	VI-486
10. 21	漢城府令第2號	學務委員規程	VII-461
隆熙 3. 2. 10	江原道令第2號	學務委員規定	VIII-46
隆熙 3. 3. 23	咸鏡北道令第3號	學務委員規程	VIII-165
光武 10. 7. 19	度支部令第13號	臨時教育擴張費會計規程	V-42
隆熙 4. 2. 1	忠清南道告示 第3號	公私立學校補助規程	IX-287
光武 11. 7. 3	學部令第7號	學部編纂普通學校教科用圖書發賣規程	V-573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隆熙 2. 8. 28	學部令第16號	教科用圖書檢定規程	VII-286
9. 15	學部令第18號	學部編纂教科用圖書發賣規程	VII-328
3. 11. 8	學部令第8號	學部編纂教科用圖書發賣規程 改正	IX-70
開國504. 7. 19	勅令第146號	官立公立小學校教員의 官等俸給에 관한 件	I -516
光武 3. 1. 5	勅令第1號	官立各種學校 教官教員俸給 改正	II-434
光武 10. 9. 24	勅令第56號	各公立學校職員俸給에 관한 件	V-195
隆熙 元. 12. 27	勅令第75號	官公立普通學校職員俸給 改正	VI-194
光武 3. 4. 12	學部令第7號	官公立學校教員敍任時試驗規則	II-461
7. 25	學部令第10號	官立學校教官職員의 褒證及 陞級規則	II-534
8. 2. 25	學部令第15號	官立學校教官 教員의 褒證及 陞級規則 改正	III-573
隆熙 元. 9. 28	勅令第24號	礦務學校官制 外國語學校 醫學校中學校卒業人을 該學校에 收用하는 官制·宗人學校官制 廢止	VI-49
2. 2. 13	學部令第8號	教育効績者褒賞規程	VI-267
9. 17	學部令第19號	教育効績者褒賞規程 改正	VII-332
10. 16	學部告示第8號	文官任用令에 의한 學校 認定	VII-459
4. 1. 28	學部訓令第1號	官公私立各學校職員이 政治에 關係함을 禁하는 件	IX-267
開國504. 11. 1	學部令第4號	各種學校退學生徒學費還入條規	I -605
光武 10. 4. 20	學部令第17號	各種學校退學徒學費還入條規 改正	IV-559
建陽 元. 3. 28	學部令第2號	官·公立各種學校生徒 黜學處分에 관한 件	II-50
3. 28	學部令第3號	各種學校退學生徒學費還入條規 改正	II-50
9. 19	學部令第6號	官立學校 退學學徒 處理에 관한 件	II-174
光武 9. 11. 28	學部令第1號	學校董督規定	IV-425
隆熙 4. 1. 28	學部訓令第1號	官公私立學校職員及 學員 學徒가 政治에 關係함을 禁하는 件	IX-267
光武 8. 4. 2	勅令第10號	各學校卒業人收用規則	III-592
隆熙 2. 6. 27	學部告示第5號	教育効績狀 및 徽章	VI-495

4) 成均館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504. 7. 2	勅令第136號	成均館官制	I-501
建陽 元. 1. 11	勅令第6號	成均館官制 改正	II-9
6. 11	勅令第27號	成均館官制 改正	II-87
2. 2. 17	勅令第13號	成均館官制 改正	II-211
光武 2. 5. 26	勅令第14號	成均館官制 改正	II-359
3. 3. 24	勅令第8號	成均館官制 改正	II-454
4. 27	詔勅	儒教를 崇尚하고 成均館官制를 改正하는 件	II-467
7. 17	詔勅	成均館官制를 法規校正所로 하여금 議定케 하는 件	II-532
9. 2. 26	勅令第23號	成均館官制	IV-40
隆熙 元. 9. 28	勅令第23號	成均館官制 改正	VI-48
2. 10. 29	勅令第76號	成均館官制 改正	VII-471
開國504. 8. 9	學部令第2號	成均館經學科規則	I-538
建陽 元. 7. 16	學部令第4號	成均館經學科規則 改正	II-98
隆熙 元. 10. 25	學部令第3號	成均館司業試選規程	VI-64
2. 10. 31	學部令第20號	成均館司業試選規程	VII-479
11. 20		成均館學則	VII-506

5) 學校의 種類

(1) 直轄學校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10. 9. 3	勅令第45號	學部直轄學校職員定員令	V-135
11. 3. 22	勅令第16號	學部直轄學校職員定員令 改正	V-471
隆熙 元. 12. 13	勅令第56號	學部直轄學校職員定員令 改正	VI-144
2. 4. 2	勅令第20號	學部直轄學校職員定員令 改正	VI-345
3. 2. 4	勅令第8號	學部直轄學校職員定員令 改正	VIII-30
3. 18	勅令第35號	學部直轄學校職員定員令 改正	VIII-155
5. 24	勅令第60號	學部直轄學校職員定員令 改正	VIII-263
4. 2. 22	勅令第16號	學部直轄學校職員令 改正	IX-303
光武 10. 8. 27	勅令第40號	學部直轄學校及公立學校官制	V-84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隆熙 元. 12. 13	勅令第55號	學部直轄學校及公立學校官制 改正	VI-142
2. 4. 2	勅令第23號	學部直轄學校及公立學校官制 改正	VI-347
光武 11. 3. 22	勅令第15號	學部直轄學校及公立學校官制 改正	V-471
隆熙 3. 3. 18	勅令第34號	學部直轄學校及 公立學校官制 改正	VIII-154
3. 24	勅令第7號	學部直轄學校及 公立學校官制 改正	VIII-29
5. 24	勅令第59號	學部直轄學校及 公立學校官制 改正	VIII-262
4. 3. 1	勅令第17號	學部直轄學校及 公立學校官制 改正	IX-308
4. 5	勅令第26號	學部直轄學校及 公立學校官制 改正	IX-393
光武 11. 1. 4	學部令第1號	學部直轄學校名稱 改正	V-391

(2) 私立學校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隆熙 2. 8. 26	勅令第62號	私立學校令	VII-277
8. 28	學部訓令第2號	私立學校令施行에 관한 件	VII-289
8. 28	學部告示第6號	私立學校學則記載例	VII-296
8. 28	學部令第14號	私立學校補助規程	VII-283
8. 26	勅令第63號	學會令	VII-279
8. 28	學部訓令第3號	書堂管理에 관한 件	VII-294

6) 一般學校

(1) 小學校·普通學校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504. 7. 19	勅令第145號	小學校令	I-513
8. 12	學部令第3號	小學校教則大綱	I-545
建陽 元. 2. 25	學部令第1號	補助公立小學校規則	II-46
光武 4. 10. 24	學部令第13號	補助公立小學校規則 改正	III-226
開國504. 9. 28	學部告示第4號	京城內壯洞·貞洞·廟洞·桂洞 四處에 小學校를 設立하는 件	I-587
建陽 元. 7. 31	學部廣告	銅峴에 官立小學校를 設置하고 學徒를 募集하는 件	II-113
7. 31	學部廣告	安洞에 官立小學校를 設置하고 學徒를 募集	II-113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하는 件	
9. 17	學部令第5號	地方公立小學校의 位置를 定하는 件	II-173
光武 10. 8. 27	勅令第44號	普通學校令	V-89
隆熙 元. 12. 30	勅令第83號	普通學校令 改正	VI-219
3. 4. 19	勅令第55號	普通學校令 改正	VIII-225
光武 10. 8. 27	學部令第23號	普通學校令施行規則	V-118
隆熙 元. 12. 31	學部令第5號	普通學校令施行規則 改正	VI-220
3. 7. 5	學部令第6號	普通學校令施行規則	VIII-338
隆熙 2. 4. 7	學部令第11號	官立普通學校補習科規程	VI-365
隆熙 3. 10. 20	學部告示第13號	官立校洞普通學校補習科規程	VIII-503
光武 10. 9. 1	學部令第24號	學部直轄普通學校 名稱	V-133
9. 18	學部令第28號	漢城府及各觀察府所在 公立普通學校의 名稱	V-149
11. 1. 4	學部令第2號	漢城府及·各觀察府所在 公立普通學校의 名稱 改正	V-391
6. 22	學部令第6號	官立養士洞·養賢洞普通學校를 合併하여 官立於義洞普通學校로 稱하는 件	V-541
隆熙 元. 9. 14	學部令第1號	公立普通學校 名稱 改正	VI-45
12. 31	學部令第7號	學部直轄普通學校 校數及 名稱 改正	VI-222
12. 31	學部令第6號	官立漢城師範學校附屬普通學校名稱 改正	VI-222
2. 4. 7	學部告示第2號	官立京橋普通學校 改稱	VI-366
3. 5. 10	學部告示第5號	公立楊根·鎭南普通學校를 公立楊平·龍南普通學校로 改稱하는 件	VIII-246
4. 3. 11	學部告示第4號	漢城內 官立普通學校를 公立普通學校로 變更 改稱하는 件	IX-325
5. 30	學部告示第14號	公立江鏡普通學校를 公立江景普通學校로 改稱하는 件	IX-473
7. 9	學部告示第18號	公立鳳陽普通學校를 公立求禮普通學校로 改稱하는 件	IX-512
光武 11. 4. 1	學部令第4號	公立普通學校의 名稱·所在地	V-481
5. 1	學部令第5號	公立普通學校의 名稱·所在地	V-502
隆熙 2. 4. 7	學部告示第1號	官立校洞普通學校에 補習科를 設置하는 件	VI-366
3. 6. 1	學部告示第7號	公立鍾城普通學校의 設置를 認可하는 件	VIII-280
4. 15	學部告示第4號	公立鳳陽·旌義·潭陽普通學校를 設置하는 件	VIII-209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9. 10	學部告示第9號	公立同福普通學校를 設置하는 件	VIII-440
9. 13	學部告示第10號	公立藍浦普通學校를 設置하는 件	VIII-440
4. 5. 24	學部告示第12號	公立稷山普通學校의 設置를 認可하는 件	IX-469
6. 15	學部告示第16號	公立瑞川·金城普通學校의 設置를 認可하는 件	IX-488
6. 29	學部告示第17號	公立麻浦普通學校의 設置를 認可하는 件	IX-505
7. 30	學部告示第20號	公立永同·沃川普通學校의 設置를 認可하는 件	IX-529
2. 4. 22	學部告示第3號	公立普通學校 名稱·位置	VI-398
11. 9	學部告示第9號	新設公立普通學校의 名稱·位置	VII-485
光武 10. 9. 1	學部令第27號	公立小學校·私立小學校를 普通學校令에 의 하여 設立된 學校로 認定하는 件	V-134
11. 1. 1	學部令第29號	公立漢城普通學校를 官立京橋普通學校로 改定 增設하는 件	V-391
隆熙 元. 8. 30	學部令第2號	官立安東普通學校를 官立漢城師範學校附屬普通學校로 代用하는 件	VI-35
3. 11. 30	學部告示第19號	公立金川普通學校 廢止	IX-184

(2) 高等學校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3. 4. 4	勅令第11號	中學校官制	II-459
4. 9. 3	學部令第12號	中學校規制	III-141
10. 8. 27	勅令第42號	高等學校令	V-87
隆熙 3. 4. 19	勅令第52號	高等學校令 改正	VIII-223
光武 10. 8. 27	學部令第21號	高等學校令施行規則	V-104
隆熙 2. 5. 25	學部令第13號	高等學校施行規則	VI-441
3. 7. 5	學部令第4號	高等學校令施行規則	VIII-323
光武 10. 9. 1	學部令第26號	官立漢城高等學校에 預科를 設置하는 件	V-134
隆熙 3. 3. 22	學部告示第2號	官立平壤日語學校를 官立平壤高等學校로 改稱하는 件	VIII-164
10. 20	學部告示第15號	官立漢城高等學校學則	VIII-510
10. 20	學部告示第16號	官立平壤高等學校學則	VIII-513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隆熙 2. 4. 2	勅令第22號	高等女學校令	VI-346
3. 4. 19	勅令第54號	高等女學校令 改正	VIII-225
2. 4. 7	學部令第9號	高等女學校令施行規則	VI-356
3. 7. 5	學部令第2號	高等女學校令施行規則	VIII-299
2. 4. 7	學部令第10號	官立漢城高等女學校學則	VI-362
3. 10. 20	學部告示第17號	官立漢城高等女學校學則	VIII-516
2. 6. 1	學部告示第4號	官立漢城高等女學校學科課程及 每週教授 時數表	VI-442

7) 特殊學校

(1) 外國語學校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504. 5. 10	勅令第88號	外國語學校官制	I-380
5. 10	勅令第89號	外國語學校職員의 官等 俸給에 관한 件	I-381
光武 元. 11. 13	勅令第40號	外國語學校官制 改正	II-295
10. 8. 27	勅令第43號	外國語學校令	V-88
隆熙 2. 5. 7	勅令第28號	外國語學校令 改正	VI-406
3. 4. 19	勅令第53號	外國語學校令 改正	VIII-224
光武 4. 6. 27	學部令第11號	外國語學校規則	III-104
6. 3. 4	學部令第14號	外國語學校規則 改正	III-360
10. 8. 27	學部令第22號	外國語學校令施行規則	V-113
隆熙 3. 7. 5	學部令第5號	外國語學校令施行規則	VIII-333
光武 11. 3. 4	學部令第3號	學部所管 日本國留學生規程	V-444
隆熙 2. 12. 1	學部令第21號	學部所管 日本國留學生規程	VII-519
5. 8	學部令第12號	官立漢城外國語學校速成科規則	VI-408
3. 10. 20	學部告示第14號	官立漢城外國語學校學則	VIII-504
開國504. 3. 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四十七) 日本留學生은 學部에서 管理하는 件	I-285
光武 2. 8. 2	奏本	各學校學徒·外國遊學卒業生을 需用하는 件	II-396
4. 10. 25	勅令第40號	外國語學校·醫學生·中學校卒業人을 該學校에 收用하는 件	III-227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10. 6. 14	學部令第19號	前京城學堂을 官立漢城第二日語學校로 定하는 件	IV-584

(2) 師範學校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504. 3. 29	奏本	(各大臣間規約條件二十) 漢城府에 敎員養成을 爲한 學校를 設立하는 件	I -279
4. 16	勅令第79號	漢城師範學校官制	I -348
4. 16	勅令第80號	漢城師範學校職員官等俸給令	I -350
7. 19	勅令第147號	漢城師範學校敎員의 官等俸給에 관한 件	I -517
建陽 2. 1. 14	勅令第10號	漢城師範學校·官公立小學校敎員의 官等·俸給 改正	II-206
開國504. 7. 23	學部令第1號	漢城師範學校規則·同附屬小學校規程	I -519
光武 3. 4. 21	學部令第8號	漢城師範學校規則 改正	II-462
隆熙 2. 9. 14	學部令第17號	官立漢城師範學校講習科規程	VII-327
3. 10. 20	學部告示第12號	官立漢城師範學校速成科規程	VIII-503
光武 10. 5. 17	學部令第18號	官立漢城師範學校敎員臨時養成科規則	IV-566
9. 1	學部令第25號	官立校洞普通學校를 官立漢城師範學校附屬普通學校로 代用하는 件	V-134
10. 8. 27	勅令第41號	師範學校令	V-86
隆熙 3. 4. 19	勅令第51號	師範學校令 改正	VIII-222
光武 10. 8. 27	學部令第20號	師範學校令施行規則	V-92
隆熙 3. 7. 5	學部令第3號	師範學校令施行規則	VIII-310

8) 기타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隆熙 元. 12. 12	學部令第4號	師範學校令施行規則·高等學校令施行規則·外國語學校令施行規則·普通學校令施行規則 改正	VI-106
3. 10. 20	學部令第7號	官立漢城高等女學校學則·官立普通學校補習科規程·官立漢城師範學校講習科規程 廢止	VIII-503

IX. 産業

1. 官制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504. 3. 25	勅令第48號	農商工部官制	I -214
建陽 元. 7. 15	勅令第30號	農商工部官制 改正	II -95
建陽 2. 6. 23	勅令第25號	農商工部官制 改正	II -262
光武 3. 7. 12	勅令第32號	農商工部官制 改正	II -529
光武 4. 3. 23	勅令第10號	農商工部官制 改正	III -52
	9. 29 勅令第36號	農商工部官制 改正	III -209
	12. 19 勅令第50號	農商工部官制 改正	III -254
光武 5. 3. 8	勅令第8號	農商工部官制 改正	III -293
光武 6. 10. 30	勅令第17號	農商工部官制 改正	III -461
光武 8. 7. 12	勅令第19號	農商工部官制 改正	III -628
光武 9. 2. 26	勅令第25號	農商工部官制	IV -42
光武 10. 1. 19	勅令第6號	農商工部官制 改正	IV -498
	7. 27 勅令第36號	農商工部官制 改正	V -53
光武 11. 6. 14	勅令第34號	農商工部官制 改正	V -523
隆熙 元. 12. 13	勅令第57號	農商工部官制 改正	VI -145
隆熙 3. 2. 18	勅令第16號	農商工部官制 改正	VIII -70
隆熙 3. 3. 4	勅令第23號	農商工部官制 改正	VIII -122
開國504. 3. 25	內閣制定(?)	農商工部分課規程	I -228
建陽 元. 7. 22	內閣制定(?)	農商工部分課規程 改正	II -102
光武 3. 9. 14	議政府制定(?)	農商工部分課規程 改正	II -572
光武 4. 4. 7	農商工部令第38號	農商工部分課規程 改正	III -58
	10. 23	農商工部分課規程 改正	III -226
	12. 26	農商工部分課規程 改正	III -267
光武 5. 3. 16		農商工部分課規程 改正	III -305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9. 4. 15		農商工部分課規程	IV-118
光武 10. 2. 12		農商工部分科規程 改正	IV-507
8. 8		農商工部分課規程 改正	V-58
隆熙 2. 1. 28		農商工部分課規程	VI-255
3. 25		農商工部分課規程 改正	VI-336
隆熙 3. 4. 24		農商工部分課規程 改正	VIII-231
隆熙 4. 3. 5		農商工部分課規程	IX-313

2. 實業教育

1) 商工學校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3. 4. 27	詔勅	學校教育振興·商工學校開設에 관한 件	II-466
6. 24	勅令第28號	商工學校官制	II-509
光武 4. 9. 4	勅令第31號	礦務學校官制	III-189
光武 8. 6. 8	勅令第16號	農商工學校官制	III-609
光武 11. 3. 22	勅令第14號	農商工學校官制 廢止	V-470
光武 8. 8. 18	學部令第16號	官立農商工學校規則	III-636
隆熙 4. 2. 23	學部告示第2號	善隣商業學校를 文官任用令에 依하여 認定하는 件	IX-307

2) 農林學校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10. 8. 27	勅令第39號	農商工部所管 農林學校官制	V-83
隆熙 元. 12. 30	勅令第79號	農林學校官制 改正	VI-216
隆熙 3. 2. 18	勅令第18號	農林學校官制 改正	VIII-71
光武 10. 9. 10	農商工部令第48號	農商工部所管 農林學校規則	V-138
隆熙 2. 3. 4	農商工部令第62號	農商工部所管 農林學校規則 改正	VI-284
隆熙 3. 6. 1	農商工部令第2號	農商工部所管農林學校規則 改正	VIII-272
9. 27	學部告示第11號	官立 農林學校本科를 文官任用令에 依하여 認定하는 件	VIII-465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隆熙 4. 3. 15	全羅北道告示 第3號	公立全州農林學校를 設置하는 件	IX-350
3. 15	慶尙北道告示 第4號	公立大邱農林學校를 設置하는 件	IX-350
4. 8	學部告示第10號	道立咸興農業學校의 設置를 認可하는 件	IX-398
4. 20	學部告示第11號	公立光州農林學校의 設置를 認可하는 件	IX-413
6. 9	學部告示第15號	公立濟州農林學校의 設置를 認可하는 件	IX-487
7. 26	學部告示第19號	道立公州農林學校의 設置를 認可하는 件	IX-522
8. 1	忠清南道告示 第8號	道立公州農林學校를 設置하는 件	IX-537

3) 實業學校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隆熙 3. 4. 26	勅令第56號	實業學校令	VIII-236
7. 5	學部令第1號	實業學校令施行規則	VIII-291
7. 10	學部訓令第7號	實業學校令施行上 注意事項	VIII-359
8. 30	學部告示第8號	官立仁川實業學校學則	VIII-433
4. 9	學部告示第3號	公立釜山實業學校를 設置하는 件	VIII-202
5. 24	學部告示第6號	官立仁川日語學校를 官立仁川實業學校로 變更改稱하는 件	VIII-265
11. 13	學部告示第18號	公立定州實業學校를 設置하는 件	IX-105
隆熙 4. 3. 15	江原道告示第1號	公立春川實業學校를 設置하는 件	IX-351
3. 19	學部告示第6號	公立群山普通學校에 公立群山實業學校의 併置를 認可하는 件	IX-352
3. 20	全羅北道告示 第4號	公立群山普通學校에 公立群山實業學校를 併設하는 件	IX-353
3. 24	學部告示第8號	公立春川實業學校를 認可하는 件	IX-355
4. 4	學部告示第9號	公立晉州實業學校의 設置를 認可하는 件	IX-392
8. 19	學部告示第22號	公立北靑實業學校의 設置를 認可하는 件	IX-570
5. 25	學部告示第13號	官立仁川實業學校本科를 文官任用令에 依하여 認定하는 件	IX-470
8. 12	學部告示第21號	公立釜山實業學校本科를 文官任用令에 依하	IX-540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4. 1	學部令第1號	여 認定하는 件 實業補習學校規程	IX-384
4. 14	漢城府告示第3號	公立於義洞·水下洞·漢洞實業補習學校를 開學하는 件	IX-406

4) 기타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11. 2. 1	勅令第6號	農商工部所管 工業傳習所官制	V-416
隆熙 2. 12. 30	勅令第80號	工業傳習所官制 改正	VI-217
隆熙 4. 3. 12	勅令第22號	工業傳習所官制 改正	IX-338
光武 11. 3. 1	農商工部令第50號	官立工業傳習所規則	V-439
隆熙 2. 3. 30	農商工部令第64號	農商工部所管 工業傳習所規則 改正	VI-340
隆熙 4. 4. 7	農商工部令第3號	官立工業傳習所規則 改正	IX-394
1. 31	農商工部告示第2號	農商工部女子蠶業講習所를 設置하는 件	IX-272
1. 29	勅令第6號	女子蠶業講習所所官制	IX-269
2. 23	農商工部令第1號	女子蠶業講習所規則	IX-303

3. 通信

1) 官制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504. 4. 19	農商工部令第1號	通信局 設置에 관한 件	I-355
光武 4. 4. 17	通信院令第1號	通信院位置에 관한 件	III-83
3. 23	勅令第11號	通信院官制	III-53
12. 19	勅令第52號	通信院官制 改正	III-255
光武 6. 10. 30	勅令第18號	通信院官制 改正	III-462
光武 9. 12. 29	勅令第58號	通信院官制 改正	IV-450
光武 10. 7. 27	勅令第35號	通信院官制 廢止	V-52
隆熙 2. 8. 11		統監府通信官署名·位置·處理事務	VII-139

2) 郵遞

(1) 官制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504. 5. 26	勅令第125號	郵遞司官制	I-464
建陽 元. 1. 21	勅令第10號	郵遞司官制 改正	II-19
8. 5	勅令第42號	郵遞司官制 改正	II-130
建陽 2. 3. 23	勅令第17號	郵遞司官制 改正	II-223
光武 元. 9. 12	勅令第34號	郵遞司官制 改正	II-283
光武 2. 3. 19	勅令第7號	郵遞司官制 改正	II-337
光武 3. 5. 22	勅令第25號	郵遞司官制 改正	II-484
光武 4. 1. 11	勅令第2號	郵遞司官制 改正	III-10
7. 25	勅令第28號	郵遞司官制	III-130
11. 3	勅令第42號	郵遞司官制 改正	III-234
光武 6. 10. 30	勅令第19號	郵遞司官制 改正	III-465
光武 8. 3. 12	勅令第5號	郵遞司官制 改正	III-581

(2) 郵遞規則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504. 5. 28	農商工訓令第131號	郵遞事務細則	I-408
5. 26	勅令第124號	國內郵遞規則	I-453
建陽 元. 8. 27	勅令第60號	國內郵遞規則 改正	II-159
建陽 2. 3. 16	勅令第16號	國內郵遞規則	II-216
7. 3	勅令第27號	國內郵遞規則 改正	II-265
光武 3. 4. 4	勅令第12號	國內郵遞規則 改正	II-460
光武 4. 1. 11	勅令第3號	國內郵遞規則 改正	III-11
1. 17	勅令第6號	國內郵遞規則 改正	III-13
11. 3	勅令第46號	國內郵遞規則 改正	III-237
光武 5. 6. 1	勅令第14號	國內郵遞規則 改正	III-319
9. 24	勅令第17號	國內郵遞規則 改正	III-323
光武 8. 9. 10	勅令第24號	國內郵遞規則 改正	III-644
建陽 2. 6. 25	農商工部令第14號	國內郵遞細則	II-242
光武 4. 3. 5	農商工部令第37號	國內郵遞細則	III-27
光武 7. 2. 5	農商工部令第40號	國內郵遞細則을 廢止하는 件	III-485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2. 22	通信院令第3號	國內郵遞細則	III-496
光武 元. 12. 23	勅令第43號	臨時郵便規則	II-305
光武 2. 4. 3	勅令第8號	臨時郵遞規則 改正	II-340
6. 10	勅令第17號	臨時郵遞規則 改正	II-363
光武 4. 6. 20	通信院令第2號	臨時郵遞規則 改正	III-102
光武 8. 9. 10	勅令第25號	臨時郵遞規則 改正	III-645
光武 4. 11. 3	勅令第45號	臨時郵遞規則 改正	III-236
光武 8. 10. 11	通信院令第9號	臨時郵遞細則	III-691

(3) 業務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4. 1. 1	農商工部告示	外遞를 實施하는 件	III-1
1. 1	農商工部令第38號	外遞를 實施하는 件	III-1
5. 11	通信院告示	1錢票 葉書를 行用하는 件	III-88
光武 5. 9. 28	通信院令第3號	韓日·韓淸間 郵遞物料金 改正	III-324
隆熙 4. 4. 2	內閣告示第38號	統監府令第8號(日淸郵便規則)를 揭布하는 件	IX-386
建陽 元. 9. 12	農商工部告示	郵遞物에 住所姓名을 詳記하는 件	II-171
9. 12	農商工部令第9號	郵遞區域定劃法	II-171
光武 6. 7. 15	通信院令第7號	國內郵遞區域 및 線路 改正	III-413
12. 8	通信院令第8號	國內郵遞區域 및 線路 改正	III-475
光武 8. 7. 8	通信院令第7號	國內郵遞區域·線路 改正	III-617
光武 2. 8. 8	農商工部令第30號	洪州·公州郵遞司 所管區域 改正	II-397
開國504. 7. 28	農商工部告示 第5號	集信斗 分傳의 開函時間의 更繕에 관한 件	I-528
光武 3. 2. 25	農商工部令第33號	漢城·仁川間 郵遞物發送時間 改正	II-446
10. 12	農商工部令第36號	漢城·仁川間 郵便物發送時間 改正	II-576
光武 4. 7. 3	通信院告示第1號	漢城·仁川間 郵便物發送時間 改正	III-120
7. 5	通信院令第4號	漢城·仁川間 郵遞物發送時間 改正	III-120
隆熙 2. 8. 29	內閣告示第8號	統監府令第33號(郵便私書函使用規則)를 揭布하는 件	VII-303
9. 17	內閣告示第11號	統監府令(第35號 第3種郵便物認可規則·第36	VII-333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隆熙 3. 11. 16	內閣告示第45號	號 約束郵便處理規則)을 掲布하는 件 統監府令第65號(郵便私書函使用規則 改正)·統監府告示第117號(電信事務 開始)를 掲布하는 件	IX-176
12. 11	內閣告示第54號	統監府令第69號(郵便振替貯金規則)를 掲布하는 件	IX-189
12. 11	內閣告示第55號	統監府令第70號(約束郵便物處理規則 改正)·統監府告示第126號(郵便振替事務 開始)를 掲布하는 件	IX-204
隆熙 4. 3. 30	內閣告示第32號	統監府令第6號(郵便私書函使用規則 改正)을 掲布하는 件	IX-381
開國504. 閏5. 26	勅令第126號	郵遞技手補俸給에 관한 件	I -465
建陽 元. 8. 5	勅令第43號	郵遞司職員俸給令	II-132
建陽. 2. 3. 23	勅令第18號	郵遞司職員俸給令 改正	II-224
光武 4. 11. 3	勅令第43號	郵遞司職員俸給令 改正	III-234
光武 7. 8. 24	通信院令第10號	遞傳夫執務及料資支給規程	III-545
光武 11. 5. 17	度支部令第14號	郵便官署國庫金出納區域中 新設한 郵便局所의 所屬金庫	V-508
光武 4. 11. 1	通信院令第6號	郵務學徒規則	III-228
隆熙 3. 5. 11	內閣告示第16號	統監府告示(第41號 電信事務開始 및 各稱 改定·第42號 收入印紙分賣郵便局所 指定)를 掲布하는 件	VIII-246

(4) 個別郵遞司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504. 閏5. 27	農商工部令第3號	漢城郵遞司·仁川郵遞司 管轄區域에 관한 件	I -470
閏5. 27	農商工部令第2號	漢城·仁川間 郵遞開設에 관한 件	I -470
閏5. 29	農商工部告示 第2號	漢城郵遞司와 仁川郵遞司의 設置에 관한 件	I -473
6. 5	農商工部告示 第3號	漢城郵遞司·仁川遞郵司 開設에 관한 件	I -488
6. 25	農商工部告示	漢城內外郵票賣下所開設에 관한 件	I -494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第4號		
7. 28	農商工部令第4號	開城에 郵遞司를 設置하는 件	I-527
7. 28	農商工部告示 第6號	漢城內 郵票賣下所增設에 관한 件	I-528
8. 1	農商工部令第5號	漢城郵遞司水原支司를 開設하는 件	I-530
8. 7	農商工部令第6號	漢城郵遞司 水原支司의 事務開始에 관한 件	I-535
10. 9	農商工部令第10號	忠州·安東·大邱·東萊에 郵遞司를 設置하 는 件	I-595
10. 10	農商工部告示	忠州·安東·大邱·東萊에 郵遞司를 設置하 는 件	I-596
建陽 元. 2. 5	農商工部令第1號	公州·全州·南原·羅州府에 郵遞司를 設置 하여 郵遞事務를 開始하는 件	II-41
2. 13	農商工部告示	公州·全州·南原·羅州府에 郵遞司를 開設 하여 郵遞物을 發送하는 件	II-42
4. 11	農商工部令第2號	平壤府·義州府에 郵遞司를 設置하여 郵遞 事務를 開始하는 件	II-72
4. 11	農商工部告示	平壤·義州에 郵遞司를 設置하고 郵遞物을 發送하는 件	II-73
5. 28	農商工部令第3號	春川·咸興·海州·洪州府·元山港에 郵遞司 를 設置하여 郵遞事務를 開始하는 件	II-81
5. 28	農商工部告示	海州·洪州·春川·咸興府·元山港에 郵遞司 를 設置하여 郵遞物을 發送하는 件	II-82
5. 28	農商工部告示	鎭城·江界府에 郵遞司를 設置하여 郵遞物 을 發送하는 件	II-82
5. 28	農商工部令第4號	鎭城·江界府에 郵便司를 設置하여 郵遞事 務를 開始하는 件	II-82
7. 3	農商工部令第5號	晉州府에 郵遞司를 設置하여 郵遞事務를 開 始하는 件	II-94
7. 3	農商工部告示	晉州府에 郵遞司를 設置하여 郵遞物을 發 送하는 件	II-94
7. 17	農商工部令第6號	安東郵遞司를 尙州郡에 權設하는 件	II-101
7. 17	農商工部告示	安東郵遞司를 尙州郡에 權設하고 郵遞物을 發送하는 件	II-102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8. 25	農商工部令第8號	平安北道定州郡에 平壤郵遞司支司를 開設하는 件	II-157
9. 29	農商工部令第9號	定州郡에 郵遞支司를 設置하는 件	II-185
9. 29	農商工部告示	定州郡에 郵遞司를 設置하여 郵遞物을 發送하는 件	II-186
11. 11	農商工部令第10號	慶興府에 鎭城郵遞司支司를 設置하는 件	II-192
11. 28	農商工部令第11號	慶興郵遞支司에서 郵遞事務를 開始하는 件	II-194
11. 28	農商工部告示	慶興府에 郵遞支司를 設置하고 郵遞物을 發送하는 件	II-194
光武元 11. 1	農商工部令第17號	甌南浦·木浦郵遞司 設置와 羅州郵遞司의 光州郡 移設에 관한 件	II-294
12. 3	農商工部令第20號	金城·江陵·寧邊郡에 郵遞司를 設置하는 件	II-300
12. 24	農商工部告示	務安·金城郵遞司의 郵務實施에 관한 件	II-319
光武 2. 1. 4	農商工部令第24號	江陵·寧邊郡에 郵遞司를 設置하여 郵務를 實施하는 件	II-321
1. 4	農商工部告示	江陵·寧邊郡郵遞司의 郵務實施에 관한 件	II-321
2. 23	農商工部令第25號	安城·淸州郡郵遞支司에서 郵務를 實施하는 件	II-336
2. 23	農商工部告示	安城·淸州郵遞支司에서 郵務를 實施하는 件	II-336
3. 23	農商工部令第26號	安東·北靑郵遞支司에서 郵務를 實施하는 件	II-337
3. 23	農商工部告示	安東·北靑郵遞支社에서 郵務를 實施하는 件	II-338
3. 29	農商工部令第27號	京畿道內에 臨時郵遞를 實施하는 件	II-339
3. 29	農商工部告示	京畿道內에 臨時郵遞를 實施하는 件	II-340
5. 11	農商工部令第28號	忠淸南北道·黃海道·江原道內에 臨時郵遞를 實施하는 件	II-354
5. 11	農商工部告示	忠淸南北道·黃海道·江原道內에 臨時郵遞를 實施하는 件	II-354
5. 28	農商工部令第29號	慶尙南北道·全羅南北道·咸鏡南北道內에 臨時郵遞를 實施하는 件	II-360
5. 28	農商工部告示	慶尙南北道·全羅南北道·咸鏡南北道·平安南北道內에 臨時郵遞를 實施하는 件	II-361
光武 3. 5. 25	農商工部令第35號	沃溝·昌原·城津府에 郵遞司를 設置하는 件	II-486
7. 21	農商工部告示	沃溝郵遞司의 郵務實施에 관한 件	II-533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8. 16	農商工部告示	昌原港郵遞司 設置와 郵遞 通信에 관한 件	II-540
8. 17	農商工部告示	城津港郵遞司 設置와 郵務實施에 관한 件	II-541
光武 元. 12. 31	農商工部令第23號	安東·淸州·安城·北靑郡에 郵遞支司를 設置하는 件	II-320
光武 5. 10. 19	農商工部告示第5號	四署盤松坊京口契에 漢城郵遞司支社를 設置하고 郵務를 實施하는 件	III-330
10. 18	通信院令第4號	四署盤松坊京口契에 漢城郵遞司支司를 設置하는 件	III-330
光武 6. 5. 26	通信院令第3號	公州郵遞司支司를 恩津郡에 設置하는 件	III-409
7. 1	通信院令第5號	恩津郡江鏡浦에 郵遞支司를 設置하고 郵務를 實施하는 件	III-411
7. 5	通信院令第5號	大邱郵遞司支司를 慶州郡에, 光州郵遞司支社를 長興郡에, 海州郵遞司支司를 瑞興郡에, 義州郵遞司支司를 碧潼郡에 設置하는 件	III-411
7. 5	通信院令第6號	濟州牧에 郵遞司를 設置하는 件	III-412
7. 19	通信院告示第6號	長興·慶州·瑞興·碧潼郡에 郵遞支司를 設置하고 郵務를 實施하는 件	III-426
7. 19	通信院告示第7號	淸州牧에 郵遞司를 設置하고 郵務를 實施하는 件	III-427
光武 7. 4. 14	通信院令第3號	西署龍山坊麻浦契에 漢城郵遞司支社를 設置하는 件	III-528
4. 27	通信院告示第4號	西署龍山坊麻浦契에 漢城郵遞支司를 設置하여 郵遞物을 通信하는 件	III-529
8. 15	通信院令第6號	西署盤石坊桃洞契에 漢城郵遞支司를 設置하는 件	III-543
8. 15	通信院令第8號	始興郡에 郵遞支司를 設置하는 件	III-544
8. 31	通信院告示第7號	西署盤石坊桃洞契에 漢城郵遞支司를 設置하여 郵遞物을 通信하는 件	III-548
9. 18	通信院告示第9號	始興郡永登浦에 郵遞支司를 設置하여 郵遞物을 通信하는 件	III-553
10. 23	通信院令第13號	敦義門外 漢城郵遞支社를 前雇馬廳으로 移設하는 件	III-556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10. 23	通信院告示第12號	敦義門外 漢城郵遞支司를 前雇馬廐으로 移設하는 件	III-556
光武 8. 5. 21	通信院令第3號	振威郡에 郵遞司를 設置하는 件	III-606
5. 26	通信院令第5號	鍾城郡에 郵遞司를 設置하는 件	III-607
7. 8	通信院告示第2號	振威郵遞司를 設置하여 通信하는 件	III-627
光武 9. 8. 25	韓國通信事務引繼 委員公告	韓國各郵遞司 및 電報司와 各郡臨時郵遞所의 事務를 接受하는 件	IV-375
9. 11	韓國通信事務引繼 委員公告	京城郵便局光化門出張所를 開設하는 件	IV-400
9. 21	韓國通信事務引繼 委員公告	城津郵便局鏡城出張所를 開設하는 件	IV-401

(5) 統監府郵遞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隆熙 2. 9. 30	內閣告示第16號	統監府告示(第161號 郵便取扱所 位置 名稱 改正·第162號 郵便所 廢止 및 事務承繼·第163號 郵便取扱所 郵便所 位置 名稱 改正)를 掲布하는 件	VII-392
12. 24	內閣告示第33號	統監府告示第205號(郵遞所 廢止 및 事務承繼)를 掲布하는 件	VII-541
12. 25	內閣告示第35號	統監府告示第207號(郵便所移接)를 掲布하는 件	VII-543
隆熙 3. 1. 18	內閣告示第1號	統監府告示第1號(郵便所移接 改稱)를 掲布하는 件	VIII-5
2. 18	內閣告示第6號	統監府告示第11號(郵便所設置)를 掲布하는 件	VIII-84
2. 24	內閣告示第7號	統監部告示第14號(郵遞所廢止及 事務承繼)를 掲布하는 件	VIII-98
3. 2	內閣告示第8號	統監府告示第15號(郵便所設置)를 掲布하는 件	VIII-118
4. 12	內閣告示第13號	統監府告示第29號(郵便所名稱 位置 改正)를 掲布하는 件	VIII-204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隆熙 3. 11. 24	內閣告示第46號	統監府告示第121號(郵便局의 位置 名稱 變更)을 掲布하는 件	IX-178
隆熙 4. 2. 8	內閣告示第10號	統監府告示(第13號 郵便局所位置 名稱 變更·第14號 郵便所 設置·第15號 郵便所廢止及 承繼)를 掲布하는 件	IX-293
3. 15	內閣告示第24號	統監府告示(第22號 郵便所設置 第23號郵便所廢止 又承繼)를 掲布하는 件	IX-349
4. 13	內閣告示第41號	統監府告示(第40號 郵便所 移轉·第42號 軍人軍屬이 振出할 通商爲替 處理)를 掲布하는 件	IX-404
4. 26	內閣告示第46號	統監部告示第64號(郵便所 追加)를 掲布하는 件	IX-421
7. 13	內閣告示第81號	統監府告示(第147號 郵便所 設置·第148號 郵便所廢止及 承繼)를 掲布하는 件	IX-514

3) 電報

(1) 官制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建陽 元. 7. 23	勅令第32號	電報司官制	II-102
建陽 2. 6. 14	勅令第23號	電報司官制 改正	II-241
光武 元. 10. 28	勅令第39號	電報司官制 改正	II-292
光武 2. 4. 14	勅令第9號	電報司官制 改正	II-352
光武 3. 5. 22	勅令第24號	電報司官制 改正	II-484
10. 6	勅令第36號	電報司官制 改正	II-575
光武 4. 7. 25	勅令第27號	電報司官制	III-128
光武 5. 6. 1	勅令第13號	電報司官制 改正	III-318
光武 6. 4. 24	勅令第6號	電報司制 改正	III-369
光武 7. 2. 10	勅令第3號	電報司官制 改正	III-488
光武 8. 3. 12	勅令第4號	電報司官制 改正	III-581

(2) 業務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建陽 元. 7. 26	勅令第34號	國內電報規則	II-106
4. 22	勅令第20號	電報規則 改正	II-228
建陽 2. 7. 13	勅令第28號	國內電報規則 改正	II-269
光武 2. 6. 10	勅令第16號	國內電報規則 改正	II-362
光武 7. 2. 10	勅令第4號	國內電報規則	III-488
光武 4. 11. 1	通信院令第7號	電務學徒規則	III-230
光武 8. 10. 8	通信院令第8號	掛號電報 施行에 관한 件	III-689
高宗 31. 9. 9	議案	電信打報人員을 司事로 改稱하는 件	I-101
光武 4. 4. 30	通信院告示	郵遞司·電報司職員의 赴任을 督促하는 件	III-86
建陽 元. 7. 23	勅令第33號	電報司職員俸給令	II-104
建陽 2. 6. 14	勅令第24號	電報司職員俸給令 改正	II-242
光武 4. 1. 17	勅令第5號	電報司職員俸給令 改正	III-13
11. 3	勅令第44號	電報司職員俸給令 改正	III-235
光武 8. 3. 31	通信院令第1號	工頭執務及料資支給規程	III-586
3. 31	通信院令第2號	電傳夫執務及料資支給規程	III-588

(3) 個別電報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建陽 元. 7. 30	農商工部令第7號	漢城·開城·平壤·義州에 電報司를 設置하 여 電報를 通信하는 件	II-112
7. 30	農商工部告示	漢城·開城·平壤·義州에 電報司를 設置하 고 電報를 通信하는 件	II-113
建陽 2. 2. 28	農商工部令第12號	仁川電報司 設置·通信에 관한 件	II-212
3. 12	農商工部告示	仁川電報司 設置·通信에 관한 件	II-214
6. 1	農商工部告示	元山電報司 設置와 漢城·元山間 電報通信 에 관한 件	II-238
6. 1	農商工部第13號	元山電報司 設置와 漢城·元山間 電報通信 에 관한 件	II-238
光武 元. 10. 22	農商工部令第15號	公州·全州電報司 및 務安電報支司 設置에 관한 件	II-291
10. 22	農商工部令第16號	三和電報支司 設置에 관한 件	II-292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11. 24	農商工部令第18號	公州電報司 設置와 漢城·公州間 電報 通信에 관한 件	II-297
11. 24	農商工部告示	公州電報司 設置와 漢城·公州間 電報 通信에 관한 件	II-297
11. 25	農商工部令第19號	平壤·甑南浦間 電報 通信에 관한 件	II-297
11. 25	農商工部告示	平壤·甑南浦間 電報 通信에 관한 件	II-298
12. 6	農商工部令第21號	全州電報司 設置와 漢城·全州間 電報 通信에 관한 件	II-300
12. 6	農商工部告示	全州電報司 設置와 漢城·全州間 通信에 관한 件	II-301
光武 2. 6. 17	農商工部令第29號 農商工部告示	全州·大邱·釜山間 電報 通信의 件 全州·大邱·釜山間 電報 通信의 件	II-364 II-364
光武 3. 5. 25	農商工部令第34號	沃溝·昌原府와 金城·博川·雲山郡에 電報司를 設置하는 件	II-486
6. 8	農商工部告示	漢城·金城間 電報 通信에 관한 件	II-500
7. 30	農商工部告示	群山港電報司設置·通信에 관한 件	II-537
8. 29	農商工部告示	昌原電報司 設置·通信에 관한 件	II-560
9. 12	農商工部令第35號	海州·咸興府에 電報司를 設置하는 件	II-567
光武 4. 7. 4	通信院令第3號	殷山·平壤間 電報事務를 開辦하는 件	III-120
7. 5	通信院令告示 第2號	平壤·殷山間 電報를 通信하는 件	III-121
11. 5	通信院令第8號	北靑郡·城津港·鏡城郡에 電報司를 설치하는 件	III-239
11. 5	通信院告示第5號	咸興·北靑間 電報를 通信하는 件	III-239
11. 20	通信院告示第6號	北靑·城津間 電報를 通信하는 件	III-243
12. 14	通信院告示第7號	城津·鏡城間 電報를 通信하는 件	III-249
光武 5. 4. 11	通信院令第1號	寧邊府에 電報司를 設置하는 件	III-306
3. 26	通信院令第2號	忠州府에 電報司를 設置하는 件	III-314
5. 18	通信院告示第1號	寧邊府電役을 完成하고 電報를 通信하는 件	III-316
5. 30	通信院告示第2號	釜山·昌原間 電報를 直通하는 件	III-316
5. 30	通信院告示第3號	漢城·忠州間 電報를 通信하는 件	III-317
6. 19	通信院告示第4號	忠州·大邱間 電報를 通信하는 件	III-320
11. 18	通信院令第5號	光州府에 務安電報司支司를 設置하는 件	III-337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6.	1. 8	通信院令第6號 晉州府에 電報司를 設置하는 件	III-337
	1. 23	通信院告示第1號 昌原·晉州間 電報를 通信하는 件	III-349
光武 7.	2. 20	通信院告示第2號 務安港·光州間 電報를 通信하는 件	III-349
	4. 10	通信院令第2號 水原府·恩津郡에 電報司를 設置하는 件	III-495
	6. 8	通信院告示第3號 公州·恩津江鏡浦間 電報를 通信하는 件	III-528
光武 8.	9. 9	通信院告示第5號 漢城·水原間 電報를 通信하는 件	III-531
	5. 21	通信院告示第8號 恩津·沃溝郡에 電報를 通信하는 件	III-552
	5. 26	通信院令第4號 振威郡에 電報司를 設置하는 件	III-606
	11. 12	通信院令第6號 鍾城郡에 電報司를 設置하는 件	III-607
		通信院告示第3號 振威電報司를 設置하고 通信하는 件	III-701

(4) 統監府電報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隆熙 2.	8. 22	內閣告示第5號 統監府告示第125號(電信事務取扱)를 掲布하는 件	VII-265
	8. 28	內閣告示第7號 統監府告示第129號(諺文電報處理)를 掲布하는 件	VII-296
	10. 8	內閣告示第18號 統監府告示第167號(電信事務 開始)를 掲布하는 件	VII-402
	8. 24	內閣告示第6號 統監府令第31號(電報過剩料額還付)를 掲布하는 件	VII-268
	11. 11	內閣告示第22號 統監府告示第184號(諺文電報處理)를 掲布하는 件	VII-486
	11. 12	內閣告示第24號 統監府告示第185號(諺文電報處理)를 掲布하는 件	VII-486
	12. 21	內閣告示第32號 統監府告示 第203號(電信事務開始)를 掲布하는 件	VII-540
	12. 28	內閣告示第36號 統監府告示第 208號(電報直配達區域 改正)을 掲布하는 件	VII-552
隆熙 3.	2. 3	內閣告示第4號 統監府告示第7號(電報取扱制限 改正)를 掲布하는 件	VIII-22
	5. 4	內閣告示第15號 統監府告示第40號(諺文電報處理)를 掲布하	VIII-245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6. 1	內閣告示第19號	는 件 統監府告示(第47號 諺文電報處理·電報處理 制限 改正)를 揭布하는 件	VIII-279
8. 17	內閣告示第22號	統監府告示(第72號 諺文電報處理·第23號 料 金受信人支撥外國新聞電報處理)를 揭布하는 件	VIII-405
10. 6	內閣告示第31號	統監府告示第102號(電信事務 開始)를 揭布 하는 件	VIII-474
隆熙 4. 3. 30	內閣告示第33號	統監府告示(第33號 電信事務 開始及 改稱· 第34號 電信取扱制限 改正)를 揭布하는 件	IX-382

4) 電話

(1) 業務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6. 4. 24	勅令第5號	電話規則	III-367
4. 28	通信院令第2號	電話細則	III-371

(2) 個別電話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6. 3. 19	通信院令第1號	漢城·仁川間 電話를 設置하는 件	III-362
3. 20	通信院告示第3號	漢城·仁川間 電話를 通信하는 件	III-363
5. 29	通信院令第4號	漢城·開城間 電話를 設置하는 件	III-409
5. 31	通信院告示第4號	漢城·開城間 電話를 通信하는 件	III-410
光武 7. 2. 5	通信院令第1號	開城·平壤間 電話를 設置하는 件	III-486
2. 5	通信院告示第1號	開城·平壤間 電話를 通信하는 件	III-486
4. 14	通信院令第4號	西署龍山坊麻浦契에 漢城電報司支司·漢城電 話所支所를 設置하는 件	III-528
6. 3	通信院告示第4號	漢城·西署麻浦間 電報·電話를 通信하는 件	III-530
6. 8	通信院令第5號	漢城·水原間 電話를 設置하는 件	III-530
6. 8	通信院告示第6號	漢城·水原間 電話를 通信하는 件	III-531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8. 15	通信院令第7號	西署盤石坊桃洞契에 漢城電報支司·電話支所를 設置하는 件	III-543
8. 15	通信院令第9號	始興郡에 電報支司·電話支所를 設置하는 件	III-544
9. 23	通信院告示第10號	西署盤石坊桃洞契에 漢城電報支司·電話支所를 設置하여 電報·電話를 通信하는 件	III-554
9. 25	通信院告示第11號	始興郡 永登浦에 電報支司·電話支所를 設置하여 電報·電話를 通信하는 件	III-555
11. 20	通信院令第14號	敦義門外에 漢城電報支司·電話支所를 設置하는 件	III-560
12. 21	通信院告示第13號	敦義門外에 漢城電報支司·電話支所를 設置하여 電報·電話를 通信하는 件	III-565
光武 8. 2. 27	通信院告示第1號	漢城·平壤間 電話通信을 臨時 停止하는 件	III-573

(3) 統監府電話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隆熙 2. 9. 21	內閣告示第13號	統監府告示(第152號 電話通話區域 및 電話料·第153號 長距離電話通話 開始·第154號 電信事務開始)를 揭布하는 件	VII-345
9. 30	內閣告示第15號	統監府告示(第158號 電話交換加入區域·第159號 通話呼出地域)를 揭布하는 件	VII-387
10. 17	內閣告示第19號	統監府告示第160號(電話事務開始)를 揭布하는 件	VII-460
11. 30	內閣告示第27號	統監府令第49號(電話規則 改正)를 揭布하는 件	VII-518
12. 25	內閣告示第34號	統監部告示(第206號 特設電話交換業務開始와 同電話加入者의 電線託送電報處理)를 揭布하는 件	VII-543
隆熙 3. 1. 25	內閣告示第2號	統監府告示第2號(電話呼出地域 改正)를 揭布하는 件	VIII-14
2. 6	內閣告示第5號	統監府告示(第8號 電話通信事務 開始·第9號 通話區域及 電話料金 改正)를 揭布하는 件	VIII-33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3. 13	內閣告示第9號	統監府告示第21號(特設電話交換業務 開始及 電線託送電報 處理)를 掲布하는 件	VIII-147
3. 14	內閣告示第11號	統監府告示第22號(水底電線布設及 區域)를 掲布하는 件	VIII-147
4. 27	內閣告示第14號	統監府告示(第32號 電話通話事務 開始·第 33號 電話呼出區域 改正·第34號 通話區域 及 電話料金表 改正)를 掲布하는 件	VIII-240
8. 17	內閣告示第23號	統監府告示(第74號 電話通話事務 開始·第 75號 明治41年 統監府告示第152號中 改正) 를 掲布하는 件	VIII-406
隆熙 4. 2. 1	內閣告示第8號	統監府告示(第11號 特設電話交換業務 開 始·第12號 通信事務에 使用할 日附印에 관 한 件)를 掲布하는 件	IX-286
5. 17	內閣告示第55號	統監府告示(第77號 電話通話事務 開始·第 78號 通話區域及 通話料 改正施行)를 掲布 하는 件	IX-444
5. 26	內閣告示第58號	統監府告示第84號(特設電話加入申請 受理) 를 掲布하는 件	IX-471
7. 1	內閣告示第76號	統監府告示(第140號 電話加入申請 受理·第 141號 電話通話區域 追加施行·第142號 電 話加入區域 改正)를 掲布하는 件	IX-510
7. 30	內閣告示第87號	統監府告示第160號(特殊通信日附印 使用)를 掲布하는 件	IX-528
8. 13	內閣告示第93號	統監府告示(第167號 電話通話事務 開始·第 168號 및 通話區域及 電話料中 追加·第169 號 電話呼出地域中 改正 施行)를 掲布하는 件	IX-547
8. 16	內閣告示第95號	統監府告示(第173號 電話通話事務開始·第 174號 電話呼出地域中 改正施行·第175號 通 話區域及 電話料中 追加施行)를 掲布하는 件	IX-568

5) 統監府通信綜合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隆熙 2. 8. 6	內閣告示第1號	統監府告示(第110號 郵便取扱所를 郵便電信取扱所으로 改稱하는 件·第111號 電信事務開始·第117號 郵便所設置)를 掲布하는 件	VII-133
	8. 8 內閣告示第2號	統監府告示(第118號 電報直配達區域 改正·第119號 特設電話加入申請受理)를 掲布하는 件	VII-134
	8. 31 內閣告示第9號	統監府令第34號(電話料 電話呼出料)·統監府告示(第130號 電話通話事務開始·第131號 電話呼出地域·第132號 特設電話加入申請 受理·第133號 郵便取扱所設置·第134號 郵便所 廢止와 事務承繼·第135號 軍人軍屬發行 通常換錢處理)를 掲布하는 件	VII-307
	9. 12 內閣告示第10號	統監府告示(第136號 渡切經費의 交付를 指定한 郵便局 改正·140號 郵便所 設置·第141號 郵便電信取扱所 廢止 및 事務承繼·第143號 電信取扱所 設置·第144號 電信取扱所 設置·第145號 電報取扱時間 改正)를 掲布하는 件	VII-323
	9. 17 內閣告示第12號	統監府告示(第146號 管理事務分掌郵便局 및 受持區域表·第147號 電報直分傳區域·第148號 郵便貯金 局待出給 取扱郵便局·第149號 軍人 軍屬發行 通常換錢 處理·第150號 郵便所 廢止와 事務承繼·第151號 郵便所 設置)를 掲布하는 件	VII-337
	9. 28 內閣告示第14號	統監府令(第37號 電話規則·第39號 特設電話規則·第40號 官廳用 軍用及 私設電信電話 並特設電話維持規程·第41號 電信電話에 관한 別使分傳料及 艇船分傳料)·統監府告示(第155號 郵便所 移轉·第156號 管理事務分掌郵便局을 外國郵便換錢交換局으로 改稱하는 件·第157號 電話通話事務 開始)를 掲布하는 件	VII-358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10. 6	內閣告示第17號	統監府告示(第164號 統監府通信官署韓國國庫金出納受持區域指定表 改正·第165號 諺文電報 處理·第166號 釜山郵便局分室 設置)를 掲布하는 件	VII-397
10. 22	內閣告示第20號	統監府告示(第170號 電報直分傳區域改正·第171號 電話通話事務開始·第172號 通話區域及電話料 改正·第173號 電話呼出地域 改正)를 掲布하는 件	VII-462
10. 30	內閣告示第21號	統監府告示(第174號 郵遞所 廢止 및 事務承繼·第176號 電信事務 開始·第177號 電報直配達區域 改正)를 掲布하는 件	VII-473
11. 20	內閣告示第26號	統監府告示(第198號 郵便電信局所位置 名稱 改正·第190號 電信事務開始·第191號 郵便局設置·第192號 郵便通信取扱所廢止 및 事務承繼)를 掲布하는 件	VII-505
12. 1	內閣告示第28號	統監府令(第194號 諺文電報處理郵便所·第195號 電話呼出地域 改正)를 掲布하는 件	VII-526
12. 5	內閣告示第29號	統監府告示(第196號 電信電話通話事務開·第197號 通話區域及電話料金表 改正)를 掲布하는 件	VII-527
12. 11	內閣告示第30號	統監府告示(第198號 郵便物接傳事務 處理·第199號 電信事務開始)를 掲布하는 件	VII-533
12. 14	內閣告示第31號	統監府告示(第200號 郵便局移轉·第201號 通話區域及電話料 改正)를 掲布하는 件	VII-535
隆熙 3. 1. 27	內閣告示第3號	統監府令第1號(明治41年 統監府令第23號 改正)·統監府告示(第3號 諺文電報處理·第4號 電話事務開始·第5號通話區域及 電話料 追加施行·第6號 電報事務處理)를 掲布하는 件	VIII-16
5. 24	內閣告示第18號	統監府告示(第44號 電信取扱所 設置·第45號 軍人軍屬出付通常爲替 處理)를 掲布하는 件	VIII-263
6. 22	內閣告示第20號	統監府告示(第52號 特設電話交換業務開始·第53號 電話加入申請 受理·第54號 電話通	VIII-285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信區域 追加・第55號 電話交換事務 開始・第56號 特設電話交換業務 廢止・第57號 電話加入區域 改正・第58號 電話呼出地域 改正)를 揭布하는 件	
8. 4	內閣告示第21號	統監府告示(第67號 明治40年 統監府告示第76號 中削除・第68號 電信事務開始及 郵便取扱所改稱・第69號 電報取扱 制限 改正)를 揭布하는 件	VIII-391
8. 25	內閣告示第24號	統監府告示(第77號 國庫金出納及保管事務處理廢止・第78號 同 開始・第79號 電信事務開始及 郵便所取扱所改稱・第80號 電話呼出地域中 改正施行)를 揭布하는 件	VIII-418
9. 1	內閣告示第25號	統監府告示(第82號 郵便所廢止及 承繼・第84號 電信取扱所廢止及 承繼)를 揭布하는 件	VIII-437
9. 9	內閣告示第26號	統監府告示(第85號 料金受信人支撥外國新聞電報處理郵便局所名 追加)를 揭布하는 件	VIII-439
隆熙 3. 9. 15	內閣告示第27號	統監府告示(第86號 郵便局所位置 名稱 改正・第87號 電話加入申請書提出・第88號 通話區域及 其電話料件中 追加施行・第89號 特設電話加入申請書提出・第90號 電報處理制限 改正)를 揭布되는 件	VIII-443
9. 21	內閣告示第28號	統監府告示(第91號 電話加入區域中 改正・第92號 電話呼出地域中 改正施行・第93號 電信事務開始及郵便取扱所 改稱)를 揭布하는 件	VIII-454
10. 4	內閣告示第30號	統監府告示(第95號 郵便所 移接・第96號 郵便局移接・第79號 郵便所 設置・第100號 電話開通事務 開始)를 揭布하는 件	VIII-472
11. 3	內閣告示第40號	統監府告示(第107號 電信事務開始及 名稱 改正・第108號 收入印紙分賣郵便局所 改正)를 揭布하는 件	IX-67
11. 8	內閣告示第42號	統監府告示(第112號 電信事務 開始・第113	IX-71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연
11. 30	內閣告示第47號	號 諺文電報 處理)를 揭布하는 件 統監府告示(第122號 韓國國庫金出納收支區域及受持韓國金庫指定 廢止·第123號 電信事務開始及 名稱 改正·第124號 諺文電報處理)를 揭布하는 件	IX-182
12. 14	內閣告示第57號	統監府告示(第125號 郵便所移接·第127號 電信取扱所 廢止及 事務承繼)를 揭布하는 件	IX-205
12. 28	內閣告示第62號	統監府告示(第129號 郵便所 設置·第130號 電話交換業務 開始·第131號 郵便所 設置·第132號 電話呼出地域 改正)를 揭布하는 件	IX-246
隆熙 4. 1. 11	內閣告示第3號	統監府告示(第1號 郵便所 設置·第2號 電報直配達區域外 受持區域에 관한 件)을 揭布하는 件	IX-249
1. 18	內閣告示第5號	統監府告示(第4號 特設電話交換業務 開始·第5號郵便所 設置·第6號 郵便所廢止及 承繼·第7號 電信事務及 電話事務開始·第8號 通話區域及 電話料)를 揭布하는 件	IX-257
1. 25	內閣告示第6號	統監府告示(第9號 電信事務 開始及 郵便取扱所 改稱·第10號 電話呼出地域 改正)를 揭布하는 件	IX-265
2. 15	內閣告示第11號	統監府告示(第16號 郵便電信取扱所及 郵便所 設置·第17號 郵便電信取扱所及 郵便所 廢止 又承繼·第18號 郵便所 設置·第19號 郵便所 廢止 又承繼)를 揭布하는 件	IX-299
3. 23	內閣告示第28號	統監府告示(第27號 電信事務開始及 郵便取扱所 改稱·第28號 電報取扱制限 改正)를 揭布하는 件	IX-354
隆熙 4. 4. 1	內閣告示第37號	統監府告示(第35號 郵便所 設置及 電信事務處理·第36號 郵遞所 廢止及 承繼)를 揭布하는 件	IX-385
4. 19	內閣告示第42號	統監府告示(第53號 郵便所 移轉 改稱·第54號 電報取扱制限 改正·第55號 電信事務開始及 改稱·第56號 諺文電報 處理·第57號	IX-411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5. 2	內閣告示第47號	電信取扱所 設置・第58號 電信取扱所廢止及事務承繼)를 掲布하는 件 統監府告示(第68號 電信取扱所 廢止及 事務承繼・第69號 電信取扱制限 改正・第70號 電信取扱所 設置・第71號 電話呼出地域 改正)를 掲布하는 件	IX-437
6. 22	內閣告示第72號	統監府告示(第127號 電話加入區域 改正・第128號 韓國國庫金出納及 保管事務取扱)를 掲布하는 件	IX-490
6. 28	內閣告示第75號	統監府告示(第155號 郵便所 設置・第156號 通話區域及 電話料 改正・第157號 電話呼出地域 改正)를 掲布하는 件	IX-503
7. 26	內閣告示第85號	統監府告示(第55號 郵便所 設置・第156號 通話區域及 電話料 改正・第157號 電話呼出地域 改正)를 掲布하는 件	IX-522
8. 3	內閣告示第88號	統監府告示(第162號 郵便所 設置・第163號 電信事務及 電話通信事務 開始・第164號 電信事務開始・第165號 郵便所名稱及 位置 改正・第166號 通話區域及 電話料中 改正施行)를 掲布하는 件	IX-537
8. 23	內閣告示第97號	統監府告示(第176號 郵便電信取扱所及 郵便所 設置・第177號 郵便電話取扱所及 廢止及承繼・第178號 電話通話事務 開始・第179號 通話區域及 電話料中 追加施行・第180號 電話呼出區域中 改正施行・第181號 電話呼出地域中 改正・第183號 諺文電報取扱)를 掲布하는 件	IX-578

4. 農水產業

1) 農業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光武 11. 3. 14	詔勅	實業을 勸獎하는 件	V-457
隆熙 2. 3. 9	勅令第13號	種苗場官制	VI-300
隆熙 3. 2. 4	勅令第3號	種苗場官制 改正	VIII-26
隆熙 4. 2. 1	勅令第10號	種苗場官制 改正	IX-275
隆熙 2. 3. 24	農商工部告示 第5號	農商工部所管 種苗場을 木浦에 設置하는 件	VI-334
	3. 25 農商工部告示 第5號	農商工部所管 種苗場 位置·名稱	VI-336
隆熙 3. 2. 20	農商工部告示 第19號	農商工部 光州·全州·海州·義州·鏡城 種 苗場을 設置하는 件	VIII-89
隆熙 4. 2. 5	農商工部告示 第3號	農商工部公州種苗場을 設置하는 件	IX-292
	3. 17 農商工部告示 第5號	農業商工部春川種苗場을 設置하는 件	IX-352
隆熙 2. 3. 9	勅令第12號	臨時棉花栽培所官制	VI-299
隆熙 3. 2. 4	勅令第4號	臨時棉花栽培所官制 改正	VIII-27
隆熙 4. 2. 1	勅令第11號	臨時棉花栽培所官制 改正	IX-275
隆熙 2. 3. 24	農商工部告示 第4號	農商工部所管 臨時棉花栽培所를 木浦에 設 置하는 件	VI-334
光武 10. 8. 9	勅令第37號	農商工部所管 園藝模範場官制	V-61
隆熙 元. 12. 30	勅令第81號	農商工部所管 園藝模範場官制 改正	VI-218
隆熙 3. 4. 20	內部令第3號	痘苗賣下規則	VIII-227
光武 11. 4. 16	勅令第21號	西北營林廠官制	V-489
隆熙 2. 11. 2	勅令第78號	西北營林廠事務官·主事給與 停止에 관한 件	VII-480
隆熙 3. 2. 20	農商工部告示 第18號	農商工部勸業模範場木浦·群山出張所 廢止	VIII-88
隆熙 2. 6. 15	農商工部訓令 第192號	農業統計에 관한 件	VI-449
隆熙 3. 10. 23	農商工部訓令甲 第13號	農業統計에 관한 件 改正	VIII-523
隆熙 4. 6. 6	度支部訓令第67號	烟草耕作的 改良을 指導하기 爲하여 技術員 을 派遣하는 件	IX-486
光武 10. 3. 26	度支部令第3號	水利組合條例	IV-534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隆熙 4. 4. 15	慶尙北道第11號	堤堰內 冒耕田畝取扱에 관한 件	IX-408
光武 9. 12. 29	勅令第60號	農商工學校附屬農事試驗場官制	IV-452
光武 10. 5. 31	勅令第25號	農商工學校附屬農事試驗場官制 廢止	IV-583
光武 11. 3. 22	勅令第17號	勸業模範場官制	V-472
隆熙 2. 1. 1	農商工部告示第1號	農商工部所管 勸業模範場 群山·平壤出張소 設置	VI-226
2. 25	農商工部告示第2號	勸業模範場大邱出張所 設置	VI-275

2) 森林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7. 8. 22	奏本	森林監理를 交涉事務官으로 兼差하는 件	III-544
隆熙 2. 1. 21	法律第1號	森林法	VI-231
4. 21	農商工部令第65號	森林法施行細則	VI-376
3. 5	農商工部令第63號	國有森林山野部分林規則	VI-286
7. 18	農商工部告示第10號	漢城5部內區域의 森林을 保安林에 編入하는 件	VII-56
3. 9	勅令第14號	林業事務所官制	VI-301
隆熙 3. 4. 9	勅令第47號	林業事務所官制 改正	VIII-201
4. 10	農商工部告示第21號	農商工部所管 林業事務소의 名稱·位置·管轄區域	VIII-203
隆熙 4. 5. 25	農商工部告示第8號	水原林業事務所 廢止	IX-471
5. 31	農商工部告示第9號	山林局及 林業事務所 公文書에 使用하는 樹竹名	IX-474

3) 畜産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建陽 元. 1. 18	法律第1號	庖肆規則	II-14
建陽 2. 3. 13	法律第3號	庖肆規則 改正	VI-304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9. 9. 11	農商工部告示	屠獸場并獸肉販賣規則	IV-398
隆熙 3. 12. 18	慶尙北道令第9號	獸肉販賣取締規則	IX-215
12. 18	慶尙北道令第9號	獸肉販賣營業取締規則	IX-216
隆熙 4. 2. 7	江原道令第1號	獸肉販賣營業取締規則	IX-292
3. 31	平安北道令第5號	獸肉販賣營業取締規則	IX-382
隆熙 3. 8. 21	法律第24號	屠獸規則	VIII-415
9. 8	警視廳告示第1號	西大門屠獸場를 開始하는 件	VIII-439
12. 15	忠淸南道令第7號	屠獸規則施行細則	IX-207
12. 18	慶尙北道令第8號	屠獸規則施行細則	IX-212
12. 18	慶尙南道告示 第2號	屠場設立地를 指定하는 件	IX-221
12. 20	江原道令第6號	屠獸規則施行細則	IX-223
12. 22	咸鏡北道令第8號	屠獸規則施行細則	IX-226
12. 24	忠淸北道令第4號	屠獸規則施行細則	IX-230
12. 26	全羅北道令第3號	屠獸規則施行細則	IX-234
12. 28	京畿道令第3號	屠獸規則施行細則	IX-243
隆熙 4. 1. 13	平安北道令第1號	屠獸規則施行細則	IX-249
4. 2	忠淸南道告示 第4號	屠場設立地等級地	IX-390
4. 27	咸鏡北道告示 第5號	屠場設立地等級地 改正	IX-421
6. 30	忠淸南道告示 第7號	屠場設立地等級地 改正	IX-509

4) 輸出牛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隆熙 3. 7. 10	法律第21號	輸出牛檢疫法	VIII-356
8. 19	法律第23號	輸出牛檢疫法 改正	VIII-412
8. 18	農商工部訓令甲 第10號	輸出牛의 檢疫에 관한 件	VIII-410
7. 10	勅令第65號	輸出牛檢疫所官制	VIII-357
8. 12	農商工部告示	輸出牛檢疫所를 設置하는 件	VIII-401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8.20	第27號 農商工部訓令丙	輸出牛檢疫執務規程	VIII-413
1.19	第15號 咸鏡北道令第2號	牛畜의 輸出을 禁止하는 件	VIII-5
8.7	咸鏡北道令第4號	牛畜輸出禁止件中 城津港을 解禁하는 件	VIII-396
8.12	農商工部告示第28號	輸出牛檢疫法에 依한 日本海港을 告示하는 件	VIII-402

5. 漁業·海運

1) 漁業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隆熙 2.11.7	法律第29號	漁業法	VII-482
11.21	農商工部令第72號	漁業法施行細則	VII-510
隆熙 3.2.23	勅令第22號	漁業法施行期日에 관한 件	VIII-95
2.16	農商工部告示 第15號	漁業法施行細則의 規定에 依한 請願書·申 請書·申告書의 書式	VIII-51
2.24	農商工部告示 第17號	漁業法施行細則規定에 依하여 製作하는 漁 場圖及 漁具圖 製作方法에 關한 件	VIII-99
3.8	勅令第25號	漁業에 관한 手數料의 件	VIII-125
3.29	農商工部令第1號	漁業法에 의한 請願書·申請書 其他 書類로 漁業法施行細則에 依하여 地方長官을 經由 할 것은 日本理事官을 經由하는 件	VIII-168
6.1	江原道令第4號	漁業法施行細則에 의하여 觀察使를 經由할 漁業에 관한 請願書 申告書 其他 書類는 그 漁場을 管轄하는 郡守에게 提出하는 件	VIII-279
2.16	農商工部告示 第14號	漁業免許狀·許可狀·監察 式樣	VIII-47

2) 渡船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隆熙 3. 3. 31	忠淸南道令第3號	渡船營業取締規則	
4. 1	京畿道令第1號	渡船營業取締規則	VIII-185
5. 18	忠淸北道令第1號	渡船營業處理規則	VIII-189
5. 25	慶尙北道令第4號	渡船營業取締規則	VIII-255
6. 3	警視廳令第1號	渡船營業團束規則	VIII-265
12. 10	咸鏡北道令第6號	渡船營業取締規則	VIII-280
12. 10	咸鏡北道令第7號	渡船夫營業取締規則	IX-187
			IX-189

3) 船舶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3. 10. 25	農商工部令第37號	管船課細則	
隆熙 4. 3. 9	勅令第20號	航路標識管理所官制	II-577
7. 21	勅令第39號	航路標識管理所官制 改正	IX-320
3. 15	度支部訓令第33號	船路標識管理所分課規程	IX-520
5. 9	勅令第31號	外國船舶을 借入하여 不開港間을 航行하는 特許手數料에 관한 件	IX-346
5. 10	度支部令第18號	外國船舶을 借入하여 不開港間을 航行하는 特許手數料	IX-439
3. 12	法律第1號	船舶法	IX-440
3. 29	度支部令第11號	船舶法施行細則	IX-326
3. 12	法律第2號	船舶檢査法	IX-356
3. 29	度支部令第13號	船舶檢査法施行細則	IX-330
4. 20	關稅局告示第1號	船舶檢査執行地를 指定하는 件	IX-371
3. 29	度支部令第12號	船準牌規則	IX-413
3. 12	法律第3號	船舶積量測度法	IX-368
10. 8	法律第27號	海上衝突豫防法	IX-334
3. 30	勅令第25號	船舶信號에 관한 件	VIII-475
隆熙 元. 9. 30	法律第7號	捕鯨業管理法	IX-379
隆熙 4. 4. 19	度支部令第15號	外國貿易 貨物用上屋·倉庫·陸揚船積場·旅客受荷物派出檢査特許手數料에 관한 件	VI-49
			IX-410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4. 18	勅令第29號	外國貿易貨物用上屋·倉庫·陸場船積場·旅客受荷物 派出檢査 特許手數料에 관한 件	IX-409

4) 燈臺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隆熙 元. 12. 13	勅令第49號	燈臺局官制	VI-135
隆熙 3. 9. 27	勅令第79號	燈臺局官制 改正	VIII-462
隆熙 2. 7. 6	關稅局告示第2號	燈臺局所屬船旗章 改正	VII-5
9. 1	關稅局告示第45號	黃海道大同江避島及 箕島燈臺 設置	VII-309
12. 10	關稅局告示第57號	咸鏡北道城津浦 城津燈臺及 霧笛의 新設	VII-531
12. 10	關稅局告示第58號	慶尙北道冬外串燈臺及 霧笛의 新設	VII-532
12. 28	關稅局告示第59號	釜山港 鷓之瀨의 本燈撤去와 假燈設立	VII-552
隆熙 3. 1. 14	關稅局告示第62號	全羅南道港門島燈臺及 霧笛의 新設	VIII-3
2. 9	關稅局告示第64號	全羅南道 下烏島燈臺及 霧笛의 新設	VIII-44
4. 13	關稅局告示第72號	大同江鎮南浦飛發島燈臺 新設	VIII-207
4. 27	關稅局告示第76號	港門島燈臺 副燈의 新設	VIII-241
5. 21	關稅局告示第77號	忠清南道格列飛島에 燈臺及 霧砲의 新設	VIII-259
6. 18	關稅局告示第80號	西岸下烏島燈臺霧笛의 吹鳴開始	VIII-284
7. 20	稅關局告示第83號	群山浦前望山桂燈立標의 新設	VIII-371
9. 27	關稅局告示第88號	西岸不烏島燈臺 霧笛의 吹鳴 開始	VIII-465
11. 2	關稅局告示第90號	平安北道 大和島燈臺의 點燈 開始	IX-65
11. 2	關稅局告示第91號	鴨綠江水運島燈臺의 新設	IX-66
11. 15	關稅局告示第95號	全羅北道 末島燈臺의 新設	IX-176
12. 15	關稅局告示第97號	忠清南道 水德島燈臺及 霧笛의 新設	IX-210
隆熙 4. 1. 7	關稅局告示第99號	慶尙南道 加德島燈臺의 新設	IX-248
5. 11	關稅局告示 第109號	全羅北道 大老鹿島燈臺의 新設	IX-440
5. 24	關稅局告示 第111號	咸鏡北道 清進燈臺及 霧笛의 新設	IX-469
6. 21	關稅局告示 第113號	慶尙南道 蔚崎燈臺의 新設	IX-489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7. 5	關稅局告示 第115號	全羅南道 小茅島燈臺의 新設	IX-511
8. 20	關稅局告示 第117號	全羅南道 攝島燈臺의 新設	IX-570
8. 24	關稅局告示 第118號	仁川港試驗燈의 點火	IX-584

5) 浮標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隆熙 2. 9. 29	農商工部告示 第11號	暴風雨標을 仁川月尾島에 設置하는 件	VII-386
9. 30	關稅局告示第47號	月尾島西端에 導標을 建設하는 件	VII-393
10. 13	關稅局告示第49號	浮標·陸標을 新設·變更하는 件	VII-403
隆熙 3. 1. 25	關稅局告示第63號	郡山浦浮標의 變更	VIII-14
3. 3	關稅局告示第67號	郡山浦丙號立標의 點燈	VIII-119
3. 18	關稅局告示第68號	釜山港鵝之瀨持燈立地의 點燈開始	VIII-155
4. 13	關稅局告示第71號	大同江浮標의 碇置	VIII-206
5. 21	關稅局告示第78號	鳴洋渡立標의 新設	VIII-260
5. 28	關稅局告示第79號	群山浦浮標의 碇置位置 變更	VIII-267
7. 19	關稅局告示第81號	鴨綠江浮標及 陸標의 設置	VIII-365
7. 20	關稅局告示第82號	大同江鐵島附近桂燈浮標의 新設	VIII-371
8. 6	關稅局告示第84號	漢江航路標識의 新設	VIII-393
8. 18	關稅局告示第86號	群山浦甲立標의 點燈	VIII-411
9. 25	關稅局告示第87號	鴨綠江浮標及陸標의 新設·變更·撤去及 點燈 停止	VIII-459
隆熙 2. 12. 28	關稅局告示第60號	仁川內港에 「아세지린」瓦斯浮標을 新設하는 件	VII-553
隆熙 3. 3. 22	關稅局告示第69號	仁川內港 「아세지린」瓦斯浮標의 撤去	VIII-164
10. 23	關稅局告示第89號	仁川內港 「아세지린」瓦斯浮標의 新設	VIII-529
11. 12	關稅局告示第92號	鴨綠江浮標의 撤去	IX-104
11. 13	關稅局告示第93號	大同江浮標의 撤去	IX-105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11. 14	關稅局告示第94號	郡山浦浮標의 撤去及 同 番號의 變更	IX-106
11. 24	關稅局告示第96號	木浦瓦斯浮標의 變更	IX-178
12. 15	關稅局告示第98號	漢江浮標의 撤去	IX-211
隆熙 4. 4. 15	關稅局告示 第105號	元山港燈의 新設, 同 第2號 浮標의 撤去	IX-408
4. 23	關稅局告示 第106號	大同江東·西·中洲浮標와 鐵島桂燈浮標의 碇 置	IX-417
6. 10	關稅局告示 第112號	漢江浮標의 碇置	IX-487
6. 27	關稅局告示 第114號	鴨綠江浮標及 陸標의 設置	IX-496

6. 鑛工業

1) 鑛業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2. 1. 12	奏本	國內鐵道·鑛山의 外國人合同을 勿許하는 件	II-326
光武 10. 6. 29	法律第3號	鑛業法	IV-590
隆熙 元. 8. 6	法律第3號	鑛業法 改正	VI-4
隆熙 2. 3. 16	法律第4號	鑛業法 改正	VI-306
隆熙 2. 7. 2	法律第11號	鑛業法 改正	VII-2
光武 10. 7. 11	農商工部令第43號	鑛業法施行細則	V-7
隆熙 元. 12. 28	農商工部令第52號	鑛業法施行細則 改正	VI-215
隆熙 2. 2. 8	農商工部令第57號	鑛業法施行細則 改正	VI-265
2. 24	農商工部令第60號	鑛業法施行細則 改正	VI-275
7. 10	農商工部令第66號	鑛業法施行細則 改正	VII-6
光武 10. 7. 18	農商工部令第45號	鑛業法施行細則附屬樣式	V-18
隆熙 元. 12. 28	農商工部令第53號	鑛業法施行細則附屬樣式 改正	VI-216
隆熙 2. 2. 8	農商工部令第58號	鑛業法施行細則附屬樣式 改正	VI-265
7. 11	農商工部令第67號	鑛業法施行細則附屬樣式 改正	VII-13
開國504. 5. 19	勅令第94號	砂金開採條例	I-389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建陽 2. 1. 14	勅令第11號	砂金開採條例 改正	II-207
光武 元. 9. 12	勅令第35號	砂金開採條例 改正	II-284
光武 10. 7. 24	法律第4號	砂鑛採取法	V-47
隆熙 元. 8. 6	法律第4號	砂鑛採取法 改正	VI-5
隆熙 2. 3. 16	法律第5號	砂鑛採取法 改正	VI-307
7. 2	法律第12號	砂鑛採取法 改正	VII-3
光武 10. 7. 12	農商工部令第46號	砂鑛採取法施行細則	V-13
隆熙 2. 7. 11	農商工部令第68號	砂鑛採取法施行細則 改正	VII-15
光武 10. 8. 14	農商工部令第47號	砂鑛採取法施行細則附屬樣式	V-63
隆熙 2. 1. 10	農商工部令第55號	砂鑛採取法施行細則附屬樣式 改正	VI-228
2. 8	農商工部令第59號	砂鑛採取法施行細則附屬樣式 改正	VI-266
7. 11	農商工部令第69號	砂鑛採取法施行細則附屬樣式 改正	VII-16
光武 8. 10. 10	奏本	三南各郡開礦處를 封閉하는 件	III-690
光武 10. 9. 11	農商工部令第49號	鑛業法第28條·砂鑛採取法第16條에 의한 鑛業·採取法の 請願節次에 관한 件	V-144
隆熙 3. 6. 16	農商工部告示 第23號	農商工部所屬及 石炭及 銻鑛採掘區域에 관 한 件	VIII-283
12. 28	農商工部告示第 36號	農商工部所屬 鐵鑛採掘區域中 解放하는 件	IX-247
隆熙 元. 8. 22	勅令第10號	平壤鑛業所官制	VI-20
12. 27	勅令第67號	平壤鑛業所官制 改正	VI-183
隆熙 3. 12. 27	勅令第103號	平壤鑛業所官制 改正	IX-238
隆熙 元. 9. 19	奏本	平壤鑛業所印章을 頒給하는 件	VI-46
10. 27	勅令第76號	平壤鑛業所特別會計法	VI-195
隆熙 3. 8. 12	勅令第74號	平壤炭田擴張에 要하는 工事와 材料及 機械 購入의 隨意契約에 관한 件	VIII-401
隆熙 4. 3. 19	農商工部令第2號	平壤鑛業所執務時間	IX-351
光武 10. 10. 6	奏本	礦山事務局印章을 新造하여 使用하는 件	V-229
8. 9	勅令第38號	農商工部所管 礦山事務局官制	V-62
10. 13	勅令第59號	宮內府所屬鑛山件	V-244
光武 11. 6. 25	宮內府令第4號	宮內府鑛務所의 名稱·位置及 所轄鑛山	V-543
7. 29	勅令第3號	宮內府所屬鑛山에 관한 法 廢止件	V-593
隆熙 元. 8. 6	勅令第3號	宮內府所屬鑛山 廢止에 관한 件	VI-6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10. 9. 11	布達第138號	帝室礦山規程 廢止	V-144
光武 11. 6. 23	布達第154號	宮內府鑛務所職制	V-542

2) 建築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10. 9. 24	勅令第55號	建築所官制	V-194
隆熙 元. 12. 13	勅令第42號	建築所官制	VI-124
隆熙 2. 8. 11	勅令第59號	建築所官制 改正	VII-138
光武 11. 3. 23		度支部建築所分課規程	V-477
隆熙 2. 1. 27		建築所分課規程	VI-252
9. 2		建築所分課規程 改正	VII-311
8. 17	度支部告示第8號	建築所出張所 設置	VII-261
9. 5	度支部告示第11號	建築所出張 廢止	VII-317
隆熙 4. 8. 11	度支部告示第9號	建築所元山出張所 廢止	IX-540
隆熙 3. 3. 19	建築所告示第1號	建築所工事的 競爭入札에 加入하려는 者の 資格에 관한 件	VIII-156
光武 10. 12. 7	度支部令第27號	度支部建築所工業部煉瓦製作會計規程	V-335
光武 11. 2. 23	度支部令第7號	度支部建築所工業部煉瓦製作會計規程 改正	V-430

3) 交通

(1) 道路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504. 8. 6	奏本	道路修治와 假家基址를 官許하는 件	I-534
光武 10. 4. 20	勅令第19號	治道局官制	IV-549
11. 27	議政府令第3號	內部所管 臨時治道工事に 관한 件	V-334
建陽 元. 9. 29	內部令第9號	漢城內道路의 幅을 規程하는 件	II-185
光武 9. 12. 30	警務廳令第2號	街路管理規則	IV-455
光武 10. 4. 14	警務廳令第5號	街路管理規則 改正	IV-547
隆熙 2. 5. 29	警視廳令第3號	街路管理規則 改正	VI-442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隆熙 3. 10. 14	慶尙北道令第7號	道路保存取締規則	VIII-501
隆熙 4. 1. 31	忠淸南道告示 第2號	道路費補助規程	IX-272
光武 11. 7. 30	內閣令第1號	城壁處理委員會에 관한 件	V-594
隆熙 2. 9. 5	閣令第9號	城壁處理委員會規程 廢止	VII-316
光武 11. 3. 31	奏本	東大門·南大門左右城堞을 毀撤하는 件	V-481
光武 11. 6. 22	奏本	東大門·南大門左右城堞을 毀撤하는 件	V-542

(2) 鐵道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建陽 元. 11. 15	詔勅	各國人民에 대한 鐵道合同을 1年間 不許하는 件	II-192
7. 15	勅令第31號	國內鐵道規則	II-96
8. 4	勅令第40號	國內鐵道規則 改正	II-128
11. 15	勅令第4號	國內鐵道規則 改正	II-194
光武 2. 9. 19	勅令第35號	國內鐵道規則中 改正條를 廢止하는 件	II-402
光武 9. 12. 18	法律第6號	私說鐵道條例	IV-434
光武 2. 7. 6	勅令第26號	鐵道司官制	II-384
7. 27	勅令第29號	鐵道司를 鐵道局으로 改稱하고 該官制를 改正하는 件	II-388
光武 5. 6. 1	勅令第15號	鐵道局官制 廢止	III-319
光武 2. 6. 19	奏本	京城·木浦間 鐵道를 敷設하는 件	II-374
光武 8. 8. 18	奏本	(京義間鐵道) 檢察使를 差下하는 件	III-642
光武 9. 3. 8	奏本	臨時軍用鐵道檢察使를 減下하는 件	IV-59
光武 10. 4. 10	警務廳令第4號	牛車及荷馬車管理規則	IV-541
隆熙 2. 2. 17	警視廳令第1號	牛車·荷車管理規則을 仁川及 同府附近에 施行하는 件	VI-271
8. 15	警視廳令第3號	人力車營業團束規則	VII-257

4) 기타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開國504. 3. 25	勅令第47號	觀象所官制	I-213
光武 元. 12. 23	勅令第42號	觀象所官制 改正	II-305
光武 4. 12. 19	勅令第54號	觀象所官制 改正	III-258
光武 9. 2. 26	勅令第24號	觀象所官制	IV-41
光武 11. 2. 1	勅令第7號	農商工部所管 測候所官制	V-416
隆熙 2. 4. 1	勅令第18號	觀測所官制	VI-340
4. 1	農商工部告示 第6號	農商工部所管觀測所及同附屬測候所 位置·名稱	VI-344
7. 11	農商工部告示 第9號	天氣豫報及 暴風警報規程	VII-18
隆熙 4. 2. 1	勅令第12號	觀測所官制 改正	IX-276
光武 6. 7. 12	勅令第10號	臨時博覽會事務所를 設置하는 件	III-412
8. 29	農商工部令第39號	臨時博覽會事務所 規則	III-439
光武 7. 7. 3	勅令第12號	臨時博覽會事務所設置件 改正	III-535
7. 20	農商工部令第41號	陳列館規則	III-536
光武 8. 7. 12	勅令第20號	農商工部臨時博覽會事務所官制 廢止	III-628
12. 6	勅令第30號	印刷局官制	III-703
隆熙 3. 3. 31	勅令第41號	印刷局官制 改正	VIII-173
光武 9. 1. 7		度支部印刷局分課規程	IV-1
隆熙 2. 1. 27		印刷局分課規程	VI-251
2. 19		印刷局徽章 制定	VI-272
光武 8. 12. 31	度支部令第3號	印刷局職工·巡檢에 관한 件	III-708
隆熙 元. 12. 27	勅令第69號	煉瓦製作所官制	VI-186
隆熙 2. 1. 27		煉瓦製造所分課規程	VI-252
隆熙 3. 3. 13	度支部訓令第30號	度支部所屬煉瓦製作所分課規程 改正	VIII-146
隆熙 2. 3. 5	勅令第11號	鹽業試驗場官制	VI-285
隆熙 3. 2. 18	勅令第17號	鹽業試驗場官制 廢止	VIII-71
隆熙 2. 3. 5	農商工部告示第3號	農商工部所管 鹽業試驗場及 鹽業試驗場出張所를 定하는 件	VI-296
光武 10. 5. 11	農商工部令第42號	各種物質分析及試驗手數料規程	IV-563
隆熙 2. 1. 10	農商工部令第54號	各種物質分析及試驗手數料規則 改正	VI-227
隆熙 2. 9. 24	農商工部令第70號	各種物質分析及試驗手數料規定 改正	VII-351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8.13	內閣告示第4號	<p>特許·意匠·商標·商號及 著作權에 관한 日本法令(韓國特許令·韓國意匠令·韓國商標令·韓國商號令·韓國著作權令·韓日國民의 特許權·意匠權·商標權·著作權의 保護에 관한 件·統監府令(第25號 韓國特許令施行規則·第26號 韓國意匠令施行規則·第27號 韓國商標令施行規則·第28號 韓國著作權令施行規則·第29號 韓國商號令施行規則·第30號 韓國特許代理業者登錄規則)·統監府告示(第123號 統監府特許局設置·第126號 統監府特許局 東京出張所設置·第128號 特許請願樣式)·明治32年 法律 第36號 特許法·同農商務省令第13號 特許法施行細則·同法律第37號 意匠法·同農商務省令第14號 意匠法施行細則·同法律第38號 商標法·同農商務省令第15號 商標法施行細則·同法律第39號 著作權法·同內務省令第28號 著作權登錄에 관한 規定·同內務省令第27號 著作權者不明의 著作物發行 또는 興行方法·同法律第48號 商法·明治31年 法律第14號 非訟事件手續法·明治32年 司法省令第13號 商業登記處理節次·明治29年 法律第27號 登錄稅法·明治32年 勅令第195號 特許 意匠 및 商標에 관한 手數料制·明治38年 農商務省令第4號 商標請求申請手數料·明治32年 司法省令第14號 不動產 및 商業登記簿謄本抄本請求等 手數料額)을 掲布하는 件</p>	VII-170
8.13	內閣告示第3號	<p>韓國에 在한 發明·意匠·商標及 著作權의 保護에 관한 日美條約을 公布하는 件</p>	VII-168
隆熙 3.11. 1	內閣告示第34號	<p>特許·意匠·商標·實用新案에 관한 日本國勅令(第304號 韓國特許令·第305號 韓國意匠令·第306號 韓國商標令·第307號 韓國實用新案令·第308號 韓國特許辦理士令·第309</p>	IX-23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11. 1	內閣告示第36號	號 韓國에서 特許 意匠 商標及 實用新案에 관한 審判이나 抗告審判及 出納에 관한 費用에 관한 件·勅令第310號 統監府特許局官制 改正)을 掲布하는 件	IX-27
11. 2	內閣告示第39號	統監府令(第56號 韓國特許令施行規則·第57號 韓國意匠令施行規則 改正·第58號 韓國商標令施行規則·第59號 韓國實用新案令施行規則·第60號 韓國特許辦理士試驗規則·第61號 韓國特許代理業者登錄規則)·統監府告示第114號(特許·實用新案登錄·意匠登錄請願에 관한 節次)을 掲布하는 件	IX-32
11. 9	內閣告示第43號	特許 意匠 商標 實用新案에 관한 日本國法律(第23號 特許法·第24號 意匠法·第25號 商標法·第26號 實用新案法)을 掲布하는 件 特許·意匠·商標·實用新案에 관한 日本語勅令(第294號 特許登錄令·第295號 意匠의 登錄에 관한 件·第296號 商標의 登錄에 관한 件·第297號 實用新案의 登錄에 관한 件·第298號 特許權存續期間 延長에 관한 件·第299號 軍事上 祕密을 要하는 發明의 特許에 관한 件·第300號 特許辦理士令·第301號 特許 意匠 商標及 實用新案에 관한 審判 抗告審判及 出訴에 관한 費用件·第303號 特許意匠 商標及 實用新案에 관한 手數料 件)을 掲布하는 件	IX-79
11. 15	內閣告示第44號	特許·意匠·商標·實用新案에 관한 日本國農商務省令(農商務省令第42號 特許法施行細則·第43號 意匠法施行細則·第44號 商標法施行細則·第45號 實用新案法施行規則·第46號 特許登錄令施行規則·第47號 意匠의 登錄에 관한 件 施行規則·第48號 商標의 登錄에 관한 件 施行規則·第49號 實用新案登錄에 관한 件 施行規則·第50號 特許辦理士試驗規則)을 掲布하는 件	IX-107

X. 外交

1. 官制

1) 外部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開國504. 3. 25	勅令第42號	外部官制	I-207
光武 4. 5. 16	勅令第17號	外部官制 改正	III-88
光武 7. 12. 16		外部官制 改正	III-565
光武 9. 2. 26	勅令第14號	外部官制	IV-25
光武 10. 1. 17	勅令第5號	外部官制 改正	IV-497
開國504. 3. 25	內閣制定(?)	外部分課規程	I-223
光武 9. 4. 13		外部分課規程	IV-99

2) 外交官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록권면
開國504. 3. 25	勅令第43號	外交官 및 領事官官制	I-208
光武 2. 6. 18	勅令第19號	外交官及領事官制 改正	II-371
12. 9	勅令第40號	外交官及領事官官制 改正	II-427
光武 8. 10. 20		外交官及領事官官制 改正	III-699
12. 6		外交官及領事官管制 改正	III-703
光武 5. 5. 3	奏本	在外公使館에 參書官 1窠를 權設, 外國人을 揀選하여 臨時로 任命하는 件	III-315
光武 9. 4. 22	奏本	外交顧問所屬의 補佐員을 設置하는 件	IV-125
開國504. 3. 25	勅令第44號	公使館·領事館職員令	I-209
光武 2. 12. 9	勅令第41號	公使館·領事館職員令 改正	II-427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3. 6. 15	外部令第1號	外部見習生選用規則	II-501
開國504. 3. 29	勅令第61號	公使館·領事館 費用令	I-264
光武 2. 12. 9	勅令第43號	公使館·領事館費用令 改正	II-428
光武 8. 7. 19	勅令第21號	公使館·領事館費用令 改正	III-630
光武 2. 6. 18	勅令第20號	出使各國外交官領事官以下官員服章式	II-372

2. 外交節次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高宗 31. 8. 28	議案	外交上 重大案件의 辦理節次에 관한 件	I-98
建陽 2. 7. 3	奏本	木浦·甑南浦 開港에 관한 件	II-266
隆熙 2. 1. 7	勅令第1號	咸鏡北道高寧郡 淸津開放에 관한 件	VI-227
高宗 31. 6. 28	議案	特命全權大使를 各國에 派遣하는 件	I-14
8. 4	議案	日本에 全權公使를 差遣하는 件	I-83
開國504. 7. 12	奏本	漢城內의 外國人集居地를 限定하는 件	I-503
隆熙 3. 9. 1	內部訓令第188號	在留日本人의 認許請願 處理에 관한 件	VIII-436

3. 外交關係

1) 條約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8. 5. 18	奏本	韓俄兩國間 條約·協約을 廢罷하고 俄國臣民·會社에 認准한 特許合同中 無妨한 것에 限하여 그 認准을 繼續 享有케 하는 件	III-601
5. 18	勅令(勅宣書)	韓俄兩國間 條約·協定을 廢罷하고 俄國臣民·會社에 認准한 特許合同中 無妨한 것에 限하여 그 認准을 繼續 享有케 하는 件	III-602

2) 旅券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11. 1. 19	議政府告示	沿海州에서 韓國臣民에게 露國居住券을 交付하는 節次에 관한 規則	V-401
5. 6		統監府告示第65號 同一旅券으로서 外國을 數次 往復할 수 있는 地域을 定하는 件을 告示하는 件	V-505
光武 10. 9. 11	議政府告示	統監府令第34號 韓國人外國旅券規則을 告示하는 件	V-145
光武 11. 5. 1	議政府告示	統監府令第16號 外國旅券規則을 告示하는 件	V-503
隆熙 4. 5. 26	內閣告示第53號	外國旅券下付願書에 添附할 文書에 관한 件	IX-472

3) 移民

일 자	형 식	법 령 명	수 록 권 면
光武 10. 6. 29	法律第2號	移民保護法	IV-588
隆熙 2. 4. 14	法律第7號	移民保護法 改正	VI-373
光武 10. 7. 19	農商工部令第44號	移民保護法施行細則	V-43
隆熙 2. 4. 18	內部令第8號	移民保護法施行細則 改正	VI-374
高宗 31. 11. 20	外務衙門制定(?)	保護清商規則	I-116
開國504. 3. 7	外務衙門令第1號	保護清商規則施行細則	I-160

參考文獻

1. 史料

- 「舊韓國官報」,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國史編纂委員會編, 「高宗純宗實錄」上·中·下, 探求堂 영인본
國史編纂委員會編, 「高宗時代史」1~6,
國會圖書館, 「韓末近代法令資料集」, I~IX, 1970~1972.
朝鮮總督府 中樞院, 「朝鮮舊慣制度調查事業概要」, 昭和13年

2. 國內單行本

- 金炳華, 「韓國司法司—中世篇」—潮閣, 1979.
金雲泰, 「朝鮮王朝行政史—近代篇」, 一潮閣, 1984, 全訂新版
金亨培外, 「近代西歐學問의 受用과 普專」, 고려대출판부, 1986.
大韓辯護士會, 「韓國辯護士史」, 1979.
朴秉濠, 「韓國法制攷」, 法文社, 1974.
_____, 「韓國法制史」,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86.
法院行政處, 「韓國法官史」, 1976.
法制處, 「法制處40年史」, 1988.
邊太燮, 「韓國史通論」, 三英社, 1986
安基成, 「韓國近代教育法制研究」, 고려대출판부, 1984.
李培鎔, 「舊韓末鑛山利權과 列强」, 한국연구원, 1984.
田鳳德, 「韓國近代法思想史」, 박영사, 1982.
崔大權, 「法社會學」, 서울대출판부, 1983.
崔鍾庫, 「韓國의 西洋法受容史」, 박영사, 1982.
_____, 「韓國法思想史」, 서울대출판부, 1989.
_____, 「韓國法學史」, 박영사, 1990.
崔鍾庫, 金相容, 「法史學入門」, 法文社, 1989.
玄勝鍾, 「比較法入門」, 박영사, 1972.
鈴木敬夫, 「法을 통한 朝鮮植民地支配研究」, 고려대출판부, 1989.
南基正譯, 「日帝의 韓國司法府侵略實話」, 育法社, 1978(원문은 “朝鮮司法界의 往事를語る座談會”, 「朝鮮司法協會雜誌」, 第19卷 第10·11號, 昭和15년에 수록)

3. 國內論文

- 姜昌錫, “統監府研究—理事廳의 組織과 機能을 中心으로” 「釜山史學」 13, 1987.
金度亨, “大韓帝國 末期의 國權恢復運動과 그 思想”,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88.

- 김봉진, “『漢城周報』의 발행과 조선의 萬國公法 수용”, 「한국전통사회의 구조와 변동」, 문학과 지성사, 1986.
- 金雲泰, “統監府時代의 大韓帝國統治體制의 構造와 機能”, 「行政論叢」 9-1, 서울대, 1971.
- 金益魯, “1894年の 校正廳의 設置와 國政改革運動 -中道改革派의 思想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85.
- 金熙洙, “開化期 不動産에 관한 法律關係小考”, 「法史學研究」 9, 韓國法史學會, 1988.
- 朴秉濠, “開化期の 法制”, 「韓國學」 7, 중앙대 영신아카데미, 1975.
- _____, “傳統的 法·法意識과 現代法の 課題”, 「歷史的 脈絡에서 본 現代韓國文化의 方向」,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 李光麟, “舊韓末進化論의 수용과 그 영향”, 「韓國開化思想研究」, 一朝閣, 1979.
- _____, “韓國에 있어서의 萬國公法의 受容과 그 영향”, 「東亞研究」 1, 서강대 동아연구소, 1982.
- _____, “統理機務衙門의 組織과 機能”, 「開化派와 開化思想研究」, 一朝閣, 1989.
- 李炳洙, “우리나라의 近代化와 刑法大全의 頒布-家族法을 中心으로 하여-”, 「法史學研究」 2, 韓國法史學會, 1975.
- 李相冕, “比較法學方法論”, 「法學」 24권 1호, 서울대 법학연구소, 1983.
- 李相旭, “韓國相續法の 成文化過程”,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86.
- 李元淳, “韓末願聘歐美人綜鑑-外國人願聘問題研究序說”, 「韓國文化」 10,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89.
- _____, “韓末日本人願聘問題研究”, 「한국문화」 11, 1990.
- 李漢基, “韓國 및 日本의 開國과 國際法”, 「學術院論文集」 19, 1980.
- 李熙鳳, “韓末法令小考”, 「學術院論文集」 19, 1980.
- 장근세, “한말형사법에 관한 고찰”,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1981.
- 전봉덕, “일제의 사법권강탈과정연구”, 「애산학보」 2, 애산학회, 1982.
- 鄭東鎬, “개화기의 家族法規範에 관한 考察-刑法大全의 규정을 중심으로-”, 「논문집」 13, 강원대, 1979.
- 丁玉泰, “李朝立法節次에 관한 一考察”, 「논문집」(법학·행정학편) 29, 전남대, 1984.
- 崔大權, “法社會學的 法學方法論-法發見에 있어서의 法社會學的 接近-”, 「法學」 24권 1호, 서울대 법학연구소, 1983.
- 崔鍾庫, “法史學的 法學方法論-法史學的 課題와 方法-”, 「법학」 24권 1호, 서울대 법학연구소, 1983.

4. 日本文獻

- 鄭鍾休, 「韓國民法の比較法的研究」, 創文社, 1989.
- 福島正夫外, 「日本近代法體制の形成」上, 日本評論社, 1981.
- 利谷信義, 「日本の法を考する」, 東京大出版會, 1985.
- 松岡修太郎, “統監府の統治法制”, 「京城帝大 法學會論文集」 12冊 3·4集, 昭和16年.

年代對照表

時代區分	韓國年代		日本年代	西紀	檀紀
	年號	開國年代			
大朝鮮王國	高宗 31	503 (公私文牒에 開國紀元 使用)	明治 27	1894	4227
大朝鮮帝國 (504. 8. 27)		504	28	1895	4228
	建陽 1	505 { 504. 11. 17(陰曆)로 서 505. 1. 1(陽曆)로 삼고 太陽曆 使用 }	29	1896	4229
	2(506. 8. 15) 光武1(506. 8. 16)	506	30	1897	4230
朝鮮	光武 2		31	1898	4231
	光武 3		32	1899	4232
	光武 4		33	1900	4232
	光武 5		34	1901	4234
	光武 6		35	1902	4235
	光武 7		36	1903	4236
	光武 8		37	1904	4237
	光武 9		38	1905	4238
	光武 10		39	1906	4239
	光武 11 隆熙 1(8. 2)		40	1907	4240
	隆熙 2		41	1908	4241
	隆熙 3		42	1909	4242
	隆熙 4		43	1910	4243
韓日合併 (隆熙4. 8. 29)			44	1911	4244

* 南基正, 前揭譯書, 221面에서 전재함.

研究報告 91-14

韓末法令體系分析

1991年 12月 25日 印刷

1991年 12月 30日 發行

發行人 李世薰

發行處 韓國法制研究院

印刷處 韓國컴퓨터産業(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1-190호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값 6,000원

